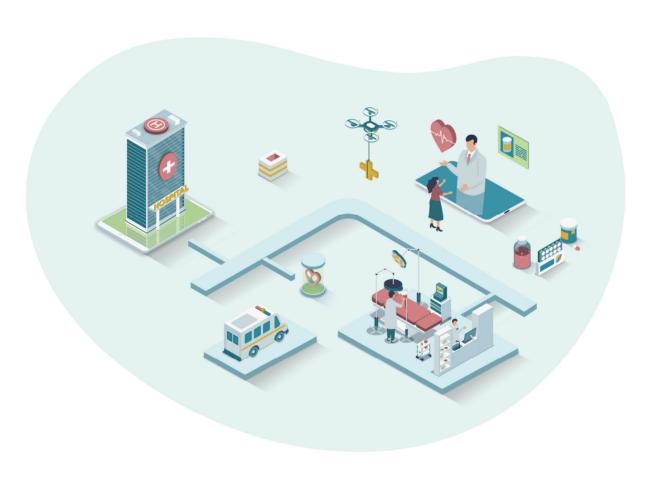
2023

응급실손상환자심층조사 지침서





CONTENTS

PART	│ 조사개요 ····································	1
	1. 조사배경 및 목적	
	2. 조사대상	
	3. 조사방법	
	4. 질 관리	5
	5. 사업수행일정	
	6. 조사항목	8
PART 2	! <mark>조사항목 지침 ···································</mark>	21
	` . 공통항목 ······	
	II. 분과별 심층항목 ·····	119
	1. 운수사고 ····	121
	2. 머리·척추 손상 ·····	137
	3. 자해 / 자살	149
	4. 중독 ·····	157
	5. 낙상 및 추락	163
	6. 취학전 어린이 손상	169
PART 3	· 조사사례 ·································	179
PART 4	시업운영 지침	191
	1. 사업의 운영	193
	2. 사업 수행기관 및 수행인력 기준	197
	3. 예산 집행지침	199
	4. 사업비 산출기준	215

PART	5	│ 자료등록시스템 ········ :	229
		1. 시스템 이용절차	221
		2. 자료 등록 ···································	
		2. 시료 등록 3. 자료 수정 ···································	
		3. 서료 구성 4. 자료 조회	
		4. 지료 도외 5. 자료 다운로드	
		5. 지료 니군도르 6. 조사진행관리	
		7. 커뮤니티 ····································	
		7. 기뉴니니	247
PART	6	연구성과물 활용 절차 :	249
PARI	_	1	
		1. 연구성과 관리 개요	251
		2. 연구성과물 활용 절차 ···································	
		3. 원시자료 요청	
		4. 연구 활용 계획	
		5. 논문게재 확정 시 절차	255
		6. 연구성과물 활용 시 사사 표기	
		7. 제재조치 ····································	
		7. 제제도시	250
PART	7	서식 및 양식	257
		1. 예산변경 요청 및 사유서	259
		2. 참여연구원 변경 요청 및 사유서	260
		3. 사업 책임자 변경 요청 및 사유서	261
		4. 연구성과물 활용 신청서	262
		5. 연구성과물 활용 결과보고서	263
		6. 응급실손상환자심층조사 자료이용 지침 및 서약서	264
		7. 응급실손상환자심층조사 조사표	265

PART

조사개요

- 1. 조사배경 및 목적
- 2. 조사대상
- 3. 조사방법
- 4. 질 관리
- 5. 사업수행일정
- 6. 조사항목

2023 응급실손상환자심층조사 지침서



→ 조사배경 및 목적

•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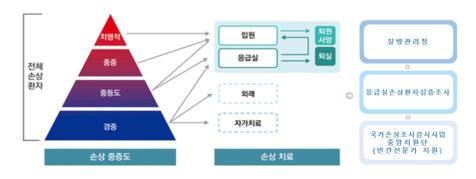
손상은 '질병을 제외한 각종 사고, 재해 또는 중독 등 외부적인 위험요인에 의하여 발생하는 신체적·정신적 건강상의 문제'로. 경제활동연령의 주요 장애 및 사망원인이 된다는 점에서 사회 경제적 부담이 큰 보건 문제라고 할 수 있다.

다행히 손상은 많은 경우 예방이 가능한 것으로 알려져 있어 국가 차워의 체계적인 예방관리 사업이 필요하다. 손상 예방은 취약 대상별로 손상이 발생할 수 있는 구조적인 문제를 파악하는 데서부터 시작되며, 이름 위해서는 적절한 손상조사감시체계가 우영되어야 한다.

질병관리청은 이러한 수요를 반영하여 병원 기반의 여러 손상조사감시체계를 유영 중이며. 특히 기전이나 중증도 차원에서 다양한 손상 환자가 내원하는 응급실이라는 의료체계를 활용하여 손상 자료를 수집하기 위해서 2006년, 5개 병원 대상의 응급실손상환자심층조사를 도입하였다.

충분하고 품질 높은 자료를 수집하기 위해서 2023년 현재 23개 병원이 참여하여 손상으로부터 우리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안전수칙 개발에 활용할 수 있는 지표 생산을 주요 목표로,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특히 응급실손상화자심층조사는 손상화자의 치료가 끝난 다음에 의무기록을 이용하여 조사하는 방식과 다르게 손상 발생 당시에 조사한다는 점에서 최근 발생이 증가하는 손상 문제를 조사에 반영할 수 있어 시의성과 유연성 면에서 강점이 있다. 또한, 의무기록조사와 함께 환자 대상의 면접조사를 실시하여 손상 발생 상황을 자세히 조사할 수 있어 활용범위가 넓다. 다만, 조사대상은 많은 수의 화자를 확보할 수 있으면서 고품질의 조사 수행능력을 갖춘 대형 병원 위주로 선정되어 전국 응급실 내워 손상화자를 대표성 있게 반영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제한점이 있다.



[그림 1] 응급실손상환자심층조사 개요

. . . → 조사대상

조사대상은 2023년도 민간경상보조사업 수행기관으로 선정된 23개 참여병원 응급실에 내원한 손상 화자 전수이며, 질병치료를 목적으로 내원하는 화자에게 발생한 손상도 포함된다. 응급실 내원부터 퇴실 · 퇴원 시까지 추적하여 실시간으로 정보를 수집한다.

3 • 조시방법

23개 참여병원은 사업책임자 관리 하에 자료수집 전담코디네이터를 배치하고. 병원 상황에 따라 조사, 질 관리 등에 필요한 인력을 구성하여 응급실에 내원한 손상환자의 자료를 수집한다.

응급실손상화자심층조사 지침서를 활용하여 표준화된 지침에 따라 조사를 실시한다. 내워 전 자료는 구급활동일지를 활용하고, 응급실 내워 자료는 면접조사와 의무기록 조사를 통해 손상환자의 내원 전 손상 발생 경위부터 응급실 퇴실 및 퇴원 시까지 정보를 실시간으로 수집한다.

조사에 참여하는 연구진은 주기적으로 수집된 손상자료를 검토하여 누락된 항목은 의무기록 재확인. 전화 및 면접조사를 통해 보완하여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http://is.kdca.go.kr)」에 익월 15일까지 등록한다(그림 2)



[그림 2] 응급실손상환자심층조사 자료수집 과정

• • • 4 → 질 관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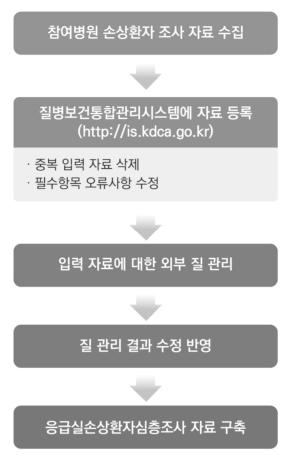
대량으로 축적되고 있는 조사 자료의 가용성을 높이기 위하여 자료의 질에 대한 중요성이 강조됨에 따라 정확하고 적극적인 데이터 질 관리가 필요하다. 이에 응급실손상화자심층조사로 수집된 자료의 질 향상을 위해 자료의 타당성, 일관성, 완결성, 적시성을 기준으로 단계적 질 관리를 실시한다. 각 기준에 대한 설명은 다음과 같다.

[표 1] 자료의 질 관리 기준

항목	설명
타당성	문항의 의도에 맞게 정확히 조사했는지를 의미함
일관성	데이터가 용어 정의, 규정, 표준, 속성 정의, 데이터 형식 등에 부합하여야 함
완결성	필요 정보가 모두 포함되었는지를 의미함
적시성	제공 데이터는 가장 최근의 내용으로 갱신되어야 함

참여병원에서 매월 자료를 익월 15일까지 등록하면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하여 자료의 중복, 필수 항목 누락 여부 등 자료의 충실성을 검증한 후, 외부 전문가 질 관리팀에서 참여 병원별로 미상률. 결측률 및 기타의 비율을 확인한다. 기타 값에 대해서는 질 관리 회의를 통하여 재분류 가능성을 점검한다.

질 관리팀에서 1차 질 관리 결과를 각 참여병원에 메일로 환류하면 참여병원은 질 관리 결과를 받은 날로부터 2주 이내에 오류. 미상. 결측 값 등을 수정해야 한다. 이후 1차 질 관리 수정 자료에 대한 2차 질 관리를 실시한다(그림 3).



[그림 3] 응급실손상환자심층조사 질 관리 과정

양질의 자료를 구축하기 위해 심층분과별 실무회의. 코디네이터 질 관리 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다빈도 오류의 조사항목을 환기시키는 등 다단계의 질 관리를 실시하고 있다.

		항목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사업계획서 제출				
	상반기	국고보조금 교부신청서 제출				
행 정		중간보고서 제출				
사 항	하반기	국고보조금 교부신청서 제출				
		결과보고서 제출				
	회계	감사 및 정산보고서 제출*				
	정기회의	전체운영위원회 참석(연 2회)				
		실무운영위원회 참석(연 4회)				
		심층분과 실무회의 참석(연 4회)				
사 업	7.0	조사자 교육 참석(연 4회)				
운 영	교육	질 관리 간담회 참석(연 4회)				
	ᅎᆡᄉᆌ	데이터 등록(매월)				
	조사수행	오류 데이터 질 관리(매월)				
	최종평가	결과보고회 참석				

^{* 2024}년 1/4분기에 진행

[그림 4] 2023년 응급실손상환자심층조사 사업 일정

→ 조사항목 • • • •

23개 참여병원 응급실에 내원한 모든 손상환자에 대해 공통항목을 조사하고, 심층항목은 각 병원별로 해당 심층영역의 자료를 추가로 조사한다.

୭ 공통 항목(58개 항목)

번호	항목명	코드	필수 여부	설명	비고
1	의료기관번호	HSCD	필수	손상환자가 내원한 의료기관의 인식번호	
2	환지식별번호	IDNO	필수	손상환지를 식별할 수 있는 일련번호	
3	내원일자	INDT	필수	손상환자가 응급실에 내원한 날짜	
4	내원시간	INTM	필수	손상환자가 응급실에 내원한 시간	
5	성별	SEXX	필수	손상환자의 성	
6	연령	AGE	필수	손상환지의 연령	
7	직업	JOB	입원 필수	손상환자의 직업	※ '16년 입원환자 필수
7-1	직업 해당없음 내용	JOB_ETC	-	손상환자 직업 중 해당 없음의 구체적인 내용	※ '16년 입원환자 필수
8	학력	EDUC	일수	손상환자의 학력	
9	소득	SALARY	비필수	손상환자 가구의 최근 1년 동안의 총 수입	
10	보험유형	INSUR	필수	지불방법의 보험유형	※ '19년 코드변경
10-1	보험유형 기타내용	INSUR_ETC	-	손상환자 보험유형의 기타내용	
11	내원수단	METHOD	필수	손상환자가 응급실 도착 시 이용한 내원수단	
11-1	내원수단 기타내용	METHOD _ETC	-	손상환자가 응급실 도착 시 이용한 수단의 기타내용	
12	응급진료결과	EMRT	필수	응급실에 내원한 손상환자의 진료결과	
12-1	응급진료결과 기타내용	EMRT_ETC	-	응급실에 내원한 손상환자의 진료결과의 기타내용	

번호	항목명	코드	필수 여부	설명	비고
13	퇴실일자	DODT	필수	손상환자가 응급실 진료 후 퇴실한 날짜	
14	퇴실시간	DCTM	팕	손상환자가 응급실 진료 후 퇴실한 시간	※ '16년 필수
15	입원 후 결과	DCRT	필수	입원한 손상환자의 진료 후 최종결과	
15-1	입원 후 결과 기타내용	DORT_ETC	-	입원한 손상환자의 진료 후 최종결과의 기타내용	
16	퇴원일자	D_DATE	필수	입원한 손상환자가 퇴원한 날짜	
17	퇴원시간	D_TIME	필수	입원한 손상환자가 퇴원한 시간	※ '16년 필수
18	손상의도성 (내원사유)	INTENT	필수	손상환자의 손상의도성	
18-1	손상의도성 (내원 시유) 기타내용	INTENT_ETC	-	손상환자의 손상의도성 기타내용	
19	음주관련여부	ALCO	팔수	손상피해자와 관련자가 손상발생시 음주상태 혹은 의심되는 상태	
20	손상기전	MECH	팔수	손상의 경우 그 사고가 발생한 기전	※ '19년 코드변경
20-1	손상기전(층)	MECH_F	-	손상기전이 'C12.6 4m 이상 높이에서 떨어지거나 뛰어내리거나 떠밀림'인 경우 구체적인 층수	※ '19년 추가
20-2	손상기전(높이 m)	MECH_M	-	손상기전이 'C12.6 4m 이상 높이에서 떨어지거나 뛰어내리거나 떠밀림'인 경우 구체적인 높이(m)	※ '19년 추가
21	손상발생일자	ONDATE	팔수	손상환자에게 손상이 발생한 날짜	
22	손상발생시간	ONTIME	팔수	손상환자에게 손상이 발생한 시간	
23	손상발생장소	PLACE1	팔수	손상발생 당시에 환자가 있었던 장소	※ '19년 코드변경
23-1	손상발생장소 기타내용	PLACE1_ETC	-	손상발생 당시에 환자가 있었던 장소의 기타내용	
24	손상발생 장소의 실내·실외 여부	PLACE2	팕	손상발생당시에 환자가 있었던 손상발생장소의 실내 또는 실외구분	※ '19년 변수명변경
25	건물 및 인접지역내 세부장소	PLACE3	팕	손상발생장소의 건물 및 인접지역 내 세부장소	
25-1	건물 및 인접지역내 세부장소 기타내용	PLACE3_ETC	-	손상발생장소의 건물 및 인접지역 내 세부장소의 기타내용	

번호	항목명	코드	필수 여부	설명	비고
26	주거지유형	HOMETYPE	비필수	손상발생장소가 주거지인 경우 주거지유형	
26-1	주거지유형 기타내용	HOMETYPE _ETC	-	손상발생장소가 주거지인 경우 손상발생 당시 환자가 있었던 주거지 유형의 기타내용	
27	손상시 활동	IACT	필수	손상발생 당시 손상환자의 활동	※ '19년 코드변경
27-1	손상시 활동 기타내용	IACT_ETC	-	손상발생 당시 손상환자의 활동 기타내용	
28	스포츠・운동유형	SPORTS	팔수	스포츠·운동으로 인해 손상을 입은 경우 손상발생 당시 환자의 스포츠·운동 유형	※ '12년 필수
28-1	스포츠·운동유형 기타내용	SPORTS_ETC	-	스포츠·운동유형의 기타내용	
29	알차적 손상유발물질	FACTOR_U	필수	손상을 유발한 일치적인 물질	
29-1	일치적 손상유발물질 내용입력	FACTOR_UT	-	손상을 유발한 일차적인 물질이 기타인 경우 구체적인 내용	
30	직접적 손상유발물질	FACTOR_D	비필수	손상을 유발한 직접적인 물질	
30-1	직접적 손상유발물질 내용입력	FACTOR_DT	-	손상을 유발한 직접적인 물질이 기타인 경우 구체적인 내용	
31	다발성손상 진단명	DD01	필수	손상환자가 손상으로 인해 진단받은 주요한	
31	1-10	DD02~DD10	비필수	진단명	
32	손상내용입력	NARRATIVE	필수	손상사건을 육하원칙에 의거하여 내용 입력	
33	운수시고 당시 환자의 역할	T_ROLE	팕	운수사고 당시 운송수단에서의 환자의 역할	※ '22년 7월 코드 변경
33-1	운수시고 당시 환자의 역할 기타내용	T_ROLE_ETC	-	운수사고 당시 운송수단에서의 환자의 역할 기타내용	
34	운수사고의 상대편	T_COUNTER	필수	운수사고 발생당시 충돌한 상대편	※ '19년 필수
34-1	운수사고의 상대편 기타내용	T_COUNTER _ETC	-	운수사고 발생당시 충돌한 상대편의 기타내용	

번호	 항목명 	코드	필수 여부	설명	비고
35	운수시고 발생장소 (도로종류)	T_RTYPE	팔수	운수사고 발생장소의 도로종류	※ '19년 필수, 코드변경
35-1	운수사고 발생장소 (도로종류) 기타내용	T_RIYPE_ETC	-	운수사고 발생장소의 도로종류 기타 내용	
36	보호장비 인전벨트	PE_1	필수	보호장비 중 안전벨트 장착여부	※ '19년, '22년 7월 코드변경
36	보호장비 안전의자	PE_2	필수	보호장비 중 안전의자 장착여부	
36	보호장비 헬맷착용	PE_3	필수	보호장비 중 헬멧 착용여부	
36	보호장비 관절보호	PE_4	비필수	보호장비 중 관절보호구 착용여부	
36	호생 바에 사장	PE_5	필수	호장비 중 차량의 에어백 장착여부	※ '19년 필수
36	보장비에백작동	PE_6	필수	보호장비 중 에어백 작동여부	※ '19년 필수
36	보호장비_기타	PE_98	-	보호장비의 기타	
36-1	보호장비 기타내용	PE_ETC	-	보호장비의 기타내용	
37	중독물질코드(분류)	PO_MACD	필수	중독을 유발한 물질의 분류	
38	중독물질 명칭	PO_NAME	필수	중독을 유발한 물질의 일반명 또는 상품명	
39	중독물질(주성분)	PO_COMP	필수	중독을 유발한 물질의 주성분	
40	자해/지살 위험요인 1-2	S_FACTOR1~ S_FACTOR2	팔수	자해/자살을 하게 된 직접적인 구체적 동기 또는 이유	※ '19년 변수명, 코드 변경 '22년 7월 코드변경
40-1	지해/지살 위험요인 기타내용	S_FACTOR1_ETC~ S_FACTOR3_ETC	-	자해/자살을 하게 된 직접적인 구체적 동기 또는 이유의 기타내용	
41	지해지살 시도 과연 (지해지살 시도 횟수 포함)	S_HISTORY_ NUM	팔수	자해/자살시도 횟수를 포함한 자살시도 과거력	※ '22년 7월 추가
41-1	자해/자살 시도 과거력 횟수	S_HISTORY_E TC	-	자해/자살 시도 과거력 빈도 횟수	
42	주증상 1-3	SYMPU1~ SYMPU3	비필수	손상환자의 내원 시 주증상	

			-1 4		
번호	항목명	코드	필수 여부	설명	비고
43	수축기 혈압	CM_SP	필수	손상환자의 내원 시 수축기 혈압	
44	이완기 혈압	CM_DP	필수	손상환자의 내원 시 이완기 혈압	
45	분당 맥박수	CM_PC	필수	손상환자의 내원 시 분당 맥박수	
46	분당 호흡수	CM_BREATH	필수	손상환자의 내원 시 분당 호흡수	
47	체온	CM_TMPT	필수	손상환자의 내원 시 체온	
48	AVPU	CM_AVPU	필수	손상환자의 내원 시 의식상태	
49	글래스고우 혼수척도 GCS(VPM, Total)	CM_GCS_E CM_GCS_V CM_GCS_M	팔수	손상환자의 GCS 점수	※ '19년 필수
50	수술 유무	OP	필수	손상환자의 수술 유무	
51	수술내역 1-10	OP01~OP10	비필수	수술한 손상환자의 수술명	
52	EMR-ISS	EMR-ISS	비필수	손상환자의 중증도 점수	
53	RTS	RTS	필수	손상환자의 RTS 값	※ '19년 필수
54	ISS	ISS	비필수 (분과별 필수)	손상손상환자의 ISS점수	※ '19년 입력방식 변경
55	병원전처치	PRE_C010~ PRE_C99	비필수	손상환자가 응급실 도착 전에 받은 전문응급처치 내용	※ '19년 코드변경
55-1	병원전처치 기타내용	PRE_ETC	-	손상환자가 응급실 도착 전에 받은 전문응급처치 내용의 기타내용	
56	사망원인 1-10	ICD10_1~ ICD10_10	비필수	손상환자의 시망진단명	
57	사망일자	KDATE	팔수	손상환자의 사망일자	
58	사망시간	KTIME	팔수	손상환자의 사망시간	

· 윤수사고 심층항목(16개 항목)

번호	항목명	코드	필수 여부	설명	비고
1	운수사고 발생시 사고기전	TA_COL_PATTERN	필수	운수사고 당시의 차량충돌 기전	※ '19년 변수명, 코드 변경
1-1	운수사고 발생시 사고기전 기타내용	TA_COL_PATTERN_E TC	-	운수사고 당시의 차량충돌 기전의 기타내용	
2	운수사고 관련 약물 복용 유무	TA_DRUG	필수	운수사고 당시 사고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약물복용 유무	※ '19년 변수명, 코드 변경
3	기저질환 유무	TA_N_HISTORY_1~ TA_N_HISTORY_12	필수	운수사고 환자가 사고 전에 가지고 있던 질환	※ '19년, '22년 7월 변수명, 코드 변경
4	운수사고 후 내원소요시간	TA_HT	필수	운수사고 후 응급실 내원까지 소요된 시간	※ '19년 변수명 변경
5	운수사고 환자의 내원 후 첫 번째 수술일자	TA_OPDATE	필수	운수시고 후 병원에 내원하여 시행한 최초의 수술 날짜	※ '22년 7월 추가
6	운수사고 환자의 내원 후 첫 번째 수술시간	TA_OPTIME	필수	운수사고 후 병원에 내원하여 시행한 최초의 수술 시간	※ '22년 7월 추가
7	운수사고 후 수술까지의 시간	TA_ST	필수	운수사고 후 수술한 경우 사고 발생부터 수술까지 시간	※ '19년 변수명 변경, '22년 7월 수집정보 변경
8	퇴원 시 GOS	TA_DIS_GOS	필수	운사교 환제 퇴원 당시 GOS 점수	※ '19년 추가
9	운수사고 당시 기상상태	TA_PLACE_WEATHER	필수	운수시교 당시 발생지역의 기상상태	※ '19년 추가
9-1	운수사고 당시 기상상태 기타내용	TA_PLACE_WEATHER_E TC	_	운수시고 당시 발생지역의 기상상태 기타내용	
10	운수사고 환자의 키	TA_PAT_HEIGHT	입원 필수	운수사고 당사자의 키	※ '19년 추가, '22년 7월 입원환자 필수
11	운수사고 환자의 몸무게	TA_PAT_WEIGHT	입원 필수	운수사고 당사자의 몸무게	※ '19년 추가, '22년 7월 입원환자 필수

번호	항목명	코드	필수 여부	설명	비고
12	운수 사고 환자의 체질량 지수	TA_PAT_BMI_INDEX	입원 필수	운수사고 당사자의 체질량 지수	※ '19년 추가, '22년 7월 입원환자 필수
13	운수시고 환자의 중환지실 재원기간	TA_PAT_ADMOULOS	필수	운수사고 환자의 중환자실 재원기간	※ '19년 추가
14	운수 사고 발생 시 환자의 운송수 단	TA_PAT_V IH QLE TY	필수	운수사고 당시 환자의 운 송수 단	※ '19년 추가, '22년 7월 코드 변경
15	운수사고 환자의 AIS	TA_AIS_1~AIS_20	필수	운수사고 당사자의 AIS	※ '19년 추가
16	운수사고 당시 환자의 보호장비(에어백)	TA_PAT_AIRBAG_1~ TA_PAT_AIRBAG_9	필수	운수사고 당시 환자의 보호장비(헬멧) 착용	※ '22년 7월 추가
16-1	운수사고 당시 환자의 보호장비(에어백) 기타내용	TA_PAT_AIRBAG_ETC	-	운수사고 발생 당시 작동한 에어백의 상태의 기타내용	※ '22년 7월 추가

미리·척추 손상 심층항목(6개 항목)

번호	항목명	코드	필수 여부	설명	비고
1	머리척추손상 유무	HS_YN	필수	두부, 척추부(Head, Face, Spine) 전체 손상 유무	※ '19년 변수명 변경
2	외상성 머리손상	HS_EXT_H	필수	진단명에 해당하는 손상환자를 외상성 머리손상 환자로 정의	
3	외상성 척추손상	HS_EXT_S	필수	진단명에 해당하는 손상환자를 외상성 척추손상 환자로 정의	
4	응급실 결과사유	HS_BVG_RS1~HS_BVG_RS2	필수	응급실 진료결과 머리·척추손상 해당 유무	
5	중재종류	HS_INTERV	필수	머리·척추 손상환지의 중재 유무와 해당 중재 시행 여부	※ '19년 코드변경
5-1	두경부혈관조영술	HS_INTERV_HN_ANGIO	필수		
5-2	두경부색전술	HS_INTERV_HN_EMBO	필수		
5-3	승압제	HS_INTERV_VASO	필수		
5-4	혈압강하제	HS_INTERV_ANTI_HT	필수		
5-5	심폐소생술	HS_INTERV_CPR	필수		
5-6	수혈 적혈구	HS_INTERV_TRANS_RBC	필수	머리・척추 손상환자의 중재술	
5-7	수혈 혈소판	HS_INTERV_TRANS_PLATE	필수		
5-8	수혈 혈장	HS_INTERV_TRANS_PLAS	필수		
5-9	기도삽관	HS_INTERV_INTUBA	필수		
5-10	Surgical airway	HS_INTERV_SURAIR	필수		
5-11	만니톨 정맥주사	HS_INTERV_MANNI	필수		

번호	항목명	코드	필수 여부	설명	비고
5-12	스테로이드 정맥주사	HS_INTERV_STERO	필수		
5-13	두개내압 모니터링	HS_INTERV_ICP	필수		
5-14	목표체온유지치료	HS_INTERV_TTM	필수		
5-15	뇌척수액체외배관	HS_INTERV_EVD	필수		
5-16	항긴질약 예방적 투여	HS_INTERV_PROPHY	필수		
5-17	고용량 바르비투르 사용	HS_INTERV_HID_BARAIT	필수		
5-18	천두술	HS_INTERV_BUR_TREPHI	필수		
5-19	개두술	HS_INTERV_CRANIO	필수		
5-20	머리뼈절제술	HS_INTERV_CRANIE	필수		
5-21	척추감압술	HS_INTERV_S_DECOM	필수		
5-22	척추고정술	HS_INTERV_S_FUSION	필수		
5-23	외부고정술	HS_INTERV_EXT_IMMOB	필수		
5-24	척추성형술	HS_INTERV_VERTE_PS	필수		
6	손상환자의 AIS	HS_AIS_1~AIS_20	필수	손상환자의 손상부위별 중증도	※ '19년 추가

| | 자해/자살 심층항목(5개 항목)

번호	항목명	코드	필수 여부	설명	비고
1	자해/자살 여부	IF_S_Y	필수	자해/자살의 시도 여부	※ '19년 변수명 변경
2	자해/지살 시도방법	S_METHOD	필수	자해/지살의 시도 방법	※ '19년 변수명, 코드 변경
2-1	자해/지살 시도 방법의 기타내용	S_METHOD_ETC	-	자해/자살 시도방법이 기타인 경우 기타내용	
3	과거의 지해/지살 시도 방법 1-2	S_PRE_METHOD_1~ S_PRE_METHOD_2	필수	지해/지살 시도 과거력이 있는 경우 과거의 지해/지살 시도 방법	※ '19년 변수명, 코드 변경
3-1	과거의 지해/지살 시도 방법 기타내용 1-2	S_PRE_METHOD_ETC_1~ S_PRE_METHOD_ETC_2	-	과거의 자해/자살 시도 방법이 기타인 경우 기타내용	
4	과거 자해/지살 시도자의 정신과적 면담 여부	S_PSY_INTERVIEW	필수	과거에 자살/자해를 시도한 후 정신과적 면담 유무	※ '19년 변수명, 코드변경, '22년 7월 코드 변경
5	자해/지살 환자의 자의퇴원사유	S_DREASON	필수	지해/자살 환자의 자의퇴원 시유	※ '19년 변수명, 코드변경, '22년 7월 코드 변경
5-1	자해/지살 환자의 자의퇴원시유 기타내용	S_DREASON_ETC	-	자해/지살 환자의 자의퇴원 사유가 기타인 경우 기타내용	

중독 심층항목(3개 항목)

번호	항목명	코드	필수 여부	설명	비고
1	중독물질의 양	PO_MACDQ	필수	중독(intoxication)을 유발한 물질의 양	
2	중독 의 이유	PO_CAUSE	필수	중독이 발생하게 된 이유	
2-1	중독의 이유 기타내용	PO_CAUSE_ETC	-	중독이 발생하게 된 이유가 기타인 경우 기타내용	
3	중독물질의 출처	PO_SOURCE	필수	중독물질을 구입 혹은 취득한 장소	※'19년 변수명 변경
3-1	중독물질의 출처 기타내용	PO_SOURCE_ETC	-	중독물질을 구입 혹은 취득한 장소가 기타인 경우 기타내용	

후락 및 낙상 심층항목(4개 항목)

번호	항목명 코드		필수 여부	설명	비고
1	비닥의 상태	F_N_SURFACE1	필수	추락·낙상 발생 시 바닥의 상태	※ '19년 변수명, 코드변경
1-1	바닥의 상태 기타내용	F_N_SURFACE1_ETC	-	추락·낙상 발생 시 바닥의 상태가 기타인 경우 기타내용	
2	바닥의 종류	F_N_SURFACE4	필수	추락·낙상 발생 시 바닥의 종류	※ '19년 변수명 변경
2-1	바닥의 종류 기타내용	F_N_SURFACE4_ETC	-	추락·낙상 발생 시 바닥의 종류가 기타인 경우 기타내용	
3	기저질환유무	F_HISTORY1~12	필수	추락·낙상 발생과 관련된 질환 여부	※ '19년 코드 변경,'22년 7월 변수명, 코드 변경
4	환경적 요인_ 경사/턱/조명·밝기	F_N_SURFACE2~3, F_LIGHT	필수	추락·낙상 발생 시 환경적 요인으로 경사, 턱, 조명·밝기 여부	

회 취학전 어린이 손상 심층항목(10개 항목)

번호	항목명	코드	필수 여부	설명	비고
1	취학전 어린이 여부	IF_PED_Y	팔수	취학전 어린이 여부(만 6세 이하)	※ '19년 변수명 변경
2	보호자 목격 여부	IF_P_WITNESS	팔수	취학전 어린이 안전사고 발생 시 보호자가 사고현장을 목격했는지 여부	※ '19년 추가
3	손상부위 1-11	IF_REGION_1~ IF_REGION_11	팔수	취학전 어린이 안전사고 발생 시 손상부위	※ '19년 코드 변경
4	화상 냉각치료 여부	IF_COOLING_TX	팔수	취학전 어린이가 회상으로 응급실 내원 시 회상 부위의 냉각치료 시행 여부	» '19년 변수명, 코드변경
5	퇴원 후 계획	IF_PLAN	팔수	취학전 어린이 안전사고 발생 후 퇴원 후 진료계획	
5-1	퇴원 후계획기타내용	IF_PLAN_ETC	-	취학전 어린이 안전사고 발생 후 퇴원 후 진료계획이 기타인 경우 기타내용	
6	열상의 봉합 필요 여부	IF_L_SUTURE	팔수	취학전 어린이 안전사고 중 열상인 경우봉합의 필요 여부	※ '19년 변수명, 코드변경
7	운수사고 발생 시 카시트 유형	IF_CAR_SEAT_TY	팔수	운수사고 발생 시 취학전 어린이가 착용한 카시트의 유형	※ '19년 추가
8	운수 사고 발생 시 탑승위치	IF_TA_ABOD	팔수	운수사고 발생 시 취학전 어린이의 탑승위치	※ '19년 추가
9	추락 및 낙상	IF_FALL_HEIGHT	팔수	취학전 어린이의 추락 및 낙상 당시의 높이와 바닥의 경도	※ '19년 추가
9-1	추락 및 낙상 기타내용	IF_FALL_HEIGHT_ ETC	-	취학전 어린이의 추락 및 낙상 당시의 높이와 바닥의 경도가 기타인 경우 기타내용	
10	이물질 제거방법	IF_FB_TX	팔수	취학전 어린이 안전사고 발생 시 이물질 제거 방법	※ '19년 추가

PART

2

조사항목 지침

- 1. 공통항목
- 11. 분과별 심층항목
 - 1. 운수사고
 - 2. 머리·척추 손상
 - 3. 자해 /자살
 - 4. 중독
 - 5. 낙상 및 추락
 - 6. 취학전 어린이 손상

2023 응급실손상환자심층조사 지침서



I

공통항목

의료기관번호

정		의	손상환자가 내원한	손상환자가 내원한 의료기관의 인식번호					
용		도	질 관리 등 의료기:	관별 자료를 식별히	하는데 이용				
변	수	명	의료기관번호(HSCE))					
유		형	숫자	필수여부	필수	조사시작일	2006. 8. 1.		
코		드	참여병원의 의료기관번호(8자리)						
질 괸	질 관 리 지 침 의료기관 담당자가 전산시스템 로그인 시 의료기관번호(HSCD) 자동입력								

환자식별번호

정		의	손상환자를 식별할 수 있는 일련번호					
용		도	동일 환자의 중복 :	확인 및 질 관리	결과 오류를 확인	하는데 이용		
변	수	명	환자코드(IDNO)					
유		형	숫자	필수여부	필수	조사시작일	2006. 8. 1.	
코		드	응급실에 내원한 손	응급실에 내원한 손상환자의 식별번호				
질 굔	질 관 리 지 침 내원 시 병원에 등록한 환자식별번호(IDNO) 입력							

내원일자

정		의	손상환자가 응급실이	손상환자가 응급실에 내원한 날짜					
용		도		손상환자가 손상을 입고 응급실에 내원한 일자에 대한 자료의 수집하여 월별 및 일자별 손상환자 내원 규모를 파악하여 손상예방 정책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					
변	수	명	내원일자(INDT)						
유		형	숫자	필수여부	필수	조사시작일	2006. 8. 1.		
코		드	YYYYMMDD 년(4ㅈ	[H]) 월(2자리) 일(<u>)</u>	2자리) (예) 201	70101〉			
질 괸	ᆝ리ᄌ	침	1. 내원일자(INDT)는 퇴실일자(DCDT), 퇴원일자(D_DATE) 이전으로 입력 2. 내원일자(INDT)는 손상발생일자(ONDATE)와 동일하거나 이후로 입력 ※ 손상발생일자(ONDATE) ≤ 내원일자(INDT) ≤ 퇴원일자(D_DATE) 3. 미상인 경우 내원일자(INDT)를 99999999로 입력						

내원시간

정		의	손상환자가 응급실(손상환자가 응급실에 내원한 시간					
용		도		손상환자가 응급실에 내원한 시간을 수집하여 월별, 요일별, 시간대별로 손상환지를 파악하여 손상예방 정책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					
변	수	명	내원시간(INTM)						
유		형	숫자	필수여부	필수	조사시작일	2006. 8. 1.		
코		드	HHMM 24시간제,	4자리 (예) 오후	3시 30분 → 153	30>			
질 곤	1. 내원시간(INTM)은 퇴실시간(DCTM), 퇴원시간(D_TIME) 이전 입력 2. 내원시간(INTM)은 손상발생시간(ONTIME) 이후로 입력 3. 내원시간을 알 수 없는 경우 내원시간(INTM)은 9999로 입력								

성별

정		의	손상환자의 성	손상환자의 성					
용		도	성별 통계의 기초 자료로 이용						
변	수	명	성별(SEXX)	성별(SEXX)					
유		형	문자	필수여부	필수	조사시작일	2006, 8, 1,		
코		드	C1 남자 C2 여자						
질 관	반 리 ㅈ	ᅵ침	-						

연령

정	의	손상환자의 연령	손상환자의 연령						
용	도	연령별 통계의 기초자료로 이용							
변 수	명	연령(AGE)							
유	형	숫자	필수여부	필수	조사시작일	2006, 8, 1,			
코	드	만세 입력							
질 관 리 지	질 관 리 지 침 1. 연령은 만 나이로 입력하고 내원일자를 기준으로 하여 만 나이 산출 ※ 만 연령 = 내원일 - 출생일 2. 연령이 불명인 경우 추정치를 입력 예) 40대로 추정됨 → 40세로 입력								

직업

정	의	손상환자의 직업	손상환자의 직업						
용	도	환자의 직업에 대한	환자의 직업에 대한 자료의 수집 및 분석						
변수	명	직업(JOB)							
유	형	문자	필수여부	입원환자 필수	조사시작일	2006, 8, 1, 2016, 1, 1,(입원환자 필수)			
코	드	C1 국회의원, 고위 C2 전문가 C3 기술공 및 준단 C4 사무종사자 C5 서비스 종사지 C6 판매종사자 C7 농업, 임업 및 C8 기능원 및 관련	전문가 - 어업 숙련 종사가	C: C: C: C: C:	C9 장치, 기계조작 및 조립 종사자 C10 단순노무 종사자 C11 군인 C12 학생(재수생) C13 주부 C14 무직 C98 해당없음 C99 미상				
질 관 리 지	침	5. 용어 정의 - 관리자: 의회 의 및 공공이나 이 정책과 활동을 이상을 다른 사 직군으로 분류함 - 전문가: 물리, 상 이론을 응용하다 진료활동과 각급 - 기술공 및 준전 전문가의 지휘하수행함 - 사무 종시자: 관 따라 업무를 추	산 6세 이하) 손상함이하 C1~C11 입 이하 C1~C11 입 I분류는 통계분류포 의단체의 정책을 잘 기획, 지휘 및 조 람의 직무를 분석, 함 명과학 및 사회과학 여 해당 분야를 연 급 학교 학생을 지 문가: 하나 이상의 하에 조사, 연구 및 리자, 전문가 및 관 된지, 전문가 및 관	환지는 'C98 해당입	없음'으로 입력 at .go.kr)의 한국표; 나 규칙을 제정하고, · 조정함. 정부, 기행하고, 현업을 검할 지시하고 조정하는 준의 전문적 지식과 하고 또한 고도의 창작활동을 수행함 사회과학 분이에서 ;거래에 관련된 기; 여 경영방침에 의하 [ata)의 기록, 보관,	준직업분류(제7차 개정)를 참고 , 정부를 대표, 대리하며 정부 업, 단체 또는 그 내부 부서의할 경우에는 직무시간의 80% 대 사용하는 경우에만 관리자 경험을 기초로 과학적 개념과 전문지식을 이용하여 의료			

- 서비스 종사자: 공공안전이나 신변보호, 돌봄, 보건 · 의료분야 보조 서비스와 미용, 혼례 및 장례, 운송, 여가, 조리와 관련된 공공 사회서비스 및 개인 생활 서비스 등 대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무를 주로 수행함
- 판매 종사자: 영업활동을 통해 상품이나 서비스를 판매하거나 인터넷 등 통신을 이용하거나, 상점이나 거리 및 공공장소에서 상품을 판매 또는 임대하며, 상품을 광고하거나 상품의 품질과 기능을 홍보하며, 매장에서 계산을 하거나 요금정산 등의 활동을 수행함
- 농림·어업 숙련 종사자: 자기 계획과 판단에 따라 농산물, 임산물 및 수산물의 생산에 필요한 지식과 경험을 기초로 작물을 재배·수확하고 동물을 번식·시육하며, 산림을 경작, 보존 및 개발하고, 물고기 및 기타 수생 동ㆍ식물을 번식 및 양식하는 직무를 수행함
- 기능원 및 관련 기능 종사자: 광업, 제조업, 건설업 분야에서 관련된 지식과 기술을 응용하여 금속을 성형하고 각종 기계를 설치 및 정비함, 섬유, 수공예 제품과 목재, 금속 및 기타 제품을 가공하고 작업은 손과 수공구를 주로 시용하며 기계를 시용하더라도 기계의 성능보다 사람의 기능이 갖는 역할이 중요함 자동회된 기계의 발전에 따라 직무영역이 축소되는 추세인데, 생산과정의 모든 공정과 사용되는 재료나 최종 제품에 관련된 내용을 알 수 있어야 함
- 장차기계 조작 및 조립 종사자: 기계를 조작하여 제품을 생산하거나 대규모적이고 때로는 고도의 지동화된 산업용 기계 및 장비를 조작하고 부분품을 가지고 제품을 조립하는 업무로 구성되며 작업은 기계 조작뿐만 아니라 컴퓨터에 의한 기계 제어 등 기술적 혁신에 적응할 수 있는 능력을 포함하여 기계 및 장비에 대한 경험과 이해가 요구되며, 운송장비의 운전업무도 포함
- 단순노무 종사자: 주로 간단한 수공구의 사용과 단순하고 일상적이며, 어떤 경우에는 상당한 육체적 노력이 요구되고, 거의 제한된 창의와 판단만을 필요로 하는 업무를 수행함. 몇 시간 혹은 몇 십 분의 직무 훈련(on the job training)으로 업무수행이 충분히 기능한 직업이 대부분이며, 직능수준이 낮으므로 단순 노무직 내부에서의 직업 이동은 상대적으로 매우 용이한 편이라고 할 수 있음
- 군인: 의무 복무 여부를 불문하고 현재 군인 신분을 유지하고 있는 군인을 말함, 직업 정보 취득의 제약 등 특수 분야이므로 직무를 기준으로 분류하는 것이 아니라. 계급을 중심으로 분류함. 국방과 관련된 정부기업에 고용된 민간인, 국가의 요청에 따라 단기간 군사훈련 또는 재훈련을 위해 일시적으로 소집된 자 및 예비군은 제외
- 주부: 다른 직업에 종사하지 않고 집안일만 전문으로 수행함
- 무직: 일정한 직업이 없음

직업 해당없음 내용

정		의	손상환자의 직업 중	손상환자의 직업 중 해당없음의 구체적인 내용					
용		도	환자의 직업에 대한 자료의 수집 및 분석						
변	수	명	직업 해당없음 내용	직업 해당없음 내용(JOB_ETC)					
유		형	문자	필수여부	-	조사시작일	2006. 8. 1.		
코		드	내용입력						
질 괸	<u></u> 리 ㅈ	시침	1. 직업(JOB)이 'CS 2. 취학전 어린이(민			으로 입력			

학력

정		의	손상환자의 학력	손상환자의 학력					
용		도	환자의 학력에 대한	가료의 수집 및	분석				
변	수	명	학력(EDUC)						
유		형	문자 필수여부 입원환자 필수 조사시작일 2006, 8, 1, 2016, 1, 1,(입원환자 필수)						
코		드	C2 중학교 졸업(C3 고등학교 졸 C4 전문대학교 등업(C5 대학원 이상	C2 중학교 졸업(고등학교 재학중 및 중퇴 포함) C3 고등학교 졸업(전문대 또는 대학교 재학중 및 중퇴 포함) C4 전문대학교 졸업 C5 대학교 졸업(대학원 재학중, 중퇴, 수료 포함) C6 대학원 이상 C7 학교에 다닌 적 없다(초등학교 재학중 및 중퇴 포함)					
질 관 리 지 침] 침	1. 손상환자의 응급진료결과(EMRT)가 C31~C38 입원인 경우 반드시 학력(EDUC) 입력 2. 재학, 휴학, 중퇴, 수료인 경우 한 단계 이래 학력으로 입력 예) 대학교 재학 중 → C3 고졸 3. 취학전 어린이(만 6세 이하)거나 만 11세 이하 손상환자의 학력은 'C7 학교에 다닌 적 없다(초등학교 재학중 및 중퇴 포함')로 입력						

소득

정		의	손상환자 가구의 최근 1년 동안의 총 수입						
용		도	손상환자의 소득에 대한 자료의 수집 및 분석, 손상 예방을 위한 적절한 조치와 지원의 효율적 이용						
변	수	명	소득(SALARY)						
유		형	숫자	필수여부	비필수	조사시작일	2006, 8, 1,		
코		드	만원 단위로 : ()만 원/년 • 미상인 경우 -1 • 거부인 경우 -2						
질 관 리 지 침 1. 손상환자의 응급진료결과(EMRTT)가 C31~C38 입원인 경우 소득(SALARY) 입력 2. 개인소득이 아닌 가구원의 연간 총소득으로 입력					Y) 입력				

보험유형

정	의	손상환자의 보험유형						
용	도	손상환자의 보험유형을 수집하여 환자의 경제적 수준 및 의료이용의 적정성 평가에 활용						
변수	명	보험유형(INSUR)						
유	형	문자 필수여부 필수 조사시작일 2008, 10, 1, 2019, 1, 1,(코드변경)						
코	드	C10 국민건강보험 C51 의료급여 1종 C98 기타 C20 자동차보험 C52 의료급여 2종 C99 미상 C30 산재보험 C60 일반						
질 관 리 지	침	1. 보험유형은 응급실 내원시 보험유형이 아닌 퇴실일자 또는 입원환자의 경우는 퇴원일자 기준으로 최종 확정된 보험유형을 확인하여 입력 * 원무과에서 진료비 수납으로 등록된 행정망에서 재확인 2. 보험적용을 받지 않는 비급여 환자 또는 우리나라 의료보장을 받지 못하는 외국인의 경우에는 'C60 일반'으로 입력 3. 공상, 위탁(국가유공자, 보훈대상), 여행자보험, 항공보험, 선박보험, 외국에 파견되어 근무하는 우리나라 근로자(근로자재해보험)인 경우는 'C98 기타'로 입력하고 '문항 10-1'을 반드시 입력 4. 동일 재실 또는 재원기간에 여러 종류의 보험을 적용받은 경우 가장 주된 보험유형을 입력						

보험유형 기타내용

정		의	손상환자 보험유형 기타의 구체적인 내용				
용		도	손상환자의 보험유형을 수집하여 환자의 경제적 수준 및 의료이용의 적정성 평가에 활용				
변	수	명	보험유형 기타내용(INSUR_ETC)				
유		형	문자	필수여부	-	조사시작일	2008. 10. 1.
코		드	내용입력				
질 관	질 관 리 지 침 보험유형(INSUR)이 'C98 기타'인 경우 보험유형을 구체적으로 입력						

내원수단

정	의	손상환자가 응급실	손상환자가 응급실 도착 시 이용한 내원수단						
용	도	손상환자가 응급실	손상환자가 응급실 도착 시 이용한 내원수단을 분석하여 자원의 효율적 이용에 활용						
변수	명	내원수단(METHOD)							
유	형	문자 필수여부 필수 조사시작일 2006, 8, 1,							
코	드	C1 119구급차 C6 그 외 교통수단 C2 병원구급차 C7 도보 C3 기타구급차 C98 기타 C4 경찰차 C99 미상 C5 항공이송							
질 관 리	지 침	3. 전동휠체어, 원동 입력 4. 엄마가 아이를 (5. 휠체어, 유모치료 6. 자가용을 타고 병 자가용이므로 'C	공공 교통수단으 장치가 있는 탈 업고 내원한 경우는 대원한 경우는 1원에 와서 병원에 6 그 외 교통수단	로 내원한 경우는 것, 자전거 등을 0 = 'C7 도보'로 입 'C98 기타'로 입력 서 휠체어를 타고 성 '으로 입력	력 하고 '문항 11-1'을 응급실에 도착한 경우	는 'C6 그 외 교통수단'으로			

내원수단 기타내용

정		의	손상환자가 응급실 도착 시 이용한 내원수단 기타의 구체적인 내용						
용		도	손상환자가 응급실 도착 시 이용한 내원수단을 분석하여 자원의 효율적 이용에 활용						
변	수	명	내원수단 기타내용(내원수단 기타내용(METHOD_ETC)					
유		형	문자	필수여부	-	조사시작일	2006. 8. 1.		
코		드	내용입력						
질 괸	질 관 리 지 침 내원수단(METHOD)이 C98 기타인 경우 내원수단을 구체적으로 입력								

응급진료결과

정		의	응급실에 내원한 손상환자가 응급실에서 진료 받은 후 결과					
용		도	환자의 계속 진료여부나 사망 등을 확인하고 진료 후 환자의 향방에 대한 분석에 이용					
변	수	명	응급진료결과(EMRT)					
유		형	문자 필수여부 필수 조사시작일 2006, 8, 1,					
코		<u> </u>	C1 귀가 C11 증상이 호전되어 귀가 C12 말기질환으로 귀가(가정간호 등) C13 가망없는 퇴원 C14 자의 퇴원 C15 외래 방문 후 귀가 C18 기타 다른 상태로 귀가(경찰연행 포함) C2 전원 C21 병실부족 전원 C22 중환자실 부족 전원 C23 당장 응급수술·처치 불가 전원 C24 전문 응급의료를 요하여 상급병원 전원 C25 경증으로 1, 2차 의료기관 전원 C26 장기시설로 전원(장기요양의료기관) C27 환자사정으로 전원(환자 또는 보호자 요청에 의한 전원) C28 기타 다른 사유로 전원					

	C3 입원 C31 일반병실로 입원 C32 중환자실로 입원 C33 수술(시술)실로 간 후 병실로 입원 C34 수술(시술)실로 간 후 중환자실로 입원 C38 기타 다른 사유로 입원
	C4 사망 C41 내원 시 이미 사망한 상태(D.O.A) C42 응급실에서 DNR로 사망 C43 응급실에서 CPR후 사망 C48 기타 다른 사유로 사망(병원에서 자살 포함)
	C98 기타 • 포함: 탈원, 도주 등 C99 미상
질 관 리 지 침	1. 응급실에서 탈원, 도주한 경우는 'C98 기타'로 입력 2. 응급실에서 경찰에 연행된 경우는 'C18 기타 다른 상태로 귀가'로 입력

응급진료결과 기타내용

정		의	응급실에 내원한 손상환자가 응급실에서 진료 받은 후 결과					
용		도	환자의 계속 진료여부나 시망 등을 확인하고 진료 후 환자의 항방에 대한 분석에 이용					
변	수	명	응급진료결과 기타니	응급진료결과 기타내용(EMRT_ETC)				
유		형	문자	필수여부	-	조사시작일	2008, 10, 1,	
코		드	내용입력					
질 굔	질 관 리 지 침 응급진료결과(EMRT)가 'C98 기타'인 경우 응급진료결과를 구체적으로 입력						ļ	

퇴실일자

정	의	손상환자가 응급실여	손상환자가 응급실에서 진료 후 퇴실한 날짜					
용	도	손상환자가 응급실여	손상환자가 응급실에서 퇴실하는 일자에 대한 자료의 수집 및 분석					
변수	명	퇴실일자(DCDT)	퇴실일자(DCDT)					
유	형	숫자	필수여부	필수	조사시작일	2006, 8, 1,		
코	드	YYYYMMDD 년(4조	(교) 월(2지리) 일(2자리) (예) 2006	0518〉			
질 관 리	2 관리지침 1. 퇴실일자(DCDT)는 내원일자(INDT), 손상발생일자(ONDATE)와 동일하거나 이후로 입력 2. 퇴실일자(DCDT)는 퇴원일자(D_DATE)와 동일하거나 이전으로 입력 ※ 손생발생일자(ONDATE) ≤ 내원일자(INDT) ≤ 퇴실일자(DCDT) ≤ 퇴원일자(D_DATE) 3. 미상인 경우 퇴실일자(DCDT)를 99999999로 입력							

퇴실시간

정		의	손상환자가 응급실에서 진료 후 퇴실한 시간					
용		도	손상환자가 응급실에서 퇴실히는 시간에 대한 자료의 수집 및 분석					
변	수	명	퇴실시간(DCTM)	퇴실시간(DCTM)				
유		형	숫자	필 수 여 부	필수	조사시작일	2006. 8. 1.(비필수) 2016. 1. 1.(필수)	
코		<u></u>	HHMM 24시간제(4자리) 〈예) 오후 3시 30분 → 1530〉					
질 관 리 지 침 1. 퇴실시간(DCTM)은 내원시간(INTM), 손상발생시간(ONTIME) 이후로 입력 2. 미상인 경우 퇴실시간(DCTM)을 9999로 입력								

입원 후 결과

정	의	응급실로 내원한 손상환자가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후 최종 진료결과						
용	도	입원 후 최종 진료결	입원 후 최종 진료결과의 자료 수집으로 의료지원의 효율적인 이용과 환자의 퇴원 후 향방 분석에 활용					
변 수	명	입원 후 결과(DCRT)					
유	형	문자	필수여부 필수 조사시작일 2006. 8. 1.					
코	드	C1 정상퇴원 C2 자의퇴원 C3 전원 C4 사망	C5 탈원 C98 기타 C99 미상					
질 관 리	지 침	의 C3 전원: 여러 ; C4 탈원: 정상적 3. 자료등록 마감 시 '문항 15-1'에 반	사의 퇴원지시가 자 또는 보호자가 무기록에 자의퇴원 가지 사유로 다른 인 퇴원수속 절차 I(매월 15일)까지5 드시 '입원중' 으로 : 입원 후 결과(D	있어서 퇴원한 경 원해서 퇴원한 경역 1 서약서가 있는 경 의료기관으로 이동 1를 밟지 않고 환기 도 입원 중인 환자(입력	우 우로 의사지시기록에 : 경우 동한 경우 자가 의사지시 없이 인 경우는 입원 후 결	자의퇴원이 기록되어 있거나 병원을 떠난 경우 과(DCRT)를 입력하지 않고,		

입원 후 결과 기타내용

정	의	응급실로 내원한 손상환자가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후 최종 진료결과					
용	도	입원 후 최종 진료결	입원 후 최종 진료결과의 자료 수집으로 의료자원의 효율적인 이용과 환자의 퇴원 후 향방 분석에 활용				
변 수	명	입원 후 결과(DCRT	입원 후 결과(DCRT_ETC)				
유	형	문자	필수여부	-	조사시작일	2006. 8. 1.	
코	드	내용입력					
1. 입원 후 결과(DCRT)가 'C98 기타'인 경우는 입원 후 결과를 구체적으로 입력 2. 자료등록 마감 시(매월 15일)까지도 입원 중인 환자인 경우는 입원중으로 입력 3. 사업 수행 연도 중에 퇴원 확인하여 일시 입력하고, 질병관리청에서 '손상 유형 및 원인 통계' 작성위해 데이터를 마감한 이후에는 입원 중으로 남겨둠							

퇴원일자

정	의	응급실 내원한 손싱	응급실 내원한 손상환자가 입원하여 진료를 받고 퇴원한 날짜					
용	도	손상환자가 입원하여	손상환자가 입원하여 진료를 받고 퇴원한 날짜를 수집하여 의료자원 이용 분석에 활용					
변수	명	퇴원일자(D_DATE)	퇴원일자(D_DATE)					
유	형	숫자	필수여부	필수	조사시작일	2011, 1, 1,		
코	드	YYYYMMDD 년(4조	[紀] 월(2자리) 일(2자리) (예) 2006	0518>			
질 관 리 지	침	 응급진료결과(EMRT)가 C31~C38 입원인 경우 입력 필수 퇴원일자(D_DATE)는 내원일자(INDT), 손상발생일자(ONDATE)이후로 입력 ※ 손상발생일자(ONDATE) ≤ 내원일자(INDT) ≤ 퇴실일자(DCDT) ≤ 퇴원일자(D_DATE) 미상인 경우 퇴원일자(D_DATE)를 99999999로 입력 						

퇴원시간

정		의	응급실 내원한 손싱	응급실 내원한 손상환자가 입원하여 진료를 받고 퇴원한 시간						
용		도	손상환자가 입원하여	손상환자가 입원하여 진료를 받고 퇴원한 시간을 수집하여 의료자원 이용 분석에 활용						
변	수	명	퇴원시간(D_TIME)	퇴원시간(D_TIME)						
유		형	숫자	숫자 필수 여부 필수 조사시작일 2011. 1. 1. 2016. 1. 1.(필수)						
코		드	HHMM 24시간제(4	자리) (예) 오후 3	3시 30분 → 1530)>				
1. 응급진료결과(EMRT)가 C31~C38 입원인 경우 입력 필수 2. 퇴원시간(D_TIME)은 내원시간(INTM), 손상발생시간(ONTIME) 이후로 입력 3. 퇴원시간(D_TIME)을 알 수 없는 경우 9999로 입력						력				

손상의도성(내원사유)

정	의	응급실에 내원한 손	응급실에 내원한 손상환자 본인의 의도성 또는 타인의 의도성 여부					
용	도	응급실에 내원한 손	응급실에 내원한 손상환자의 의도성을 조사하여 손상예방 정책의 기초자료로 활용					
변수	명	손상의도성(INTENT))					
유	형	문자	필수여부	필수	조사시작일	2006. 8. 1.		
코	드	C1 비의도적 손성 C2 자해·자살 C3 폭력·타살			98 기타 99 미상			
1. C2 자해·자살 → 자살위험인자(S_FACTOR1~S_FACTOR3),								

손상의도성(내원사유) 기타내용

정	의	응급실에 내원한 손상환자 본인의 의도성 또는 타인의 의도성 여부의 구체적인 기타내용					
용	도	응급실에 내원한 손상환자의 의도성을 조사하여 손상예방 정책의 기초자료로 활용					
변수	명	손상의도성의 기타니	손상의도성의 기타내용(INTENT_ETC)				
유	형	문자	필수여부	-	조사시작일	2006, 8, 1,	
코	드	내용입력					
질 관 리 기	질 관 리 지 침 손상의도성(내원시유)(INTENT)이 'C98 기타'인 경우 손상의도성(내원시유)을 구체적으로 입력						

음주관련 여부

정		의	손상 피해자와 급	손상 피해자와 관련자가 손상발생 시 음주상태 혹은 음주가 의심되는 상태						
용		도	손상 발생 시 음	손상 발생 시 음주 상태 여부를 조사하여 손상예방 정책 수립에 이용						
변	수	명	음주관련여부(AL	CO)						
유		형	문자 필수 여부 필수 조 사 시 작 일 2006. 8. 1.(심층) 2011. 1. 1.(공통)							
코		드	C1 정보없음 C2 음주의 증 C3 본인 음주	C2 음주의 증거 없음 C5 모두 음주						
질 곤	난 리 ㅈ	침	2, 사고 당사자(3, 손상발생 당/ 4, 손상의도성(L	1. 음주에 대한 정보를 전혀 알 수 없는 경우는 'C1 정보없음'으로 입력 2. 사고 당사자(손상환자)가 손상발생 당시 음주 상태인 경우는 'C3 본인 음주'로 입력 3. 손상발생 당시 손상을 가한 가해자(상대방)가 음주 상태인 경우는 'C4 관련자 음주'로 입력 4. 손상의도성(내원사유)(INTENT)이 C2 자해/자살인 경우는 'C1 정보없음, C2 음주의 증거없음, C3 본인 음주'중에서만 입력						

손상기전

정		의	손상의 경우 그 사고가 발생한 기전					
용		도	손상의 경우 손상기전을 파악함으로써 체계적인 정보의 취합, 관련요인에 대한 역학적 접근, 손상관리 및 예방, 치료의 질 감시 등에 활용이 가능					
변	수	명	손상기전(MECH)					
유		형	문자 필수여부 필수 조사시작일 2006. 8. 1. 2019. 1. 1.(코드변경)					
코		<u> </u>	C11 운수사고(교통사고, 운송수단 관련 손상, 의도성 포함) C11.10 보행자 • 병원별 선택인략: 보행자.부닷함 C11.16 보행자.내동당이처럼 C11.17 • 포함: 버스 승·하차 중 오토바이에 채임. • 제와: 택시 승·하차 중 택시가 급출발하여 대참 C11.61 C11.20 자전거 C11.45 오토바이, 스쿠터 C11.61 차량・탑승자(10인승 이내) C11.67 차량・탑승자(11-19인승) C11.70 차량・탑승자(20인승이상, 버스, 트럭, 대형차량) C11.82 농업용 특수차량(트랙터, 콤바인 등) C11.84 산업용·건설용 특수차량, 농업용 외 특수차량(불도저 등) C11.85 기타 육상 운송수단 • 포함: 전통 킨보드 전통활, 그 외 개인형 이동장치, 마차, 안력거, 타는 동물, ATV, 손수례, 마트의 키트 등 C11.80 미상의 육상 운송수단 C11.90 선로 차량·지하철, 전철, 모노레일) C11.91 수상 운송수단 C11.92 항공 운송수단 C11.92 항공 운송수단 C11.93 기타 탈 것: 케이블카, 스키 리프트, 곤돌라 ※ 명확한 육상 수단인 경우 C11.88로 코딩 C11.99 미상의 탈 것 ※ 미상이지만 명확한 육상 수단인 경우 C11.89로 코딩 C12.2 동일면상에서의 리끄러져 넘어짐 C12.1 동일면상에서의 미끄러져 넘어짐					

C123 동일면상에서의 기타 넘어짐

[추락] 발이 지면에 떨어진 상태

C12.4 1m미만 높이에서 떨어지거나 뛰어내리거나 떠밀림

C12.5 1m이상-4m미만 높이에서 떨어지거나 뛰어내리거나 떠밀림

C12.6 4m이상 높이에서 떨어지거나 뛰어내리거나 떠밀림

...... 층 또는 m

C12 7 미상의 높이에서 떨어지거나 뛰어내리거나 떠밀림

계단 손생

C12.01 계단에서 미끄러짐

C12.02 계단에서 넘어짐

C12.03 계단에서 뛰어내림

C12.04 계단에서 떠밀림

C13 둔상(충돌 또는 부딪힘에 의한 손상)

• 제외: 기계외의 접촉 C3.n

C13.2 물체 또는 동물과 접촉

• 제외: 시람과의 접촉 C13.3

물건이나 사람 사이에 눌림, 압궤 C13.4

C13.21 움직이는 물체와 접촉

• 포함: 배트에 맞음

• 제외: 지속적 미찰 C13.8

C13.22 고정된 물체와 접촉

• 포함: 벽에 머리를 부딪힘

C13 23 던져진(떨어지는) 물체와 접촉

C13.25 동물과 접촉

• 제외: 동물에 의한 물림 C2.4n

동물에 의한 할큄 C2.1n

C13.28 기타 물체 또는 동물과 접촉

• 포함: 음식물 섭취 중 치아 손상

C13 29 미상 물체 또는 동물과 접촉

C13.3 시람과 접촉(성폭력, 맞음, 차임, 비틀림)

• 포함: 보행자와 보행자가 부딪힘, 휠체어타고 이동 중에 보행자와 부딪힘

C13.4 신체 눌림(꼬집힘, 끼임, 깔림 등), 압궤(Crushing: 찧음, 압착)

C13.8 기타 둔탁한 힘에 의한 손상

• 포함: 미찰, 문질러짐, 혀를 씹음 등

C13.9 미상의 둔탁한 힘에 의한 손상

C2 관통상(찌르거나 뚫는 힘에 의한 손상)

C2.1 긁힘, 베임, 찢김

• 병원별 선택입력: C2.10 긁힘

C2.17 베임, 찢김

```
C2.2
        관통, 자상, 찔림
         C2.20 관통, 자상, 찔림
         C2.22 화기(화약을 이용하는 총)에 맞음
         C2.23 공기총·BB총에 맞음
         C2.24 다른 무기에 맞음
               • 포함: 활과 화살, 스프링 무기의 총알
   C2.4
        물림, 쏘임
         C2.41 사람에게 물림
         C2.42 개에게 물림
         C2.43 뱀에게 물림
         C2.45 다른 동물에게 물림
               • 제외: 곤충, 무척추동물에게 물림 C2.47 또는 C2.48
         C2.47 벌에게 쏘임
               • 포함: 벌이 지동차 안으로 들어와서 쏘인 경우
         C2.48 다른 곤충이나 무척추동물에게 물림, 쏘임(모기, 거미, 전갈 등)
        C2.49 개미에 물림, 쏘임
   C2.8 기타 긁힘, 베임, 찢김, 잘림(절단), 찔림, 관통, 물림, 쏘임
   C2.9 미상의 긁힘, 베임, 찢김, 잘림(절단), 찔림, 관통, 물림, 쏘임
C3 기계
   C3.1 폭발에 의한 타격
   C3.2 기계와 접촉
   C3.8 기타 기계적인 힘에의 접촉
   C39 미상의 기계적인 힘에의 접촉
C4 온도손상
   C4.1 열(heating)에 의한 손상
         C4.11 뜨거운 액체와의 접촉
         C4.12 뜨거운 증기, 가스와의 접촉
         C4.13 뜨거운 물체(고체)와의 접촉
         C4.14 불이나 화염에의 노출
         C4.15 자연 열에의 노출, 전신(열사병 포함)
               • 제외: 햇빛에 의한 화상 C98.24
         C4.16 인공 열에의 노출, 전신
         C4.17 타고 있는 물체·물질로부터의 연기 흡입 포함
         C4.18 기타 열, 고온에의 노출
         C4.19 미상의 열, 고온에의 노출
   C4.2 저온(한랭, 과냉)에 의한 손상
         C4.21 자연 한랭노출
               • 포함: 동상, 저체온증
         C4.22 인공 한랭노출
```

• 포함: 드라이아이스 liquid nitrogen, liquid hydrogen 접촉이나 흡입

C4.28 기타 저온(한랭, 과냉) 손상

C4.29 미상 저온(한랭, 과냉) 손상

C4.8 기타 명시된 온도손상

C4.9 미상의 온도손상

C5 호흡위협 : 익수, 질식, 목맴 등

C5.1 익수

C5.2 기계적인 호흡위협

C5.21 목맴

C5.22 목졸림

C5.23 기도나 흉부 외부압박

C5.24 흡입된 물체나 물질에 의한 기도폐쇄

C5.25 입이나 코를 덮는 물체에 의한 기도폐쇄

C5.3 산소결핍 장소에 갇힘

• 제외: 자동차, 밀폐된 장소에 발생한 배기가스 중독 C6.13 비닐봉지에 갇힘 C5.25

C5.8 기타 호흡위협

C5.9 미상의 호흡위협

C6 화학물질 또는 다른 물질과의 접촉

C6.1 중독

C6.11 고체에 의한 중독

C6 12 액체에 의한 중독

C6.13 기체에 의한 중독

C6.18 기타 물질에 의한 중독

• 포함: 독버섯, 복어독

C6.19 미상의 물질에 의한 중독

C6.2 부식

C6.21 고체에 의한 부식

C6 22 액체에 의한 부식

C6.23 기체에 의한 부식

C6.28 기타 물질에 의한 부식

C6.29 미상의 물질에 의한 부식

C6.8 화학물질 또는 다른 물질에의 노출에 의한 기타 명시된 영향

• 포함: 눈 안에 페인트가 들어감, 고체·액체·기체 물질에 의한 기타 노출, 본드에 의한 화학적 화상

C6.9 화학물질 또는 다른 물질에의 노출에 의한 미상의 영향

C7 신체 과다사용(관절·전신의 무리한 사용)

• 포함: 발목 삐끗, 과신전

C8 날씨, 자연재해 등 자연의 힘에 노출 C8.1 강수에 노출(비·폭풍·폭우 등) C8.2 비람에 노출(태풍) C8.5 지진

C8.8 기타 명시된 날씨, 자연재해 등 자연의 힘에 노출(낙뢰)

C89 미상의 날씨, 자연재해 등 자연의 힘에 노출

C98 기타 손상기전

C98.1 이물질 접촉

C98.11 눈

• 제외: 눈 안에 페인트가 들어감 C6.8

C98.12 코

C98.13 입

C98.14 귀

• 포함: 자동차 안에서 콩을 가지고 놀다가 귀에 넣은 경우

C98.15 다른 자연 개구부의 이물질

C98.18 기타 이물질 접촉

C98.19 미상의 이물질 접촉

C98.2 전기·방사선 노출

C98.21 전기접촉(전류 등)

C98.22 용접광에의 노출

C98.24 햇빛노출

• 포함: 햇빛으로 입은 화상 또는 심하게 탄 경우

•제외: 열사병 C4.15

C98 27 기타 방사선 노출

• 포함: 가시광선, 자외선, 적외선 등 비전리방사선, 동위원소나 x선 등 전리방사선 노출 등

C98.3 소리·진동 노출

C98.31 소리 노출

C98.32 진동 노출

C98.4 기압 노출(흡입, 과다과소 기압, 기압변화 노출)

C98.5 저중력상태 노출

C98.6 유기, 방치, 필수요건의 결핍(식량, 수분, 생필품결핍 등)

C98.8 기타 손상기전

• 포함: 아니필락시스 쇼크

C99 미상의 손상기전

▶ 반드시 최하위 코드 인력

- 1. 손상기전이 2가지 이상인 경우 손상 발생의 주된 원인이 되는 손상기전을 입력 단, 손상의 정도가 같으면 일차적으로 발생한 손상기전을 입력 예) 미끄러지면서 벽에 부딪침 → 미끄러진 것이 주된 원인이라면 미끄러짐으로 입력
- 2. 운수사고
 - 1) 모든 장소에서 모터가 달린 동력 운송수단과 충돌
 - 2) 도로, 도로 외 교통지역에서 보행지와 무동력 운송수단·자전거 충돌
 - 3) 육상, 수상 또는 공중 운송수단을 포함한 운수시고로 손상 발생의 직·긴접 원인이 자동차 및 자동차 움직임과 상관없는 경우는 제외한다(휠체어 탑승하여 이동하는 사람은 보행자)
 - •포함: 승용차가 과속방지턱을 지나가다 덜컹거려서 손에 들고 있던 펜으로 옆 사람을 찌른 경우
 - 제외: 자동차 안에서 콩을 가지고 놀다가 귀에다 넣은 경우 → C98.14

벌이 자동차 안으로 들어와서 쏘인 경우 → C2.47

보행자와 보행자가 부딪힌 경우 → C13.3

휠체어 타고 이동 중에 보행자와 부딪힌 경우 → C133

보도에 넘어진 보행자 → C12.n

인라인스케이트를 타고 신호등에 부딪힌 사람 → C13.22

갑작스런 물살sudden flood)에 의해 휩쓸린 자전거, 오토바이 탑승자 손상 → C8.n

는, 산사태로 이동수단에 갇히며 발생한 손상 → C8.n

손상발생 당시 운송수단으로 사용하지 않은 육상운송수단 관련시건

(Events involving land transportation devices not in use for transport at the time)

예: 차고 또는 도로에서 수리 중인 이동수단이 수리하는 사람에게 떨어짐 \rightarrow C13.23

- 4) 운송수단에 승·하차 중 발생한 손상이 해당 자동차의 움직임에 의한 경우는 차량 탑승자로 입력
- 3. 손상기전이 중독 C6.1n인 경우 중독물질코드를 입력
- 4. 기계: 압궤손상(crushing injury)등 기계에 의해 조직이 손상된 경우
- 5. 손상기전이 기타인 경우는 반드시 손상내용입력(NARRATIVE)항목에 구체적으로 입력

※ 손상기전 기타: C11.98, C13.8, C2.8, C3.8, C4.8, C5.8, C6.8, C8.8, C98.8

- 6. 추락 및 낙상분과 참여병원은 손상기전이 미끄러짐, 계단손상인 환자는 60세 이상에서 심층문항 반드시 입력 * C121~C123, C1201~C1204
- --- 전동 킥보드: [운수사괴 기타 육상 운송수단(C11,88) 7. 어린이 킥보드 손상

수동 킥보드: [추락 및 미끄러짐] 동일면상에서의 미끄러져 넘어짐(C12.2)

질 관 리 지 침

손상기전(층)

정		의	손상기전이 추락인 경우 실제 낙하한 층수						
변	수	명	손상기전(층)(MECH_	손상기전(층)(MECH_F)					
유		형	숫자	숫자 필수여부 - 조사시작일 2019, 1, 1,					
코		드	<u>*</u>	<u>~</u>					
질 굔	<u>난</u> 리 ㅈ	침	또는 손상기전(높 2. 지면으로부터의 : 나무에 걸렸다면	이)(MECH_M)를 (층수가 이닌, 실제 , 10층-2층=8층으	입력 낙하한 층수로 기 로 기입)		경우 손상기전(층)(MECH_F) 서 추락했는데, 2층 높이의 99로 입력		

손상기전(높이)

정		의	손상기전이 추락인 경우 실제 낙하한 높이(m)							
변	수	명	손상기전(높이 m)(M	손상기전(높이 m)(MECH_M)						
유		형	숫자	숫자 필수여부 - 조사시작일 2019, 1, 1,						
코		드	m	m						
질 굔	난 리 ㅈ	침	또는 손상기전(높 2. 지면으로부터의 · 나무에 걸렸다면	:0)(MECH_M)를 ' 높이가 아닌, 실제 , 20m-4m=16m로	입력 낙하한 높이로 기 리기입)		경우 손상기전(층)(MECH_F) 에서 추락했는데, 4m 높이의 99로 입력			

손상발생일자

정		의	손상환자에게 손상여	손상환자에게 손상이 발생한 날짜						
용		도	손상환자가 손상이	손상환자가 손상이 발생한 날짜를 수집하여 손상 예방을 위한 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						
변	수	명	손상발생일자(OND/	손상발생일자(ONDATE)						
유		형	숫자	숫자 필수여부 필수 조사시작일 2008, 10, 1,						
코		드	YYYYMMDD 년(4조	[H]) 월(2자리) 일(2자리) (예) 2006	0518>				
질 관 리 지 침 1. 손상발생일자(ONDATE)는 내원일자(INDT), 퇴실일자(DCDT), 퇴원일자(D_DATE) 보다 0 ※ 손상발생일자(ONDATE) ≤ 내원일자(INDT) ≤ 퇴실일자(DCDT) ≤ 퇴원일자(D_DATE) 2. 손상발생일자(ONDATE)를 알 수 없는 경우 알 수 있는 데까지 입력하고 나머지는 9로										

손상발생시간

정		의	손상환자에게 손상(손상환자에게 손상이 발생한 시간						
용		도	손상환자가 손상이	손상환자가 손상이 발생한 시간을 수집하여 손상 예방을 위한 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						
변	수	명	손상발생시간(ONTII	손상발생시간(ONTIME)						
유		형	숫자	필수여부	필수	조사시작일	2008, 10, 1,			
코		드	HHMM 24시간제(4	자리) (예) 오후 3	30분 → 1530	0>				
질 관 리 지 침 1. 손상발생시간(ONTIME)은 내원시간(INTM), 퇴실시간(DCTM), 퇴원시간(D_TIME) 보다 이전 2. 손상발생시간(ONTIME)을 알 수 없는 경우 9999로 입력						_TIME) 보다 이전으로 입력				

손상발생장소

정		의	손상발생 당시에 환자가 있었던 장소					
용		도	손상발생 장소에 대한 자료를 수집하여 손상 예방을 위한 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					
변	수	명	손상발생장소(PLACE1)					
유		형	문자 필수여부 필수 조사시작일 2006, 8, 1, 2019, 1, 1, (코드변경)					
코		<u> </u>	C1 집 · 포함: 집안, 개인주택기당, 개인주택차고, 아피트주차장, 아피트 내 놀이터·운동시설 등 C2 집단거주시설 · 포함: 군부대, 기숙사, 감옥, 소년원 등 · 제약 경찰서 내 유치장 C10 C3 의료시설 · 포함: 의원, 병원, 종합병원, 보건소, 요앙병원, 조산원, 한의원 등 · 제약 산후조라원 C4 학교·교육시설 C4.1 학교 C4.2 어린이집/유치원 C4.9 그 외 C5.1 운동장/실외: 테니스코트, 아구장, 농구코트, 트랙 등) · 제약: 학교문증장 C4 전5.21 사위장, C5.22 탈의실, C5.28 체육관 내 기타 장소 C5.2 체육관(실내: 휘트니스 센터, 테니스코트, 스퀘시코트 등) · 병원별 선택입략: C5.21 사위장, C5.22 탈의실, C5.28 체육관 내 기타 장소 C5.3 수영장(포함: 공공 수영장) · 병원별 선택입략: C5.31 사위장, C5.32 탈의실, C5.38 수영장 내 기타 장소 C5.6 스케이트링크 C5.7 스키장, 스노우보드장 C5.8 기타 운동시설 · 포함: 승미장, 모타시아를 트랙, 자전거 트랙, 자동차 트랙 등 C5.9 미상의 운동시설 C6.1 차도(자동차 등이 다니는 길) C6.2 언도 또는 보도(차도 앞에 사람이 지나다닐 수 있는 길) C6.3 자전거도로(자전거 교통에 사용하도록 안전표지, 위험방자용 울타리나 그 외비슷한 공작물로써 경계를 표시하여 차도 및 보도와 구분하여 만들어진 도로)					

C6.4 횡단보도

C6.8 기타 명시된 도로

• 포함: 농로, 골목길

C6.9 미상의 도로

C7 도로 외 교통지역

C7 1 주차구역·주차장

C7.3 대중교통지역·시설(지하철역, 기차역, 버스·공항터미널)

• 병원별 선택입력: C7.31 교통지역·시설 승강구

C7.32 에스컬레이터, 무빙워크, 엘리베이터

C7.38 기타 대중교통지역·시설

C7.8 기타 명시된 도로 외 교통지역

• 병원별 선택입력: C7.81 육교

C7.82 지하도

C7.88 기타 명시된 교통지역(버스정거장, 선로)

C7 9 미상의 도로 외 교통지역

C8 공장·산업·건설시설

• 포함: 공사 중인 건물, 광산 및 채석장, 조선소, 발전소, 기타 명시된 산업 및 건설지역 등

C9 농장. 기타 일차산업장

- 포함: 농업, 화훼단지, 목축업(동물시육장)
- 제외: 동물원 C10

C10 놀이·문화시설 및 공공행정 구역

C10.1 동물원, 테마파크, 캠핑장 등의 유원시설

C10.2 콘서트장

C10.9 그 외

• 포함: 경찰서, 소방서, 동·읍·면사무소, 광장, 공원, 박물관, 미술관, 도서관, 오페리하우스, 종교시설(교회, 성당, 절등, 국장(영화, 연극, 뮤지컬등) 등

C11 상업시설

• 포함: 슈페미켓, 미트, 은행, 우체국, 주유소, 시무실, 카지노, 바, 댄스클럽, 나이트클럽, 방송국, 식당, 독서실, 백화점, 숙박시설(호텔, 모텔, 여관, 여인숙 등), 포장마차, 키즈카페, 동물병원, 직장 및 회사 등

C12 야외, 바다, 강

• 포함: 연못, 호수, 저수지, 댐, 해변, 갯벌, 개펄, 해수욕장, 시냇가, 강, 산, 동굴 등

C98 기타(포함: 비행기 안)

C99 미상

질 관 리 지 침

- 1. 반드시 최하위 코드까지 입력(C4.n, C5.n, C6.n, C7.n, C10.n)
- 2. 차량 안에서 다친 경우 차량이 있던 장소가 손상발생장소
- 3. 손상발생장소 입력 시 건물 및 인접지역 내 세부장소(PLACE3) 입력 필수

손상발생장소 기타내용

정	의	손상발생 당시에 횐	손상발생 당시에 환자가 있었던 장소 중 기타의 구체적인 내용					
용	도	손상발생 장소에 다	손상발생 장소에 대한 자료를 수집하여 손상 예방을 위한 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					
변수	명	손상발생장소 기타니	손상발생장소 기타내용(PLACE1_ETC)					
유	형	문자	필수여부	-	조사시작일	2006, 8, 1,		
코	드	내용입력						
질 관 리 지	질 관 리 지 침							

손상발생 장소의 실내·실외 여부

정	의	손상발생 당시에	손상발생 당시에 환자가 있었던 손상발생장소의 실내 또는 실외 구분					
용	도	손상발생 장소에	손상발생 장소에 대한 자료의 수집 및 분석, 손상 예방을 위한 적절한 조치와 자원의 효율적 이용					
변 수	명	손상발생 장소의	손상발생 장소의 실내·실외 여부(PLACE2)					
유	형	문자	필수여부	필수	조사시작일	2011, 1, 1, 2019, 1, 1,(변수명 변경)		
코	드	C1 실내 C2 실외 C9 미상						
질 관 리 지	질 관 리 지 침 손상발생장소(PLACE1) C6 도로, C12 야외, 바다, 강인 경우는 'C2 실외' 입력							

건물 및 인접지역 내 세부장소

정		의	손상발생장소의 건물 및 인접지역 내 세부장소					
용		도	손상발생장소의 구체적 세부장소에 대한 자료를 수집하여 발생 빈도를 파악하고 예방대책을 마련					
변	수	명	건물 및 인접지역 내 세부장소(PLACES)				
유		형	문자 필수여부 필수	조사시작일 2006. 8. 1.(심층) 2011. 1. 1.(공통)				
코		<u></u>	C1 회장실 및 욕실 C2 부엌, 주방 C3 거실 C4 방·침실 C5 시무실 •포함: 상가, 상점 안, 병원, 병실, 당작. C6 교실 C7 놀이방(보육시설인 경우에만 선택 C8 식당(구내, 교내) •포함: 수영장내 식당, 유원자(놀이동산) C9 베란다, 발코니 C10 계단 C11 엘리베이터 C12 에스컬레이터 C12 에스컬레이터 C13 현관(작은) C14 로비 C15 복도 C16 정원, 마당 C17 차고 C18 진입로(driveway: 도로에서 집, 차 세외: 농로, 골목길 여용,용 이파트단지 내 도로 C23 C19 수영장 C20 테니스 코트 C21 다른 스포츠 시설) 내 식당, 공장 식당 등				

	• 포함: 스키장, 골프장						
	C22 놀이터, 운동장						
	• 포함: 실내, 실외 놀이 및 운동시설 C23 사설도로						
	• 포함: 아파트단지 내 도로						
	C24 시설 주차공간						
	• 포함: 공영주차장, 아파트 주차?	장, 유료 주차장					
	C25 지붕, 옥상						
	C26 기타 옥외 공간						
	• 포함: 아파트단지 내 분리수거장, 건설현장 등						
	C98 기타						
	• 포함: 지하실 창고						
	C99 미상						
	1. 손상발생장소(PLACE1)가 'C6 <u>9</u> 2. 손상발생장소에 따른 건물 및	도로, C7 도로 외 교통지역, C12 o12 인접지역 내 세부장소 예시	기, 바다, 강인 경우 조사하지 않음				
질 관 리 지 침	실제 손상발생장소	손상발생장소 (PLACE1)	건물 및 인접지역 내 세부장소(PLACE3)				
글 근 니 시 ㅁ	아파트 주차장	C1 집	C24 시설 주차공간				
	공공 주차장	C7.1 주차구역, 주차장	C24 시설 주차공간				
	백화점 등 상업시설 주차장	C11 상업시설	C24 시설 주차공간				

건물 및 인접지역 내 세부장소 기타내용

정		의	손상발생장소의	손상발생장소의 건물 및 인접지역 내 세부장소 기타의 구체적인 내용					
용		도	손상발생장소의	손상발생장소의 구체적 세부장소에 대한 자료를 수집하여 발생 빈도를 파악하고 예방대책을 마련					
변	수	명	건물 및 인접지역	건물 및 인접지역 내 세부장소 기타내용(PLACE3_ETC)					
유		형	문자	문자 필수여부 - 조사시작일 2006. 8. 1.(심층) 2011. 1. 1.(공통)					
코		드	내용입력	내용입력					
질 관 리 지 침 건물 및 인접지역 내 세부장소(PLACE3)가 'C98 기타'인 경우 건물 및 인접지역 내 세부장소를 입력						인접지역 내 세부장소를 구체적으로			

주거지유형

정	의	손상발생장소(Pl	손상발생장소(PLACE1)가 집인 경우 손상발생 당시 환자가 있었던 주거지 유형							
용	도	주거지 중 손상이	주거지 중 손상에 취약한 유형에 대한 지료를 분석하여 발생의 빈도 및 유형을 파악하고 예방대책을 미련							
변수	누 명	주거지유형(HON	주거지유형(HOMETYPE)							
OH THE	형	문자	필수여부	비필수	조 사 시 작 일	2006. 8. 1.(심층) 2011. 1. 1.(공통)				
		C1 한옥			C5 주상복합(오피스텔 포함)					
_	_	C2 양옥			C98 기타					
코	드	C3 아파트	C3 아파트 C99 미상							
		C4 다세대주틱	4							
질 관 리	질 관 리 지 침									

주거지유형 기타내용

정		의	손상발생장소(PL	손상발생장소(PLACE1)가 집인 경우 손상발생 당시 환자가 있었던 주거지유형 기타의 구체적인 내용							
용		도	주거지 중 손상아	주거지 중 손상에 취약한 유형에 대한 자료를 분석하여 발생의 빈도 및 유형을 파악하고 예방대책을 미련							
변	수	명	주거지유형 기티	주거지유형 기타내용(HOMETYPE_ETC)							
유		형	문자	필 수 여 부	-	조 사 시 작 일	2006. 8. 1.(심층) 2011. 1. 1.(공통)				
코		드	내용입력	내용입력							
질 관	질 관 리 지 침 주거지유형(HOMETYPE)이 'C98 기타'인 경우 주거지유형 기타내용을 구체적으로 입력										

손상 시 활동

정 의	손상 발생 당시 손상환자의 활동								
용 도	손상 발생 당시 활동에 대한 자료를 수집하여 손상예방 대책을 마련								
변 수 명	손상 시 활동(IACT)								
유 형	문자 필수여부 필수 조사시작일 2006, 8, 1, 2019, 1, 1,(코드변경)								
	C1 업무(경제적 활동 및 직업과 관련된 활동) • 포함: 출·퇴근 중, 회식, 출장, 프로운동선수의 경기 중, 택시운전기사의 근무시간 중 운전								
	C2 무보수 업무 • 포함: 봉사활동, 요리, 애보기, 쇼핑, 청소하기, DIY, 집수리, 텃밭 가꾸기 등								
	C3 교육 C3.1 체육 수업, 학교 스포츠 C3.2 기타 *포함: 학교 청소중, 학교 및 학원의 점심시간 및 쉬는 시간, 숙제하기 등 *제외: 과외하기(teaching)는 C1 또는 C2 C3.3 C3.4 등・하교 중(학원가던 중 포함) C3.5 체험학습(소풍, 수학여행, 견학 등)								
코 드	C4 운동 • 포함: 경쟁을 목적으로 하는 신체활동 및 체력 증진을 위한 신체활동(겨루기, 조기축구 등) C5 여가활동								
	• 포함: 개 산책, 어린이 놀이(예: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취학전 어린이 자전거 타기, 우표수집, 영화·운동경기 보기, 영화관가기, 패티하기, 캠핑하기, 해변가에 눕기, 춤추기, 체스, 비둑, 도박 등								
	C6 기본 일상생활								
	C7 치료 • 포함: 구급치를 타고 이동 중인 환자, 외래 대기 중인 환자								
	C8 여행								
	C98 기타 • 포함, 부부씨와 포력, 자해, 자산, 종교활동 등								
	C99 미상								
질 관 리 지 침	1. 반드시 최하위 코드까지 입력 2. 업무 중 폭행은 'C1 업무로 입력 3. 손상시 활동(ACT)이 폭행, 자살인 경우 손상의도성(INTENT)과 일치하도록 입력								
	C3.5 체험학습(소풍, 수학여행, 견학 등) C4 운동								

27-1 손상 시 활동 기타내용

정	의	손상 발생 당시 환	손상 발생 당시 환자의 활동 기타의 구체적인 내용						
용	도	손상 발생 당시 활동	손상 발생 당시 활동에 대한 자료의 수집하여 손상예방 대책을 미련						
변수	명	손상 시 활동 기타	손상 시 활동 기타내용(IACT_ETC)						
유	형	문자	필수여부	-	조사시작일	2006, 8, 1,			
코	드	내용입력	내용입력						
질 관 리	질 관 리 지 침 손상 시 활동(IACT)이 'C98 기타'인 경우 손상 발생 당시 활동을 구체적으로 입력								

스포츠·운동 유형

정		의	<u>스포츠·운동으로</u> 인	스포츠·운동으로 인해 손상을 입은 경우 손상 발생 당시 환자의 스포츠·운동 유형								
용		도	스포츠・운동에 대한	스포츠·운동에 대한 지료를 수집하여, 유형을 파악하고 손상예방 대책 미련								
변	수	명	스포츠·운동 유형(S	스포츠·운동 유형(SPORTS)								
유		형	문자	문자 필수여부 필수 조사시작일 2011, 1, 1,								
코		<u> </u>	C1 팀구기 스: C1.01 농구구 대한 C1.02 축구 대한 C1.03 직단 C1.04 전 한택 기 기타 기 기타 기 기타 기 기타 기 기 기 기 기 기 기 기 기	축구 로(目) : 발야구, 풋살, 캐치팅 스타 키하기 른볼 포츠 : 래프팅 C15,5 로트경주								

```
C4.6 서프 보트
   C4.7 요트·범주
   C4.98 기타
   C4.99 미상
C5 개인 수중스포츠
   C5.1 다이빙(높은 곳에서 물속으로)
   C5.2 낚시
   C5.3 스쿠버 다이빙
   C5.4 스노우쿨링
   C5.5 서핑·서프보드
   C5.7 수영
   C5.8 수상스키
  C5.10 윈드서핑
   C5.98 기타
   C5.99 미상
C6 아이스 또는 눈 스포츠
   C6 1 스키
        • 포함: 노르딕·크로스컨트리 경기, 스노우 스키점프
   C6.3 스노우보드
   C6.4 스피드 스케이트
   C67 아이스 스케이트·아이스 댄스
   C6.8 썰매
   C6.98 기타
        • 포함: 봅슬레이드, 컬링 등
   C6.99 미상
C7 개인 운동경기
   C7.1 에어로빅·유연체조
   C7.2 조깅·러닝
   C7.3 기공체조
   C7.4 허들 없이 트랙 달리기
   C7.5 허들 경주
   C7.6 마라톤
   C7.18 걷기
   C7.19 요가·필라테스
   C7.20 트랙 & 필드
        • 포함: 높이뛰기, 멀리뛰기, 장대높이뛰기, 3단뛰기, 원반던지기, 투창, 해머던지기, 투포환 등
   C7.98 기타
        • 포함: 줄넘기, 크로스컨트리
   C7.99 미상
```

C8 아크로바틱 스포츠

C8.01 치어리딩

C8.09 체조 - 트램펄린, 미니 트램펄린

C8.14 체조 - 마루·덤블링, 리듬(소도구 사용)

C8.15 체조 - 평균대, 도마·뜀틀, 안마(pommel, side horse)

C8.16 체조 - 철봉, 평행봉, 링

C8.98 기타

C8.99 미상

C9 미적 활동

C9.1 발레

C9.2 기타 댄스·무용 등

C9.3 행진

C9.98 기타

C9.99 미상

C10 라켓 스포츠

C10.1 배드민턴

C10.2 라켓볼

C10.3 스쿼시

C10.4 탁구

C10.5 테니스

C10.98 기타

C10.99 미상

C11 과녁·사격 스포츠

C11.01 양궁

C11.03 당구

C11.05 크로켓

C11.06 다트

C11.07 골프

C11.08 볼링

C11.12 사격

C11.13 서바이벌 게임(형광도료가 든 총알사격)

C11.98 기타

C11.99 미상

C12 투쟁 스포츠

C12.1 태권도

C12.2 복싱(권투)

C12.3 펜싱

C12.4 유도

C12.7 검도

C12.8 킥복싱 C12.9 쿵푸 C12.11 격투기, 합기도 C12.98 기타

C12.99 미상

C13 파워 스포츠

C13.1 파워 리프팅

C132 역도

C13.3 체력훈련(strength training), 보디빌딩

• 포함: 헬스

C13.98 기타

C13.99 미상

C14 승마

C15 모험 스포츠

C15.2 하이킹

C15.3 등산

C15.5 강 래프팅

C15.6 암벽등반

C15.98 기타

C15.99 미상

C16 바퀴달린 동력 스포츠

C16.1 ATV(all terrain vehicle) 타기

C16.6 모터사이클, 모토카, 오토바이 경주

C16.98 기타

C16.99 미상

C17 바퀴달린 비동력 스포츠

C17.1 사이클링 - BMX(사이클 모터크로스 경주)

C17.2 사이클링 - 산

C17.3 사이클링 - 길

C17.4 사이클링 - 트랙·자전거 경주장

C17.7 인라인 스케이트·롤러브레이드

C17.8 롤러스케이트

C17.10 스케이트보드

C17.13 킥보드

C17.98 기타

C17.99 미상

	C18.1 바이애슬론·트리애슬론 C18.3 5종·10종 경기 C18.98 기타 C18.99 미상
	C19 에어로(비동력) 스포츠 (Aero sports) C19.2 글라이더·행글라이더 C19.4 낙하산 강하/스카이다이빙 C19.5 패러글라이딩·패러세일링 C19.8 번지점프 C19.98 기타 C19.99 미상
	C98 기타 명시된 스포츠·운동 유형

질 관 리 지 침

- 1. 손상 시 활동(IACT)이 'C3.1 체육 수업, 학교 스포츠' 또는 'C4 운동'인 경우는 반드시 스포츠 · 운동유형 (SPORTS)을 입력
- 2. 반드시 최하위 코드까지 입력

C99 미상의 스포츠·운동 유형

스포츠·운동유형 기타내용

C18 여러 종류를 결합한 스포츠

정		의	스포츠·운동 <u>으로</u> 인	스포츠·운동으로 인해 손상을 입은 경우 손상발생 당시 환자의 스포츠·운동 유형 기타의 구체적인 내용						
용		도	스포츠·운동에 대한 자료를 수집하여, 유형을 파악하고 손상예방 대책 마련							
변	수	명	스포츠·운동유형 7	스포츠·운동유형 기타내용(SPORTS_ETC)						
유		형	문자	필수여부	-	조사시작일	2011, 1, 1,			
코		드	내용입력	내용입력						
질 곤	질 관 리 지 침 스포츠·운동유형(SPORTS)이 'C98 기타'일 경우 스포츠·운동유형 기타내용을 구체적으로 입력									

일차적 손상유발물질(underlying object of the injury)

정	의	손	손상을 유발한 일치적인 물질							
용	도	손	손상을 유발한 일차 물질을 수집하여 손상 원인을 파악하고 손상예방 대책 미련							
변 :	수 명	! 일:	일차적 손상유발물질(FACTOR_U)							
유	형	! 문	문자 필수여부 필수 조사시작일 2011. 1. 1.							
코	<u>=</u>	. 손	손상유발물질코드 이용(p.87~114)							
		2.	손상의도성(내원	사유)(INTENT)이 '	h고'인 경우는 손싱 C2 자해·자살, C3 일 경우 일차적 손	3 폭력·타살	인 경우			
지과	리 지 침		손상기전(ME	CH) 손	상의도성(INTENT)		손상유	발물질(FACTOR_U, D)		
교 건 '	니시검	i	C11.n 운수사고	C1, C2,	C3, C98, C99	→	조사 제	외		
			C6.1n 이외 중	독 외 C2 자하	·자살, C3 폭력·타실	. →	조사 제	외		
			C6.1n 중독	C2 자히	l·자살, C3 폭력·타실	<u>†</u> →	입력			
		4.	손상유발물질은	반드시 최하위 코	크드까지 입력					

일차적 손상유발물질 내용입력

정	의	손상을 유발한 기티	손상을 유발한 기타 일차적 손상유발물질의 구체적인 내용							
용	도	손상을 유발한 일차 물질을 수집하여 손상 원인을 파악하여 손상예방 대책 미련								
변 수	명	일차적 손상유발물길	일차적 손상유발물질 내용입력(FACTOR_UT)							
유	형	문자	필수여부	-	조사시작일	2011, 1, 1,				
코	드	내용입력								
질 관 리	질 관 리 지 침 1. 일차적 손상유발물질(FACTOR_U)이 'Cn.98 기타(최하위 코드)'인 경우 일차적 손상유발물질 내용· 구체적으로 입력 2. 일차적 손상유발물질의 내용 입력은 피하고 일차적 유발물질(FACTOR_U) 변수로 입력									

직접적 손상유발물질(direct object of the injury)

정	의	손	손상을 유발한 직접(이차)적인 물질								
용	도	. 손	손상을 유발한 물질을 수집하여 손상 원인을 파악하여 손상예방 대책 미련								
변 -	수 명		직접적 손상유발물질(FACTOR_D) ※ 기존에 조시되었던 유발물질(FACTOR)임								
유	형	문:	문자 필수여부 비필수 조사시작일 2008, 10, 1,								
코	_	. 손	손상유발물질코드 이용(p.87~114)								
		2.	손상기전(MECH) 손상의도성(내원/ 손상기전(MECH	사유)(INTENT)0	'C2 자해·7	(살, C3	폭력·	타살'인	경우	조사 제외	
-1 -1 -			손상기전(ME	CH)	손상의도성(IN	ITENT)			손상	유발물질(FACTOR_U, D))
실 반 대	리 지 침		C11.n 운수사고	C1, (C2, C3, C98,	C99		\rightarrow	조사 기	제외	
			C6.1n 이외 중	독 외 C2	자해·자살, C3	폭력·타실	ŀ	\rightarrow	조사 기	제외	
			C6.1n 중독	C2	자해·자살, C3	폭력·타실	<u> </u>	→	입력		
		4.	4. 손상유발물질은 반드시 최하위 코드까지 입력								

직접적 손상유발물질 내용입력

정		의	손상을 유발한 기타 직접(이차)적 손상유발물질의 구체적인 내용								
용		도	손상을 유발한 물질을 수집하여 손상 원인을 파악하여 손상예방 대책 마련								
변	수	명	직접적 손상유발물길	직접적 손상유발물질 내용입력(FACTOR_DT)							
유		형	문자	필수여부	비필수	조사시작일	2011. 1. 1.				
코		드	내용입력								
질 관	리ㅈ	침	1. 직접적 손상유발물질(FACTOR_D)이 'Cn.98 기타(최하위 코드)'인 경우 직접적 손상유발물질 내용을 구체적으로 입력 2. 직접적 손상유발물질 내용 입력을 피하고 직접적 유발물질(FACTOR_D) 변수로 입력								

다발성 손상 진단명(1~10)

정		의	손상환자가 손상으로	손상환자가 손상으로 인해 진단받은 주요한 진단명							
변	수	명	다발성 손상 진단명	다발성 손상 진단명(DD01~DD10)							
유		형	문자	필수여부	필수	조사시작일	2008. 10. 1.				
코		드	ICD-10코드	ICD-10코드							
질 곤	<u></u> 리 ㅈ	침	1. ICD-10(KCD-8)의 <u>\$00~T79(</u> 손상, 중독 및 외인에 의한 특정 기타 결과) 코드 입력 2. T80~T98(처치의 합병증 및 기타 결과의 후유증) 코드 입력 제외 3. 문자열 최대 7자리, 소수점 포함하여 입력 ex. S01.0(O), S010(X) 4. DD02~DD10 항목은 비필수								

손상내용입력

정		의	손상 시건을 육히원칙에 의거하여 내용 입력					
변	수	명	손상내용입력(NARRATIVE)					
유		형	문자 필수여부 필수 조사시작일 2011. 1. 1.					
코		드	내용입력					
질 관 리 지 침			손상기전(MECH)이 기타 [*] 인 경우 반드시 손상내용을 구체적으로 입력 * 손상기전 기타 : C11.98, C13.8, C2.8, C3.8, C4.8, C5.8, C6.8, C8.8, C98.8					

운수사고 당시 환자의 역할

정 의	운수사고 당시 손상 당시자의 역할						
용 도	운수사고 당시 손상 당사자의 행동에 대한 자료를 수집하여 관련 위험요인을 파악하고 손상예방 정책에 기초자료로 활용						
변 수 명	운수사고 당시 환자의 역할(T_ROLE)						
유 형	문자 필수 여부 필수 조사시작일 2006, 8, 1,(심층) 2011, 1, 1,(공통) 2022, 7, 1,(코드변경)						
코 드	C1 운전자 또는 조작자 • 포함: 자동차·오토바이 운전자, 자전거 타는 사람, 휠체어/유모차 밀어주는 사람 C2 동승, 승객 • 포함: 다른 사람이 조작해 주는 인력거/순수레/유모차에 타고 있는 사람, 문숙수단에 부착되어있는 사이트카 또는 트레일러에 타고 있는 사람 C2.1 앞좌석 C2.2 뒷좌석 C2.9 미상 C3 보행자 • 포함: 보행자, 목격자, 무동력 운숙수단(스케이트, 썰매, 쌍쌍이, 스키, 휠체어 등) 이용자, 차량의 바퀴를 교환하는 사람, 차량을 정비하는 사람 C4 운송수단 승·하차 중인 사람 C5 운송수단 외부에 있는 사람 • 포함: 범패나 차 지붕, 발판 등에 타고 이송 중인 사람 C98 기타						
질 관 리 지 침	1. 손상기전(MECH) 'C11,n 운수사고'인 경우 반드시 입력 2. 운전자 또는 조작자: 운송수단을 운전하거나 운전하려는 탑승자 3. 승객: 운전자 이외의 모든 운수차량 탑승자 앞좌석: 운전석과 나란히 있는 좌석 뒷좌석: 그 외 좌석 모든 버스 승객: 뒷좌석 4. 보행자: 사고 당시 자동차, 열차, 전차, 동물견인차, 기타 차량 또는 자전거나 동물의 탑승자가 아닌 사람으로 사고에 관련된 모든 사람						

- 5. 운송수단 외부에 있는 사람: 차량에 의해 운송되고 있는 모든 사람으로 운전자나 승객을 위하여 정상적으로 마련한 장소나 고유한 수송 목적의 장소에 탑승하지 않은 사람
- 6. 휠체어 수동 휠체어: 보행자 전동 휠체어: 운전자

33-1 운수사고 당시 환자의 역할 기타내용

정		의	운수사고 당시 손상 당사자의 역할 중 기타의 구체적인 내용					
용		도	운수시고 당시의 손상 당시자의 행동에 대한 자료를 수집하여 관련 위험요인을 파악하고 손상예방 정책에 기초자료로 활용					
변	수	명	운수사고 당시 환자의 역할 기타내용(T_ROLE_ETC)					
유		형	문자	필수여부	-	조 사 시 작 일	2006. 8. 1.(심층) 2011. 1. 1.(공통)	
코		드	내용입력					
질 관 리 지 침			운수사고 당시 손상 당사자의 역할(T_ROLE)이 'C98 기타'인 경우 운수사고 당시 손상 당사자 역할의 기타내용을 구체적으로 입력					

운수사고 상대편

정		의	운수사고 당시 충돌한 상대편의 역할						
용		도	운수사고 당시 상대편의 운송수단 등에 대한 자료를 수집하여 위험요인을 파악하고 손상예방 정책에 기초자료로 활용						
변	수	명	운수사고 상대편(T_COUNTER)						
유		형	문자 필수여부 필수 조사시작일 2006. 8. 1.(심층) 2011. 1. 1.(공통)						
코		드	무자 필 스 (B 므 필수 ᄉ 사 시 사 인						
질 관	반 리 ㅈ	침	1. 손상기전(MECH)이 'C11,n 운수사고'인 경우 반드시 입력 2. 반드시 최하위 코드까지 입력						

운수사고 상대편 기타내용

정		의	운수사고 발생당시 충돌한 기타 상대편의 구체적인 내용				
용		도	운수사고 당시 상대편의 운송수단 등에 대한 자료를 수집하여 위험요인을 파악하고 손상예방 정책에 기초자료로 활용				
변	수	명	운수사고 상대편 기타내용(T_COUNTER_ETC)				
유		형	문자 필수여부 - 조사시작일 2006. 8. 1.(심층) 2011. 1. 1.(공통)				
코		드	내용입력				
질 관 리 지 침 운수사고 상대편(T_COUNTER) 'C98 기타'인 경우 운수사고 상대편의 기타내용을 구체적으로 입력					의 기타내용을 구체적으로 입력		

운수사고 발생장소(도로종류)

정 의	운수사고 발생장	l소의 도로종류						
용 도	운수사고가 일어	운수사고가 일어난 장소에 대한 자료를 수집하여 손상예방 대책 미련						
변 수 명	운수사고 발생장	운수사고 발생장소(도로종류)(T_RTYPE)						
유 형	문자	필수여부	필수	조 사 시 작 일	2006. 8. 1.(심층) 2011. 1 .1.(공통) 2019. 1. 1.(코드변경)			
코 드	C3 일반도로 • 병원별 선택	C1 고속도로 C2 자동차전용도로 C3 일반도로						
질 관 리 지 침	2. 병원별 선택(3. 자전거 전용) 4. 도로종류가 : 5. 용어 정의 - 고속도로: 고속 공하는 도로로 수 있도록 살원활하도록 ! - 자동차전용도: 처리하기 위한 - 일반도로: 복합 놓은 것과 신한 가운데 설한 가운데 설한 가운데 설근 농로: 농지와	입력의 세부도로는 로로에서 사고가 는 코드(C1~C8) 외의 는도로 자동차 교통을 보서 노선이 지정된 네계되어 교차 지점 로모 로: 특별시, 광역시, 한 자동차만 통행할 4m 이상의 도로 행자가 안전하게 횡 호등이 있음, 보통 치 에서 들어가 동네	조사기능한 경 경우는 'C8 종류인 경우는 방의 중추부분을 것으로 일정 자 에서 신호대기 시 또는 군내 주 수 있도록 하 로 통상의 교통 단하도록 도로 [©] 평면 교차로에 ⁽ 안을 이리저리 지와 경지 사이	영우까지만 입력 기타'로 입력 는 'C8 기타'로 입력 이루는 중요한 도시를 점에서만 교차로(인터: 등으로 통행이 지연 목요지역간이나 시, 군 기 위하여 설치하는 참소통을 위하여 설치 레 설치한 보행자 시살 설치되며, 인구의 통형 I 통하는 좁은 길 I를 연결하는 길, 농업				

운수사고 발생장소(도로종류) 기타내용

정		의	운수사고 발생정	운수사고 발생장소의 도로종류 기타의 구체적인 내용					
용		도	운수사고가 일어	난 장소에 대한 기	자료를 수집하여	여 손상예방 대책 마	 련		
변	수	명	운수 사고 발생징	소(도로종류) 기티	·내용(T_RTYPE	E_ETC)			
유		형	문자	문자 필수여부 - 조사시작일 2006. 8. 1.(심층) 2011. 1 .1.(공통)					
코		드	내용입력	내용입력					
질 관 리 지 침						고 발생장소 기타내용을 구체적으로			

보호장비

정		의	손상발	손상발생 당시 손상환자의 보호장비 착용 상태 및 작동									
용		도		손상발생 당시 차량 내의 보호장비 장착 및 착용 상태에 대한 자료를 수집하여 손상예방 정책 수립 및 평가를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									
변	수	명	보호정	#1(PE_	_1 ~ PE_98)								
유		쳥	문자		필수여부	●필수 ○비필수		조 사	시작	낚 일	2006. 8. 1.(심층 2011. 1. 1.(공통 2016. 1. 1.(필수 2019. 1. 1.(코드 2022. 7. 1.(코드)) 변경	-
			•	안전발	<u>벨트(</u> PE_1)		C0	아니오	C1	예	C	9	미상
			•	안전의	일자(PE_2)		C0	아니오	C1	예	C	9	미상
			•	헬멧츠	착용(PE_3)		C0	아니오	C1	예	C	9	미상
코		드	0	관절보	보호(PE_4)		C0	아니오	C1	예	C	9	미상
			•	에어브	백 장착(PE_5)		C0	아니오	C1	예	C	9	미상
			•	에어브	백 작동(PE_6)		C0	아니오	C1	예	C	9	미상
			0	기타(PE_98)		C0	아니오	C1	예	С	9	미상
질 관	○ 기타(PE_98) CO 아니오 C1 예 C9 미상 1. 손상기전(MECH)이 'C11.n 운수사고'인 경우는 반드시 입력 2. 안전벨트(PE_1), 에어백 장책(PE_5), 에어백 작동(PE_6) : 만 6세 이상이며 치량・탑승자(손상기전 C11.61, C11.67, C11.70)인 경우는 반드시 입력 3. 안전의자(PE_2): 만 6세 미만이며 차량・탑승자(손상기전 C11.61, C11.67, C11.70)인 경우 반드시 입력 4. 헬멧착용(PE_3): 손상기전이 'C11.20 자전거, C11.45 오토바이, C11.88 기타 육상 운송수단 중 개인형 이동장치인 경우는 반드시 입력, 그 외의 경우 필요시 입력 5. 기타(PE_98): 명시된 항목 이외의 것 6. 만 6세이상이며, 손상기전이 차량・탑승자(C11.61, C11.67, C11.70)이면서, 운수사고 당시 환자의 역할 C4 운송수단 승하차중인 사람, C5 운송수단 외부에 있는 사람의 경우 - 인전벨트(PE_1), 에어백 장착(PE_5), 에어백 작동(PE_6)은 'CO 아니오' 입력 7. 에어백 장착(PE_5)이 'CO 아니오'인 경우 에어백 작동(PE_6)은 반드시 'CO 아니오' 로 입력 8. 반드시 최하위 코드까지 입력							는드시 입력 중 개인형 사자의 역할					

보호장비 기타내용

정	의	손상발생 당시 :	손상발생 당시 손상환자가 착용한 기타 보호장비의 구체적인 내용					
용	도		손상발생 당시 차량 내의 보호장비 장착 및 착용 상태에 대한 자료를 수집하여 손상예방 정책 수립 및 평가를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					
변수	명	보호장비 기타나	용(PE_ETC)					
유	형	문자	필수여부	-	조사시작일	2006. 8. 1.(심층) 2011. 1. 1.(공통)		
코	드	내용입력						
질 관 리	질 관 리 지 침 보호장비 '기타(PE_98)' 입력 시 기타내용을 구체적으로 입력							

중독물질코드

정		의	중독(intoxicatio	중독(intoxication)을 유발한 물질의 분류					
용		도	중독 손상을 일	중독 손상을 일으킨 중독물질의 자료를 수집하여 중독예방 정책수립 및 평가에 기초자료로 활용					
변	수	명	중독물질코드(P	O_MACD)					
유		형	문자						
코		드	C1.2	C1.1.2 마약성 전 •포함: 옥 C1.1.3 그 외 진 •포함: 부 진정제·항정신병약 C1.2.1 벤조디아 •포함: 디 C1.2.2 독시라민	미노펜 이레놀, 서스펜 인통제 시콘틴 CR, 하이트 통제 루펜, 낙센 에프, 데·수면제 제핀계 아제팜, 아티반, 일	라돈 낙프록센, 아클펜정, 애니: 날프리졸람, 로리반, 자니픈 슬, 자미솔, 자비론			

```
C1,2,3 졸피뎀
               • 포함: 스틸녹스, 졸민, 졸피드정, 졸피신
        C124 항정신병약
               • 포함: 리페리돈, 이빌리파이, 인베가, 할돌, 할로페리돌, 쿼티아핀 등
        C1 2 5 기타 진정제·항정신병약제·수면제
               • 포함: 쿨드림, 리튬 등
   C1.3 항우울제
         C1.3.1 TCA 항우울제
         • 포함: 아미트립틸린, 에나폰, 에트래빌, 이미프라민
         C1.3.2 그 외 항우울제
         • 포함: 트라조돈, 렉시프로, 푸록틴, 프로작
   C1.4 심혈관계약
        • 포함: NTG, 딜라트렌, 이스트릭스, 인테놀, 아마릴엠
   C1.5 구강혈당제
   C1.6 항경련제
        • 포함: 데파코트, 리보트릴, 데피킨
   C1.7 감기·기침약
   C1.8 항생제·항균제
   C1.9 각성제·습관성의약품(street drugs)
   C1.10 이뇨제
   C1.11 항응고제
   C1 12 소화제·위장약
   C1.13 진단용 약물
   C1.14 항암제
   C1.15 마취약
   C1.16 근이완제
   C1.17 마약길항제
   C1.18 눈·귀·코·인후약
   C1.19 국소적 약물
   C1.20 비타민·식이보충제
   C1.21 전해질·미네랄 약물
   C1.22 백신, 톡소이드
   C1.23 호르몬제, 호르몬 길항제, 피임약
   C1.24 천식약
   C1.25 항히스타민제
   C1.98 기타 치료약물
   C1.99 미상 치료약물
C2 농약
   C2.1 제초제
         C2.1.1 파라쿼트
```

C2 1 2 글라이포세이트

	C2.1.3 기타 제초제 C2.2.1 유기인계 C2.2.2 피레스로이드 C2.2.3 카바메이트 C2.2.4 기타 실충제 C2.3 실서제 C2.4 기타 농약 C2.5 미상 농약
	C3 가스 C3.1 일산화탄소 C3.2 기타 가스 C3.3 미상 가스
	C4 인공 독성물질 C4.1.1 방초산 C4.1.2 기타 산성 물질 • 포함: 염산, 질산, 황산 등 C4.1.3 락스 C4.1.4 기타 알칼리성물질 • 포함: 양깻물, 세제류, 변기 세정제, 샴푸 등 C4.1.5 불산(불화수소산, 플루오린수소산(HF)) C4.1.6 기타 부식성물질 • 포함: 술, 메틸알코욀메탄욀), 에틸알코욀에탄욀) 등 C4.3 중금속 • 포함: 납, 수은, 카드뮴 C4.4 탄화수소 • 포함: 기술리, 메탄, 톨루엔 C4.5 기타 인공독성물질 • 포함: 실라키겔, 화장품 C4.6 미상 인공독성물질 • 포함: 복어독, 독버섯 등
	C98 기타 독성물질
	C99 미상 독성물질
질 관 리 지 침	1. 손상기전(MECH)이 'C6.1n 중독'인 경우 반드시 입력 2. 중독물질은 반드시 최하위 코드까지 입력 3. @ 중독물질코드(PO_MACD)와 ® 손상유발물질(FACTOR_U,D)은 반드시 일치

○ 존목물™FO_MACD) ⑥ 손성유발물제FACTOR_U, D) C1.1 진통제・항류마티스제 C20.01 진통해열제・항류마티스제 C1.2 진정제・항정신병약제・수면제 C20.06 항우물제 C1.4 실험권제약 C20.09 실험관계 약물 C1.5 구강혈당제 C20.08 항경란제 C1.6 항경란제 C20.08 항경란제 C1.7 건기・기침약 C20.03 갈기약 C1.8 항생제・항균제 C20.02 항생제・항균제 C1.10 0뇨제 C20.02 항생제・항균제 C1.11 항흥교제 C20.10 이뇨제 C1.12 소화제・위장약 C20.11 항응교제 C1.13 전단용 약물 C20.13 진단용 약물 C1.14 항암제 C20.11 항암제 C1.15 마취약 C20.13 진단용 약물 C1.16 근이완제 C20.13 전단용 약물 C1.17 마취약 C20.15 마취약 C1.16 근이완제 C20.11 전체 C1.17 마취약 C20.11 전체 C1.17 마취약 C20.11 전체 C1.10 보고보고보고보고보고보고보고보고보고보고보고보고보고보고보고보고보고보고보고			
C1.2 진정제・항정신병약제・수면제 C20.07 진정제, 항정신병약제, 수면제 C1.3 항우울제 C20.06 항우울제 C1.4 심혈관계약 C20.09 심혈관계 약물 C1.5 구강혈당제 C20.23 호르문제, 호르몬 길향제, 피임약 C1.6 항경전제 C20.03 합기약 C1.8 항생제・항균제 C20.02 항생제・항균제 C1.9 각성제・습관성약품(street drugs) C20.24 불법 제조된 약물 C1.10 이뇨제 C20.11 하응고제 C1.11 항공제 C20.11 하용고제 C1.12 소화제・위장약 C20.12 소화제・위장약 C1.13 진단용 약물 C20.13 진단용 약물 C1.14 항암제 C20.14 항암제 C1.15 마취약 C20.15 미취약 C1.16 근인완제 C20.15 미취약 C1.17 마악길항제 C20.17 미악길항제 C1.18 눈・귀・코・인후약 C20.18 눈・귀・코・인후약 C1.19 국소적 약물 C20.19 군소적 약물 C1.20 비타민・식이보충제 C20.20 비타민・식이보충제 C1.21 전해질・미네물악물 C20.21 전해질・미네물악물 C1.22 백신, 독소이트 C20.22 世紀, 독소이트 C1.23 호르몬제, 호르몬 길향제, 피임약	@ 중독물	질코드(PO_MACD)	७ 손상유발물질(FACTOR_U, D)
C1.3 항우울째 C20.06 항우울째 C1.4 심혈관계약 C20.09 심혈관계 약물 C1.5 구강혈단제 C20.03 호르몬제, 호르몬 길향제, 피인약 C1.6 항경전제 C20.03 함기약 C1.7 감기・기침약 C20.03 감기약 C1.8 항상제・항균제 C20.02 항생재・항균제 C1.9 각성제・습관성약품(street drugs) C20.24 불법 제조된 약물 C1.10 이뇨제 C20.10 이뇨제 C1.11 항용교제 C20.11 항용교제 C1.12 소화제・위장약 C20.12 소화제・위장약 C1.13 진단용 약물 C20.13 진단용 약물 C1.14 항암제 C20.14 항암제 C1.15 마취약 C20.15 마취약 C1.16 근이완제 C20.15 마취약 C1.16 근이완제 C20.16 관계적 C1.17 마약일항제 C20.17 마약길항제 C1.18 눈・귀・코・인후약 C20.18 눈・귀・코・인후약 C1.19 국소적 약물 C20.21 전체질・미네랄목 C1.20 비타민・식이보충제 C20.22 백신, 목소이트 C1.21 전해질・미네클악물 C20.21 전체질・미네클악물 C1.24 천식약 C20.22 백人, 독소이트 <	C1.1	진통제・항류마티스제	C20.01 진통해열제·항류마티스제
C1.4 심혈관계약 C20.09 심혈관계 약물 C1.5 구강혈당제 C20.23 호르몬제, 호르몬 길항제, 피임약 C1.6 항경련제 C20.08 항경련제 C1.7 건가 가침약 C20.03 감기약 C1.8 항생제 * 항균제 C20.02 항생제 * 항균제 C1.9 가성제 * 습관성약품(street drugs) C20.21 항문제 C1.10 이뇨제 C20.10 이뇨제 C1.11 항용고제 C20.11 항문고제 C1.12 소화제 * 위장약 C20.12 소화제 * 위장약 C1.13 전단용 약물 C20.13 전단용 약물 C1.14 항암제 C20.14 항암제 C1.15 마취약 C20.15 마취약 C1.16 근이완제 C20.15 마취약 C1.16 근이완제 C20.17 마약길항제 C1.17 마약길항제 C20.17 마약길항제 C1.17 마약길항제 C20.18 눈・귀・코・인후약 C1.19 국소적 약물 C20.18 눈・귀・코・인후약 C1.10 건해질 • 미네탈약물 C20.11 전해질 • 미네릴약물 C1.20 병사 도리 · 이부 C1.21 천대질 • 미네탈약물 C20.22 백人, 독소이트 C1.22 백人, 독소이트 C20.23 항리스타민제 <td>C1.2</td> <td>진정제 · 항정신병약제 · 수면제</td> <td>C20.07 진정제, 항정신병약제, 수면제</td>	C1.2	진정제 · 항정신병약제 · 수면제	C20.07 진정제, 항정신병약제, 수면제
C1.5 구강혈당제 C20,23 호르몬제, 호르몬 길항제, 피임약 C1.6 항경련제 C20,08 항경련제 C1.7 감기ㆍ기침약 C20,03 감기약 C1.8 항생제ㆍ항균제 C20,02 항생제ㆍ항균제 C1.9 각성제ㆍ습관성약품(street drugs) C20,12 상태재ㆍ항균제 C1.10 이뇨제 C20,10 이뇨제 C1.11 항용고제 C20,11 항용고제 C1.12 소화제ㆍ위장약 C20,13 전단용 약물 C1.13 진단용 약물 C20,13 진단용 약물 C1.14 항암제 C20,14 항암제 C1.15 미취약 C20,15 미취약 C1.16 근이완제 C20,15 미취약 C1.17 미약길항제 C20,17 미약길항제 C1.18 눈ㆍ귀ㆍ코ㆍ인후약 C20,18 눈ㆍ귀ㆍ코ㆍ인후약 C1.19 국소적 약물 C20,18 눈・귀・코・인후약 C1.20 비타민·식이보충제 C20,19 국소적 약물 C1.21 전해질ㆍ미네탈악물 C20,20 비타민·식이보충제 C1.22 백신, 특소이트 C20,22 世紀, 투소이트 C1.23 호르몬제, 호르몬 길항제, 피임약 C20,23 호르몬제, 호르모 길항제, 피임약 C1.24 천식약 C20,04 천식약 C1.25 항히스타민제 C20	C1.3	항우울제	C20.06 항우울제
C1.6 항경련제 C20.08 항경련제 C1.7 감기・기침약 C20.03 감기약 C1.8 항생제・항균제 C20.02 항생제・항균제 C1.9 각성제・습관성약품(street drugs) C20.24 불법 제조된 약물 C1.10 이노제 C20.10 이노제 C1.11 항응고제 C20.11 항응고제 C1.12 소화제・위장약 C20.12 소화제・위장약 C1.13 진단용 약물 C20.13 진단용 약물 C1.14 항암제 C20.15 마취약 C1.15 마취약 C20.15 마취약 C1.16 근이완제 C20.16 근이완제 C1.17 마약일항제 C20.17 마약일항제 C1.18 눈・귀・코・인후약 C20.18 눈・귀・코・인후약 C1.19 국소적 약물 C20.19 국소적 약물 C1.20 비타민・식이보충제 C20.20 비타민・식이보충제 C1.21 전하질・미네클약물 C20.21 변하질・미네클약물 C1.22 백신, 톡소이트 C20.22 백신, 톡소이트 C1.24 천식약 C20.04 천식약 C1.25 항하스타민제 C20.05 항치스타민제 C1.25 항하스타민제 C20.05 항치스타민제 C2.10 유가인계 C21.04.10 기타 유가인산화합물	C1.4	심혈관계약	C20.09 심혈관계 약물
C1,7 감기・기침약 C20,02 항생제・항균제 C1,8 항생제・항균제 C20,02 항생제・항균제 C1,9 각성제・습관성약품(street drugs) C20,24 불법 제조된 약물 C1,10 이뇨제 C20,10 이뇨제 C1,11 항공제 C20,11 항응고제 C1,12 소화제・위장약 C20,12 소화제・위장약 C1,13 진단용 약물 C20,13 진단용 약물 C1,14 항암제 C20,14 항암제 C1,15 마취약 C20,15 미취약 C1,16 근이완제 C20,16 근이완제 C1,17 마약일항제 C20,17 마약길항제 C1,18 눈・귀・코・인후약 C20,18 눈・귀・코・인후약 C1,19 국소적 약물 C20,19 국소적 약물 C1,20 비타민・식이보충제 C20,20 비타민・식이보충제 C1,21 전해질・미네탈약물 C20,21 전해질・미네탈약물 C1,22 백년, 록소이트 C20,22 백년, 록소이트 C1,23 호르몬제, 호르몬 길항제, 피임약 C20,23 호르몬 길항제, 로르몬 길항제, 피임약 C1,24 천식약 C20,04 천식약 C1,25 항하스타민제 C20,05 항하스타민제 C1,98 기능 병사의 C21,04,30 집초제거제, 제초제 C2,1 제초제	C1.5	구강혈당제	C20.23 호르몬제, 호르몬 길항제, 피임약
C1,8 항생제ㆍ항균제 C20,02 항생제ㆍ항균제 C1,9 각성제ㆍ습관성약품(street drugs) C20,24 불법 제조된 약물 C1,10 이뇨제 C20,10 이뇨제 C1,11 항응고제 C20,11 항응고제 C1,12 소화제ㆍ위장약 C20,12 소화제ㆍ위장약 C1,13 진단용 약물 C20,13 진단용 약물 C1,14 항암제 C20,14 항암제 C1,15 미취약 C20,15 마취약 C1,16 근이완제 C20,16 근이완제 C1,17 마약일항제 C20,17 마약일항제 C1,18 눈・귀・코・인후약 C20,18 눈・귀・코・인후약 C1,19 국소적 약물 C20,19 국소적 약물 C1,20 비타민・식이보충제 C20,20 비타민・식이보충제 C1,21 전해질・미네클약물 C20,21 전해질・미네클약물 C1,22 백신, 톡소이드 C20,22 백신, 톡소이드 C1,23 호르몬제, 호르몬 길항제, 피임약 C20,23 호르몬제, 호르몬 길항제, 피임약 C1,24 천식약 C20,04 천식약 C1,24 천식약 C20,04 천식약 C1,25 형하스타민제 C20,05 형하스타민제 C1,98 기타 청료약물 C20,04 천식약 C2,1 제초제 C21,04,10 기타	C1.6	항경련제	C20.08 항경련제
C1,9 각성제 · 습관성약품(street drugs) C20,24 불법 제조된 약물 C1,10 이뇨제 C20,10 이뇨제 C1,11 항응고제 C20,11 항응고제 C1,12 소화제 · 위장약 C20,12 소화제 · 위장약 C1,13 진단용 약물 C20,13 진단용 약물 C1,14 항암제 C20,15 미취약 C1,15 마취약 C20,15 미취약 C1,16 근이완제 C20,16 근이완제 C1,17 마약일항제 C20,17 마약길항제 C1,18 눈・귀・코・인후약 C20,18 눈・귀・코・인후약 C1,19 국소적 약물 C20,19 국소적 약물 C1,20 비타민・식이보충제 C20,20 비타민・식이보충제 C1,21 전해질・미네랄약물 C20,21 전해질・미네랄약물 C1,22 백신, 독소이트 C20,21 전해질・미네랄약물 C1,23 호르몬제, 호르몬 길항제, 피임약 C20,23 호르몬제, 호르몬 길항제, 피임약 C1,24 천식약 C20,04 천식약 C1,24 천식약 C20,04 천식약 C1,25 항리스타민제 C20,05 항리스타민제 C1,25 항리스타민제 C20,09 기타 영시된(인체용) 약물 C2,1 제초제 C21,04,03 집초제가제, 제초제 C2,2 기타 시크라르아 C21,04,15 합서제 피레스로이트 C21,04,18 기타 상충제 C21,04,18 기타 상충제<	C1.7	감기・기침약	C20.03 감기약
C1,10 이노제 C20,10 이노제 C1,11 형용고제 C20,11 항용고제 C1,12 소화제ㆍ위장약 C20,12 소화제ㆍ위장약 C1,13 전단용 약물 C20,13 전단용 약물 C1,14 항암제 C20,14 항암제 C1,15 미취약 C20,15 미취약 C1,16 근이완제 C20,16 근이완제 C1,17 미약일항제 C20,17 마약길항제 C1,18 눈・귀・코・인후약 C20,18 눈・귀・코・인후약 C1,19 국소적 약물 C20,19 국소적 약물 C1,20 비타민・식이보충제 C20,20 비타민・식이보충제 C1,21 전해결·미네릴약물 C20,21 전해결·미네릴약물 C1,22 백신, 톡소이트 C20,22 백신, 톡소이트 C1,23 호르몬제, 호르몬 길항제, 피임약 C20,22 백신, 톡소이트 C1,24 천식약 C20,04 천식약 C1,24 천식약 C20,04 천식약 C1,24 천식약 C20,04 천식약 C1,25 항하스타민제 C20,05 항하스타민제 C1,98 기타 치료약물 C20,99 미상의(인체용) 약물 C2,1 제초제 C21,04,30 잡초제거제, 제초제 C2,2,1 제소제 C21,04,10 기타 유기인산화합물	C1.8	항생제 · 항균제	C20.02 항생제·항균제
C1.11 항응고제 C20.11 항응고제 C1.12 소화제ㆍ위장약 C20.12 소화제ㆍ위장약 C1.13 진단용 약물 C20.13 진단용 약물 C1.14 항암제 C20.15 마취약 C1.15 마취약 C20.16 근이완제 C1.16 근이완제 C20.16 근이완제 C1.17 마약길항제 C20.17 마약길항제 C1.18 눈・귀・코・인후약 C20.18 눈・귀・코・인후약 C1.19 국소적 약물 C20.19 국소적 약물 C1.20 비타민・식이보충제 C20.20 비타민・식이보충제 C1.21 전해질・미네탈악물 C20.21 전해질・미네탈악물 C1.22 백신、톡소이드 C20.22 백신, 톡소이드 C1.23 호르몬제, 호르몬 길항제, 피임약 C20.23 호르몬제, 호르몬 길항제, 피임약 C1.24 천식약 C20.04 천식약 C1.25 항히스타민제 C20.05 항히스타민제 C1.25 항히스타민제 C20.05 항히스타민제 C1.98 기타 치료약물 C20.99 미상의(인체용) 약물 C2.1 제초如 C21.04.30 집초제계, 제초제 C2.2.1 제초제 C21.04.10 기타 실충제	C1.9	각성제 · 습관성약품(street drugs)	C20.24 불법 제조된 약물
C1,12 소화제 · 위장약 C20,12 소화제 · 위장약 C1,13 진단용 약물 C20,13 진단용 약물 C1,14 항암제 C20,14 항암제 C1,15 마취약 C20,15 미취약 C1,16 근이완제 C20,16 근이완제 C1,17 마약길항제 C20,17 마약길항제 C1,18 눈・귀・코・인후약 C20,18 눈・귀・코・인후약 C1,19 국소적 약물 C20,19 국소적 약물 C1,20 비타민・식이보충제 C20,20 비타민・식이보충제 C1,21 전해질・미네릴약물 C20,21 전해질・미네릴약물 C1,21 전해질・미네릴약물 C20,22 백신, 톡소이드 C1,22 백신, 톡소이트 C20,22 백신, 톡소이트 C1,23 호르몬제, 호르몬 길항제, 피임약 C20,22 핵심, 투소이트 C1,24 천식약 C20,04 천식약 C1,24 천식약 C20,05 항리스타민제 C1,25 항히스타민제 C20,05 항리스타민제 C1,28 기타 치료약물 C20,05 항리스타민제 C1,38 기타 치료약물 C20,99 미상의(안체용) 약물 C2,1 제초제 C21,04,10 기타 유기인산화합물 C2,1 제가리스로이트 C21,04,15 항상제 피리스로이트 C2,04 기타 농약 <t< td=""><td>C1.10</td><td>이뇨제</td><td>C20.10 이뇨제</td></t<>	C1.10	이뇨제	C20.10 이뇨제
C1.13 진단용 약물 C20.14 한암제 C1.14 항암제 C20.14 항암제 C1.15 마취약 C20.15 마취약 C1.16 근이완제 C20.16 근이완제 C1.17 마약길항제 C20.17 마약길항제 C1.18 눈・귀・코・인후약 C20.18 눈・귀・코・인후약 C1.19 국소적 약물 C20.19 국소적 약물 C1.20 비타민・식이보충제 C20.20 비타민・식이보충제 C1.21 전해질・미네릴약물 C20.21 전해질・미네릴약물 C1.22 백신, 톡소이트 C20.22 백신, 톡소이트 C1.23 호르몬제, 호르몬 길항제, 피임약 C20.23 호르몬제, 호르몬 길항제, 피임약 C1.24 천식약 C20.04 천식약 C1.25 항히스타민제 C20.05 항히스타민제 C1.98 기타 치료약물 C20.08 기타 명시된(인체용) 약물 C2.1 제초제 C21.04,30 잡초제가제, 제초제 C2.1 제초제 C21.04,30 잡초제가제, 제초제 C2.2 피레스로이트 C21.04,15 합성제 피레스로이트 C2.2.3 카바메이트 C21.04,18 기타 살충제 C2.2.4 기타 농약 C21.04,05 쥐약, 살서제 C2.3 상세 C21.04,05 쥐약, 살서제 C2.5 미상 농약	C1 _. 11	항응고제	C20.11 항응고제
C1.14 항암제 C20,14 항암제 C1.15 미취약 C20,15 미취약 C1.16 근이완제 C20,16 근이완제 C1.17 미약일항제 C20,17 미약일항제 C1.18 눈・귀・코・인후약 C20,18 눈・귀・코・인후약 C1.19 국소적 약물 C20,19 국소적 약물 C1.20 비타민・식이보충제 C20,20 비타민・식이보충제 C1.21 전해질・미네랄약물 C20,21 전해질・미네랄약물 C1.22 백신, 톡소이드 C20,22 백신, 톡소이드 C1.23 호르몬제, 호르몬 길항제, 피임약 C20,23 호르몬제, 호르몬 길항제, 피임약 C1.24 천식약 C20,04 천식약 C1.25 항히스타민제 C20,05 항히스타민제 C1.25 항히스타민제 C20,05 항히스타민제 C1.28 기타 청모(인체용) 약물 (한약 재료 한약, 환약 등) C1.29 미상 치료약물 C20,93 기타 위된(인체용) 약물 C2.1 제초제 C21,04,30 잡초제거제, 제초제 C2.2.1 제가로에 C21,04,15 합성제 패레스로이드 C2.2.3 카바메이트 C21,04,18 기타 명시된 살충제, 제초제 C2.2 기타 농약 C21,04,98	C1.12	소화제 · 위장약	C20.12 소화제 · 위장약
C1.15 미취약 C20.15 미취약 C1.16 근이완제 C20.16 근이완제 C1.17 미약일항제 C20.17 미약일항제 C1.18 눈・귀・코・인후약 C20.18 눈・귀・코・인후약 C1.19 국소적 약물 C20.19 국소적 약물 C1.20 비타민・식이보충제 C20.21 전해질・미네랄약물 C1.21 전해질・미네랄약물 C20.21 전해질・미네랄약물 C1.22 백신, 톡소이트 C20.22 백신, 톡소이트 C1.23 호르몬제, 호르몬 길항제, 피임약 C20.23 호르몬제, 호르몬 길항제, 피임약 C1.24 천식약 C20.04 천식약 C1.25 항히스타민제 C20.05 항히스타민제 C1.26 항히스타민제 C20.98 기타 명시된(인체용) 약물 (한약 재료 한약, 환약 등) C20.99 미상인(인체용) 약물 C2.1 제초제 C21.04,30 잡초제거제, 제초제 C2.2.1 제시조제 C21.04,10 기타 유기인산화합물 C2.2.1 제시소로이트 C21.04,15 합성제 C2.2.2 기바메이트 C21.04,18 기타 실충제 C2.3 살서제 <td< td=""><td>C1_.13</td><td>진단용 약물</td><td>C20.13 진단용 약물</td></td<>	C1 _. 13	진단용 약물	C20.13 진단용 약물
C1.16 근이완제 C20.16 근이완제 C1.17 미약길항제 C20.17 미약길항제 C1.18 눈・귀・코・인후약 C20.18 눈・귀・코・인후약 C1.19 국소적 약물 C20.19 국소적 약물 C1.20 비타민・식이보충제 C20.20 비타민・식이보충제 C1.21 전해질・미네릴약물 C20.21 전해질・미네릴약물 C1.22 백신, 톡소이드 C20.22 백신, 톡소이드 C1.23 호르몬제, 호르몬 길항제, 피임약 C20.23 호르몬제, 호르몬 길항제, 피임약 C1.24 천식약 C20.04 천식약 C1.25 항히스타민제 C20.05 항히스타민제 C1.98 기타 치료약물 C20.98 기타 명시된(인체용) 약물 C2.19 미상되(인체용) 약물 (한약 재료 한약, 환약 등) C1.99 미상 치료약물 C20.99 미상되(인체용) 약물 C2.1 유기인계 C21.04.10 기타 유기인신화합물 C2.2 피레스로이트 C21.04.15 합성제 피레스로이트 C2.2 카바메이트 C21.04.18 기타 실충제 C2.3 살서제 C21.04.18 기타 명시된 실충제, 제초제 C2.4 기타 농약 C21.04.99 미상의 실충제, 제초제 C3.1 일산화탄소	C1.14	항암제	C20.14 항암제
C1.17 마약길항제 C20.17 마약길항제 C1.18 눈・귀・코・인후약 C20.18 눈・귀・코・인후약 C1.19 국소적 약물 C20.19 국소적 약물 C1.20 비타민・식이보충제 C20.20 비타민・식이보충제 C1.21 전해질・미네랄약물 C20.21 전해질・미네랄약물 C1.22 백신, 톡소이트 C20.22 백신, 톡소이트 C1.23 호르몬제, 호르몬 길항제, 피임약 C20.23 호르몬제, 호르몬 길항제, 피임약 C1.24 천식약 C20.04 천식약 C1.25 항히스타민제 C20.05 항히스타민제 C1.98 기타 치료약물 C20.98 기타 명시된(인체용) 약물 C2.1 제초제 C2.1 제초제 C2.1 제초제 C2.2.1 유기인계 C2.2.2 피레스로이트 C2.2.3 카바메이트 C2.2.4 기타 살충제 C2.3 살서제 C2.4 기타 농약 C2.5 미상 농약 C2.1 0.4.18 기타 살충제 C2.1 0.4.99 미상의 살충제, 제초제 C2.1 0.4.99 미상의 살충제, 제초제 C2.5 미상 농약 C3.1 일산화탄소 C3.2 기타 가스 C3.2 기타 가스	C1 _. 15	마취약	C20.15 마취약
C1.18 눈・귀・코・인후약 C20.18 눈・귀・코・인후약 C1.19 국소적 약물 C20.19 국소적 약물 C1.20 비타민・식이보충제 C20.20 비타민・식이보충제 C1.21 전해질・미네릴약물 C20.21 전해질・미네릴약물 C1.22 백신, 톡소이트 C20.22 백신, 톡소이트 C1.23 호르몬제, 호르몬 길항제, 피임약 C20.23 호르몬제, 호르몬 길항제, 피임약 C1.24 천식약 C20.04 천식약 C1.25 항히스타민제 C20.05 항히스타민제 C1.98 기타 치료약물 C20.98 기타 명시된(인체용) 약물 C2.1 제초적 C21.04.30 집초제거제, 제초제 C2.1 제가지 C21.04.30 집초제거제, 제초제 C2.2.1 유기인계 C21.04.15 합성제 피레스로이드 C2.2.2 피레스로이트 C21.04.15 합성제 C2.2.3 카바메이트 C21.04.18 기타 실충제 C2.2 기타 상충제 C21.04.98 기타 명시된 살충제, 제초제 C2.3 실서제 C21.04.98 기타 명시된 살충제, 제초제 C2.5 미상 농약 C21.04.99 미상의 인화를 사제 <td>C1.16</td> <td>근이완제</td> <td>C20.16 근이완제</td>	C1.16	근이완제	C20.16 근이완제
C1.19 국소적 약물 C20.19 국소적 약물 C1.20 비타민ㆍ식이보충제 C20.20 비타민ㆍ식이보충제 C1.21 전해질ㆍ미네랄약물 C20.21 전해질ㆍ미네랄약물 C1.22 백신, 톡소이드 C20.22 백신, 톡소이드 C1.23 호르몬제, 호르몬 길항제, 피임약 C20.23 호르몬제, 호르몬 길항제, 피임약 C1.24 천식약 C20.04 천식약 C1.25 항히스타민제 C20.05 항히스타민제 C1.98 기타 치료약물 C20.98 기타 명시된(인체용) 약물 (한약 재료 한약, 환약 등) C21.04.30 잡초제거제, 제초제 C2.1. 제초제 C21.04.30 잡초제거제, 제초제 C2.2.1 유기인계 C21.04.10 기타 유기인산화합물 C2.2.2 피레스로이드 C21.04.15 합성제 피레스로이드 C2.2.3 카바메이트 C21.04.18 기타 살충제 C2.2.4 기타 살충제 C21.04.18 기타 살충제 C2.3 살서제 C21.04.98 기타 명시된 살충제, 제초제 C2.5 미상 농약 C21.04.99 미상의 살충제, 제초제 C3.1 일산화탄소 C21.04.90 기타 탄산가스 C3.2 기타 가스 C21.98.05 기타 탄산가스	C1 _. 17	마약길항제	C20.17 마약길항제
C1.20 비타민 · 식이보충제 C20.20 비타민 · 식이보충제 C1.21 전해질 · 미네랄약물 C20.21 전해질 · 미네랄약물 C1.22 백신, 톡소이트 C20.22 백신, 톡소이트 C1.23 호르몬제, 호르몬 길항제, 피임약 C20.23 호르몬제, 호르몬 길항제, 피임약 C1.24 천식약 C20.04 천식약 C1.25 항히스타민제 C20.05 항히스타민제 C1.98 기타 치료약물 C20.98 기타 명시된(인체용) 약물 C2.1 제초제 C21.04.30 잡초제거제, 제초제 C2.1 제초제 C21.04.30 잡초제거제, 제초제 C2.2.1 유기인계 C21.04.10 기타 유기인산화합물 C2.2.2 피레스로이트 C21.04.15 합성제 피레스로이트 C2.2.3 카바메이트 C21.04.18 기타 살충제 C2.2.4 기타 살충제 C21.04.98 기타 명시된 살충제, 제초제 C2.3 살서제 C21.04.99 미상의 살충제, 제초제 C2.5 미상 농약 C21.04.99 미상의 살충제, 제초제 C3.1 일산화탄소 C21.98.01 자동차 배기가스 C3.2 기타 가스 C21.98.05 기타 탄산가스	C1 _. 18	눈・귀・코・인후약	C20.18 눈·귀·코·인후약
C1.21 전해질 · 미네랄약물 C20.21 전해질 · 미네랄약물 C1.22 백신, 톡소이드 C20.22 백신, 톡소이드 C1.23 호르몬제, 호르몬 길항제, 피임약 C20.23 호르몬제, 호르몬 길항제, 피임약 C1.24 천식약 C20.04 천식약 C1.25 항히스타민제 C20.05 항히스타민제 C1.98 기타 치료약물 C20.98 기타 명시된(인체용) 약물 C1.99 미상 치료약물 C20.99 미상의(인체용) 약물 C2.1 제초제 C21.04.30 잡초제거제, 제초제 C2.2.1 유기인계 C21.04.10 기타 유기인산화합물 C2.2.2 피레스로이트 C21.04.15 합성제 피레스로이트 C2.2.3 카바메이트 C21.04.18 기타 살충제 C2.2.4 기타 살충제 C21.04.18 기타 살충제 C2.3 살서제 C21.04.98 기타 명시된 살충제, 제초제 C2.5 미상 농약 C21.04.99 미상의 살충제, 제초제 C3.1 일산화탄소 C21.98.01 자동차 배기가스 C3.2 기타 가스 C21.98.05 기타 탄산가스	C1 _. 19	국소적 약물	C20.19 국소적 약물
C1,22백신, 톡소이드C20,22 백신, 톡소이드C1,23호르몬제, 호르몬 길항제, 피임약C20,23 호르몬제, 호르몬 길항제, 피임약C1,24천식약C20,04 천식약C1,25항히스타민제C20,05 항히스타민제C1,98기타 치료약물C20,98 기타 명시된(인체용) 약물 (한약 재료 한약, 환약 등)C1,99미상 치료약물C20,99 미상의(인체용) 약물C2,1제초제C21,04,30 잡초제거제, 제초제C2,21유기인계C21,04,10 기타 유기인산화합물C2,22피레스로이드C21,04,15 합성제 피레스로이드C2,23카바메이트C21,04,18 기타 살충제C2,24기타 살충제C21,04,18 기타 살충제C2,3살서제C21,04,98 기타 명시된 살충제, 제초제C2,4기타 농약C21,04,98 기타 명시된 살충제, 제초제C2,5미상 농약C21,04,99 미상의 살충제, 제초제C3,1일산화탄소C21,98,01 자동차 배기가스 C21,98,03 일산화탄소C3,2기타 가스C21,98,05 기타 탄산가스	C1.20	비타민・식이보충제	C20.20 비타민 · 식이보충제
C1.23호르몬제, 호르몬 길항제, 피임약C20.23 호르몬제, 호르몬 길항제, 피임약C1.24천식약C20.04 천식약C1.25항히스타민제C20.05 항히스타민제C1.98기타 치료약물C20.98 기타 명시된(인체용) 약물 (한약 재료 한약, 환약 등)C1.99미상 치료약물C20.99 미상의(인체용) 약물C2.1제초제C21.04.30 잡초제거제, 제초제C2.2.1유기인계C21.04.10 기타 유기인산화합물C2.2.2피레스로이드C21.04.15 합성제 피레스로이드C2.2.3카바메이트C21.04.18 기타 실충제C2.2.4기타 살충제C21.04.18 기타 실충제C2.3살서제C21.04.98 기타 명시된 살충제, 제초제C2.5미상 농약C21.04.99 미상의 살충제, 제초제C3.1일산화탄소C21.98.01 자동차 배기가스 C21.98.03 일산화탄소C3.2기타 가스C21.98.05 기타 탄산가스	C1,21	전해질·미네랄약물	C20.21 전해질·미네랄약물
C1.24천식약C20.04천식약C1.25항히스타민제C20.05항히스타민제C1.98기타 치료약물C20.98기타 명시된(인체용) 약물 (한약 재료 한약, 환약 등)C1.99미상 치료약물C20.99미상의(인체용) 약물C2.1제초제C21.04.30집초제거제, 제초제C2.1유기인계C21.04.10기타 유기인산화합물C2.2피레스로이트C21.04.15합성제 피레스로이트C2.2피레스로이트C21.04.18기타 실충제C2.4기타 실충제C21.04.18기타 실충제C2.3실서제C21.04.05쥐약, 실서제C2.4기타 농약C21.04.98기타 명시된 실충제, 제초제C2.5미상 농약C21.04.99미상의 실충제, 제초제C3.1일산화탄소C21.98.01자동차 배기가스 C21.98.03일산화탄소C3.2기타 가스C21.98.05기타 탄산가스	C1.22	백신, 톡소이드	C20.22 백신, 톡소이드
C1.25 항히스타민제 C20.05 항히스타민제 C1.98 기타 치료약물 C20.98 기타 명시된(인체용) 약물 (한약 재료 한약, 환약 등) C20.99 미상의(인체용) 약물 C2.1 제초제 C21.04.30 잡초제거제, 제초제 C2.2.1 유기인계 C21.04.15 합성제 피레스로이드 C2.2.2 피레스로이드 C21.04.15 합성제 피레스로이드 C2.2.3 카바메이트 C21.04.18 기타 실충제 C2.2.4 기타 살충제 C21.04.18 기타 실충제 C2.3 살서제 C21.04.95 쥐약, 살서제 C2.4 기타 농약 C21.04.98 기타 명시된 살충제, 제초제 C2.5 미상 농약 C21.04.99 미상의 살충제, 제초제 C3.1 일산화탄소 C21.98.03 일산화탄소 C3.2 기타 가스 C21.98.03 기타 탄산가스	C1,23	호르몬제, 호르몬 길항제, 피임약	C20.23 호르몬제, 호르몬 길항제, 피임약
C1.98기타 치료약물C20.98 기타 명시된(인체용) 약물 (한약 재료 한약, 환약 등)C1.99미상 치료약물C20.99 미상의(인체용) 약물C2.1제초제C21.04.30 잡초제거제, 제초제C2.2.1유기인계C21.04.10 기타 유기인산화합물C2.2.2피레스로이드C21.04.15 합성제 피레스로이드C2.2.3카바메이트C21.04.18 기타 실충제C2.4기타 살충제C21.04.18 기타 실충제C2.3살서제C21.04.05 쥐약, 살서제C2.4기타 농약C21.04.98 기타 명시된 살충제, 제초제C3.1일산화탄소C21.98.01 자동차 배기가스 C21.98.03 일산화탄소C3.2기타 가스C21.98.05 기타 탄산가스	C1.24	천식약	C20.04 천식약
(한약 재료 한약, 환약 등) C1.99 미상 치료약물 C2.1. 제초제 C21.04.30 잡초제거제, 제초제 C22.1 유기인계 C21.04.10 기타 유기인산화합물 C2.2 피레스로이드 C2.23 카바메이트 C2.24 기타 살충제 C2.24 기타 살충제 C2.3 살서제 C2.3 살서제 C2.4 기타 농약 C2.4 기타 농약 C2.5 미상 농약 C2.5 미상 농약 C2.64 기타 가스 C2.86 기타 가스 C2.98.03 일산화탄소 C21.98.05 기타 탄산가스	C1.25	항히스타민제	C20.05 항히스타민제
C1.99미상 치료약물C20.99 미상의(인체용) 약물C2.1제초제C21.04.30 잡초제거제, 제초제C2.2.1유기인계C21.04.10 기타 유기인산화합물C2.2.2피레스로이드C21.04.15 합성제 피레스로이드C2.2.3카바메이트C21.04.18 기타 살충제C2.2.4기타 살충제C21.04.18 기타 살충제C2.3살서제C21.04.05 쥐약, 살서제C2.4기타 농약C21.04.98 기타 명시된 살충제, 제초제C2.5미상 농약C21.04.99 미상의 살충제, 제초제C3.1일산화탄소C21.98.01 자동차 배기가스 C21.98.03 일산화탄소C3.2기타 가스C21.98.05 기타 탄산가스	C1.98	기타 치료약물	C20.98 기타 명시된(인체용) 약물
C2.1.제초제C21.04.30 잡초제거제, 제초제C2.2.1유기인계C21.04.10 기타 유기인산화합물C2.2.2피레스로이드C21.04.15 합성제 피레스로이드C2.2.3카바메이트C21.04.18 기타 실충제C2.2.4기타 살충제C21.04.18 기타 실충제C2.3살서제C21.04.05 쥐약, 살서제C2.4기타 농약C21.04.98 기타 명시된 살충제, 제초제C2.5미상 농약C21.04.99 미상의 살충제, 제초제C3.1일산화탄소C21.98.01 자동차 배기가스 C21.98.03 일산화탄소C3.2기타 가스C21.98.05 기타 탄산가스			(한약 재료 한약, 환약 등)
C2.2.1유기인계C21.04.10 기타 유기인산화합물C2.2.2피레스로이드C21.04.15 합성제 피레스로이드C2.2.3카바메이트C21.04.18 기타 살충제C2.2.4기타 살충제C21.04.18 기타 살충제C2.3살서제C21.04.05 쥐약, 살서제C2.4기타 농약C21.04.98 기타 명시된 살충제, 제초제C2.5미상 농약C21.04.99 미상의 살충제, 제초제C3.1일산화탄소C21.98.01 자동차 배기가스 C21.98.03 일산화탄소C3.2기타 가스C21.98.05 기타 탄산가스	C1.99	미상 치료약물	C20.99 미상의(인체용) 약물
C2.2.2피레스로이드C21.04.15 합성제 피레스로이드C2.2.3카바메이트C21.04.18 기타 살충제C2.2.4기타 살충제C21.04.18 기타 살충제C2.3살서제C21.04.05 쥐약, 살서제C2.4기타 농약C21.04.98 기타 명시된 살충제, 제초제C2.5미상 농약C21.04.99 미상의 살충제, 제초제C3.1일산화탄소C21.98.01 자동차 배기가스 C21.98.03 일산화탄소C3.2기타 가스C21.98.05 기타 탄산가스	C2.1.	제초제	C21.04.30 잡초제거제, 제초제
C2.2.3카바메이트C21.04.18 기타 살충제C2.2.4기타 살충제C21.04.18 기타 살충제C2.3살서제C21.04.05 쥐약, 살서제C2.4기타 농약C21.04.98 기타 명시된 살충제, 제초제C2.5미상 농약C21.04.99 미상의 살충제, 제초제C3.1일산화탄소C21.98.01 자동차 배기가스 C21.98.03 일산화탄소C3.2기타 가스C21.98.05 기타 탄산가스	C2.2.1	유기인계	C21.04.10 기타 유기인산화합물
C2.2.4기타 살충제C21.04.18 기타 살충제C2.3살서제C21.04.05 쥐약, 살서제C2.4기타 농약C21.04.98 기타 명시된 살충제, 제초제C2.5미상 농약C21.04.99 미상의 살충제, 제초제C3.1일산화탄소C21.98.01 자동차 배기가스 C21.98.03 일산화탄소C3.2기타 가스C21.98.05 기타 탄산가스	C2.2.2	피레스로이드	C21.04.15 합성제 피레스로이드
C2.3살서제C21.04.05 쥐약, 살서제C2.4기타 농약C21.04.98 기타 명시된 살충제, 제초제C2.5미상 농약C21.04.99 미상의 살충제, 제초제C3.1일산화탄소C21.98.01 자동차 배기가스 C21.98.03 일산화탄소C3.2기타 가스C21.98.05 기타 탄산가스	C2.2.3	카바메이트	C21.04.18 기타 살충제
C2.4기타 농약C21.04.98 기타 명시된 살충제, 제초제C2.5미상 농약C21.04.99 미상의 살충제, 제초제C3.1일산화탄소C21.98.01 자동차 배기가스 C21.98.03 일산화탄소C3.2기타 가스C21.98.05 기타 탄산가스	C2.2.4	기타 살충제	C21.04.18 기타 살충제
C2.5미상 농약C21.04.99 미상의 살충제, 제초제C3.1일산화탄소C21.98.01 자동차 배기가스C21.98.03일산화탄소C3.2기타 가스C21.98.05 기타 탄산가스	C2.3	살서제	C21.04.05 쥐약, 살서제
C3.1일산화탄소C21,98,01자동차 배기가스C21,98,03일산화탄소C3.2기타 가스C21,98,05기타 탄산가스			C21.04.98 기타 명시된 살충제, 제초제
C21,98.03 일산화탄소 C3,2 기타 가스 C21,98.05 기타 탄산가스		미상 농약	C21.04.99 미상의 살충제, 제초제
C3,2 기타 가스 C21,98,05 기타 탄산가스	C3 _. 1	일산회탄소	C21,98,01 자동차 배기가스
			C21,98,03 일산화탄소
C4.1.3 락스 C21.05.15 표백제, 흡수제			
	C4.1.3	락스	C21.05.15 표백제, 흡수제

중독물질 명칭

정		의	중독을 유발한	중독을 유발한 물질의 일반 또는 상품명						
용		도	중독 손상을 일	으킨 중독물질의 7	자료를 수집하C	여 중독예방 정책수립	l 및 평가의 기초자료로 활용			
변	수	명	중독물질 명칭(F	PO_NAME)						
유		형	문자	문자 필수 여부 필수 조사시작일 2008. 10. 1.(심층) 2011. 1. 1.(공통)						
코		드	내용입력(예: 부	내용입력(예: 부루펜, 옥시크린, 복어 등)						
1. 손상기전(MECH)이 'C6.1n 중독'인 경우는 반드시 입력 질 관 리 지 침 2. 내원 시 중독물질이 미상인 경우에는 입원 등 추후 밝혀진 내용으로 상세하게 입력 3. 중독물질의 명칭은 일반명 또는 상품명으로 입력							으로 상세하게 입력			

중독물질(주성분)

정	의	중독을 유발한	중독을 유발한 물질의 주성분					
용	도	중독 손상을 일	으킨 중독물질의 7	자료를 수집하(여 중독예방 정책수립	및 평가에 기초자료로 활용		
변수	: 명	중독물질(주성분)(PO_COMP)					
유	형	문자	필수여부	비필수	조 사 시 작 일	2006. 8. 1.(심층) 2011. 1. 1.(공통)		
코	드	내용입력						
질 관 리	l 지 침		1. 손상기전(MECH)이 'C6.1n' 중독인 경우 반드시 입력 2. 여러 성분이 혼합되어 있는 액체일 경우에는 주 독성 증상을 일으킨 물질을 입력하고, 주 물질의 농도를 기재					

자해/자살 위험요인

정		의	자해/자살을 하게 된 직접적인 동기 또는 이유						
용		도	자해/지살의 동기 또는 이유를 파악하여	자해/자살의 동기 또는 이유를 파악하여 추후 자해/자살의 발생이나 재발을 방지할 수 있는 예방대책 마련					
변	수	명	자해/자살 위험요인(S_FACTOR1~S_	FACTOR2)					
유		형	문자 필수여부 필	조사시작일 2006. 8. 1.(심층) 2011. 1. 1.(공통) 2019. 1. 1.(변수명, 코드변경) 2022. 7. 1.(코드변경)					
코		<u> </u>	C1 가족, 친구와의 갈등 C1.1 배우자 C1.2 부모 C1.3 자녀 C1.4 기타 가족 C1.5 친구 C1.6 연인 C2 가족 C2.1 배우자 C2.2 자식 C2.3 부모 C2.4 기타 가족 C2.5 친구 C2.6 연인 C2.7 유명인 또는 연예인 C2.8 반려동물 C3 건강문제 C3.1 본인 C3.2 배우자 C3.3 자식 C3.4 부모 C3.5 기타 가족 C3.6 친구 C3.7 기타	C4 정신과국 문제 C4.1 약물중독 C4.2 우울증 C4.4 미상 C4.5 적응장애 C5 ** ** ** ** ** ** ** ** ** ** ** ** **					

	C98 기타 C99 미상
질 관 리 지 침	1. 손상의도성(내원시유)(INTENT)이 'C2 자해·지살'인 경우는 반드시 입력 2. 위험요인이 2개 이상인 경우 주된 위험요인(S_FACTOR1) 1개와 부가 위험요인(S_FACTOR2) 1개만 입력 3. 부가 위험요인2(S_FACTOR2)에 'C99 미상' 입력 시 오류 4. C1.1 배우자이면서 연령이 0~19세인 경우, C4.2 우울증이면서 연령이 0~9세인 경우 오류(의도성(INTENT) 또는 나이(AGE) 확인 필요)

자해/자살 위험요인 기타내용

정	의	자해/자살을 하기	자해/자살을 하게 된 직접적인 동기 또는 이유					
용	도	자해/자살의 동기 마련	자해/자살의 동기 또는 이유를 파악하여 추후 자해/자살의 발생이나 재발을 방지할 수 있는 예방대책 미련					
변 수	명	자해/자살 위험의	요인 기타내용(S_F	ACTOR_ETC~	S_FACTOR2_ETC)			
e H	형	문자	필수여부	-	조 사 시 작 일	2008. 10. 1.(심층) 2011. 1. 1.(공통)		
코	드	내용입력						
질 관 리 :	디 침	1. 자해/자살 위험요인(S_FACTOR1~S_FACTOR2)이 'C98 기타'인 경우에 자해/자살 위험요인 기타 내용을 구체적으로 입력 2. 자해/자살 위험요인이 'C98 기타'에서 자해인 경우 반드시 '자해'로 입력						

자해/자살 시도 과거력

정		의	자해/자살 시도	자해/자살 시도 과거력 빈도							
용		도	자해/자살 시도	자해/자살 시도 과거력 유무에 따른 위험도 판별 및 자해/자살 예방대책 미련							
변	수	명	자해/자살 시도	과거력(S_HISTOR	RY_NUM)						
유		형	문자	문자 필수 여부 필수 조사시작일 2006. 8. 1.(심층) 2011. 1. 1.(공통) 2019. 1. 1.(변수명, 코드변							
코		드	C0 없음 C1 1회 C2 2회 이상 C9 미상								
질 관	리 ㅈ	침	1. 손상의도성(내원사유)(INTENT)이 'C2 자해/자살'인 경우는 반드시 입력 2. 자해/자살 위험요인 기타내용(S_FACTOR_ETC)이 ' 자해'인 경우도 입력								

자해/자살 시도 과거력 횟수

정		의	자해/자살 시도	자해/자살 시도 과거력 빈도 횟수							
용		도	자해/자살 시도	자해/자살 시도 과거력 유무에 따른 위험도 판별 및 자해/자살 예방대책 마련							
변 <i>-</i>	수	명	자해/자살 시도	자해/자살 시도 과거력(S_HISTORY_ETC)							
유		형	숫자	필수여부	-	조사시작일	2022. 7. 1.				
코		드	번	t							
질 관 i	리 지	침	1. 자해/자살 시도 과거력이 2회 이상인 경우 반드시 입력 2. 2 ~ 99 이외의 숫자 오류 3. 정확한 횟수를 알 수 없는 경우 '99'로 입력								

주증상(1~3)

정		의	손상으로 인한 환지	손상으로 인한 환자의 내원 시 주증상						
용		도	손상 후 내원 시 주	손상 후 내원 시 주증상 대한 자료를 수집하여 중증도 분석에 활용						
변	수	명	주증상(SYMPU1~S	주증상(SYMPU1~SYMPU3)						
유		형	문자 필수여부 비필수 조사시작일 2008, 10, 1,							
코		드	UMLS(The Unified Medical Language System) 코드							
1. 주된 주증상부터 주증상1, 2, 3에 차례대로 입2. 최대 3개까지 입력 가능3. UMLS 코드 중 환자의 주요호소증상과 부합히4.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의 질병이환 및 사망의 요입력 제외5. UMLS 코드는 '통합 응급의료정보 인트라넷' 통						<u>(</u> V, W, X, Y)에 해당				

수축기 혈압

정		의	손상환자의 내원 시	손상환자의 내원 시 수축기 혈압							
용		도	손상 후 내원 시 수	손상 후 내원 시 수축기 혈압에 대한 자료를 수집하여 중증도 분석에 활용							
변	수	명	수축기 혈압(CM_SF	P)							
유		형	숫자	숫자 필수 여부 필수 조사시작일 2008, 10, 1, 2016, 1, 1,(필수)							
코		드	(측정치)mmHg	(측정치)mmHg							
지 수축기 혈압은 응급실 내원 시 첫 번째 측정한 결과를 30이상~300미만 범위에서 입력 → 30미만, 300이상 오류 2. 내원 당시 직접 측정한 값으로 측정 가능한 경우 모든 연령을 조사하여 입력 3. 만 7세 미만인 경우 측정불기를 인정하고 7세 이상부터는 수축기 혈압을 반드시 입력 4. 측정불가 또는 비대상인 경우는 '-1'로 입력 * 예시) 7세 미만이면서 측정불기인 경우, 환자가 거부하거나 측정불기의 경우 5. 응급실 도착 시 사망한 환자(D.O.A)의 경우는 수축기 혈압을 '0'으로 입력 6. 수축기 혈압을 알 수 없는 경우 '999'로 입력											

이완기 혈압

정		의	손상환자의 내원 시 이완기 혈압								
용		도	손상 후 내원 시 0	손상 후 내원 시 이완기 혈압에 대한 자료를 수집하여 중증도 분석에 활용							
변	수	명	이완기 혈압(CM_DR	P)							
유		형	숫자	숫자 필수여부 필수 조사시작일 2008. 10. 1. 2016. 1. 1.(필수)							
코		드	(측정치)mmHg								
2 관 리 지 침 1. 이완기 혈압은 응급실 내원 시 첫 번째 측정한 결과를 11이상~200미만 범약 → 10이하 오류 2. 내원 당시 직접 측정한 값으로 측정 가능한 경우 모든 연령을 조사하여 압력 3. 만 7세 미만인 경우 측정불가를 인정, 7세 이상부터는 압력 필수 4. 측정불가 또는 비대상 '-1'로 압력 * 예시) 7세 미만이면서 측정불가인 경우, 환자가 거부하거나 측정불가의 경역 5. 응급실 도착 시 사망한 환자(D.O.A)의 경우 '0'으로 압력 6. 이완기 혈압을 알 수 없는 경우 '999'로 압력						부 입력 					

분당 맥박 수

정		의	손상환자의 내원 시	손상환자의 내원 시 분당 맥박 수						
용		도	손상 후 내원 시 및	손상 후 내원 시 맥박 수에 대한 자료를 수집하여 중증도 분석에 활용						
변	수	명	분당 맥박 수(CM_F	PC)						
유		형	숫자	숫자 필수 여부 필수 조사시작일 2008, 10, 1, 2016, 1, 1,(필수)						
코		드	(맥박 수)회/분	(맥박 수)회/분						
질 괸	1. 분당 맥박 수는 응급실 내원 시 첫 번째 측정한 결과를 30이상~300미만 범위에서 입력 → 30미만, 300이상 오류 2. 내원 당시 직접 측정한 값으로 측정 가능한 경우 모든 연령을 조사하여 입력 3. 만 7세 미만인 경우 측정불가를 인정, 7세 이상부터는 입력 필수 4. 측정불가 또는 비대상 '-1'로 입력 * 예시) 7세 미만이면서 측정불기인 경우, 환자가 거부하거나 측정불기의 경우 5. 응급실 도착 시 사망한 환자(D.O.A)의 경우 '0'으로 입력 6. 미상인 경우 '999'로 입력									

분당 호흡 수

정		의	손상환자의 내원 시	손상환자의 내원 시 분당 호흡 수						
용		도	손상 후 내원 시 호	손상 후 내원 시 호흡 수에 대한 자료를 수집하여 중증도 분석에 활용						
변	수	명	분당 호흡 수(CM_E	BREATH)						
유		형	숫자 필수 여부 필수 조사시작일 2008. 10. 1. 2016. 1. 1.(필수)							
코		드	(호흡 수)/분	(호흡 수)/분						
지 보다 기 시 시 분당 호흡 수는 응급실 내원 시 첫 번째로 측정한 결과를 5이상-50미만 범위에서 입력 → 4이하, 50이상 오류 2. 내원 당시 직접 측정한 값으로 측정 가능한 경우 모든 연령을 조사하여 입력 3. 만 7세 미만인 경우 측정불기를 인정, 7세 이상부터는 입력 필수 4. 측정불가 또는 비대상 '-1'로 입력 * 예시) 7세 미만이면서 측정불가인 경우, 환자가 거부하거나 측정불가의 경우 5. 응급실 도착 시 사망한 환자(D.O.A)의 경우 '0'으로 입력 6. 분당 호흡 수를 알 수 없는 경우 '999'로 입력										

체온

정 의	손상환자의 내원 시	손상환자의 내원 시 체온						
용 도	손상 후 내원 시 체	손상 후 내원 시 체온에 대한 지료를 수집하여 중증도 분석에 활용						
변 수 명	(체온)℃(CM_TMPT)							
유 형	숫자	숫자 필수여부 필수 조사시작일 2008, 10, 1, 2016, 1, 1,(필수)						
코 드	(체온)/℃							
질 관 리 지 침	1. 체온은 응급실 내 → 45도 이상 오 2. 내원 당시 직접 즉 3. 만 7세 미만인 경 4. 측정불가 또는 비 * 예시 7세 미만이면서 5. 응급실 도착시 사 6. 미상인 경우 '999	유 측정한 값으로 측 경우 측정불가를 (대상 '너'로 입력 너 측정불기인 경우, 함 망한 환자(D.O.A	정 가능한 경우 <u>5</u> 인정, 7세 이상부터 한자가 거부하거나 <i>축</i>	고든 연령을 조사하0 너는 입력 필수 정불가의 경우				

의식상태(AVPU)

			I							
정		의	손상환자의 내원 시	손상환자의 내원 시 의식상태						
용		도	손상 후 내원 시 으	식에 대한 자료를	를 수집하여 중증도	분석에 활용				
변	수	명	AVPU(CM_AVPU)							
유		형	문자	문자 필수여부 필수 조사시작일 2008. 10. 1. 2016. 1. 1.(필수)						
코		드	A (alert): 의식 명료 V (voice): 소리에 반응 P (pain): 통증자극에 반응 U (unresponsive): 무반응							
질 굔	3. 용급실에 내원한 모든 손상환자는 A, V, P, U 중 반드시 하나의 코드를 입력 2. 응급실 내원 시 첫 번째로 측정한 결과를 입력 3. 용어의 정의 - A: 지남력은 없더라도 완전히 깨어있는 상태. 자발적으로 눈 뜨고, 혼란해 하더라도 목소리에 반응하신체 움직임이 정상인 상태 - V: 말을 걸었을 때 눈, 목소리, 움직임 셋 중 어떤 것이라도 반응을 보이는 상태 - P: 말을 먼저 걸어본 후 반응이 없을 때, 관절을 강하게 문지르거나 귀를 꼬집거나 환자의 손톱부분는 펜으로 누르는 등의 통증을 주었을 때 경미하나마 반응을 보이는 상태 - U: 목소리 또는 통증에 눈, 목소리, 움직임 중 아무런 반응이 없고 때때로 의식이 없는 상태									

글래스고우 혼수 척도(Glasgow Coma Scale, GCS)

정	의	손상환자의 내원 /	손상환자의 내원 시 글래스고우 혼수 척도							
용	도	손상환자의 응급실	손상환자의 응급실 도착 시 의식상태를 수집하여 손상의 중증도 분석 시 활용							
변 수	- 명	CM_GCS_E, CM_	_GCS_V, CM_(GCS_M						
유	형	문자	필수여부	필수	조사시작일	2006. 8. 1.(심층) 2011. 1. 1.(공통)				
코	<u>=</u>	C0 Unavailati C1 No eyes C2 Eyes ope C3 Eyes ope C4 Eyes ope C4 Eyes ope C9 Unavailati C1 No verba C2 Incompre C3 Inapprop C4 Confused C5 Orientate Motor response(; C0 Unavailati C1 No moto C2 Abnorma C3 Abnorma C4 Withdraw C5 Localized	EVP response(눈뜨기) C0 Unavailable 측정불가 C1 No eyes opening 눈뜨지 못함 C2 Eyes opening to pain 자극에 눈뜸 C3 Eyes opening to speech 말하면 눈뜸 C4 Eyes opening spontaneously 자발적으로 눈 뜬 상태 Verbal response(언어반응) C0 Unavailable 측정불가 C1 No verbal response 반응 없음 C2 Incomprehensible sounds 이해 안 되는 소리만 함 C3 Inappropriate words 동문서답 C4 Confused 대화가능하나 지속적인 대화 안 됨 C5 Orientated 적절하게 대답 Motor response(운동반응) C0 Unavailable 측정불가 C1 No motor response 반응 없음 C2 Abnormal extension to pain 통증자극에 비정상적인 신전 C3 Abnormal flexion to pain 통증자극에 비정상적인 굴곡 C4 Withdraws from pain 통증자극에 비정상적인 굴곡 C4 Withdraws from pain 통증자극에 비정상적인 굴곡							
질 관 리	C6 Obeys commands 지시에 따름									

수술유무

정		의	손상환자의 수술 유	손상환자의 수술 유무							
용		도	손상 후 수술 시행	손상 후 수술 시행 유무를 파악하여 손상 중증도 분석에 이용							
변	수	명	수술유무(OP)	수술유무(OP)							
유		형	문자	필 수 여 부 필수 조 사 시 작 일 2008. 10. 1. 2016. 1. 1.(필수)							
코		드	CO 아니오	C1 예							
질 곤	1. 손상환자가 내원하여 수술한 경우 'C1 예'로 입력 질 관 리 지 침 2. 단, 시술은 수술에서 제외 · 예시: 색전술(embolization)은 수술에서 제외										

51 수술내역(1~10)

정		의	손상환자의 수술	손상환자의 수술명							
용		도	손상 후 수술 받 수립에 활용	손상 후 수술 받은 환자의 수술명을 파악하여 손상 중증도 분석 및 효율적인 자원의 배분과 관련한 정책 수립에 활용							
변	수	명	수술내역(OP01~	수술내역(OP01~OP10)							
유		형	문자	필 수 여 부	비필수	조 사 시 작 일	2006. 8. 1.(심층) 2011. 1. 1.(공통)				
코		드	ICD-9-CM 코드	. (예: 47.01)							
질 관	1. 수술 유무(OP)가 'C1 예'인 경우 수술내역(OP01~OP10)을 손상과 관련된 수술 위주로 순서대로 입력 질 관 리 지 침 3. ICD-9-CM 코드로 수술내역(OP01~OP10)을 입력 3. ICD-9-CM 코드 아닐 경우 수술명을 구체적으로 입력										

EMR-ISS(Excess Mortality Ratio-adjusted Injury Severity Score)

정		의	손상환자의 중증도	손상환자의 중증도 점수				
용		도	손상의 중증도 구간 관련한 정책 수립에		'집하여 손상예방	을 위한 적절한 조치	와 효율적인 지원의 배분과	
변 -	수	명	EMR-ISS					
유		형	숫자	숫자 필수여부 비필수 조사시작일 2008. 10. 1.				
코		드	중증도 점수					
질 관 i	리 지	침	1. EMR-ISS 산출을 위해서는 손상 진단명의 7개 데이터 를 받아서 활용하므로 손상 진단명은 정확하게 분류하고 입력 2. 각 진단명별로 중증도를 점수화 하여 산출 3. 산출식 - 입력받은 손상 코드에 소수점이 포함되어 있으면 소수점 1자리까지만 잘라서 사용 - 가공된 코드 데이터를 활용하여 각 코드별 점수가 높은 3개의 코드 만 사용					

RTS(Revised Trauma Score)

정	의	손상으로 인해 니	손상으로 인해 내원한 환자의 RTS 값					
용	도	손상환자의 생리	학적 지표로 자료	를 수집하여 선	스상환자의 예후 판	정에 활용		
변 수	명	RTS						
೪	형	숫자	필수여부	필수	조사시작일	2008. 1. 1.(심층) 2011. 1. 1.(공통) 2019. 1. 1.(입력방식 변경)		
코	드	RTS 점수						
		2. RTS 산출은 Respiratory - 산출식: 0.93	손상환자의 GCS Rate)의 3항목의	, 수축기 혈압(값에 가중치를 326×SBP + 0.		지 않을 경우 오류 d Pressure), 분당 호흡 수(RR,		
질 관 리 지 침		점수	GCS	GCS 수축기 혈압		분당 호흡 수		
		4	13-15		90mmHg 이상	10-29호		
		3	9-12		76-89mmHg	30회 이상		
		2	6-8		50-75mmHg	6-9회		
		1	4-5		1-49mmHg	1-5회		
		0	3		0			

ISS(Injury Severity Score)

정		의	손상환자의 손싱						
용		도	손상환자의 해부	학적 지표로 자료	를 수집하여 경	중증도 판단에 활용			
변	수	명	ISS						
유		형	숫자	숫자 필 수 여 부 비필수 조사시작일 2008, 1, 1,(심층) 2011, 1, 1,(공통) 2019, 1, 1,(입력방식 변경)					
코		드	ISS 점수	ISS 점수					
질 곤	1. 해부학적 손상 정도를 측정하는데 가장 많이 사용하며, 심하게 손상된 환자의 사망률을 제공 2. 신체를 6개 부위로 나누어 각 신체부위의 손상별 중증도를 표시한 AIS를 이용하여 점수를 산정 3. 6부위 중 중증도가 심한 순서대로 나열하여 이중 중증도 상위 3부위의 AIS 점수 선택 - 산출식 : 3부위의 AIS 점수의 자승 값의 합 4. 점수는 1점~75점까지 나올 수 있으며, 15점 이상인 경우 중증으로 판단 5. 운수사고 심층분과, 머리척추 손상 심층분과는 2019년부터 필수 문항으로 심층문항에서 AIS 입력한 환자는 자동으로 산출								

병원 전 처치

정		의	손상환자가 응급	손상환자가 응급실 도착 전에 받은 전문응급처치 내용				
용		도		손상환자가 응급실 도착 전에 받은 처치를 수집하여 적절한 처치가 이루어졌는지 판단하고 예방 가능한 손상을 파악하는데 기초자료로 활용				
변	수	명	병원전처치(PRE	병원전처치(PRE_C010~PRE_C99)				
유		형	문자 필수여부 비필수 조사시작일 2006. 8. 1.(심층) 2011. 1. 1.(공통) 2019. 1. 1.(국드변경)			공통)		
코		드	기도유지(PRE_(도수조직(PR			CO 아니오 CO 아니오	C1 예 C1 예	C2 미상 C2 미상

	I			
	기도유지기(PRE_C012)	CO 아니오	C1 예	C2 미상
	후두마스크(PRE_C013)	CO 아니오		C2 미상
	기도삽관(PRE_C014)	CO 아니오		C2 미상
	흡인기(PRE_C015)	CO 아니오	C1 예	C2 미상
	호흡유지(PRE_C020)	CO 아니오	C1 예	C2 미상
	구조호흡(PRE_C021)	CO 아니오	C1 예	C2 미상
	산소투여(비관/마스크)(PRE_C022)	CO 아니오	C1 예	C2 미상
	백밸브 마스크(PRE_C023)	CO 아니오	C1 예	C2 미상
	순환유지(PRE_C030)	CO 아니오	C1 예	C2 미상
	정맥로 확보(PRE_C031)	CO 아니오	C1 예	C2 미상
	쇽방지 하의(PRE_C032)	CO 아니오	C1 예	C2 미상
	흉부압박(PRE_C033)	CO 아니오	C1 예	C2 미상
	제세동(PRE_C034)	CO 아니오	C1 예	C2 미상
	경추고정(PRE_C035)	CO 아니오	C1 예	C2 미상
	척추고정(PRE_C04)	CO 아니오	C1 예	C2 미상
	사지고정(PRE_C05)	CO 아니오	C1 예	C2 미상
	출혈압박(PRE_C06)	CO 아니오	C1 예	C2 미상
	통증 조절(PRE_C07)	CO 아니오	C1 예	C2 미상
	약물투여(PRE_C08)	CO 아니오	C1 예	C2 미상
	심폐소생술(PRE_C09)	CO 아니오	C1 예	C2 미상
	모니터링(PRE_C100)	CO 아니오	C1 예	C2 미상
	심전도(PRE_C101)	CO 아니오	C1 예	C2 미상
	산소포화도(PRE_C102)	CO 아니오	C1 예	C2 미상
	생체징후 모니터링(PRE_C103)	CO 아니오	C1 예	C2 미상
	의식확인(AVPU)(PRE_C104)	CO 아니오	C1 예	C2 미상
	지도의사교신(PRE_C11)	CO 아니오	C1 예	C2 미상
	기타(PRE_C98)	CO 아니오	C1 예	C2 미상
	미상(PRE_C99)	CO 아니오	C1 예	C2 미상
질 관 리 지 침	7 E (PRE_C98)	CO 아니오 CO 아니오 공이송'인 경우에만 병원(C1 예 C1 예 전 처치(PRE_	C2 미상 C2 미상 C010~PRE_C

병원 전 처치 기타내용

정		의	손상환자가 응급	손상환자가 응급실 도착 전에 받은 기타 전문응급처치의 구체적인 내용				
용		도		손상환자가 응급실 도착 전에 받은 처치를 수집하여 적절한 처치가 이루어졌는지 판단하고 예방 가능한 손상을 파악하는데 기초자료로 활용				
변	수	명	병원전 처치 기타	병원전 처치 기타내용(PRE_ETC)				
유		형	문자	문자 필수여부 - 조사시작일 2006. 8. 1.(심층) 2011. 1. 1.(공통)				
코		드	내용입력					
질 곤	<u></u> 리 ㅈ	침	병원전 처치 기타(PRE_C98)가 'C1 예'인 경우는 기타내용을 구체적으로 입력					

사망원인(1~10)

정		의	손상환자의 사망	손상환자의 시망 진단명				
용		도	손상으로 사망한	· 환자의 진단명에	대한 자료를 수	'집하여 치료 및 손상	l예방 정책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	
변	수	명	사망원인(ICD10	사망원인(ICD10_1~ICD10_10)				
유		형	문자	문자 필수여부 비필수 조사시작일 2006, 8, 1,(심층) 2011, 1, 1,(공통)				
코		드	ICD-10(KCD-8)	ICD-10(KCD-8) 코드				
질 관	: 리 ㅈ] 침	1. 응급실에 내원한 손상환자의 응급진료결과(EMRT)가 'C41~C48' 또는 입원후 결과(DCRT)가 'C4 사망'인 경우는 반드시 입력 2. 최대 10개까지 사망원인(ICD10_1~ICD10_10) 입력					

사망일자

정		의	손상환자의 사망	손상환자의 시망일자					
용		도	손상으로 사망한	한자의 사망일지	를 수집하여 처	치료 및 손상예방 정	책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		
변	수	명	사망일자(KDATE	Ξ)					
유		형	숫자	숫자 필수여부 필수 조사시작일 2007. 1. 1.(심층) 2011. 1. 1.(공통) 2016. 1. 1.(필수)					
코		드	YYYYMMDD 년	YYYYMMDD 년(4자리) 월(2자리) 일(2자리) 〈예) 20060518〉					
질 괸	: 리 ㅈ	침	1. 응급진료결과(EMRT)가 'C41~C48' 또는 입원후 결과(DCRT)가 'C4 사망'인 경우는 반드시 입력 2. 사망일자(KDATE)는 내원일자(INDT), 손상발생일자(ONDATE) 이후로 입력 3. 사망일자(KDATE)를 알 수 없는 경우 '99999999'로 입력						

사망시간

정		의	손상환자의 사망					
용		도	손상으로 사망한	· 환자의 사망시긴	l을 수집하여 <i>7</i>	치료 및 손상예방 정	책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	
변	수	명	사망시간(KTIME	사망시간(KTIME)				
유		형	숫자	숫자 필수 여부 필수 조사시작일 2007. 1. 1.(심층) 2011. 1. 1.(공통) 2016. 1. 1.(필수)				
코		드	HHMM 24시간	HHMM 24시간제, 4자리 〈예〉 오후 3시 30분 → 1530〉				
질 관	리ㅈ	침	1. 응급진료결과(EMRT)가 'C41~C48' 또는 입원후 결과(DCRT)가 'C4 사망'인 경우는 반드시 입력 2. 사망시간(KTIME)는 내원시간(INTM), 손상발생시간(ONTIME) 이후로 입력 3. 사망시간(KTIME)을 알 수 없는 경우 '9999'로 입력					

※ 손상유발물질 코드(일차적 직접적 손상유발물질)

- 1 손상기전(MECH)이 'C11 n 유수사고'인 경우는 손상유발물질 코드 조사 제외
- 2. 손상의도성(내원사유)(INTENT)이 'C2 자해·자살, C3 폭력·타살'인 경우 코드 조사 제외
- 3. 손상기전(MECH)이 'C6.1n 중독'인 경우 손상유발물질 코드 반드시 입력

손상기전 (MECH)	손상의도성(INTENT)		손상유발물질(FACTOR_U, D)
C11.n 운수사고	C1, C2, C3, C98, C99	\rightarrow	조사 제외
C6.1n 이외 중독 이외	C2 자해·자살, C3 폭력·타살	\rightarrow	조사 제외
C6.1n 중독	C2 자해·자살, C3 폭력·타살	\rightarrow	입력

4. 반드시 최하위 코드 입력

예시

1) 멀티탭 전선을 넘다가 넘어지면서 머리를 식탁에 부딪침

질 관 리 지 침

코

드

일차적 손상유발물질(FACTOR_U)	C7.98 기타 명시된 가정 용품
직접적 손상유발물질(FACTOR_D)	C5.03.10 식탁, 부엌작업대

2) 베란다 타일바닥에서 미끄러져 유리창에 부딪침

일차적 손상유발물질(FACTOR U) C14.03.05 타일바닥, 벽돌바닥, 콘크리트 바닥

직접적 손상유발물질(FACTOR D) C14.02.05 유리문

3) 친구가 밀어서 움직이던 그네와 충돌

일차적 손상유발물질(FACTOR U) C13.07.98 기타 명시된 사람 직접적 손상유발물질(FACTOR_D) C6.03.25 그네. 스윙세트

4) 식탁의자를 밟고 올라가던 중 의자다리가 부러지면서 냉장고에 부딪침

일차적 손상유발물질(FACTOR_U) C5.02.05 딱딱한 의자, 등받이가 있는 의자, 벤치

직접적 손상유발물질(FACTOR_D) C7.01.75 냉장고, 냉동고

이 육상 운송수단

C1.01 사람의 힘으로 가는 탈 것

C1.01.01 사람이 밀거나 끄는 교통수단(짐수레, 리어카, 쇼핑카트 등) C1.01.05 자전거(어린이용 장난감 자전거, 동력 자전거 제외)

C1.01.98 기타 명시된 사람의 힘으로 가는 교통수단

C1.01.99 미상의 사람의 힘으로 가는 교통수단

www.kdca.go.kr | 91

C1 02 동물의 힘으로 가는 탈 것

C1.02.01 타는 동물

C1 02 05 동물이 끄는 탈 것

C1.02.98 기타 명시된 동물의 힘으로 가는 교통수단

• 제외: 동물 또는 동물의 힘에 의한 농업 기계 C2.01.98

C1 02 99 미상의 동물의 힘으로 가는 교통수단

C1 03 3륜 이하의 자체동력 탈 것

C1.03.01 모터사이클

C1.03.05 모페드(모터달린 자전거), 스쿠터(소형 오토바이), 베스파(소형 스쿠터)

C1.03.10 3륜 동력 탈것 또는 스쿠터

C1.03.98 기타 명시된 2.3륜 동력 탈 것

C1.03.99 미상의 2.3륜 동력 탈 것

C1 04 4륜 이상의 자체동력 탈 것

C1.04.01 차량(10인승 이내)

C1.04.10 차량(11-19인승, 픽업트럭, 미니버스, 마을버스)

C1 04 20 차량(20인승 이상, 트럭, 대형차량)

C1 06 레일을 이용한 탈 것

C1.06.01 전차, 트램, 자동차 트롤리, 지하철

C1.06.05 기차, 열차

C1.06.98 기타 명시된 레일을 이용한 탈 것

C1 06 99 미상의 레일을 이용한 탈 것

C1.07 탈 것의 부속물

C1.07.01 차량의 문

C1.07.05 차량의 안전벨트, 에어백

• 제외: 소이용 카시트 C6.01.20

C1.07.10 차량의 타이어 또는 배터리

C1.07.15 차량의 창문 또는 전면유리

C1.07.20 차량의 내부(대시보드, 핸들, 좌석)

C1.07.25 차량의 엔진

C1.07.98 기타 명시된 탈 것의 부속물(예: 자전거 체인)

C1.07.99 미상의 탈 것의 부속물

C1 98 기타 명시된 육상 운송수단

C1.98.01 케이블카, 스키리프트, 스키곤돌라

C1.98.05 전동 휠체어

• 제외: 휠체어 C9.07.05

C1.98.10 어린이용 소형 원동기 차량

C1.98.15 모터 홈(주거기능이 있는 자동차)

C1.98.98 기타 명시된 육상 운송수단(장애인용 스쿠터 등)

C1.99 미상의 육상 운송수단

C2 이동식 기계나 특수목적 차량

C2.01 주로 농사에 이용되는 이동식 기계나 특수목적 차량

C2.01.01 타는 잔디깎이

•제외: 동력 잔디깍이 C11.02.35 미는 잔디깎이 (무동력) C11.03.01

C2 01 05 트랙터

C2.01.20 기타 견인 또는 동력이 설비된 트랙터

• 포함: 경운기, 비료뿌리는 기계

C2.01.98 기타 명시된 주로 농사에 이용되는 이동식 기계나 특수목적 차량

• 포함: 동물 또는 동물에 힘에 의한 농업 기계, 자주식 기계

C2.01.99 미상 주로 농사에 이용되는 이동식 기계나 특수목적 차량

C2.02 주로 산업·건설용으로 사용되는 이동식 기계나 특수목적 차량

• 포함: 크레인차량, 지게차, 포크리프트, 전지동력의 공항용 승객이동차량, 벌목차, 탄광의 석탄 운반차, 광산 또는 채석장의 트램, 트럭 등

C2.98 기타 명시된 이동식 기계나 특수목적 차량

• 포함: 앰블런스, 소방차, 경주용차, 스키스쿠터, 전천후차량(ATV) 등

C2.99 미상의 이동식 기계나 특수목적 차량

- C3 수상 운송수단
- C4 항공 운송수단
- C5 가구

C5.01 침대, 침구 또는 침구류

C5.01.01 침대

C5 01 10 해먹

C5.01.15 매트리스, 수면용 매트

C5.01.25 베개, 쿠션

C5.01.30 침대의 가로널(bedrail)

C5.01.98 기타 명시된 침대, 침구 또는 침구류(시트, 이불, 담요 등)

C5.01.99 미상의 침대, 침구 또는 침구류

C5.02 의자, 소파

C5.02.01 소파, 카우치(couch, 몸을 비스듬히 기댈 수 있는 의자)

C5.02.05 딱딱한 의자, 등받이가 있는 의자, 벤치

C5.02.10 흔들 의자

C5.02.15 접는 의자(해변용, 낚시용)

C5.02.20 회전의자, 사무용 의자

C5 02 25 스툴(등받이 없는 의자, 걸상)

C5 02 30 변기겸용 의자(환자용 바퀴 달린 의자형 변기) C5.02.98 기타 명시된 의자, 소파 C5 02 99 미상의 의자. 소파 C5.03 책상, 탁자, 스탠드, 책장, 선반, 파티션 C5.03.01 책장, 선반, 책꽂이, 책선반, 책걸이 C5.03.05 캐비넷, 서랍장, 찬장, 수납장, 장식장 C5 03 10 식탁. 부엌작업대 C5.03.15 커피 테이블, 소파 앞에 놓는 탁자 C5.03.20 침실용 탁자, 소파 옆 작은 탁자 C5.03.25 책상, 작업대(작업용 테이블) C5.03.30 텔레비전 테이블, 스탠드, 식기, 음식용 선반 또는 찬장 C5.03.35 접이식 테이블 C5.03.40 칸막이 가구, 파티션 C5.03.98 기타 명시된 책상, 탁자, 스탠드, 책장, 선반, 파티션 C5.03.99 미상의 책상, 탁자, 스탠드, 책장, 선반, 파티션 C5.04 가구장식품, 장식용품 C5 04 01 깔개. 매트. 카페트 • 제외: 수면용 매트 C05.01.15 욕조 고무매트 C9.07.98 장판 C14.03.01 C5.04.05 커튼. 휘장 C5.04.10 롤 블라인드, 베니션 블라인드, 실내용 셔터 C5.04.15 창문 덮는 장비(막대, 고리 등) C5.04.20 거울 C5.04.25 그림, 액자, 기타 벽에 걸리거나 유사한 장식품 C5.04.30 작은 장식품, 조각품, 꽃병, 단지 C5.04.35 크리스마스 트리 C5.04.40 명절·기념일 장식품(꼬마전구, 크리스마스 트리 장식품 등) C5.04.98 기타 명시된 가구장식품, 장식용품 C5.04.99 미상 가구장식품, 장식용품 C5.98 기타 명시된 가구 C5.99 미상의 가구 C6 유아·아동용 제품 • 제외: 아기용 세면용품 09.04 유아용 의류·신발 또는 관련 제품 C9.01 C6.01 영아·아동용품 C6.01.01 유모차 C6.01.05 보행기 C6.01.10 유아용 이동식 그네(가정용)

```
C6.01.15 유아의 식사용 높은 의자
             부스터시트(식탁, 차에서 의자 위에 놓는 어린이용 보조의자)
     C6 01 20 유아 또는 아동용 자동차 안전의자(카시트)
     C6.01.25 유아용 변기의자, 배변 훈련용 변기
     C6.01.30 유아용 침대
     C6.01.45 놀이울(유아가 안전하게 놀 수 있도록 작은 구역에 빙 둘러 치는)
     C6 01 50 아기용 안전문 또는 벽
     C6.01.55 유아 캐리어
     C6.01.65 유아 욕조
     C6.01.70 기저귀 교환대, 기저귀 갈이 테이블
     C6.01.75 노리개 젖꼭지
     C6.01.80 이기 젖병 또는 젖병 젖꼭지
     C6.01.85 기저귀
     C6.01.90 기저귀 띠, 기저귀 채움(조임) 장치
     C6.01.98 기타 명시된 영아·아동용품
     C6.01.99 미상의 영아·아동용품
C6 02 장난감
     C6 02 01 이동용 세발자전거 또는 타는 장난감
     C6 02 05 장난감 자동차 등 탈 것 장난감
     C6.02.10 장난감 총 또는 관련 부속품
             •제외: BB총, 공기, 스프링 등으로 작동되는 총 C12.02.20
                 가스총 C1298.98
     C6.02.18 기타 장난감 무기 또는 발사용 장난감(활, 장난감 칼 등)
     C6.02.20 장난감 - 미술, 공작, 조립품 세트
             • 포함: 블록, 레고, 화학/과학 키트, 로켓 연, 동력 모형, 공작용 점토
     C6.02.25 보드게임 또는 부속·조각(바둑, 체스, 장기 등)
     C6.02.30 장난감 스포츠 용품(줄넘기 등)
     C6.02.45 스포츠용이 아닌 공(공기주입식 비치볼 등)
     C6.02.50 날아다니는 장난감
             • 포함: 연, 부메랑 등
             • 제외: 로켓 연. 동력 모형 C6 02 20
     C6.02.55 인형, 인형의 악세서리 또는 부분
     C6.02.60 풍선(장난감)
     C6.02.65 기타 공기주입식 장난감
             • 제외: 공기주입식 비치볼 C6.02.45
     C6.02.70 구슬, 공깃돌, 장난감 비즈
     C6.02.75 놀이텐트, 터널, 기타 울타리 친 장소
             • 제외: 정글짐 C6.03.10
                 캠핑 텐트 098.03.01
     C6.02.80 장난감 정리·보관함, 장난감 상자 또는 궤
     C6.02.98 기타 명시된 장난감
             • 포함: 스티커
```

C6.02.99 미상의 장난감 C6.03 놀이터 설치물 C6.03.05 줄을 타고 활공하는 놀이기구(플라잉 폭스, 트랙 글라이더) C6.03.10 정글짐, 구름사다리, 철봉 C6.03.18 기타 오르는 운동장 기구 C6.03.20 미끄럼틀 C6.03.25 그네, 스윙세트(그네와 미끄럼틀 등으로 이뤄진 아이들 놀이 기구) C6.03.30 시소 C6.03.45 동력의 놀이용 탈것 • 포함: 롤러코스터, 쇼핑몰 놀이기구 C6 03 98 기타 명시된 놀이터 설치물 C6.03.99 미상의 놀이터 설치물 C6.98 기타 명시된 유아·이동용 제품 C6.99 미상 유아·이동용 제품 C7 기정용품 C7 01 요리 · 주방 기전제품 C7 01 01 전기 주전자 C7.01.05 전기 프라이팬 또는 튀김기 C7.01.10 전기 제빵기 C7.01.15 블렌더, 쥬서, 믹서 등 조리용 가전기구(식재료를 자르고 섞을 때 쓰는 기구) C7.01.20 전동 칼 C7 01 25 전기 토스터, 토스터 오븐 C7.01.26 전자레인지 오븐 C7.01.30 기타 전기 조리기나 음식 조리 장치 • 포함: 슬로우 쿠커, 커피메이커, 전동 캔 오프너, 외플기계 등 C7.01.45 스토브, 오븐, 레인지(전기, 가스, 석탄, 장작을 사용하는 것) C7.01.60 숯 화덕(coal pot) C7.01.65 바베큐, 웨버 그릴, 야외용 조리·석쇠 기구, 야외용 화덕 C7.01.70 식기세척기 C7.01.75 냉장고, 냉동고 C7.01.80 전기압력솥, 전기솥 C7.01.98 기타 명시된 요리·주방 가전제품 C7.01.99 미상의 요리·주방 가전제품 C7.02 청소·세탁용품 C7.02.01 세탁기(전기, 가스, 수동) C7.02.05 기타 명시된 의복 세탁기기 C7.02.10 의복 건조기 C7.02.15 다리미 C7.02.16 빨래줄, 빨래건조대, 빨래걸이(옷걸이)

C7.02.20 청소도구(무동력): 빗자루, 먼지털이, 대걸레 등 C7.02.25 진공청소기 C7.02.30 기타 동력 청소 도구 C7.02.98 기타 명시된 청소·세탁용품 C7 02.99 미상의 청소·세탁용품 C7.03 조명기기 C7.03.01 (단독으로 서있는) 가스, 석유, 등유 램프 C7.03.02 전기 조명(램프) C7.03.05 기타 명시된 램프 또는 램프 부품 • 포함: 전등갓 C7.03.10 배터리 손전등 C7.03.15 초, 양초 C7.03.98 기타 명시된 조명기기 C7.03.99 미상의 조명기기 C7.04 냉난방기 C7.04.01 선풍기 • 포함: 천장 고정 선풍기 • 제외: 부채 C9,98,40 C7.04.05 전기·가스 라디에이터(방열기), 난방기(히터) C7.04.10 등유 히터 C7.04.98 기타 명시된 냉난방기 C7.04.99 미상의 냉난방기 C7.05 재봉용품 C7.05.01 재봉기계(전기, 수동) C7.05.05 가위 C7.05.10 핀, 바늘 • 제외: 의료용 바늘 C40.01.01 C7.05.98 기타 명시된 재봉용품 C7 05 99 미상의 재봉용품 C7.06 오락·여기용품 • 제외: 컴퓨터 관련용품 C9 05 05 C7.06.01 텔레비전 C7.06.05 비디오 녹화기, 디코더 플레이어 C7 06 10 비디오 카메라, 카메라, 디지털 카메라 또는 부속품 C7.06.15 스테레오장비, 스피커 등 음향장비, 이어폰 C7.06.98 기타 명시된 오락·여가용품 • 포함: 악기(피아노, 리코더, 실로폰 등) C7.06.99 미상의 오락·여가용품

C7.98 기타 명시된 가정용품

- 포함: 멀티탠 저서
- •제외: 전자제품에 연결된 전선(전기제품명으로 코딩)
- C7 99 미상의 기정용품

C8 그릇·용기 (※전기용품 제외)

C8.01 요리·조리 기구

C8 01 01 전기를 사용하지 않는 주전자

C8.01.05 칼, 커터칼, 주머니칼

• 포함: 피자도우 롤러, 과도

• 제외: 무기로 제작된 칼 C12.01.10 장난감 칼 06.02.18 전동칼 C7.01.20

C8.01.10 솥, 냄비, (프라이)팬

C8.01.15 압력용기(압력솥, 압력냄비)

C8.01.20 숟가락, 젓가락, 포크, 음식 준비도구

• 포함: 마늘 압착기, 뒤집개, 국자, 도마 등

C8.01.98 기타 명시된 요리·조리 기구

• 포함: 병따개, 캔따개

C8.01.99 미상의 요리·조리 기구

C8.02 그릇·주방용기

C8 02 01 유리 또는 도기로 만든 잔. 컵

C8.02.05 유리 또는 도기로 만든 접시·그릇

C8.02.10 유리로 만든 병, 단지, 항아리

• 포함: 유리로 만든 화장품 용기

C8.02.15 플라스틱, 나무 또는 흙으로 만든 용기

C8.02.98 기타 명시된 그릇·주방용기

C8.02.99 미상의 그릇·주방용기

C8.03 청소용 용기

C8.03.05 양동이, 들통, 대야

C8.03.98 기타 명시된 청소용 용기

C8.03.99 미상의 청소용 용기

C8.04 음식 저장 관련 용기

C8.04.01 깡통 또는 통조림통(참치캔)

C8.04.05 음식 또는 음료를 담고 있는 상자 또는 큰 판지(플라스틱)상자

C8.04.98 기타 명시된 음식 저장용기 또는 관련 기구 또는 그릇

C8.04.99 미상의 음식 저장용기 또는 관련 기구 또는 그릇

C8.98 기타 명시된 그릇·용기

• 포함. 쓰레기통, 페달 쓰레기통, 상자, 커피믹스봉지, 과자봉지, 캬라멜 은박지, 껌종이, 약봉지

C8.99 미상의 그릇·용기

C9 개인용품

C9.01 의류·신발 또는 관련 용품

C9.01.01 벨트, 가터벨트, 멜빵, 어깨띠, 보호대(손목, 발목, 허리 등)

C9.01.05 단추

C9.01.10 기타 명시된 의류 잠금장치(지퍼, 찍찍이 등)

C9.01.15 신발, 샌들, 슬리퍼, 부츠

C9.01.20 신발끈, 신발 잠금장치(버클 등)

C9.01.25 셔츠, 블라우스, 티셔츠, 바지, 지켓, 코트, 외투, 치마

C9.01.30 잠옷, 속옷, 란제리

C9.01.98 기타 명시된 의류·신발 또는 관련 용품

• 포함: 장갑, 모자, 양말

C9.01.99 미상의 의류·신발 또는 관련 용품

C9 02 개인장신구·의류소품

C9.02.01 손목시계, 주얼리

• 포함: 브로치

C9.02.98 기타 명시된 개인장신구·의류소품

• 포함: 스키프

C9.02.99 미상의 개인장신구·의류소품

C9 03 목단장 용품

C9.03.01 헤어드라이어, 롤러(구르프), 고데기

C9.03.05 빗, 브러시

C9.03.10 면도기, 면도날

• 포함: 눈썹칼(눈썹 다듬는 칼)

• 제외: 전기면도기 C9 03 15

C9.03.15 전기면도기

C9.03.20 전동칫솔

C9.03.28 칫솔

제외: 전동칫솔 C9.03.20

C9.03.98 기타 명시된 몸단장 용품

• 포함: 이쑤시개, 손톱깎이, 미용기위, 귀이개 등

C9.03.99 미상의 몸단장 용품

C9.04 세면용품, 화장품 또는 관련 상품

C9.04.01 콘택트렌즈 클리너

• 제외: 콘택트렌즈 C9.07.01

C9 04 05 구강용품 • 포함: 치약, 틀니 관련용품, 가글액 • 제외: 칫솔 C9.03.28 C9.04.10 면봉 C9.04.15 비누, 액체비누, 바디워시, 샴푸, 폼클렌징 C9.04.20 데오도란트, 개인탈취제 • 제외: 의류탈취제, 방향제 C16.98 C9.04.25 향수, 콜론 • 포함: 사워코롱 C9.04.35 머리 염색제 C9.04.40 제모제 C9.04.43 기타 헤어케어 상품 • 포함: 트리트먼트, 린스, 왁스, 스프레이, 젤, 무스 C9.04.45 매니큐어, 매니큐어 제거제 C9.04.50 바디용, 얼굴용 크림·로션 • 제외: 지외선치단제(선크림) C9.04.65 C9.04.55 바디 파우더, 베이비 파우더 C9.04.60 기타 화장품 • 포함: 색조 화장품, 립밤 C9.04.65 태닝 또는 자외선차단 용품, 셀프태닝 용품 C9.04.70 아로마테라피 오일, 에센셜 오일 C9 04 98 기타 명시된 세면용품 또는 관련 용품 C9.04.99 미상의 세면용품 또는 관련 용품 C9.05 통신 및 필기구 관련 용품 • 제외: 종이 C16.02.68 C9.05.01 전화, 휴대전화 • 포함: 충전기 등 악세서리 • 제외: 이어폰 C7.06.15 C9.05.05 개인용 컴퓨터 또는 관련 장비 • 포함: 프린터, 컴퓨터 내부 부품, 스피커, 콤팩트 디스크 C9.05.10 팩스 또는 기타 관련 장비 • 포함: 토너 C9.05.11 수정용액 C9.05.15 펜, 연필 • 포함: 볼펜, 싸인펜, 색연필 C9.05.20 기타 문구류 • 포함: 스테플러, 펀처, 연필깎이 • 제외: 연필, 펜 C9.05.15 가위 C7.05.05 C9.05.98 기타 명시된 통신 또는 관련 기구 또는 부품 C9.05.99 미상의 통신 또는 관련 기구 또는 부품

C9.06 미술 또는 공작용품 C9.06.01 물감 C9 06 05 크레용, 분필, 쵸크, 크레파스, 파스텔 C9.06.10 유약, 글레이즈, 광택제 C9.06.15 캔버스 C9.06.98 기타 명시된 미술용품 C9.06.99 미상의 미술용품 C9.07 개인 보조기구 C9.07.01 안경 • 포함: 콘택트렌즈, 선글라스, 돋보기 C9 07 05 휠체어 • 제외: 전동 휠체어 C1.98.05 C9.07.10 지팡이, 워커, 보행보조기 • 포함: 시각장애인용 흰색 지팡이 • 제외: 유이용 보행기 06.01.05 C9.07.15 (의족·의안·의치 같은)인공기관[삽입물], 보철, 인공심박동기 C9.07.98 기타 명시된 개인 보조기구 • 포함: 보청기 C9.07.99 미상 개인 보조기구 C9.08 담배 관련 용품 C9.08.01 담배, 시가 C9.08.05 라이터, 성냥 C9.08.10 금연 보조 용품 • 포함: 금연패치, 니코틴껌 C9 08 98 기타 명시된 담배 또는 관련 용품 • 포함: 담배파이프, 재떨이, 씹는 담배 C9.08.99 미상의 담배 또는 관련 상품 C9.09 수납용품 C9.09.00 트렁크 C9.09.98 기타 명시된 수납용품(가방, 손가방, 백, 배낭) • 제외: 비닐봉지 C98.98.80 C9.98 기타 명시된 개인용품 C9.98.01 분무기, 기습기 C9.98.05 아로마오일 버너 C9.98.10 콘돔 또는 기타 피임용 기구 • 제외: 경구피임약, 살정제 C20.23

C9.98.15 기타 성(sex) 관련용품 C9.98.20 알람시계, 시계

• 제외: 손목시계 09.02.01

바닥에 세우는 대형시계 C5.98

C9.98.25 우산 C9.98.30 동전 C9.98.40 부채 • 포함: 배터리 작동식 휴대용 선풍기 C9.98.98 기타 명시된 개인용품 포함: 책, 이광팔찌, 체중계 C9.99 미상 개인용품 C10 스포츠 · 오락용품 C10.01 각종 공 C10.01.01 부드러운 공 • 포함: 테니스공, 스쿼시공, 축구공, 농구공, 배구공 C10.01.05 딱딱한 공, 퍽 • 포함: 하키공, 골프공, 야구공, 당구공 C10.01.98 기타 명시된 공 C10.01.99 미상의 공 C10.02 손에 쥐고 사용하는 스포츠 용품 C10.02.01 창. 투창경기용 창 C10.02.05 활. 회살 C10.02.10 기타 명시된 던지는 스포츠 용품 C10,02,15 야구방망이, 하키스틱 C10 02 20 라켓 C10 02 25 아이스픽, 얼음송곳(등반용) C10,02,98 기타 명시된 손에 쥐고 사용하는 스포츠 용품 C10,02,99 미상의 손에 쥐고 사용하는 스포츠 용품 C10.03 운동을 위해 필요한 구조물·장비 C10 03 01 네트 C10.03.05 럭비폴, 네트폴(네트를 팽팽하게 하는 지주), 골대 C10.03.10 트램펄린 C10 03 15 체조용 장비; 평균대, 안마(대), 뜀틀 C10,03,20 스포츠 매트 C10.03.25 다이빙보드, 플랫폼 C10,03,30 운동, 신체단련용 장비-이동식 • 포함: 이령 C10.03.35 운동, 신체단련용 장비-고정식 • 포함: 고정식 자전거, 런닝머신 C10.03.40 트랙 등 육상경기용 장비 C10.03.45 승마용 장비 C10.03.50 낚시용 장비 C10.03.88 기타 명시된 운동을 위해 필요한 구조물·장비-이동식 C10 03 98 기타 명시된 운동을 위해 필요한 구조물·장비-고정식

• 포함: 펜스

C10 03 99 미상의 운동을 위해 필요한 구조물·장비

C10 04 주로 스포츠용으로 사용되는 이동장비

C10.04.01 롤러스케이트, 롤러스키, 인라인스케이트, 롤러블레이드

C10.04.05 스케이트보드

C10.04.10 킥보드

C10.04.15 수상스키, 웨이크보드

C10 04 20 스노우스키

C10.04.25 스노우보드

C10 04 30 아이스 스케이트

C10.04.35 어린이용 썰매, 썰매, 눈썰매, 스노우튜브

C10.04.98 기타 명시된 주로 스포츠용으로 시용되는 이동장비

C10.04.99 미상의 주로 스포츠용으로 사용되는 이동장비

C10.05 수중 스포츠 장비

C10 05 01 이쿠이렁(Aqualung, 수중 호흡장치), 스쿠버 도구, 압축공기실린더

C10 05 05 (부력조절용)다이빙벨트 웨이트벨트

C10.05.10 잠수복

C10.05.15 고글·마스크, 오리발, 스노클(잠수 시 호흡용 튜브)

C10 05 98 기타 명시된 수중 스포츠 장비

C10.05.99 미상의 수중 스포츠 장비

C10.98 기타 명시된 스포츠·레크레이션 장비

C10.98.01 스포츠용 개인보호 장비

• 포함: 손목보호대, 마우스피스, 무릎보호대, 헬멧, 스포츠용 및 반사복 등

• 제외: 작업용 개인보호 장비 C11.05.10~C11.05.28

C10.98.98 기타 명시된 스포츠・레크레이션 장비

C10.99 미상의 스포츠 · 레크레이션 장비

C11 산업·작업용품

C11.01 기계·고정장비

C11 01 01 자르고 저미는 기계 · 고정장비

C11.01.05 분쇄·압착 기계·고정장비

• 제외: 블렌더, 쥬서, 믹서 등 조리용 가전기구 C7.01.15

C11.01.10 가열·조리용 기계·고정장비

• 제외: 기정용 보일러, 온수시설 C7.04.98

전기·가스 라디에이터, 히터 C7.04.05

C11.01.15 냉장, 냉동, 냉각 기계·고정장비

• 제외: 냉장고, 냉동고 C7.01.75

에어컨 C14,98,61

C11.01.20 기중기

```
• 제외: 크레인치량, 지게차, 포크리프트 C2.02
                   크레인기계 C11.01.30
     C11 01 25
              호이스트
     C11,01,30
              크레인기계
               • 제외: 크레인차량, 지게차, 포크리프트 C2.02
     C11 01 35
              높이 있는 작업발판(elevated work platform)
     C11,01,40
              컨베이어
     C11,01,45
              공급시설(主管、本管)-가스、상・하수도、스팀、온수、전기
     C11.01.50 전단(剪斷) 고정시설(shearing plant)
     C11.01.55 낙농 고정시설
     C11.01.60 프레스
     C11.01.65 쓰레기 압축기
     C11.01.70 탈곡기
     C11.01.71 작두, 사료재단기(곡식 절단기)
     C11.01.98 기타 명시된 기계·고정장비
     C11.01.99 미상의 기계·고정장비
C11.02 손으로 사용하는 동력공구
     C11 02 01 드릴
     C11.02.05 전기톱, 체인톱, 동력 사슬톱
     C11.02.10 기타 동력 톱
     C11.02.15 용접기, 용접용 장비
     C11.02.20 네일건(못총)
     C11.02.25 그라인더(가는, 빻는 기구), 완충기, 광택기, 사포
     C11.02.30 정원용 동력장비
               • 포함: 낙엽파쇄기, 생울타리 다듬는 기계
     C11.02.35 동력 잔디깎이
               • 제외: 타는 잔디깎이 C2.01.01
                    미는 잔디깎이(무동력) C11.03.01
              산업용 진공청소기
     C11,02,40
     C11.02.98 기타 명시된 손으로 사용하는 동력공구
     C11.02.99 미상의 손으로 사용하는 동력공구
C11.03 손으로 사용하는 무동력 공구
     C11 03 01 미는 잔디깎이(무동력)
     C11.03.05 망치, 해머
     C11.03.10 찍고 자르는 도구(도끼, 손도끼)
     C11.03.15 자르는 도구(끌, 작은 톱 등)
     C11.03.20 채굴 또는 경운(논밭을 가는) 도구(삽, 곡괭이, 정원용 쇠스랑, 갈퀴)
     C11.03.25 들어 올리는 도구
               • 제외: 포크리프트, 지게차 C2.02
                   기중기 C11.01.20
     C11.03.30 못, 나사, 압정
```

C11.03.35 업무와 관련 활동에 이용되는 낚시 바늘, 갈고리

C11.03.40 업무와 관련 활동에 이용되는 쥐덫

C11 03 98 기타 명시된 손으로 사용하는 무동력 공구

C11.03.99 미상의 손으로 사용하는 무동력 공구

C11.04 압력을 이용하는 장비

C11.04.01 가스통

• 제외: 스쿠버다이빙용 공기통 C10,05,01

C11.04.05 압력 호스, 파이프

C11 04 98 기타 명시된 압력을 이용하는 장비

C11.04.99 미상의 압력을 이용하는 장비

C11.05 기타 무동력 장비

C11.05.01 사다리, 이동계단

• 제외: 2층 침대의 사다리 C5.01.01

C11.05.05 비계발판

C11.05.10 헬맷

• 제외: 스포츠 활동용 C10.98.01

C11.05.15 귀마개

• 제외: 스포츠 활동용 C10.98.01

C11.05.20 용접마스크

C11.05.28 기타 개인 보호장구

• 포함: 장갑, 보안경, 빛 반시복

• 제외: 스포츠 활동용 C10.98.01

C11.05.30 소화기

C11.05.98 기타 명시된 무동력 장비

C11.05.99 미상의 무동력 장비

C11,98 기타 명시된 산업·작업용품

C11.99 미상의 산업 · 작업용품

C12 무기

C12.01 날카로운 무기(창, 활, 칼 등)

C12.01.01 무기로 사용하는 창. 투창

C12.01.05 무기로 사용하는 화살(활과 화살), 석궁용 화살(석궁)

C12.01.10 무기로 사용하는 칼

C12.01.15 검, 단검, 총검, 마체테(날이 넓고 무거운 칼, 무기로도 쓰임),

칼(풀·나뭇가지 등을 자르는데 쓰는 무겁고 큰),

단검(과거 선원이나 해적들이 쓰던 칼날이 약간 휜)

C12.01.98 기타 명시된 날카로운 무기

C12 01 99 미상의 날카로운 무기

C12.02 총기 및 관련용품

C12 02 01 총알, 아주 작은 총알

C12.02.05 권총, 피스톨

C12.02.10 라이플총

C12.02.15 샷건, 산탄총

C12.02.20 공기총(스프링으로 작동되는 총, BB총)

C12.02.98 기타 명시된 총기 및 관련용품

C12.02.99 미상의 총기 및 관련용품

C12.98 기타 명시된 무기

C12.98.01 곤봉, 회초리

C12.98.05 전기충격기, 전기막대기

C12.98.10 고추·후추 스프레이, 메이스(호신용 스프레이에 쓰이는 자극성 물질)

C12.98.98 기타 명시된 무기

C12.99 미상의 무기

C13 사람·동·식물

C13.01 식물

C13.01.03 나무, 식물, 나무뿌리

C13.01.05 잎, 꽃

버섯, 독버섯, 균류 C13,01,13

C13,01,25 씨앗

• 포함: 콩

• 제외: 독이 있는 경우 C13.01.50

C13,01,30 과일

• 제외: 독이 있는 경우 C13.01.50

C13 01 34 식물의 가시

C13.01.35 나뭇가지, 막대기(나무에서 분리된 것)

C13.01.50 독성 식물

C13.01.98 기타 명시된 식물

• 포함: 과일을 제외한 채소류

C13.01.99 미상의 식물

C13,02 새(조류)

C13.03 곤충·무척추동물

• 제외: 해양 무척추동물 C13.05

C13.03.01 벌

C13.03.05 말벌, 호박벌

C13.03.15 개미

C13.03.16 붉은불개미

C13.03.20 거미

• 포함: 흑거미, 독거미 C13.03.25 저갈 C13.03.30 진드기 C13,03,35 지네. 노래기 C13,03,98 기타 명시된 곤충 · 무척추동물 • 포함: 내비, 내방, 애벌레 등 C13.03.99 미상의 곤충 · 무척추동물 C13.04 육상 포유류 C13,04,01 개 C13,04,05 고양이 C13,04,10 생쥐, 기니피그, 쥐 C13.04.15 돼지, 멧돼지 C13 04 20 양. 염소 C13,04,25 젖소, 황소, 소과의 동물 C13.04.30 말, 조랑말, 당나귀, 노새, 당나귀 C13,04,35 원숭이, 침팬지, 고릴라 C13.04.98 기타 명시된 육상 포유류 C13 04 99 미상의 육상 포유류 C13.05 해양동물 C13,05,01 상어 C13,05,05 기타 물고기 • 포함: 관상어 C13.05.10 바다뱀 • 포함: 독이 있는 바다뱀 C13.05.15 해양 포유동물 • 포함: 돌고래, 고래, 바다, 사자 C13,05,20 해파리 C13,05,25 산호 C13,05,98 기타 명시된 해양동물 • 포함: 해삼, 멍게, 말미잘 C13,05,99 미상의 해양동물 C13.06 파충류·양사류 C13.06.01 무독성 뱀 • 제외: 바다뱀 C13.05.10 C13,06,05 독성 뱀 • 제외: 바다뱀 C13,05,10 C13,06,10 독성인지 무독성인지 명시되지 않은 뱀 • 포함: 바다뱀인지 명시되지 않은 경우 C13.06.15 도마뱀 C13.06.20 개구리, 두꺼비

C13 06 25 악어

• 포함: 바다악어

C13 06 98 기타 명시된 피충류·양서류

C13.06.99 미상의 파충류·양서류

C1307 사람

C13.07.01 사람, 본인

• 포함: 습관성 탈구, 무리한 신체사용, 턱이나 팔이 뻐짐

C13,07,10 군중

C13 07 98 기타 명시된 시람

• 포함: 타인(남편, 아버지, 어머니, 직장동료, 강도)

C13 07 99 미상의 사람

C13.98 기타 명시된 사람·동·식물

C13.99 미상의 사람·동·식물

C14 건물 및 부속물

C14.01 건물 내 구조물(화장실, 욕실, 샤워 등)

C14.01.01 수세식 변기

C14.01.05 재래식 변기

C14.01.10 욕조

• 포함: 고정 · 이동식 욕조, 고정 · 이동식 욕조 등의 수도꼭지

C14.01.15 사위기

• 포함: 이동식 사워기

C14.01.20 붙박이 카운터, 키운터 선반, 부엌 선반, 주방조리대, 부엌 작업대

• 포함: 싱크대, 세면대, 싱크대, 세면대 등의 수도꼭지

• 제외: 책상, 탁자, 스탠드, 책장, 선반, 파티션 C5 03 01~99

C14.01.98 기타 명시된 건물 내 구조물

C14.01.99 미상의 건물 내 구조물

C14.02 문·창문 또는 관련된 부품·부분

C14.02.01 문, 문지방, 문턱, 문손잡이

C14.02.05 유리문, 자동유리문

C14.02.10 보안문, 천으로 가려 놓은 문

C14.02.15 창문용 방범막대

C14.02.20 창문

• 포함: 손잡이, 창턱, 서리로 덮인 유리창

C14.02.25 창문 외부 덧창

C14.02.98 기타 명시된 문·창문 또는 관련된 부품·부분

• 포함: 유리창(열리지 않는)

C14.02.99 미상의 문·창문 또는 관련된 부품·부분

C14.03 바닥 또는 관련된 부품·부분

C14 03 01 키펫 깔린 바닥, 장판 바닥

C14.03.05 타일바닥, 벽돌바닥, 콘크리트 바닥

C14.03.10 나무 바닥

C14.03.15 진흙바닥, 찰흙바닥, 동물의 변으로 만든 바닥

C14.03.98 기타 명시된 바닥 또는 관련된 부품·부분

C14.03.99 미상의 비닥 또는 관련된 부품·부분

C14.04 벽 또는 관련된 부품·부분

C14.04.01 벽난로

C14.04.10 벽돌벽, 콘크리트벽, 타일벽

C14.04.15 나무벽

C14.04.20 진흙벽, 찰흙벽, 동물의 변으로 만든 벽

C14.04.98 기타 명시된 벽 또는 관련된 부품·부분

C14 04 99 미상의 벽 또는 관련된 부품·부분

C14,98 기타 명시된 건물 및 부속물(수영시설, 펜스, 엘리베이터, 계단 등)

C14.98.03 수영장, 스파

C14 98 05 담장, 울타리, 대문

C14.98.10 에스컬레이터, 무빙워크, 움직이는 경사로

(서로 다른 높이를 연결하는 경사진 길)

C14.98.15 리프트, 엘리베이터, 엘리베이터 문

C14.98.16 계단

• 포함: 얼음 덮힌 계단

C14.98.20 난간, 철책

C14 98 50 배전선

• 제외: 공급시설(主管, 本管)-가스, 상·하수도, 스팀, 온수, 전기 C11.01.45

고압 공중 송전선 098.02.10

C14.98.55 가스, 스팀, 온수용 파이프

• 제외: 배전선 C14.98.50

공급시설(主管, 本管)-가스, 상·하수도, 스팀, 온수, 전기 C11.01.45

압력을 이용한 장비 C11.04

C14,98,60 고정형 전기설비

• 포함: 콘센트, 스위치, 소켓

C14.98.61 도관이 된 환풍, 난방, 냉방 장치 및 관련부품

C14,98,98 기타 명시된 건물 및 부속물

• 포함: 건물의 부분, 발코니, 지붕, 차량차단기, 고정형(부착형) 간판, 화단

C14.99 미상의 건물 및 부속물

C15 표면형태(구조)

C15.01 지표면

C15,01,01 절벽

C15,01,05 경사지, 경사로

C15.01.10 도랑, 배수로(ditch), 구덩이

C15,01,15 하수구, 배수구, 맨홀

C15,01,20 배수관, 배수로(channel)

C15,01,98 기타 명시된 지표면

• 포함: 이스팔트로 포장된 지표면

C15,01,99 미상의 지표면

C15.02 물

사람이 만든 우물 C15,02,01

C15,02,05 저수지

C15.02.15 물웅덩이

C15,02,20 댐, 호수

C15,02,25 강, 개울

C15.02.30 습지, 소택지, 늪

C15,02,35 바닷가, 해안

C15,02,40 바다

C15,02,98 기타 명시된 물

C15,02,99 미상의 물

C15.98 기타 명시된 지면형태

C15,98,08 기타 경사진 지면(언덕길)

C15,98,18 기타 동일한 지면(바닥)

C15.98.28 기타 울퉁불퉁한 지면(과속방지턱 등)

C15,98,98 기타 명시된 지면형태

C15.99 미상의 지면

C16 물질

C16.01 자연물질

C16,01,01 눈, 얼음

C16.01.05 잔디, 풀, 목초

C16,01,08 바위. 돌

C16,01,10 목재, 판자, 널, 나무조각

C16.01.15 자갈, 모래, 흙

C16.01.19 건초, 짚

C16.01.20 대량의 곡식낟알

C16,01,98 기타 명시된 자연물질

C16,01,99 미상의 자연물질

• 포함: 눈에 먼지가 들어간 경우

C16.02 제조·산업물질

C16 02 01 인공잔디, 인공풀

C16.02.05 아스팔트, 역청(도로 포장 등에 쓰이는 찐득찐득한 시커먼 물질)

C16 02 08 벽돌. 콘크리트. 콘크리트 블록

C16.02.10 열로 녹은 금속

C16.02.18 금속 판, 금속 일부, 금속 조각, 금속가루

C16.02.28 도기, 도자기 - 판, 일부, 조각

C16.02.30 열에 녹은 유리

C16.02.38 유리 - 판, 일부, 조각

• 제외: 유리문 C14.02.05 유리창 C14.02.98

자동차 창문 또는 전면유리 C1.07.15

C16,02,40 결빙된 액체 또는 기체(0℃ 미만)

• 포함: 드라이아이스

C16 02 58 플라스틱, 스티로폼

• 제외: 비닐봉지 C98,98,80

C16.02.68 종이, 마분지, 보드지

C16.02.98 기타 명시된 제조·산업 물질

C16.02.99 미상의 제조·산업 물질

C16.98 기타 명시된 물질

C16.99 미상의 물질

C17 불·화염 · 연기

C17.01 불·화염

C17.01.01 타고 있는 기름

기타 타고 있는 액체 C17 01 05

C17.01.10 기타 타고 있는 기체

C17.01.15 건물·구조물에서 제어된 불·화염(예: 벽난로의 불)

C17.01.20 건물·구조물이 아닌 곳에서의 제어된 불·화염(예: 캠프파이어)

C17.01.25 건물·구조물에서의 제어되지 않은 불·화염(예: 가구의 화재)

C17.01.30 건물·구조물이 아닌 곳에서의 제어되지 않은 불·화염(예: 산불)

C17.01.98 기타 명시된 불·화염

C17 01 99 미상의 불ㆍ화염

C17.02 연기

• 제외: 자동차 배기가스 C21.98.01 일산화탄소 C21.98.01 또는 C21.98.03

C17.98 기타 명시된 불·화염·연기

C17.99 미상의 불·화염·연기

C18 뜨거운 물체 · 물질

• 제외: 타고 있는 물체 C17.01.n 뜨거운 음식·음료 C19.01.10 또는 C19.01.15

C18.01 뜨거운 액체

C18 01 01 뜨거운 수돗물

• 포함: 욕조, 양동이, 호스에서의 뜨거운 물

C18.01.05 끓는 물(수돗물 이외의 물)

• 제외: 뜨거운 커피 C19.01.15

C18.01.98 기타 명시된 뜨거운 액체

• 제외: 타고 있는 액체 C17.01.15

금속용액 C16,02,10 유리용액 C16.02.30

뜨거운 음료수 C19.01.15

C18.01.99 미상의 뜨거운 액체

C18.02 뜨거운 공기 또는 기체

C18.02.01 스팀, 뜨거운 수증기

C18.02.98 기타 명시된 뜨거운 공기 또는 기체 C18.02.99 미상의 뜨거운 공기 또는 기체

C18.98 기타 명시된 뜨거운 물체 · 물질

C18.99 미상의 뜨거운 물체 · 물질

C19 음식 · 음료

C19.01 음식·음료 또는 관련 상품

C19.01.05 뜨거운 요리용 오일, 기름(예: 식용유)

• 제외: 타고 있는 기름 C17.01.01

C19.01.10 뜨거운 음식

• 포함: 곰국 등 뜨거운 국물, 죽 등 버섯을 제외한 기타 조리된 음식

• 제외: 토사물 C98,98,70 생버섯 C13.01.13

조리된 버섯 C19.98

C19.01.15 뜨거운 음료

C19,01,20 차가운 음식 • 포함: 닭뼈, 생선가시, 게껍질

• 제외: 과일 C13.01.30

채소 C13.01.98

C19.01.25 차가운 음료 - 비주류

C19.01.30 음료 - 주류

C19.98 기타 명시된 음식·음료

• 포함: 애완동물용 사료

C19.99 미상의 음식·음료

C20 약품

C20.01 진통해열제·항류마티스제

C20,02 항생제 · 항균제

C20.03 감기약

C20.04 천식약

C20.05 항히스타민제

C20,06 항우울제

C20.07 진정제, 항정신병 약제, 수면제

C20.08 항경련제

C20.09 심혈관계 약물

C20,10 이뇨제

C20,11 항응고제

C20.12 소화제 · 위장약

C20.13 진단용 약물

C20,14 항암제

C20,15 마취약

C20,16 근이완제

C20.17 마약 길항제

C20.18 눈·귀·코·인후약

C20.19 국소적 약물

C20.20 비타민·식이보충제

C20 21 전해질·미네랄

C20.22 백신, 톡소이드

C20 23 호르몬제, 호르몬 길항제, 피임약

C20 24 불법 제조된 약물

• 포함: 최음제, 환각제, 식욕감퇴제, 코카인, 헤로인 등

C20 98 기타 명시된(인체용) 약품(한약재료, 한약, 환약 등)

미상의(인체용) 약품 C20 99

C21 기타 비약물성 화학물질

•제외: 세면용품, 화장품 또는 관련 상품 C9.04.n 아로마테라피 오일, 에센셜 오일 09.04.70

C21 01 이교 · 접착제

C21.01.01 접착체

C21.01.05 에폭시 수지(강력 접착제의 일종)

C21.01.10 시아노아크릴레이트(의료용 등의 강력 순간 접착제)

C21.01.98 기타 명시된 아교·접착제

C21 01 99 미상의 아교·전착제

C21_02 연료·용제

C21.02.01 LPG가스, 천연가스, 메탄가스, 프로판 가스, 부탄가스

C21,02,05 휘발유, 디젤, 가솔린

C21.02.10 윤활유, 엔진 오일

C21 02 15 변성 알코올(램프나 히터용)

C21.02.20 등유·파리핀유

C21.02.25 테레빈유

C21 02 38 기타 알코올

• 포함: 부틸알코올, 이소프로필알코올, 프로필알코올, 메탄올, 에탄올

• 제외: 변성 알코올 C21.02.15 주류 C19.01.30

C21.02.98 기타 명시된 연료·용제

C21.02.99 미상의 연료·용제

C21_03 페인트, 코팅제, 제거제

C21.03.01 페인트, 니스, 도뇨, 착색제

C21.03.05 시너, 페인트 제거제

C21.03.10 녹 제거제

C21.03.98 기타 명시된 페인트, 코팅제, 제거제

C21.03.99 미상의 페인트, 코팅제, 제거제

C21.04 애완동물(기축)용품, 실충제, 제초제

C21.04.01 애완동물(가축) 용품

• 포함: 개, 고양이 샴푸, 애완동물용 살충제

C21 04 05 쥐약. 살서제

C21.04.06 방충제

• 포함: 나프탈렌, 좀 방지제

C21 04 10 기타 유기인산화한물

C21.04.15 합성제 피레스로이드

C21.04.18 기타 살충제

• 포함: 표면스프레이, 날벌레용 스프레이

C21.04.25 진균제

• 제외: 애완동물(가축)용 용품 C21.04.01

C21.04.98 기타 명시된 살충제, 제초제

C21.04.99 미상의 살충제, 제초제

C21.05 세척제

C21.05.01 식기용 세제, 린스

C21.05.05 세탁용 세제 또는 첨가제, 섬유유연제, 얼룩제거제

C21.05.10 드라이클리닝 제제

C21.05.15 표백제, 흡수제

• 포함: 락스, 옥시크린

C21.05.20 역소

C21.05.25 고형세탁비누, 고형빨래비누, 가성소다

C21.05.30 소독제(페놀, 송유, 차아염소산염)

C21.05.35 배수관 세척제

C21 05 98 기타 명시된 세척제

C21.05.99 미상의 세척제

C21,06 기타 화학 공업 공정, 공업 제조 중 사용하는 반응제

C21.98 기타 명시된 비약물성 화학물질

C21.98.01 자동차 배기가스

C21 98 03 기타 출처의 일산화탄소

• 제외: 지동차배기가스에 포함된 일산화탄소 C21.98.01

C21.98.05 기타 탄산가스

• 포함: 이산화타소

C21.98.15 수은

C21.98.20 납

C21,98,28 기타 중금속

• 포함: 비륨, 카드뮴, 구리, 셀레늄, 탈륨, 비소

C21.98.30 비료, 식물 호르몬

C21.98.40 직물 염료

C21.98.50 가죽 염료

C21.98.60 식품 염료

• 포함: 식용색소

C21.98.70 사진용 제품

• 포함: 현상/정착/정지액, 시진 코팅액

C21.98.80 기타 전통 약품, 민간요법 약품

C21.98.98 기타 명시된 비약물성 화학 물질

• 포함: 염산, 빙초산

C21.98.99 미상의 비약물성 화학 물질

C40 의료·수술 장치

C40.01 병원 또는 개인용 장치

C40.01.01 피하 주사바늘·주사기

C40.01.05 수은 체온계

C40.01.08 기타 유형의 체온계

C40.01.10 환지를 들어올리기 위한 장치, 호이스트

C40.01.98 기타 명시된 병원 또는 개인용 장치

• 포함: 반창고

C40.01.99 미상의 병원 또는 개인용 장치

C40.02 일반 또는 성형수술 장치

C40.03 마취 장치

C40.04 심혈관 장치

C40.05 이비인후 장치

C40.06 위장관 장치

C40.07 신경학적 장치

C40.08 신과 또는 부인과 장치

C40.09 안과 장치

C40.10 정형외과 장치

C40.11 방사선 장치

C40.12 물리치료 장치

C40.98 기타 명시된 의료·수술 장치

C40.99 미상의 의료 · 수술 장치

C98 기타 명시된 물체 · 물질

C98.01 법 집행 장비

C98.01.01 수갑

C98.01.98 기타 명시된 법 집행 장비

• 제외: 곤봉 C12,98,01

C98.01.99 미상의 법 집행 장비

C98.02 공공사용물품

C98.02.01 소화전

C98.02.05 전신주

• 포함: 전화선, 전기선, 가로등이 달려있는 기둥

C98.02.10 고압(공중) 송전선

C98.02.98 기타 명시된 공공사용물품

• 포함: 가드레일, 신호등

C98.02.99 미상의 공공사용물품

C98.03 캠핑장비

C98 03 01 텐트

• 제외: 놀이텐트 C6.02.75

C98.03.98 기타 명시된 캠핑 장비

• 포함: 캠핑 • 프로판 스토브(버너, 프로판 램프 등)

• 제외: 캠핑용 (공기)매트리스 C5.01.15

C98 03 99 미상의 캠핑 장비

C98.04 조임·묶음·고정 장비

• 제외: 지퍼, 찍찍이 C9.01.10

C98.04.05 가시 철사

C98.04.08 기타 철사

사슬 C98,04,10

C98.04.98 기타 명시된 조임·묶음·고정 장비, 고무줄

C98.04.99 미상의 조임·묶음·고정 장비

C98.05 기타 폭발성·가연성 물질·물체

C98,05,01 불꽃

• 포함: 용접 불꽃, 폭죽

C98.05.02 폭발물(다이너마이트, 뇌관, 수제폭탄, 방화장치)

C98.05.98 기타 명시된 폭발성·가연성 물질·물체

C98.05.99 미상의 폭발성·가연성 물질·물체

C98.98 기타 명시된 물질·물체

C98.98.01 고압 제트기

C98.98.05 레이저 빛과 장비, 강한 용접 빛, 햇빛

C98.98.10 레이저 포인터

C98.98.28 기타 날카로운 물체

C98.98.38 기타 둔탁한 물체

C98.98.48 기타 모터, 엔진

• 제외: 차량의 엔진 C1.07.25

C98 98 50 건전지

• 제외: 처량의 배터리 C1.07.10

C98.98.55 원형전지

• 제외: 차량의 배터리 C1.07.10

C98.98.58 기타 건전지

• 제외: 차량의 배터리 C1.07.10

C98.98.60 동물 우리

C98.98.70 위 내용물

• 포함: 토사물

C98.98.75 대변, 배설물(사람·동물)

C98.98.78 혈액, 시체·시신, 뼈(사람·동물)

• 포함: 손톱, 머리카락

C98.98.80 비닐봉지, 플라스틱 백

C98.98.85 쓰레기

• 포함: 음식물 쓰레기

C98.98.88 기타 환경오염물, 오염원

C98.98.98 기타 명시된 물질·물체

• 포함: 마네킹

C99 미상의 물질·물체

Ⅱ 분과별 심층항목

1. 운수사고



운수사고 발생시 사고기전

정	의	운수사고 발생 시 사고기전 					
용	도	운수사고 발생 시 충돌 유형에 대한 자료를 수집하여 손상의 중증도 파악 및 손상예방 대책 마련					
변 수	명	운수사고 발생시 사고기전(TA_COL_PATTERN)					
۾	형	문자 필수여부 필수 조사시작일 2006. 8. 1. 2019. 1. 1.(변수명, 코드변경)					
코	드	C1 정면봉돌 C4 전복· 전도(180도 미만) C2 측면봉돌 C4.2 우측 전도(180도 미만) C2.1 좌측면 충돌 C4.3 미상(180도 미만) C2.2 우측면 충돌 C4.4 전복(180도 이상) C5 복합봉돌 C98 기타 C99 미상					
질 관 리 지	침	1. 손상기전(MECH)이 운수사고 중 'C11.20 자전거~C11.99 미상의 탈것'인 경우 반드시 입력 2. 손싱기전(MECH)이 'C11.10 보행자'인 경우는 조사에서 제외 3. 용어의 정의 - 정면충돌: 탑승자 차량 기준으로 전면부 파손과 탑승자의 손상이 발생한 충돌에시) 마주 오는 차량과 충돌, 신호등과 정면충돌 등 - 측면충돌: 탑승자 차량 기준으로 좌/우측면 파손과 탑승자의 손상이 발생한 충돌에시) 좌회전 도중 마주 오는 차량과 충돌(운전석 측) - 후면충돌: 추돌이라 하며 탑승자 차량 기준으로 후면 파손과 탑승자의 손상이 발생한 충돌에시) 신호대기 중 다른 차량이 후면을 들이받은 경우 - 전 도: 탑승자 차량이 좌/우측으로 기울어지거나 넘어진 경우에시) 좌회전 도중 운전석 측으로 중심을 잃고 차량이 넘어진 경우					

운수사고 발생시 사고기전 기타내용

정		의	운수사고 발생 시	운수사고 발생 시 사고기전의 기타내용						
용		도	운수 사고 발생 시	충돌 유형에 대	한 자료를 수집하	ih여 손상의 중증 도	E 파악 및 손상예방 대책 마련			
변	수	명	운수 사고 발생시	사고기전 기타내	용(TA_COL_PAT	TERN_ETC)				
유		형	문자	필수여부	필수	조사시작일	2006. 8. 1. 2019. 1. 1.(변수명 변경)			
코		드	내용입력	내용입력						
질 관 리 지 침						2 운수사고 사고기전 기타내용을				

운수사고 관련 약물복용 유무

정		의	운수사고 발생 시	운수사고 발생 시 사고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약물복용 유무					
용		도	운수사고 발생 시 활용	사고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약물복용	용 상태에 대한 자료	문를 수집하여 손상예방 대책 미련에		
변	수	명	운수 사고 관련 약	물복용 유무(TA_	DRUG)				
유		형	문자	필수여부	필수	조사시작일	2006, 8, 1, 2019, 1, 1,(변수명, 코드변경)		
코		드		어떤 약물 복용 5거에 의해 어떤	에 대한 증거 또 약물 복용 에 대	는 의심이 있음 한 증거 또는 의심			
질된	C5 사고 관련자 진술로 어떤 약물 복용에 대한 증거 또는 의심이 있음 1. 손상기전(MECH)이 'C11 운수사고'인 경우는 운수사고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운전자 또는 조작자에 한하여 반드시 입력 2. 약물 복용 후 24시간내 운전 혹은 조작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약물을 복용했는지 조사 3. 약물 종류 - 마약류, 졸음을 유발할 수 있는 감기약, 진정제, 항경련제, 수면제, 항히스타민제제 4. 약병 등의 증거품이 있는 경우 → C4 사고 관련 증거에 의하여 어떤 약물 복용에 대한 증거 또는 의심이 있음 5. 약병 등의 증거품은 없었으나 관련자의 진술에 의한 약물복용이 확인될 경우 → C5 사고 관련자 진술로 어떤 약물 복용에 대한 증거 또는 의심이 있음								

기저질환 유무

정		의	운수 사고 환자기	운수 사고 환자가 사고 전에 가지고 있던 질환							
용		도	운수시고 환자의 시고 전에 가지고 있던 질환에 대한 진료결과를 조사하여 손상 예방을 위한 적절한 조치와 자원의 효율적 이용								
변	수	명	기저질환 유무(T	A_N_HISTORY	_1~TA_N_HIS	TORY_12)					
유		형	문자	필수여부	!수여부 필수 조사시작일		2006. 8. 1. 2019. 1. 1.(변수명, 코 2022. 7. 1.(변수명, 코				
			기저질환 유무(T	A_N_HISTORY	_1) C() 기저질환 있음	C1 기저질환 없음	C9 미상			
			고혈압(TA_N	I_HISTORY_2)		C0 아니오	C1 예	C9 미상			
			당뇨(TA_N_HISTORY_3)			C1.1 약물 치료함 C1.2 약물 치료안함					
		_	결핵(TA_N_ト	클핵(TA_N_HISTORY_4)			C1.9 약물 치료 여부 모름				
			간질환(TA_N	환(TA_N_HISTORY_5)			어구 조금				
코			뇌혈관질환(TA_N_HISTORY_6)								
_		_	심장질환(TA_N_HISTORY_7)								
			암(TA_N_HS	암(TA_N_HISTORY_8)							
			치매(TA_N_ト	HISTORY_9)							
			간질(TA_N_ト	HISTORY_10)							
			혈액응고장이	H(TA_N_HISTOR	RY_11)						
			파킨슨병(TA_N_HISTORY_12)								
질 곤	<u></u> 리 ㅈ	침	1. 손상기전(MECH)이 'C11 운수사고'인 경우는 반드시 입력 2. 해당하는 기저질환에 대해 중복 선택 가능 3. 기저질환 유무(TA_N_HISTORY_1) 'C0 기저질환 있음'인 경우 기저질환을 반드시 선택하여 입력 5. 고혈압 등 질환을 가지고 있는 경우는 'C1 예'로 입력한 후 반드시 치료여부를 입력 6. 과거력을 전혀 알 수 없는 경우 → 기저질환 유무(TA_N_HISTORY_1) 'C9 미상'으로 입력								



운수사고 후 내원소요시간

정		의	운수사고 후 환자	운수사고 후 환자가 응급실 내원까지 소요된 시간					
용		도		운수사고 환자가 응급실 내원까지 소요된 시간에 대한 자료를 수집하여 이송체계 등 손상예방을 위한 효율적인 자원 배분의 기초자료로 활용					
변	수	명	사고 후 내원소요	사고 후 내원소요시간(TA_HT)					
유		형	숫자	필수여부	필수	조사시작일	2006. 8. 1. 2019. 1. 1.(변수명 변경)		
코		드	(숫자)분 예) 3시	(숫자)분 예) 3시간 20분 → 200분					
질 곤	질 관 리 지 침 1. 손상기전(MECH)이 'C11 운수사고'인 경우는 반드시 입력 2. 내원 소요시간을 알 수 없는 경우는 '-1'로 입력								

운수사고 환자의 내원 후 첫번째 수술일자

정		의	운수사고 후 병원에	운수사고 후 병원에 내원하여 시행한 최초의 수술날짜						
용		도		운수사고 환자가 수술한 경우 사고 발생부터 첫 번재 수술까지 소요된 시간에 대한 자료를 수집하여 환자 이송 및 치료의 적정성 평가에 기초자료로 활용						
변	수	명	운수 사고 환자의 나	운수사고 환자의 내원 후 첫번째 수술일자(TA_OPDATE)						
유		형	문자형(숫자)	필 수 여 부	필수	조사시작일	2022, 7, 1,			
코		드	YYYYMMDD 년(4조	·니) 월(2자리) 일(2:	자리) (예) 2017010 ⁻	1>				
질 굔	1. 손상기전(MECH)이 'C11 운수사고'인 경우, 수술유무가 'C1 예'인 경우 반드시 입력 2. 운수사고 후 병원에 내원하여 시행한 최초의 수술 시간을 기준으로 입력 3. 수술 날짜를 알 수 없는 경우 알 수 있는 데까지 입력하고 나머지는 99로 입력									

운수사고 환자의 내원 후 첫번째 수술시간

정		의	운수사고 후 병원에	운수사고 후 병원에 내원하여 시행한 최초의 수술 시간						
용		도		운수사고 환자가 수술한 경우 사고 발생부터 첫번째 수술까지 소요된 시간에 대한 자료를 수집하여 환자 이송 및 치료의 적정성 평가에 기초자료로 활용						
변	수	명		운수사고 환자의 내원 후 첫번째 수술시간(TA_OPTIME)						
유		형	문자형(숫자)	필 수 여 부	필수	조사시작일	2022. 7. 1.			
코		드	HHMM 24시간제,	4자리 (예) 오후 3 <i>,</i>	시 30분 → 1530〉					
질 굔	3. 수술 시간을 알 수 없는 경우 알 수 있는 데까지 입력하고 나머지는 99로 입력									

운수사고 후 수술까지 시간

정	<u>o</u>	 운수사고 후 수술현	한 경우 사고 발생	생부터 수술까지 .	시간			
용	도	운수사고 환자가 수 및 치료의 적정성			지 소요된 시간에	대한 자료를 수집하여 환자 이송		
변 4	수 명	! 운수시고 후 수술까	까지 시간(TA_ST)					
유	- 80	! 숫자	필수여부	필수	조사시작일	2006. 8. 1. 2019. 1. 1.(변수명 변경) 2022. 7. 1.(수집정보 변경)		
코	_							
질 관 리	질 관 리 지 침 1. 손상기전(MECH)이 'C11 운수사고'인 경우는 반드시 출력 2. 운수사고 후 병원에 내원하여 시행한 최초의 수술 시간을 기준으로 출력 * 손상발생 시간과의 차이를 자동계산 3. 수술까지의 시간을 알 수 없는 경우 수술까지의 시간은 '-1'로 출력							

퇴원 시 GOS(Glasgow outcome scale)

정	의	운수 사고 환자의 퇴	운수 사고 환자의 퇴원 당시 글라스고우 결과 척도							
용	도	운수사고 환자의 퇴	운수사고 환자의 퇴원 당시 장애 정도에 대한 자료를 수집하여 손상예방 대책 미련							
변 수	명	퇴원 시 GOS(TA_C	DIS_GOS)							
유	형	문자	문자 필수여부 필수 조사시작일 2019. 1. 1.							
코	<u>=</u>	C1 사망(dead) C2 식물인간(vege) C3 심한 장애(sev) C4 중등도 장애(m) C5 회복(good rec	ere disability) noderate disability)						
질 관 리 지	침	1. 손상기전(MECH)이 'C11 운수사고'인 경우 입원한 환지는 반드시 입력 2. 퇴원 당시 의무기록을 리뷰하여 자세하게 입력 3. 용어 정의 - 사망 - 식물인간: 최소한의 반응만 있음 - 심한 장애: 의식은 있으나 장애가 있음, 일상생활 시 타인에게 의존해야 함 - 중등도 장애: 장애가 있으나 독립적임, 보호받는 환경에서 일할 수 있음 - 회복: 약간의 장애는 있으나 정상적인 일상생활이 가능함								

운수사고 발생 시 기상상태

정		의	운수사고 발생 시 팀	운수사고 발생 시 발생지역의 기상상태						
용		도	운수시고 발생 시 빌 활용	운수사고 발생 시 발생지역의 기상상태에 대한 자료를 수집하여 손상예방 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						
변	수	명	운수사고 당시 기싱	상태(TA_PLACE_'	WEATHER)					
유		형	문자	필수여부	필수	조사시작일	2019. 1. 1.			
코		트	C1 맑음 C2 흐림 C3 비		4 눈 5 안개낌		기타 미상			
질 곤	1. 손상기전(MECH)이 'C11 운수사고'인 경우 반드시 입력 2. 운수사고 발생 시 환자 및 사고 관련자 진술을 우선으로 입력 3. 우박이 내린 경우는 'C98 기타'로 입력									

운수사고 발생 시 기상상태 기타내용

정		의	운수사고 발생 시 !	운수사고 발생 시 발생지역의 기상상태의 기타내용						
용		도	운수사고 발생 시 발 활용	운수사고 발생 시 발생지역의 기상상태에 대한 자료를 수집하여 손상예방 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						
변	수	명	운수사고 발생 시 :	운수사고 발생 시 기상상태(TA_PLACE_WEATHER)						
유		형	문자 필수여부 필수 조사시작일 20		2019. 1. 1.					
코		드	내용입력	내용입력						
질 관 리 지 침			1. 운수사고 발생 / 2. 우박이 내린 경약			상상태의 기타 내용을 '우박'으로 입력	을 구체적으로 입력			

운수사고 환자의 키

정	의	운수사고 당사자의	운수 사고 당사자의 키					
용	도		문수사고 당사자의 키에 대한 자료를 수집하여 손상관련 위험요인 파악에 활용					
변 수	명	운수사고 환자의 키	은수사고 환자의 키(TA_PAT_HEIGHT)					
유	형	숫자	필수여부	입원환자 필수	조 사 시 작 일	2019. 1. 1. 2022. 7. 1.(필수여부)		
코	드	cm	cm					
질 관 리 기	1. 손상기전(MECH)이 'C11 운수사고'인 경우 반드시 입력 2. 운수사고 당사자의 키(신장)는cm 로 입력 3. 운수사고 당사자의 키(신장)을 알 수 없는 경우 '-1'로 입력 4. 응급실 도착 시 직접 측정하지 않는 경우는 환자나 보호자에게 물어서 입력, 간호정보지 등 의무기통 최대한 찾아서 입력							

운수사고 환자의 몸무게

정	<u>o</u>	일 	운수사고 당사자의 몸무게					
용	5	E i	운수사고 당사자의 몸무게에 대한 자료를 수집하여 손상관련 위험요인 파악에 활용					
변 수) B	∄ ¦	운수 사고 환자의 몸	운수사고 환자의 몸무게(TA_PAT_WEIGHT)				
유	ē	∄ ÷	숫자	필수여부	열 입원환자 필수 조사시작일 2019, 1, 1, 2022, 7, 1,(필수여부)			
코	=	■ -	kg					
1. 손상기전(MECH)이 'C11 운수사고'인 경우 반드시 입력 2. 운수사고 당사자의 몸무게는 kg으로 입력 3. 운수사고 당사자의 몸무게를 알 수 없는 경우 '-1'로 입력 4. 응급실 도착 시 직접 측정하지 않는 경우는 환자나 보호자에게 물어서 입력, 간호정보지 등 9						간호정보지 등 의무기록에서		

운수사고 환자의 체질량 지수

정		의	운수사고 당시 당시	운수사고 당시 당사자의 체질량 지수						
용		도	운수사고 당사자의	운수 사고 당사자의 체질량 지수에 대한 자료를 수집하여 손상관련 위험요인 파악에 활용						
변	수	명	운수 사고 환자의 처	은수사고 환자의 체질량지수(TA_PAT_BMI_INDEX)						
유		형	숫자	필수여부	입원환자 필수 조 사 시 작 일 2019. 1. 1. 2022. 7. 1.(필수여부)					
코		드	kg/m ²	kg/m²						
2 관리지침 1. 손상기전(MECH)이 'C11 운수사고'인 경우 반드시 입력 2 관수사고 당사자의 체질량 지수 입력 * 웹시스템에서 자동 계산 3. 운수사고 당사자의 체질량 지수를 알 수 없는 경우 '-1'로 출력										

운수사고 환자의 중환자실 재원기간

정	의	운수사고 당사자의	운수사고 당사자의 중환자실 재원기간						
용	도	운수시고 당사자의 중 활용	운수사고 당사자의 중환자실 재원기간에 대한 자료를 수잡하여 손상의 중증도 및 의료자료 이용 등 파악에 활용						
변 수	명		은수사고 환자의 중환자실 재원기간(TA_PAT_ADMICU_LOS)						
유	형	숫자 필수여부 필수 조사시작일 2019. 1.		2019. 1. 1.					
코	드	재원기간 입력	재원기간 입력일						
질 관 리 저	1. 손상기전(MECH)이 'C11 운수사고'인 경우 반드시 입력 2. 운수사고로 중환자실에 입실한 경우의 재원기간을 날째(DAY)로 입력 3. 중환자실 입실 후 퇴실하고 다시 중환자실에 입실한 경우 재원기간을 모두 합한 총 재원기간으로 4. 운수사고 환자의 중환자실 재원기간을 알 수 없는 경우 '-1'로 입력					합한 총 재원기간으로 입력			

운수사고 발생 시 환자의 운송수단

정	9	의	운수 사고 발생 시 환자가 타고 있던 운송수단 의 종류						
용		E	운수사고 발생 시 환자가 탑승한 운송수단에 대한 자료를 수집하여 관련 위험요인을 파악하고 손상예방						
			정책 수립 및 평가 기초자료로 활용						
변 -	수 5	경	운수사고 당시 환자의 운송수단(TA_PAT_VEHICLE_TY)						
유	ā	형	문자 필수여부 필수 조사시작일 2019. 1. 1. 2022. 7. 1.(코드변경)						
코	<u>1</u>		C1 자전거 (1.1) 무동력 C1.2 동력(전기 등) C1.9 미상 C2 오토바이 (2.1) 50cc 미만 C2.2 125cc 미만 C2.3 125cc 이상 C2.9 미상 C3 승용자동차 (3.1) 경치 (3.2) 세단 C3.3 SUV C3.4 기타 승용채(10인승 이하) C3.9 미상 C4 승합자동차 (3.1) C3.2 세단 C3.3 SUV C3.4 기타 승용채(10인승 이하) C3.9 미상 C5 버스 (51.1) C3.1 경우/2 정원 (3.2) 시원 (3.2) 지원 (3.2)						
질 관 i	리지	<u>k</u> l	1. 손상기전(MECH)이 'C11 운수사고'인 경우 반드시 최하위 코드까지 입력 2. 콤바인은 농업용 특수차량 중 기타로 입력 3. 케이블카, 스키리프트는 'C98 기타'로 입력						

전 동 외 륜 보 드	전 동 이 륜 보 드	전동이륜평행차	전 동 킥 보 드	전동스케이트보드
				CO CO

운수사고 환자의 AIS (Abbreviated Injury Scale)

정 의	운수사고 당사자의 손상	운수사고 당사자의 손상부위의 중증도						
용 도	운수사고 당사자의 AISO	에 대한 자료를	를 수집하여 손상	부위별로 손상의 중	증도 파악			
변 수 명	운수사고 환자의 AIS(TA	운수사고 환자의 AIS(TA_AIS_1~AIS_20)						
유 형	숫자 필수여부 필수 조사시작일 2019. 1. 1.							
코 드	AIS 코드							
질 관 리 지 침	1. 손상기전(MECH)이 'C 2. 손상 진단명이 있는 : 3. AIS는 신체 부위를 외막따라 1~6점을 부여 4. AIS 점수 - 1점: 경미한 손상 - 2점: 중증도 손상이나 : - 4점: 중증 손상이나 : - 4점: 중증 손상이며 : - 5점: 생존이 의심됨 - 6점: 생존 불가능 5. AIS 코드 분류는 'AIS 총 8자리(FULL 코드)	경우 해부학적 부, 두부, 경부 생명과 관련0 생명과 관련0	택 부위와 AIS 코드 부, 홍부, 복부 및 골 미 없음 미 있음	E의 해부학적 코드7 반, 척추, 사지 7개 특	수위 로 구분하고 손상 정도에			

운수사고 환자의 보호장비(에어백)

정		의	운수사고 발생 당시	운수사고 발생 당시 작동한 에어백의 상태						
용		도		은수사고 발생 당시 보호장비 에어백 상태에 대한 자료를 수집하여 관련 위험요인을 파악하고 손상예방 정책 수립 및 평가 기초자료로 활용						
변	수	명	운수 사고 환자의 어	은수사고 환자의 에어백(TA_PAT_AIRBAG_1~ TA_PAT_AIRBAG_9)						
유		형	문자	필 수	여 부	필수	<u> </u>	조사시작일	2022. 7. 1.	
			전면 에어백(TA_PA	T_AIRBA	G_1)					
		드	측면 에어백(TA_PA	T_AIRBA	G_2)		C0 아니오			
코			커튼 에어백(TA_PA	T_AIRBA	G_3)		C1 예			
			무릎 에어백(TA_PA	T_AIRBA	G_4)		C9 미상			
			フ E (TA_PAT_AIRB	AG_9)						
3 관 리 지 침 1. 만 6세 이상이며 손상기전이 'C11.61, C11.67, C11.70'인 경입력된 환자는 반드시 입력 (단, 운수사고 당시 환자의 역할 운송수단 외부에 있는 사람의 경우는 조사하지 않음) 2. 해당하는 에어백 종류에 대해 중복 선택 가능										

운수사고 환자의 보호장비(에어백) 기타내용

·· 코 질 관		<u></u>	내용입력							
유		형	문자	필수여부	필수	조사시작일	2022, 7, 1,			
변	수	명	운수사고 환자의 보	운수사고 환자의 보호장비(에어백) 기타내용(TA_PAT_AIRBAG_ETC)						
용		도		운수사고 발생 당시 보호장비 에어백 상태에 대한 자료를 수집하여 관련 위험요인을 파악하고 손상예방 정책 수립 및 평가 기초자료로 활용						
정		의	운수사고 발생 당시	운수사고 발생 당시 작동한 에어백의 상태의 기타내용						

2. 머리·척추 손상



머리ㆍ척추 손상 유무

정	의	머리, 척추(head, face, spine) 부위 전체 손상 유무					
용	도	응급실 내원 후 응급실 진료결과 머리ㆍ척추 손상유무를 파악하여 머리ㆍ척추 손상환지를 분류하는데 활용					
변 수	명	머리·척추 손상(HS_YN)					
유	형	문자	필수여부	필수	조사시작일	2006. 8. 1. 2019. 1. 1.(변수명 변경)	
코	드	CO 없음 C1 있음					
질 관 리 지 침		1. 응급실에 내원한 전체 환자의 응급실 진단명에 머리, 척추 손상 코드 입력 시 자동으로 'C1 있음'으로 처리 2. 해부학적 경계에 의해 두부, 척추 해당 부위의 손상을 초래한 모든 손상기전에 의한 표재성, 심부 손상 모두를 포함 3. 직접적인 외력의 작용, 기속, 감속에 의한 손상뿐만 아니라 해당 해부학적 부위의 이물, 중독, 화상 등의 모든 손상을 포함					

외상성 머리 손상

	ж 0\i	래의 진단명에 해당하는 손상환자를 외상성 머리 손상 환자로 정의
	S01.0	Open wound of scalp
	S01.1	Open wound of eyelid and periocular area
	S01,2	Open wound of nose
	S01,3	Open wound of ear
	S01.4	Open wound of cheek and temporomandibular area
	S01.5	Open wound of lip and oral cavity
	S01.7	Multiple open wound of head
	S01,8	Open wound of other parts of head
	S01.9	Open wound of head, part unspecified
	S02.0	Fracture of vault of skull
	S02 _. 1	Fracture of base of skull
	S02,3	Fracture of orbital floor
	S02.7	Multiple fractures involving skull and facial bones
	S02.8	Fracture of other skull and facial bones
정 의	S02.9	Fracture of skull and facial bones, part unspecified
	S04.0	Injury of optic nerves and pathways
	S06.0	Concussion
	S06,1	Traumatic cerebral oedema
	S06.2	Diffuse brain injury
	S06.3	Focal brain injury
	S06.4	Epidural hemorrhage(Traumatic extradural hemorrhage)
	S06.5	Traumatic subdural hemorrhage
	S06.6	Traumatic subarachnoid hemorrhage
	S06.7	Intracranial injury with prolonged coma
	S06.8	Other intracranial injuries
	S06.9	Intracranial injury, unspecified
	S07.0	Crushing injury of face
	S07 _. 1	Crushing injury of skull
	S07.8	Crushing injury of other parts of head
	S07.9	Crushing injury of head, part unspecified

			S09.7 Multiple ii	njuries of head					
			S09.8 Other specified injuries of head						
			S09.9 Unspecifie	ed injury of head					
정		의	T01.0 Open wounds involving head with neck						
				involving head v					
			_	injuries involving					
			T06.0 Injuries of	f brain and crania	al nerves with inju	uries of nerves and	spinal cord at neck level		
용		도	머리 손상 환자들을 구분하여 머리 손상 환자에 대한 추적 심층조사를 시행하는 근거						
변	수	명	외상성 머리 손상()	HS_EXT_H)					
유		형	문자	필수여부	필수	조사시작일	2006. 8. 1.		
			CO 없음						
코		드	 C1 있음						
_		_							
			C2 미상						
식 바 리 시 신			머리·척추 손생(HS 'C1 있음' 으로 입력		면서 위의 진단명여	에 해당하는 경우 외성	y성 머리 손상(HS_EXT_H)		

외상성 척추 손상

	※ 아래	의 진단명에 해당하는 환자를 외상성 척추 손상 환자로 정의
	S12.0	Fracture of first cervical vertebra
	S12,1	Fracture of second cervical vertebra
	S12,2	Fracture of other specified cervical vertebra
	S12.7	Multiple fractures of cervical spine
	S12.8	Fracture of other parts of neck
	S12.9	Fracture of neck, part unspecified
	S13 _. 0	Dislocation, sprain and strain of joints and ligaments at neck level
	S13,1	Traumatic rupture of cervical intervertebral disc
	S13,2	Dislocation of cervical vertebra
	S13,3	Multiple dislocations of neck
	S13,4	Sprain and strain of cervical spine
	S13.5	Sprain and strain of thyroid region
	S13 _. 6	Sprain and strain of joints and ligaments of other and unspecified parts of neck
	S14.0	Concussion and oedema of cervical spinal cord
정 의	S14 _. 1	Other and unspecified injuries of cervical spinal cord
	S22 _. 0	Fracture of thoracic vertebra
	S22 _. 1	Multiple fracture of thoracic spine
	S23 _. 0	Traumatic rupture of thoracic intervertebral disc
	S23 _. 1	Dislocation of thoracic vertebra
	S23,3	Sprain and strain of thoracic spine
	S24 _. 0	Concussion and oedema of thoracic spinal cord
	S24.1	Other and unspecified injuries of thoracic spinal cord
	S24.2	Injury of nerve root of thoracic spine
	S32.0	Fracture of lumbar vertebra
	S33 _. 0	Traumatic rupture of lumbar intervertebral disc
	S33,1	Dislocation of lumbar vertebra
	S33,5	Sprain and strain of lumbar spine

정		의	S34.0 Concussion and oedema of lumbar spinal cord S34.1 Other injury of lumbar spinal cord S34.2 Injury of nerve root of lumbar and sacral spine S34.3 Injury of cauda equina					
용		도	척추 손상 환자들을 구분하여 척추 손상 환자에 대한 추적 심층조시를 시행하는 근거자료					
변	수	명	외상성 척추 손상(HS_EXT_S)					
유		형	문자	필수여부	필수	조사시작일	2006, 8, 1,	
			CO 없음					
코		드	C1 있음					
			C2 미상					
질 관 리 지 침		침	머리 · 척추 손상(HS_YN) 'C1 있음' 이면서 위의 진단명에 해당하는 경우 외상성 척추 손상 (HS_EXT_S) 'C1 있음'으로 입력					



응급실 결과사유

정 의	응급실 진료결과 머리·척추 손상 해당 유무	응급실 진료결과 머리·척추 손상 해당 유무						
용 도	머리·척추 손상에 대한 자료의 수집 및 분석으로 손상예방을 위한 적절한 조치와 지원의 효율적 (머리ㆍ척추 손상에 대한 자료의 수집 및 분석으로 손상예방을 위한 적절한 조치와 자원의 효율적 이용						
변 수 명	응급실 결과시유(HS_EMG_RS1-HS_EMG_RS2)	응급실 결과시유(HS_EMG_RS1-HS_EMG_RS2)						
유 형	문자 필수여부 필수 조사시작일 2006. 8. 1.							
코 드	머리·척추(HS_EMG_RS1) C1 예 C0 아니오 그 이외(HS_EMG_RS2) C1 예 C0 아니오							
질 관 리 지 침	 1. 외상성 머리손상(HS_EXT_H) 또는 외상성 척추손상(HS_EXT_S) 'C1 예' 이면서, 응급진료결과(EMR' 'C21~C28 전원, C31~C38 입원, C41~C48 사망'인 경우 반드시 조사 2. 입원, 전원, 사망의 원인이 머리・척추 손상부위 때문인 경우 → 머리・척추(HS_EMG_RS1) 예'로 입력 3. 입원, 전원, 사망의 원인이 머리・척추를 제외한 다른 부위 때문인 경우 → 그 이외(HS_EMG_F 'C1 예'로 입력 4. 입원, 전원, 사망의 원인이 머리・척추 손상 및 그 이외 부위 때문인 경우 두 항목 모두 'C1 이입력 	'C1 RS2)						

중재종류

정		의	머리・척추 손상 환자의 중재 유무와 해당 중재 시행 여부							
용		도	머리・척추 손상 환자의 중재에 대한 자료를 수집하여 치료 방법 및 지침 개발에 활용							
변	수	명	코드항목 참조							
유		형	문자, 숫자 필수여부 필수 조사시작일 2006. 8. 1. 2019. 1. 1.(코드변경)							
			□ 두경부혈관조영술(Angiography) □ CO 아니오 C1 예 □ 타병원 시행 □ 응급실 내원 후 처음 시행시각 □ active bleeding □ 년 월 일 시 분							
			□ 두경부색전술(Embolization) □ CO 아니오 C1 예 □ 응급실 내원 후 처음 시행시각 □ 년 월 일 시 분							
			□ 승압제(Vasopressor) □ CO 아니오 C1 예 □ 응급실 내원 후 처음 시행시각 □ 년 월 일 시 분							
코		드	□ 혈압강하제(Anti-hypertensive drug) □ CO 아니오 C1 예 □ 응급실 내원 후 처음 시행시각 □ 년 월 일 시 분							
			□ 심폐소생술(CardioPulomonaryResuscitation) □ CO 아니오 C1 예 □ 응급실 내원 후 처음 시행시각 □ 년 월 일 시 분							
			□ 수혈 적혈구(RedBloodCell) C0 아니오 C1 예 (unit) □ 응급실 내원 후 처음 시행시각 □ 년 월 일 시 분							

	□ 수혈 혈소판(Platelet) □ CO 아니오 C1 예 (unit) □ 응급실 내원 후 처음 시행시각 □ 년 월 일 시 분	□ 타병원 시행
	□ 수혈 혈장(Plasma) CO 아니오 C1 예 (unit) □ 응급실 내원 후 처음 시행시각 년 월 일 시 분	□ 타병원 시행
	□ 기도삽관(Intubation) CO 아니오 C1 예 □ 응급실 내원 후 처음 시행시각 <u>년 월 일 시 분</u>	□ 타병원 시행
	□ Surgical airway CO 아니오 C1 예 □ 응급실 내원 후 처음 시행시각 <u>년 월 일 시 분</u>	□ 타병원 시행
	□ 만니톨 정맥주사(Mannitol IV) CO 아니오 C1 예 □ 응급실 내원 후 처음 시행시각 <u>년 월 일 시 분</u>	□ 타병원 시행
	□ 스테로이드 정맥주사(Steroid IV) □ CO 아니오 C1 예 □ 응급실 내원 후 처음 시행시각 □ 년 월 일 시 분	□ 타병원 시행
	□ 두개내압 모니터링(ICP monitoring) □ CO 아니오 C1 예 (초기 ICPmmHg) □ 응급실 내원 후 처음 시행시각 □ 년 월 일 시 분	□ 타병원 시행
	□ 목표체온유지치료(TTM) CO 아니오 C1 예 □ 응급실 내원 후 처음 시행시각 ■ 년 월 일 시 분	□ 타병원 시행
	□ 뇌척수액체외배관(External CSF drainage) C0 아니오 C1 예 □ 응급실 내원 후 처음 시행시각 □ 년 월 일 시 분	□ 타병원 시행

	□ 항간질약 예방적 투여(Anti-seizure prophylaxis) CO 아니오 C1 예 □ 응급실 내원 후 처음 시행시각 □ 년 월 일 시 분
	□ 고용량 바르비투르 사용(High dose barbiturate) CO 아니오 C1 예 □ 타병원 시행 □ 응급실 내원 후 처음 시행시각 □ 년 월 일 시 분
	□ 천두술(Burr hole trephination) CO 아니오 C1 예 □ 타병원 시행 □ 응급실 내원 후 처음 시행시각 □ 년 월 일 시 분
	□ 개두술(Craniotomy) CO 아니오 C1 예 □ 응급실 내원 후 처음 시행시각 <u>년 월 일 시 분</u>
	□ 머리뼈절제술(Craniectomy)
	□ 척추감압술(Decompressive spine surgery) CO 아니오 C1 예 □ 응급실 내원 후 처음 시행시각 □ 년 월 일 시 분
	□ 척추고정술(Spinal fusion) CO 아니오 C1 예 □ 응급실 내원 후 처음 시행시각 □ 년 월 일 시 분
	□ 외부 고정술(External immobilization) □ CO 아니오 C1 예 □ 응급실 내원 후 처음 시행시각 □ 년 월 일 시 분
	□ 척추성형술(Vertebroplasty) CO 아니오 C1 예 □ 응급실 내원 후 처음 시행시각 □ 년 월 일 시 분
질 관 리 지 침	1. 두경부혈관조영술~심폐소생술은 응급실 도착 후 24시간 이내 처치 한 경우에만 입력 2. 수혈~척추성형술은 응급실 또는 입원 1주일 이내 처치 한 경우로 첫 번째 시행한 내용을 기준으로 입력 3. 시행시각은 연도 4자리, 월 2자리, 일 2자리, 시간 2자리, 분 2자리로 총 12자리로 입력

손상환자의 AIS

정 의	머리·척추 손상환자의 손상부위의 중증도						
용 도	손상환자의 AIS에 대한 자료를 수집하여 손상 부위별로 손상의 중증도 파악						
변 수 명	머리척추 손상환자의 AIS(HS_AIS_1~AIS_20)	머리척추 손상환자의 AIS(HS_AIS_1~AIS_20)					
유형	숫자 필수여부 필수 조사시작일 2019. 1. 1.						
코 드	AIS 코드						
질 관 리 지 침	1. 머리 · 척추 손상환자의 경우 반드시 입력 2. 손상 진단명이 있는 경우 해부학적 부위와 AIS 코드의 해부학적 코드가 불일치할 경우 오 3. AIS는 신체 부위를 외부, 두부, 경부, 흉부, 복부 및 골반, 척추, 사지 7개 부위로 구분하고 손상따라 1~6점을 부여 4. AIS 점수 - 1점: 경미한 손상 - 2점: 중증도 손상 - 3점: 중증 손상이나 생명과 관련이 없음 - 4점: 중증 손상이며 생명과 관련이 있음 - 5점: 생존이 의심됨 - 6점: 생존 불가능 5. AIS 코드 분류는 "AIS 2005 updated 2008" 책자를 사용하고, 입력은 소수점을 포함해서 총 8자리(FULL 코드)로 입력	당 정도에					

3. 자해/자살



자해/자살 시도

정		의	자해/자살 시도 여박	자해/자살 시도 여부					
용		도	자살과 자해를 구분	자살과 자해를 구분하여 지살과 자해의 빈도 파악 등 예방 대책 마련의 기초자료로 활용					
변	수	명	자해/자살 여부(F_S_Y)						
유		형	문자	필수여부	필수	조사시작일	2008. 10. 1. 2019. 1. 1.(변수명 변경)		
코		트	C1 지살 C2 자해						
질 관 리 지 침		침	1. 손상의도성(내원사유)(INTENT)이 'C2 자해지살'인 경우 반드시 입력 2. 자해/자살 여부(IF_S_Y)가 'C1 자살, C2 자해' 모두 독립문항으로 모두 조사하여 입력						

자해/자살 시도방법

정		의	자해/자살 시도방	법					
용		도	자해/자살 시도방법에 대한 자료를 수집하여 자해/자살 예방 대책 마련의 기초자료로 활용					기초자료로 활용	
변	수	명	자해/자살 시도방법(S_METHOD)						
유		형	문자	필수여부	필수	<u>-</u>	조사시작일	2006. 2019.	8. 1. 1. 1.(변수명, 코드변경)
			C1 중독 C2 추락 C3 익수		C6	분신 C6.1 C6.2 C6.3		C8	총기 C8.1 공기총 C8.2 엽총 C8.3 권총
코		<u>=</u>	C4 자상 C5 목맴 C5.1 완전 C5.2 불완	목맴 <u>전</u> 목맴	C7		운전 보행		기타 미상

- 1. 손상의도성(INTENT)이 자해/자살인 환자의 손상기전(MECH)이 C6.1 중독이면서 중독물질코드가 입력 된 경우 → 'C1 중독'으로 반드시 입력
- 2. 손상의도성(INTENT)이 자해/자살인 환자의 손상기전(MECH)이 'C12.4~12.7 추락'인 경우→ 'C2 추락' 으로 반드시 입력
- 3 손상의도성(INTENT)이 자해/자살인 환자의 손상기전(MECH)이 C5 1 익수이면서 손상발생장소가 C12 아외, 바다, 강인 경우 → 'C3 익수'로 반드시 입력
- 4 손상의도성이 자해/자살인 환자의 손상기전(MECH)이 C2 20 관통, 자상, 찔림인 경우 → C4 자상으로 반드시 입력
- 5. 손상의도성(INTENT)이 자해/자살인 환자의 손상기전(MECH)이 C5.2n 기계적인 호흡위협인 경우 \rightarrow 'C5 목맴'으로 반드시 입력하고, 완전목맴인지 불완전목맴인지 구분하여 입력
 - * 완전목맴 C5.1 : 신체 전부가 공중에 떠 있어 체중 전체가 목을 압박한 경우
 - * 불완전목맴 C5.2 : 신체의 일부가 비닥이나 벽 등에 지지되어 체중의 일부만 목을 압박한 경우
- 6. 손상의도성(INTENT)이 지해/지살인 환자의 손상기전(MECH)이 'C4.14 불이나 화염에의 노출'인 경우→ 'C6 분신'으로 반드시 입력하고, 분신에 사용한 물질을 구분하여 입력

질 관 리 지 침

7 손상의도성(INTENT)이 지해/지실인 환자의 손상기전(MECH)이 'C11 n 우수사고'인 경우 → 'C7 유수'로 반드시 입력하고, 우수사고 당시 환자의 역할을 참고하여 운전인지 보행인지 구분하여 입력

	운수사고 당시 환자의 역할(T_ROLE)		자해 / 자살 시도방법 (S_METHOD)	
C1	운전자 또는 조작자	\rightarrow	C7.1 운전	
C3	보행자	\rightarrow	C7.2 보행	

8. 손상의도성(INTENT)이 자해/자살인 환자의 손상기전(MECH)이 'C2.23, C2.22'인 경우 → 'C8 총기'로 반드시 입력하고, 자해/자살에 사용한 총기를 구분하여 입력

손상기전 (MECH)		자해 / 자살 시도방법 (S_METHOD)
C2.23 공기총·BB총에 맞음	\rightarrow	C8.1 공기총
C2.22 화기(화약을 이용하는 총)에 맞음	\rightarrow	C8.2 엽총 C8.3 권총

- 9 2가지 이상의 수단으로 자해/자살을 시도한 경우 중증도가 높거나. 자살 성공률이 더 높은 것으로 인력
- 10. 벽에 머리 박은 경우 C98 기타 입력

자해/자살 시도방법 기타내용

정		의	자해/자살 시도방법	자해/자살 시도방법의 기타의 구체적인 내용				
용		도	자해/자살 시도방법	에 대한 자료를	수집하여 자해/	'자살 예방 대책 대	N련의 기초자료로 활용	
변	수	명	자해/자살 시도방법	기타내용(S_M	ETHOD_ETC)			
유		형	문자	문자 필수여부 - 조사시작일 2006, 8, 1, 2019, 1, 1,(변수명 변경)				
코		드	내용입력	내용입력				
질 관	<u></u> 리 ㅈ	침	자해/자살 시도방법((S_METHOD)0	(C98 기타'인 경	경우 자해/자살 시도	당법 기타내용을 구체적으로 입력	

과거의 자해/자살 시도 방법

정		의	과거에 자해/자살 /	가거에 자해/자살 시도를 한 경우 자해/자살 시도의 방법					
용		도	자해/자살 시도자의 마련을 위한 기초지		- 방법에 대힌	· 자	료를	수집하0	여 자해/자살의 발생과 재발 방지 대책
변	수	명	과거의 자해/자살 사	시도 방법(S_PR	E_METHOD~	S_F	PRE_N	/ETHOI	D2)
유		형	문자	문자 필수여부 필수 조사시작일 2006, 8, 1, 2019, 1, 1,(변수명, 코드변경)					
			자해/자살 시도 1회				자해/자살 시도 2회		
			C1 중독	C6 분				중독	C6 분신
코		드	C2 추락	C7 듄	2수		C2	추락	C7 운수
코		드	C2 추락 C3 익수	C7 년 C8 총	<u>구</u>		C2 C3	추락 익수	C7 운수 C8 총
코		드	C2 추락	C7 년 C8 총	2수		C2 C3	추락	C7 운수
코		드	C2 추락 C3 익수	C7 년 C8 총	음수 등 타		C2 C3 C4	추락 익수	C7 운수 C8 총

과거의 자해/자살 시도 방법 기타내용

정		의	과거에 자해/자살 /	과거에 지해/자살 시도를 한 경우 자해/자살 시도의 방법 기타내용				
용		도		자해/자살 시도자의 자해/자살 시도 방법에 대한 자료를 수집하여 자해/자살의 발생과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				
변	수	명	과거의 자해/자살 /	시도 방법 기타	내용(S_PRE_MET	HOD_ETC_1~S_F	PRE_METHOD_ETC_2)	
유		형	문자	문자 필수여부 - 조사시작일 2006. 8. 1. 2019. 1. 1.(변수명 변경)				
코		드	내용입력	내용입력				
질 곤	<u>난</u> 리 ㅈ	지 침 과거 자해/자살 시도방법(S_PRE_METHOD~S_PRE_METHOD2)이 'C98 기타'인 경우는 과거 자해/자살 시도방법을 구체적으로 입력					298 기타인 경우는	

과거 자해/자살 시도자의 정신과 면담 여부

정	의	과거 자해/자살 시5	과거 자해/자살 시도자가 자해/자살 후에 정신과 면담 여부				
용	도	자해/자살 시도자가 마련의 기초자료로		살 후에 정신과 [면담 유무 자료를 수	건하여 위험도 판별 및 예방 대책	
변수	명	자해/자살 시도자의	정신과적 면담	· 여부(S_PSY_IN	ITERVIEW)		
유	형	문자	필수여부 필수 조사시작일 2006. 8. 1. 2019. 1. 1.(변수명, 코드변경) 2022. 7. 1.(코드 변경)				
코	드	C1.2 정신 ^교 C1.3 정신 ^교	C1.1 정신과적 면담 시행 C1.2 정신과적 면담 시행하지 않음 C1.3 정신과적 면담 거부				
질 관 리 지	기침	손상의도성(INTENT) 받았는지 반드시 Q		날인 환자가 과거	에 자해/자살 시도를	를 한 경우 과거에 정신과적 면담을	

자해/자살 환자의 자의퇴원사유

정	의	자해/지살 환자의	자해/자살 환자의 자의퇴원 사유			
용	도	자해/자살 환자의 활용	자의퇴원 사유여	에 대한 자료를	수집하여 위험도 핀	별 및 예방 대책 마련의 기초자료로
변 수	- 명	자해/자살 환자의	자의퇴원사유(S	S_DREASON)		
유	형	문자	필수여부 필수 조사시작일 2006, 8, 1, 2019, 1, 1,(변수명, 코드변경) 2022, 7, 1,(코드변경)			
코	드	C2 정신과 진료 C3 폐쇄병동 G	C2 정신과 진료 거부 C3 폐쇄병동 입원 거부 C4 타병원 혹은 기존 추적관찰 하던 병원 진료를 위하여 C98 기타			
질 관 리	ㅣ지 침	손상의도성(INTEN 자의퇴원사유(S_D			응급진료결과(EMR	T)가 'C14 자의퇴원' 인 경우 반드시

자해/자살 환자의 자의퇴원사유 기타내용

정		의	자해/자살 환자의	자해/자살 환자의 자의퇴원 기타 시유의 구체적인 내용			
용		도	자해/지살 환자의 2 활용	자해/자살 환자의 자의퇴원 사유에 대한 자료를 수집하여 위험도 판별 및 예방 대책 마련의 기초자료로 활용			
변	수	명	자해/자살 환자의	자의퇴원사유 기타니	ዘ용(S_DREASON_E	ETC)	
유		형	문자	문자 필 수 여 부 - 조사시작일 2006, 8, 1, 2019, 1, 1,(변수명 변경)			
코		드	내용입력	내용입력			
질 곤	반 리 ㅈ	ᅵ침		「)이 'C2자해/자살'인 REASON)가 'C98 기			

4. 중독



중독물질의 양

정	의	중독(intoxication)을	중독(Intoxication)을 유발한 물질의 양			
용	도	중독 손상의 원인인 활용	중독 손상의 원인인 중독물질에 대한 자료를 수집하여 중독 예방 정책 수립 및 평가를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			
변 수	명	중독물질의 양(PO_I	MACDQ)			
유	형	숫자	숫자 필수여부 필수 조사시작일 2006, 8, 1,			
코	드	액체인 경우 ml, 고	액체인 경우 m, 고체의 경우 g으로 입력			
질 관 리 지	침	확인되면 반드시	한 양을 알 수 없 수정	는 경우에는 가능	하면 추정하여 입력: 경우 노출시간을 입	하고 추후에 정확하게 양이

중독의 이유

정		의	중독이 발생하게 된	이유를 의도성으	로 구분		
용		도	중독이 발생하게 된	이유를 상세하게	수집하여 중독 여	빵 정책 수립 및 평	가를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
변	수	명	중독의 이유(PO_C <i>F</i>	AUSE)			
유		형	문자	필수여부	필수	조사시작일	2006. 8. 1.
코		드	C13 과용(C14 살해, C18 기타	목적 의도적 잘못 사용) 악물 중독) 상해를 목적으로 의도적 중독 적 중독이지만 이유			

	C2 비의도적 중독 C21 일반적 사고 C22 치료목적으로 사용 중 오류에 의해 C23 오용(잘못 알고 사용) C24 환경 중독 C25 작업장 중독 C28 기타 사고에 의한 중독 C29 사고에 의한 중독이지만 이유를 모르는 경우
	C3 부작용 C31 약물 부작용 C32 음식 부작용
	C98 기타
	C99 미상
질 관 리 지 침	1. 손상의도성(내원사유)(INTENT)이 'C1 비의도적 사고'는 비의도적 중독(C21, C22, C23, C24, C25, C28, C29), 부작용(C31, C32) 중 반드시 해당항목으로 입력 2. 손상의도성(내원사유)(INTENT)이 'C2자해/자살'인 경우는 의도적 중독(C11, C12, C13, C18, C19), 부작용(C31, C32) 중 반드시 해당항목으로 입력 3. 손상의도성(내원사유)(INTENT)이 'C3 폭력/타살'인 경우는 'C14 살해, 상해'를 목적으로 반드시 입력 4. 처방받은 약물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환자 본인 의사로 과용 등 잘못 사용하는 경우에는 'C12 의도적 오용'으로 입력 5. 약물을 잘못 알고 사용한 경우는 'C23 비의도적 오용 으로 압력 6. 환자와 동행자의 의도성 여부에 대한 의견이 다른 경우는 의도적 중독으로 간주하여 압력 7. 중독의 이유(PO_CAUSE)가 'C11 자살목적'인 경우 자해/자살의 심층항목을 반드시 압력

중독의 이유 기타내용

정		의	중독이 발생하게 된 이유 중 기타의 구체적인 내용						
용		도	중독이 발생하게 된 이유를 상세하게 수집하여 중독 예방 정책 수립 및 평가를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						
변	수	명	중독의 이유 기타내용(PO_CAUSE_ETC)						
유		형	문자	필수여부	-	조사시작일	2006, 8, 1,		
코		드	내용입력						
질 관 리 지 침			손상기전(MECH)이 기타'인 경우 중독의			C6.13, C6.19'인 경	우에서 중독의 이유가 'C98		

중독물질의 출처

정		의	중독물질을 구입	또는 취득한 장소	소				
용		도	중독물질의 구입한 활용	중독물질의 구입한 출처를 파악하여 독극물 유통 및 관리 등 중독예방 및 정책수립 및 평가의 기초자료로 활용					
변	수	명	중독물질의 출처(F	PO_SOURCE)					
유		형	문자	필수여부	필수	조시	·시작일	2006, 8, 1, 2019, 1, 1.(변수명 변경)	
코		드	C1 약품 C11 본인 약 C12 가족 약 C13 주위인 약 C14 약국 구입(전문의약품) C15 약국 구입(일반의약품) C18 기타 C19 모름				C22 2 C23 0 C24 2	집 직장 이웃 직접 구입 외	
1. 손상기전(MECH)이 'C6.1 중독' 중에서 C6.11, C6 C1.n 치료약물인 경우는 약품(C11~C19)으로 (2. 손상기전(MECH)이 'C6.1 중독' 중에서 C6.11, 중독물질코드(PO_MACD)가 약품 이외의 물질((자연독성물질)인 경우는 약품 외(C21~C24)로 (3. 농약 및 기타 약물을 논, 밭, 미당 등의 집이 (입력(예: 헛간) 4. 중독물질이 약품 및 약품 외의 물질인 경우는 5. 약물의 출처를 전혀 알 수 없는 경우는 'C99				C11~C19)으로 C ' 중에서 C6.11, 품 이외의 물질(C 괴(C21~C24)로 C 가당 등의 집이 O	력하고 C6.12, 2.n 농약 력하고 난 별5 C98 기	누구의 약 C6.13, C6 약, C3.n 7 약물이 발 의 장소에 타'로 입력	물인지 등 구분하여 입력 3.19인 경우 I스, C4.n 인공독성물질, C5 견된 장소를 구분하여 입력		

중독물질의 출처 기타내용

정		의	중독물질을 구입 또	중독물질을 구입 또는 취득한 장소의 기타 구체적인 내용						
용		도	중독물질을 구입한 활용	중독물질을 구입한 출처를 파악하여 독극물 유통 및 관리 등 중독 관련 정책수립 및 평가의 기초자료로 활용						
변	수	명	중독물질의 출처 기	중독물질의 출처 기타내용(PO_SOURCE_ETC)						
유		형	문자	필수여부	-	조사시작일	2006. 8. 1.			
코		드	내용입력	내용입력						
질 관 리 지 침				손상기전(MECH)이 'C6.1 중독' 중 C6.11, C6.12, C6.13, C6.19인 경우에서 중독물질의 출처가 'C98기타'인 경우 중독물질의 출처 기타내용을 구체적으로 입력						

5. 낙상 및 추락



바닥의 상태

정		의	추락 및 낙상 빌	추락 및 낙상 발생 시 바닥의 상태						
용		도	추락 및 낙상 발생 기초자료로 활용	로락 및 낙상 발생 시 비닥의 상태에 대한 자료를 수집하여 위험도 판별 및 손상예방 정책 수립 및 평가의 초자료로 활용						
변	수	명	바닥의 상태(F_N	바닥의 상태(F_N_SURFACE1)						
유		형	문자	필수여부	필수	조사시	작일	2008. 1. 1. 2019. 1. 1.(변수명, 코드변경)		
			C1 없음			C5	바닥이	다른 물질로 덮여 있음		
코		드	C2 물			C6	바닥	자체가 미끄러움		
1.		=	C3 눈			C98	기타 _			
			C4 얼음			C99	미상			
질 관 리 지 침		침	1. 손상기전(MECH) 'C12 추락 및 미끄러짐'인 경우 반드시 입력 2. 바닥의 상태가 모래, 진흙, 낙엽, 비닐봉지, 이불, 카페트 등을 밟아 낙상한 경우에는 'C5 바닥이 다른 물질로 덮여 있음'으로 입력 3. 바닥의 상태가 기름, 왁스, 대리석, 마루바닥, 장판 등에서 미끄러진 경우에는 'C6 바닥 자체가 미끄러움'으로 입력							

바닥의 상태 기타내용

정		의	추락 및 낙상 발상	추락 및 낙상 발생 시 바닥의 상태 중 기타의 구체적인 내용						
용		도	추락 및 낙상 발생 기초자료로 활용	추락 및 낙상 발생 시 비닥의 상태에 대한 자료를 수집하여 위험도 판별 및 손상예방 정책 수립 및 평가의 기초자료로 활용						
변	수	명	바닥의 상태 기타	비닥의 상태 기타내용(F_N_SURFACE1_ETC)						
유		형	문자	필수여부	-	조사시작일	2008. 1. 1. 2019. 1. 1.(변수명 변경)			
코		드	내용입력	내용입력						
질 관 리 지 침			1. 손상기전(MEC) 2. 바닥의 상태(F_	•			구체적으로 입력			

바닥의 종류

정	의	추락 및 낙상 발생	추락 및 낙상 발생 시 바닥의 종류						
용	도	추락 및 낙상 발생 기초자료로 활용	추락 및 낙상 발생 시 비닥의 종류에 대한 자료를 수집하여 위험도 판별 및 손상예방 정책수립 및 평가의 기초자료로 활용						
변 수	: 명	바닥의 종류(F_N_S	비닥의 종류(F_N_SURFACE4)						
유	형	문자	필수여부	필수	조사시작일	2008. 1. 1. 2019. 1. 1.(변수명 변경)			
코	드	C1 콘크리트 바닥 C2 흙바닥 C98 기타 C99 미상	C98 기타						
질 관 리	지 침	손상기전(MECH)이	'C12 추락 및	미끄러짐'인 경우	반드시 입력				

바닥의 종류 기타내용

정		의	추락 및 낙상 발생	추락 및 낙상 발생 시 바닥의 종류 기타내용						
용		도	추락 및 낙상 발생 기초자료로 활용	추락 및 낙상 발생 시 비닥의 종류에 대한 자료를 수집하여 위험도 판별 및 손상예방 정책수립 및 평가의 기초자료로 활용						
변	수	명	바닥의 종류 기타니	바닥의 종류 기타내용(F_N_SURFACE4_ETC)						
유		형	문자	필수여부	-	조사시작일	2008. 1. 1. 2019. 1. 1.(변수명 변경)			
코		드	내용입력	내용입력						
질 관 리 지 침			1. 손상기전(MECH 2. 바닥의 종류(F_I				타내용을 구체적으로 입력			

기저질환 유무

정	<u>c</u>	의	추락 및 낙상 혼	추락 및 낙상 환자가 전에 가지고 있던 질환							
용	_	E		추락 및 낙상 환자의 사고 전에 가지고 있던 질환에 대하여 조사하여 손상 예방을 위한 적절한 조치와 자원의 효율적 이용							
변 -	수 5	병	질환의 유무(F_h	질환의 유무(F_HISTORY_1~ F_HISTORY_12)							
유	ō	형	문자	필수여부	· 여부 필수		조사시작일	2008. 1. 1. 2019. 1. 1.(코드변경) 2022. 7. 1.(변수명, 코드변경)			
			기저질환 유무(F	_HISTORY_1)		C0 2	기저질환 있음	C1 기저질환 없음	C9 미상		
		고혈압(F_HIS	STORY_2)		C0 (아니오	C1 예	C9 미상			
		당뇨(F_HIST	F_HISTORY_3)				C1.1 약물 치료함 C1.2 약물 치료안함				
			결핵(F_HISTORY_4)				C1.9 약물 치료 여부 모름				
			간질환(F_HISTORY_5)				어구 오금				
코		_	뇌혈관질환(F_HISTORY_6)								
			심장질환(F_HISTORY_7)								
			암(F_HISTOF	RY_8)							
			치매(F_HIST	ORY_9)							
			간질(F_HIST	ORY_10)							
			혈액응고장이	H(F_HISTORY_1	11)						
			파킨슨병(F_ト	HISTORY_12)							
질 관 i	리 지 친	침	1. 손상기전(MECH)이 'C12 추락 및 미끄러짐'인 경우 반드시 입력 2. 치매 등 해당하는 기저질환이 1개 이상이 있는 경우 모두 선택 3. 기저질환 유무(F_HISTORY_1) 'C0 기저질환 있음'인 경우 기저질환을 반드시 선택하여 입력 4. 고혈압 등 질환을 가지고 있는 경우는 ' C1 예'로 입력한 후 반드시 치료여부를 입력 5. 과거력을 전혀 알 수 없는 경우 → 기저질환 유무(F_HISTORY_1) 'C9 미상으로 입력								



환경적 요인_경사 / 턱 / 조명·밝기

정		의	추락 및 낙상 발생	추락 및 낙상 발생 시 환경적 요인						
용		도	추락 및 낙상 발생 / 기초자료로 활용	추락 및 낙상 발생 시 환경적 요인에 대한 자료를 수집하여 위험도 판별 및 손상예방 정책수립 및 평가의 기초자료로 활용						
변	수	명	환경적 요인_경사/특	경적 요인_경사/턱/조명·밝기(F_N_SURFACE2, F_N_SURFACE3, F_LIGHT)						
유		형	문자	필수여부	필수	조사시작일	2008. 1. 1. 2019. 1. 1.(지침변경)			
			경사(F_N_SURFAC	E2)	C1 없음	음 C2 있음	C99 미상			
코		드	턱(F_N_SURFACE3)		C1 없음	음 C2 있음	C99 미상			
			조명 · 밝기(F_LIGH	Π)	C1 없음	음 C2 있음	C99 미상			
질 관 리 지 침										

6. 취학전 어린이 손상



취학전 어린이 여부

정		의	취학전 어린이 여누	취학전 어린이 여부(만 6세 이하)								
용		도	응급실에 내원한 혼	응급실에 내원한 환자 중 취학전 어린이 안전사고 발생 빈도 파악								
변	수	명	소아(IF_PED_Y)	±ok(iF_PED_Y)								
유		형	문자	2006. 8. 1. 2019. 1. 1.(변수명 변경)								
코		드	-	-								
질 곤	반 리 ㅈ	침	1. 응급실에 내원힌 2. 취학전 어린이(D									

보호자 목격 유무

정	의	취학전 어린이의 인	취학전 어린이의 안전사고 발생 시 보호자 목격 유무								
용	도		취학전 어린이 안전사고 발생 시 보호자가 사고 현장을 목격 유무에 대한 자료를 수집하여 안전사고 예방 정책 수립 및 평가의 기초자료로 활용								
변 수	명	보호자 목격 유무(۱۱	보호자 목격 유무(IF_P_WITNESS)								
유	형	문자	필수여부 필수 조사시작일 2019. 1. 1.								
코	드	C1 목격 C2 미목격 C3 미상									
질 관 리 지	침	보호자의 목격여부	를 알 수 없는 경약	우는 'C3 미상'으로	르 입력						

손상부위

정		의	취학전 어린이 안전	사고 발생 시	손	· 남부위					
용		도		취학전 어린이 안전사고의 손상부위에 대한 자료를 수집하여 성인과의 차이, 손상의 정도를 확인하고 손상예방 대책을 마련							
변	수	명	손상부위(IF_REGIO	손상부위(IF_REGION_1~IF_REGION_11)							
유		형	문자	필수여	부	필수	조사시작일	2008. 10. 1. 2019. 1. 1.(코드변경)			
			해당없음(IF_REGIO	N_1)	C0	아니오	C1 예				
			얼굴(IF_REGION_2)	C0	아니오	C1 예				
		ഥ	목(IF_REGION_3)		C0	아니오	C1 예				
			가슴(IF_REGION_4)	C0	아니오	C1 예				
			등(IF_REGION_5)		C0	아니오	C1 예				
코			배(IF_REGION_6)		C0	아니오	C1 예				
			엉덩이(IF_REGION	_7)	C0	아니오	C1 예				
			상지(IF_REGION_8)	C0	아니오	C1 예				
			하지(IF_REGION_9)	C0	아니오	C1 예				
			머리(IF_REGION_1	0)	C0	아니오	C1 예				
			생식기(IF_REGION	_11)	C0	아니오	C1 예				
질 관	관 리 ㅈ] 침	예'로 입력 2. 손상부위_해당없 이상 입력 3. 손상부위는 중복	 소상부위가 위의 항목 중 어느 것에도 해당하지 않는 경우 → 손상부위_해당없음(IF_REGION_1) 'C1 예'로 입력 손상부위_해당없음(IF_REGION_1) 'C0 아니오'로 입력된 경우는 나머지 손상부위 중 'C1 예'를 한 개 							



화상 냉각치료 여부

정		의	취학전 어린이가	취학전 어린이가 화상으로 응급실 내원 시 화상 부위의 냉각치료 시행 여부								
용		도		취학전 어린이가 화상을 입을 경우 화상부위의 냉각치료 시행에 대한 자료를 수집하여 회상으로 인한 후유장애 최소화 대책 미련에 활용								
변	수	명	화상 냉각치료 0	화상 냉각치료 여부(IF_COOLING_TX)								
유		형	문자	필 수 여 부	필수	조 사 시 작 일	2006. 8. 1. 2019. 1. 1.(변수명, 코드변경)					
코		드	C1 시행 C2 미시행 C3 미상									
질 관	리 지	침		원한 환자가 만 6세 이하이면서 손상기전(MECH)이 'C4.1n 열(Heating)'에 의한 손상인 경우 치료 여부(IF_COOLING_TX)를 반드시 입력								

퇴원 후 계획

저		의	취하다 이리이 이										
정		<u></u>	취약진 어딘이 인	취학전 어린이 안전사고 발생 후 퇴원 후 진료계획									
용		도	취학전 어린이 인	취학전 어린이 안전사고 발생의 중증도를 파악하고 분석하여 예방대책을 마련									
변	수	명	 퇴원 후 계획(IF_	원 후 계획(IF_PLAN)									
유		형	문자	문자 필수여부 필수 조사시작일 2006, 8, 1,									
코		드	C1 외래 진료 C2 외래 진료 C3 입원 필요 C98 기타 C99 미상	필요 없음									
질 관 리 지 침 응급실 내원한 환자 만 6세 이하이면서 응급진료결과(EMRT)가 'C31〜C38 입원'인 경우 퇴원 후 (IF_PLAN) 입력							8 입원'인 경우 퇴원 후 계획						

퇴원 후 계획 기타내용

정		의	취학전 어린이 안전	취학전 어린이 안전사고 발생 후 퇴원 후 진료계획의 기타의 구체적인 내용							
용		도	취학전 어린이 안전	취학전 어린이 안전사고 발생의 중증도를 파악하고 분석하여 예방대책을 미련							
변	수	명	퇴원 후 계획 기타	퇴원 후 계획 기타내용(IF_PLAN_ETC)							
유		형	문자	필수여부	_	조사시작일	2006. 8. 1.				
코		드	내용입력								
질 관	질 관 리 지 침 만 6세 이하 어린이의 퇴원 후 계획(IF_PLAN)이 'C98 기타'인 경우 퇴원 후 계획을 구체적으로 입력										

열상의 봉합 유무

정		의	취학전 어린이 연	취학전 어린이 안전사고 중 열상인 경우의 봉합 필요 여부								
용		도	취학전 어린이 손 수립에 활용	취학전 어린이 손상에서 자주 발생하는 열상의 빈도와 봉합 필요 여부를 파악하여 열상에 대한 진료계획 수립에 활용								
변	수	명	열상(IF_L_SUTU	결상(IF_L_SUTURE)								
유		형	문자	문자 필수여부 필수 조사시작일 2006, 8, 1, 2019, 1, 1,(변수명, 코								
		_	열상 유무(IF_LAC_L)에 L(예)로 체크된 경우, 열상의 봉합 유무 입력									
코			C1 봉합 필요	C1 봉합 필요								
14		드	C2 봉합 불필요									
			C99 미상									
질 괸	질 관 리 지 침 만 6세 이하 어린이가 안전사고로 열상을 입은 경우에는 모두 입력											

운수사고 발생 시 카시트 유형

정		의	운수사고 발생 시 :	운수사고 발생 시 취학전 어린이가 착용한 카시트의 유형							
용		도		인수 사고 발생 시 취학 전 어린이의 카시트 유형을 조사하여 손상의 중증도를 파악하고 손상예방 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							
변	수	명	카시트 유형(IF_CAF	카시트 유형(IF_CAR SEAT_TY)							
유		형	 문자	필	수	여 부	필수		조 사 시 작	일	2019, 1, 1,
코		드	C1 앞보기용		C2	뒤보기	2	C3 부 <u>-</u>	'터시트	C9	미상
질 관 리 지 침 만 6세 이하 어린이 중 손상기전이 운수사고(C11.61, C11.67, C11.70)이면서 보호장비 중 안전 'C1 예'로 입력된 경우는 반드시 카시트 유형을 입력							장비 중 안전의자에				

운수사고 발생 시 탑승위치

정	<u>c</u>	긔	운수사고 발생 시 취학전 어린이의 탑승위치							
용	5	Ē	오수사고 발생 시 취학전 어린이의 탑승 위치를 조사하여 손상의 중증도 등 손상예방 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							
변	수 명	병	탑승위치(IF_TA_ABOD)							
유	5	형	문자 필 수 여 부 필수 조 사 시 작 일 2019. 1. 1.							
코	<u> </u>	Ξ	C1 자동차 앞좌석 C1,1 운전석 C1,2 조수석 C2 자동차 뒷좌석 C2,1 운전석 뒤 C2,2 중간 C2,3 조수석 뒤 C2,4 3행 이상							
질 곤	질 관 리 지 침 만 6세 이하 어린이 중 손상기전(MECH)이 운수사고인 경우 반드시 탑승위치를 입력									

추락 및 낙상

정	2	의	취학전 어린이의 추락 및 낙상 발생 시 높이와 비닥의 경도								
용	<u>.</u>	도	위학전 어린이의 추락 및 낙상 발생 시 높이와 바닥의 경도를 조사하여 손상의 중증도 등 손상예방 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								
변	수 !	명	추락 및 낙상의 높이(IF_FALL_HEIGHT, IF_FALL_HEIGHT_KG, IF_FALL_SURFACE)								
유	,	형	문자 필수여부 필수 조사시작일 2019. 1. 1.								
코	<u>!</u>	띧	C1 보이의 구체화(IF_FALL_HEIGHT) C1 50~100 cm 미만(무릎높이) C2 100~150 cm 미만(배꼽높이) C3 150 cm 이상(어깨높이) C2 몸무게(IF_FALL_HEIGHT_KG) kg C3 바닥의 경도(IF_FALL_SURFACE) C3.1 매트바닥 C3.2 흙 또는 모래바닥 C3.3 미루바닥 C3.4 시멘트 바닥 C3.5 기타								
질 핀	관 리 지 :	침	1. 만 6세 이하 어린이 중 손상기전(MECH)이 추락 및 미끄러짐(C12.1~C12.7)인 경우에는 반드시 입력 2. 몸무게는 kg으로 입력								

추락 및 낙상 기타내용

정		의	취학전 어린이의 추	취학전 어린이의 추락 및 낙상 발생 시 바닥의 경도의 기타의 구체적인 내용							
용		도		취학전 어린이의 추락 및 낙상 발생 시 높이와 바닥의 경도를 조사하여 손상의 중증도 등 손상예방 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							
변	수	명	추락 및 낙상 기타	추락 및 낙상 기타내용(IF_FALL_SURFACE_ETC)							
유		형	문자	필 수	여 부	-	조 사 시 작 일	2019. 1. 1.			
코		드	내용입력								
질 관 리 지 침 바닥의 경도(IF_FALL_SURFACE)가 'C3.5 기타'인 경우 기타내용을 구체적으로 입력							력				

이물질 제거

정		의	취학전 어린이 안전사고 발생 시 이물질 제거 방법						
용		도	취학전 어린이의 안전사고 발생 시 이물질의 제거 방법에 대한 자료를 수집하여 손상예방 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						
변	수	명	이물질 제거 방법(IF_FB_TX)						
유		형	문자 필수여부 필수 조사시작일 2019. 1. 1.						
코		<u>=</u>	C1 내시경적 제거 C2 수술적 제거 C3 간단한 처치 후 제거 C4 해당없음						
질 관	질 관 리 지 침 만 6세 이하 어린이 중 손상기전(MECH)이 'C98.1 이물질 접촉'인 경우 제거 방법을 반드시 입력				성을 반드시 입력				

PART

3

조사사례

2023 응급실손상환자심층조사 지침서



● 주호소(CC) : Hand pain

현병력(PI) : 내원당일 아침식사를 하려고 집에서 국을 끓이다가 냄비에 오른손을 데었고, 손바닥이 빨갛게

변하고 아파서 찬물에 담갔다가 응급실에 내원

진단(Dx) : 2도 화상(2nd degree burn, right hand)

손상시 활동(IACT)	C2 무보수 업무
손상발생장소(PLACE1)	어 집

● 주호소(CC) : Headache

현병력(PI) :고등학생이 기숙사 복도에서 뛰어가다 물기 있는 바닥 때문에 미끄러지면서 벽에 머리를 부딪친

뒤 두통, 오심 발생하여 응급실에 내원

Brain CT : no hemorrhage

진단(Dx) : 머리의 표재성 손상(superficial injury of head)

손상기전(MECH)	C12,2 동일면상에서의 미끄러져 넘어짐
손상발생장소(PLACE1)	C2 주거시설

● 주호소(CC) : Back pain, Rt. wrist pain

현병력(PI) : 50세 여성, 내원 2일전 요가학원에서 한 발로 서있는 자세를 하던 중 중심을 잃고 넘어 지면서

비닥에 부딪히면서 오른쪽 손목으로 비닥을 짚음. 이후 발생한 허리의 통증과 오른쪽 손목 통증을

주소로 응급실 내원

진단(Dx) : 손목 염좌(Wrist sprain, Rt)

손상기전(MECH)	C7 신체과다시용
손상시 활동(IACT)	C4 운동

● 주호소(CC) : Rt. shoulder pain, Rt. wrist pain

현병력(PI) :8세 여아, 내원 직전 발레학원에서 한 발로 서있는 자세를 하던 중 중심을 잃고 넘어지면서

바닥에 부딪힘. 오른쪽 팔을 바닥에 부딪혔다고 함. 이후 오른쪽 어깨와 손목 통증을 호소하며

오른쪽 팔을 움직이지 못하여 응급실 내원

진단(Dx) : 요골 원위단 골절(Distal radius Fx, Rt.)

손상기전(MECH)	C7 신체 과다시용
손상시 활동(IACT)	C3.2 기타교육
손상발생장소(PLACE1)	C4 학교·교육시설
일차적 손상유발물질(FACTOR_U)	C13.1 사람, 본인
손상의도성(INTENT)	C1 비의도적 손상

•**▶ 주호소(CC)** : 의식저하

현병력(PI) : 내원당일 저수지 옆에 세워놓은 차 안에서 수면제를 다량 복용한 상태로 발견되어 응급실에

내원

진단(Dx) : 벤조다이아제핀에 의한 중독(benzodiazepine intoxication)

손상기전(MECH)	C6.11 고체에 의한 중독
손상발생장소(PLACE1)	C12 야외, 바다, 강

● 주호소(CC) : Finger pain

현병력(P) : 내원당일 집에서 방으로 들어가다가 방문에 검지손가락이 낀 뒤 통증 발생하여 응급실에 내원

진단(Dx) : 손가락의 표재성 손상(superficial injury of finger)

손상기전(MECH)	C13.4 신체 눌림, 압궤
손상발생장소(PLACE1)	C1 집

▶ 주호소(CC) : Chin pain

> 현병력(PI) : 내원당일 고양이 카페에서 고양이가 턱을 할퀴어 응급실에 내원

진단(Dx) : 얼굴의 표재성 손상(superficial injury of face)

손상기전(MECH)	C2.1 긁힘, 베임, 찢김
손상발생장소(PLACE1)	C11 상업시설

● 주호소(CC) : Finger pain

현병력(PI) : 내원당일 친구 집에서 기르던 고양이가 손가락을 물어 응급실에 내원

진단(Dx) : 손가락의 표재성 손상(superficial injury of finger)

손상기전(MECH)	C2.45 다른 동물에게 물림
손상발생장소(PLACE1)	C1 집

● 주호소(CC) : Hand pain

현병력(PI) : 내원당일 공장에서 일하던 중 돌아가는 팬에 손이 말려들어가서 우측 3번째 손가락에 손상

발생하여 응급실에 내원

진단(Dx) : 손가락의 개방성 골절, 손가락의 으깸손상(open fracture of finger, crush injury of finger)

손상기전(MECH)	C3.2 기계와 접촉
손상발생장소(PLACE1)	C8 공장 산업 건설시설

● 주호소(CC) : Dyspnea

현병력(PI) : 내원당일 집에서 떡 먹던 중 목에 떡이 걸려 숨쉬기 힘들고, 쉰목소리가 나서 응급실에 내원

진단(Dx) : 기도의 이물(foreign body in respiratory tract)

손상기전(MECH)	C5,24 흡입된 물체나 물질에 의한 기도폐쇄
손상발생장소(PLACE1)	C1 집

● 주호소(CC) : Hand pain

현병력(PI) : 내원당일 퇴근길 차도에서 전동휠을 타고 가다 중심을 잃고 우측으로 넘어지면서 우측 손을

바닥에 짚은 뒤 통증 발생하여 응급실에 내원

진단(Dx) : 손의 열린상처(open wound of hand)

손상기전(MECH)	C11.88 기타 육상 운 송수 단
손상발생장소(PLACE1)	C6.1 차도

● 주호소(CC) : Tooth pain

현병력(P) : 내원당일 식당에서 고기를 먹던 중 좌측 위 어금니가 부러져 응급실에 내원

진단(Dx) : 치아의 파절(fracture of tooth)

손상기전(MECH)	C13.28 기타 물체 또는 동물과 접촉
손상발생장소(PLACE1)	C11 상업시설

● 주호소(CC) : Eye pain

현병력(PI) : 내원당일 스키장에서 무릎에 왼쪽 눈 부위 부딪힌 뒤 통증 발생하여 응급실에 내원

진단(Dx) : 아와벽 골절(orbital wall fracture)

손상기전(MECH)	C13.3 시람과 접촉
손상발생장소(PLACE1)	C5.7 스키장, 스노우보드장

● 주호소(CC) : Headache

현병력(PI) : 내원당일 계곡에서 다이빙을 하다 바위에 머리를 부딪혀서 응급실에 내원

진단(Dx) : 경막하출혈(subdural hemorrhage)

손상기전(MECH)	C13,22 고정된 물체와 접촉
손상발생장소(PLACE1)	C12 야외, 바다, 강

● 주호소(CC) : Elbow pain

> 현병력(PI) : 내원당일 아파트 내 놀이터 미끄럼틀에 왼쪽 팔꿈치를 쓸려서 응급실에 내원

진단(Dx) : 팔의 표재성 손상(superficial injury of arm)

손상기전(MECH)	C13.8 기타 둔탁한 힘에 의한 손상
손상발생장소(PLACE1)	C1 집

▶ 주호소(CC) : Foot pain

> 현병력(PI) : 불법체류자 및 마약 관련 피의자로, 경찰로부터 도주 중 2.5m 정도 높이로 추정되는 벽에서

> > 뛰어내려 발생한 우측 발 통증으로 경찰과 함께 응급실 내원

진단(Dx) : 종골의 골절, 폐쇄성(fracture of calcaneus, closed)

손상시 활동(IACT)	C98 기타(도주)
손상의도성(INTENT)	C98 기타(도주)

▶ 주호소(CC) : Forearm pain

> 현병력(PI) : 1시간 전 화나는 일 있어 홧김에 유리창을 쳤고, 유리가 깨지며 오른쪽 팔 베여 내원

진단(Dx) : 아래팔의 기타 부분의 열린상처(open wound of other parts of forearm)

손상시 활동(IACT)	C98 기타(자해)
손상의도성(INTENT)	C2 자해·자살

● 주호소(CC) : Lt. eye pain

> 현병력(PI) : 보호자(부모) 말에 따르면 내원 한 시간 전 마트에서 쌀포대 모서리 부분에 좌안을 긁혔다고 함.

진단(Dx) : 눈 및 안와의 기타 손상(other injuries of eye and orbit, Lt. eye)

손상기전(MECH)	C2.10 긁힘
일차적 손상 유발 물질(FACTOR_U)	C8.98 기타 명시된 그릇·용기

● 주호소(CC) : 약물중독

현병력(P) : 알콜의존증으로 정신과 입원 중, 내원 당일 바디미스트, 울샴푸, 샴푸, 린스 등 복용하여 내원

진단(Dx) : dependence syndrome of alcohol, toxic effect of soaps and detergents

손상기전(MECH)	C6.12 액체에 의한 중독
손상의도성(INTENT)	C2 자해·자살
자살위험인자(S_FACTOR1~S_FACTOR2)	C4.1 약물중독

^{*} 알콜의존증의 경우 지속적으로 C4.3 기타정신과적 문제로 입력하다 질관리 피드백 통해 C4.1 약물중독으로 재분류함.

▶ 주호소(CC) : Asphyxia, arrest

> 현병력(PI) : 요양병원 생활하시는 분으로 내원일 오전 빵 섭취 후 의식, 호흡 없는 상태로 이물제거 시도하여

> > 빼내었으나 무호흡 지속되어 응급실 내원(요양병원에서 CPR 시행하였음)

진단(Dx) : 질식(asphyxiation)

손상기전(MECH)	C5.24 흡입된 물체나 물질에 의한 기도폐쇄
손상 시 활동(IACT)	C6 기본 일상생활
손상발생장소(PLACE1)	C3 의료시설

● 주호소(CC) : Rt. arm deep laceration

현병력(PI) : 태풍으로 인해 심하게 흔들리는 유리창문을 손으로 잡으려다가 유리창이 깨지면서 오른쪽

전완부 손상 발생하여 응급실 내원

진단(Dx) : 전완부 절단(Rt. forearm nearly amputation)

손상기전(MECH)	C8.2 비람에 노출(태풍)
일차적 손상유발물질(FACTOR_U)	C16.01.98 기타 명시된 자연물질
직접적 손상유발물질(FACTOR_D)	C14.02.20 창문

▶ 주호소(CC) : Rt. shoulder pain

현병력(PI) : 작업 이후 우측 어깨 통증이 있어 접골원에서 안미를 받고 난 이후 통증 악화되었고 경과관찰

중 증상 호전 없어 내원함

진단(Dx) : 어깨, 아래팔 타박상(contusion of shoulder and upper arm)

손상기전(MECH) C13.3 사람과 접촉

● 주호소(CC) : F.B swallowing

> 현병력(PI) : 장난감에 들어 있던 버튼 배터리(수은건전지) 2개 삼켜 내원함

진단(Dx) : 위의 이물(foreign body in stomach)

일차적 손상유발물질(FACTOR U) C98.98.55 원형전지

● 주호소(CC) : F.B ingestion

> 현병력(PI) : 네일아트용품(손톱연장용물품, 1cm)을 삼켜 이물감을 주소로 내원함

진단(Dx) : 삼켜진 이물(swallowed foreign body)

일차적 손상유발물질(FACTOR_U) C9.02.98 기타 명시된 개인장신구·의류소품

•▶ 주호소(CC) : Rt arm, rt shoulder pain

현병력(PI) : 음주 상태로 집에서 라면 끓이다 가스불이 옷에 붙으면서 오른팔. 오른쪽 어깨 화상입어

응급실 내원

진단(Dx) : 2도 화상(2nd degree burn)

손상기전(MECH)	C4.14 불이나 화염에의 노출
손상발생장소(PLACE1)	C1 집
건물 및 인접지역 내 세부장소(PLACE3)	C2 주방
손상 시 활동(IACT)	C2 무보수 업무
일차적 손상유발물질(FACTOR_U)	C7.01.45 스토브, 오븐, 레인지 (전기, 가스, 석탄, 장작을 사용하는 것)

● 주호소(CC) : Multiple stab wound

현병력(PI) : 세무서 직원으로, 업무중 민원인이 칼로 찔러 발생, 망치로 우측 가슴도 맞았다고 함

진단(Dx) : 외상성혈흉(traumatic hemothorax)

손상의도성(INTENT)	C3 폭력·타살	
손상발생장소(PLACE1)	C10.9 놀이·문화시설 및 공공행정구역 그 외	
손상 시 활동(IACT)	C1 업무	
일차적 손상유발물질(FACTOR_U)	C12.01.10 무기로 사용하는 칼	

● 주호소(CC) : Pain on ear, Rt

현병력(PI) : 11세 여아 5m 깊이의 프리다이빙을 한 뒤로 오른쪽 귀가 먹먹하고 아픈 증상 있어 내원

진단(Dx) : 외상성 고막 파열(traumatic rupture of eardrum)

손상기전(MECH)	C98.4 기압 노출	
손상발생장소(PLACE1)	C5.3 수영장	
손상 시 활동(IACT)	C4 운동	
일차적 손상유발물질(FACTOR_U)	C14.98.03 수영장, 스파	

● 주호소(CC) : Oral bleeding

현병력(PI) : 평소 화장실 바닥 청소하는 락스 묻은 칫솔을 양치하는 칫솔로 오인하여 양치하였고, 직후

피가 남

진단(Dx) : 찰과상(abrasion, gingiva)

손상기전(MECH)	C6.8 화학물질 또는 다른 물질에의 노출에 의한 기타 명시된 영향		
일차적 손상유발물질(FACTOR_U)	C21.05.15 표백제, 흡수제 (예: 락스, 옥시크린)		

▶ 주호소(CC) : Foreign body

현병력(P) : 항문에 약 10cm 크기의 뾰족하지 않은 원통 목공풀 들어감을 호소

진단(Dx) : 항문의 이물(foreign body in anus)

손상기전(MECH)	C98.18 기타 이물질 접촉	
일차적 손상유발물질(FACTOR_U)	C9.06 미술 또는 공작용품	

● 주호소(CC) : Explosive injury

현병력(PI) : 공장내에서 탱크로리로 과산회수소수를 옮기던 중 과산회수소가 들어있는 탱크차랑이 폭발하여

폭발의 타격으로 인해 사고현장에서 떨어진 공장 외부 도로에서 발견됨

진단(Dx) : 간 열상, 복강내출혈(liver laceration G4, hemoperitoneum)

손상기전(MECH)	C3.1 폭발에 의한 타격	
손상 시 활동(IACT)	C1 업무	
손상발생장소(PLACE1)	C8 공장, 산업, 건설시설	

^{*} 폭발에 의한 타격과 회상손상을 구분하기 위해서는 장기손상의 유무를 봐야함.

▶ 주호소(CC) : Burn injury

> 현병력(PI) : 공장내에서 탱크로리로 과산화수소수를 옮기던 중 과산화수소가 들어있는 탱크처랑이 폭발하여

> > 폭발의 타격으로 인해 사고현장에서 떨어진 공장 외부 도로에서 발견됨

진단(Dx) : 2도 화상(2nd degree burn on foot)

손상기전(MECH)	C4.14 불이나 화염에의 노출	
손상 시 활동(IACT)	C1 업무	
손상발생장소(PLACE1)	C8 공장, 산업, 건설시설	

^{*} 폭발에 의한 타격과 화상손상을 구분하기 위해서는 장기손상의 유무를 봐야함.

● 주호소(CC) : Foreign body ingestion

현병력(PI) : 특이과거력 없으며 현재 교도소 복역중인 분으로 내원일 상기시간에 5cm 길이의

나사, 병뚜껑, 치약뚜껑, 아이스크림 나무막대 삼킨 후 내원

진단(Dx) : 소화관의 이물(Foreign body in alimentary tract)

손상 시 활동(IACT)	C98 기타(자해)	
자해 · 자살 시도방법	C98 기타(이물질 섭취)	

● 주호소(CC) : Face injury

현병력(P) : 엄마에게 관자놀이 부분을 폭행당해 내원

진단(Dx) : 머리의 표재성 손상(Superficial injury of head)

손상의도성(INTENT)	C2 폭력, 타살	
일차적 유발물질(FACTOR_U)	C13,07,98 기타 명시된 사람	

● 주호소(CC) : Facial injury

현병력(PI) : 플라스틱 텀블러에 뜨거운 물을 넣고 닦다가 터지면서 좌측 얼굴 수상해 내원

진단(Dx) : 2도 화상(2nd degree burn on haed and neck)

손상기전(MECH)	C4.11 뜨거운 액체와의 접촉			
손상 시 활동(IACT)	C2 무보수 업무			
	C18.01.01 뜨거운 수돗물			
일차적 손상유발물질(FACTOR_U)	(포함: 욕조, 양동이, 호스에서의 뜨거운 물)			

● 주호소(CC) : Asphyxia, arrest

현병력(PI) : 치매로 대화, 거동 전혀 안되는 분으로 금일 오전 보호자가 죽 먹이다가 켁켁거리면서 의식

잃어 내원

진단(Dx) : 질식(Asphyxiation)

손상기전(MECH)	C5.24 흡입된 물체나 물질에 의한 기도폐쇄	
손상 시 활동(IACT)	C6 기본 일상생활	

PART

4

사업운영 지침

- 1. 사업의 운영
- 2. 사업 수행기관 및 수행인력 기준
- 3. 예산 집행지침
- 4. 사업비 산출기준

2023 응급실손상환자심층조사 지침서



→ 사업의 운영

▶ 응급실손상환자심층조사 사업 운영회의 및 교육

※ 국가손상조사감시사업 중앙지원단 주관

회의명	참석대상	내용	개최주기
전체운영회의	사업책임자 전담코디네이터	- 응급실손상환자심층조사 현안 도출 및 해결방안 논의 - 조시문항에 대한 개선안 도출 및 심층영역 순환지표 결정 - 질병관리청에서 요청하는 사항에 대한 의사결정	연 2회
실무운영회의	심층분과장	- 분과별 활동 점검 - 전체운영위원회 상정 안건 사전 준비	연 4회
심층영역별 분과회의	분과별 연구진	- 심층영역별 손상에 대한 연구 활동, 이슈 발굴 - 분과별 정보공유 및 자체 질관리 수행	자체적 <u>으로</u> 진행
조사자 교육 및 질 관리 간담회	참여병원 연구진 (전담코디네이터 필수 참석)	- 질 관리 기준 변동시항 및 공지시항 통보 - 주요 변수별 교육 및 질 관리 결과 공유 - 응급실손상환자심층조사 자료 활용 방안 논의	연 4회
심층영역별 질 관리 간담회	분과별 연구진	- 분과별 질 관리 결과 안내 - 분과별 질 관리 관련 토론, 조사항목에 관한 질의응답	연 4회
손상포럼	참여병원 연구진	- 손상예방 및 안전사회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 확산 및 홍보 - 손상 예방 정책 관련 법률 및 제도 개선 방안 마련	연 1회

▶ 사업 계획서 및 보고서의 제출

- 사업계획서, 중간실적보고서, 최종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
- 사업계획서 및 보고서는 좌철 보드로 제본하여 제출
- 개조식으로(서술어를 명사형으로) 작성하고. 번호나 기호를 사용한 육하원칙에 의한 보고서 형태로 작성(그림이나 도표 이용 가능)
- 사업계획서(예산서 포함)에 대하여 발주부서(손상예방관리과)의 수정 요청이 있는 경우 이를 반영

구분	사업계획서	국고보조금 교 부 신청서	중간보고서	최종보고서	정산보고서
제출시기	1사분기	1, 3시분기	3시분기	4시분기	익년도 1시분기
제출방법	- 공문 및 원본파일 제출(등기) - e나라도움 제출(중간보고서 제외) -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에 파일 등록				

▶ 사업의 변경

승인사항	통보시항
사업책임자의 변경 당초 계획 대비 비목간 30% 이상의 산출 내역 변경 주요 연구계획(연구 수행 방법 및 내용)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 참여연구원의 변경 및 참여율 조정 • 당초 계획 대비 비목간 30% 미만의 산출 내역 변경

※ 해당 양식은 질병관리통합관리시스템의 자료실에서 다운로드 가능함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 〉 응급실손상환자심층조사 〉 커뮤니티 〉 자료실)

최종평가기준

- 응급실손상환자심층조사의 당해년도 사업추진실적을 평가하여 차년도 사업 지속 여부 및 기관별 사업비 차등 배분에 활용
- 최저점과 최고점을 배제한 평가위원 평가점수의 평균을 산출하고, 평가 점수 70점 미만인 경우 부적격으로 판정

[표 2] 최종평가기준

교기기조		평가점수				
평가기준	배점	매우우수	유수	보통	미흡	매우미흡
1. 손상심층조사 자료수집 양적 달성도	30					
1-1, <i>공통</i> 항목 입력 건수		N≥12,000	9,000≤N⟨12,000	6,000≤N⟨9,000	3,000≤N⟨6,000	N(3,000
응급실손상환자심층조사 자료등록시스템에 등록된 손상자료 건수	15	15	12	9	6	3
1-2, 심층항목 입력 건수	10	N≥2,500	2,000≤N⟨2,500	1,500≤N⟨2,000	1,000≤N⟨1,500	N(1,000
응급실손상환자심층조사 자료등록시스템에 등록된 심층자료 건수	10	10	8	6	4	2
1-3, 상대적 입력 건수	5	N≥90%	80%≤N⟨90%	70%≤N⟨80%	60%≤N⟨70%	N<60%
전년도 대비 자료등록시스템에 등록된 손상자료건수		5	4	3	2	1
2. 손상심층조사 자료수집 잘적 달성도	30					
2-1, 질 관리 결과 완료율	10	N≥99%	90%≤N⟨99%	85%≤N⟨90%	80%≤N⟨85%	N (80%
2020년에 실시한 질 관리 결과 * 산출식 : [완료건수/등록건수*100]		10	8	6	4	2
2-2. 질 관리 결과 평균 오류 문항 건수	-	N(1%	1%≤N⟨2%	2%≤N⟨3%	3%≤N⟨4%	N<4%
* 신출식: [오류문항수/전체문항수*100]	5	5	4	3	2	1
2-3. 질 관리 결과 평균 문제 문항 건수	40	N(1%	1%≤N⟨3%	3%≤N⟨5%	5%≤N⟨10%	N<10%
* 산출삭: 공통항목 평가 대상 필수 변수의 기타 또는 미상 값의 분율	10	10	8	6	4	2
2-4. 시업 수행기관 지체 질 관리 수준	5	5	4	3	2	1

	배점	평기점수				
평가기준		매우우수	유수	보통	미흡	매우미흡
3. 사업 수행의 충실성	10					
	_	N≥100%	75%≤N⟨100%	50%≤N⟨75%	25%≤N⟨50%	N(25%
3-1. 조사자료 등록기간 준수	5	5	4	3	2	1
	5	N≥100%	75%≤N⟨100%	50%≤N⟨75%	25%≤N⟨50%	N(25%
3-2, 질 관리 결과 환류기간 준수		5	4	3	2	1
4. 시업 수행의 인력 및 예산 적절성	10					
4-1, 인력의 전문성 및 적절성 * 응급의학 전문의 확보, 업무배분의 적절성	5	5	4	3	2	1
4-2. 예산 편성 및 집행의 적절성	5	5	4	3	2	1
5. 손상사업 참여, 연구, 예방활동 적극성	20					
		N≥100%	75%≤N⟨100%	50%≤N⟨75%	25%≤N⟨50%	N(25%
5-1. 전담코디네이터 교육 참여도	5	5	4	3	2	1
5-2. 심층조사사업 활동 참여도	5	N≥100%	75%≤N⟨100%	50%≤N⟨75%	25%≤N⟨50%	N(25%
* 운영위원회, 분과 활동, 손상포럼, 질 관리 활동 등 참여		5	4	3	2	1
	5	논문 게재	학회발표	논문투고	-	-
53. 조사결과를 활용한 논문실적		5	4	3	2	1
54. 심층분과 및 손상 예방 활동 병원 자체 프로그램 운영 지역사회 손상예방 관련 공공사업 참여 지역사회 손상예방 관련 정책 및 제도 개선 활동 참여 뉴스레터, 보도자료, 「손상예방과 건강한 안전사회」 원고 작성 자료수집 코디네이터 실무 지원을 위한 자료 제작 분과별 질관리 활동, 워크숍 및 심포지움 개최, 예방활동 등 * 결과보고회 발표 시 참고		5	4	3	2	1

→ 사업 수행기관 및 수행인력 기준

• • •

▶ 사업수행 기관 및 사업책임자 자격기준

▶ 사업 수행기관(보조사업자)

-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및 「민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
- 질병관리청장이 인정하는 조사사업 및 교육운영 능력을 갖춘 기관 및 단체

사업책임자(책임연구원)

- 사업책임자는 기관별 특성에 따라 특정 직급 이상의 자격을 갖춰야 함
 - 대학병원 : 교수, 부교수, 조교수
 - 공공기관: 교수, 부교수, 조교수, 또는 과장 이상

▶ 사업책임자 및 참여연구원 변경

○ 사업 수행기관은 필요 시 사업책임자 및 참여연구워 변경을 요청할 수 있으며, 변경은 사업 발주기관(질병관리청)의 관련 규정에 따름

사업책임자 변경

- 사업 수행기관은 사업책임자 변경에 대한 사항 및 사유를 관련 양식에 작성하여 요청하고 질병관리청장(손상예방관리과장 위임)의 승인 후에 변경할 수 있음
 - 사업책임자 변경은 사맛 퇴직 및 타 기관으로 인사이동 해외연수 등으로 인해 불가피하게 변경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만 변경을 원칙으로 하고 있음
- 제출서류
 - 사업책임자 변경 승인 요청 공문
 - 사업책임자 변경 사유서(서식 3)
 - ※ 해당 양식은 질병관리통합관리시스템 자료실에서 다운로드 가능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 응급실손상환자심층조사) 커뮤니티) 자료실

▶ 참여연구원 변경

- 사업수행기관은 참여연구워 변동사항이 발생할 경우. 사전에 사업 발주부서와 혐의 후 계획 변경에 대한 사항 및 사유를 관련 양식에 작성하여 서면으로 통보해야 함
- 제출서류
 - 참여연구원 변경 통보 공문
 - 참여연구원 변경 사유서 양식(서식 2)
 - ※ 해당 양식은 질병관리통합관리시스템 지료실에서 다운로드 가능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 응급실손상환지심층조사) 커뮤니티) 자료실)

→ 예산 집행지침

• • •

≥ 용어정의

- '국고보조금'이란 국가 외의 자가 수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하여 국가가 이를 조성하거나 재정상의 원조를 위해 교부하는 것
- '보조사업'이란 보조금의 교부 대상이 되는 사무 또는 사업
- '보조사업자'라 보조사업을 수행하는 자
- '별도계정'이란 「보조금법」제34조에 따라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과 관련된 수입과 지출을 명백히 구분하여 회계처리하기 위하여 설정한 계정(計定)
- '정산'이란 「보조금법」제27조제2항에 따라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가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에 든 경비를 재원별로 명백히 계산하는 것
- '검증'이란 「보조금법」 제27조와 「보조금법 시행령」제12조의2에 따라 정산보고서가 적절하게 작성되었는지 여부를 검토·확인하는 것
- '검증기관'이란 「보조금법」제 27조와「보조금법 시행령」제12조의2에 따라 정산보고서를 검증하는 감사인
- '중요재산'이란 보조사업자 또는 가접보조사업자가 보조금 또는 가접보조금으로 취득하거나 그 효용이 증가된 것으로 「보조금법 시행령」제15조제1항에 따른 재산

▶ 관련 법규 및 규정

- 본 사업의 예산 집행·정산에 대한 사항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및 응급실손상환자심층조사 민간경상보조사업 운영지침에 따르며. 명시되지 않은 세부 내용에 대해서는 질병관리청의 지도에 따름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기획재정부)
 - 「보건복지부 소관 국고보조금 관리규정」(보건복지부훈령 제189호)
 - 「국가재정법」
 - 2023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기획재정부)
 - 「국가공무원법」
 - 공무원 여비 업무 처리기준(인사혁신처)

연번	법령 및 규정명	주요 내용
1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 보조금 관리에 대한 기본내용 규정 • 보조금 예산의 편성, 교부 신청과 교부 결정, 보조사업의 수행, 반환 및 제재 등
2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보조금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 보조사업자의 정보공시, 회계감사 및 부정수급자의 명단 공표 등
3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보조금법과 보조금법 시행령에서 정한 사항 등을 구체화할 필요가 있는 기준에 대해 규정 보조사업관련자의 보조금관리위원회 보조사업선정, 보조사업자선정 보조사업집행관리 보조금의 반환 및 제재 보조사업 사후관리
4	보조시업 정산보고서 작성지침	 정산보고서 작성 방법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 보조사업비의 산정기준, 불인정기준, 보조사업비의 변경, 수익금관리 및 반환 기준, 정산보고서의 작성 및 제출
5	보조시업 정산보고서 검증지침	 정산보고서 검증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 검증기관의 의무 및 선정원칙, 검증업무의 범위 및 기한, 정산보고서의 검증절차, 보고방법 및 보고사항 등
6	보조시업자 회계감사 세부기준	특정사업자에 대한 회계감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 감사인 자격, 선임, 해임, 지정, 회계감사기준, 감사조서, 회계감사에 대한 감리 등
7	보조시업자 정보공시 세부기준	보조사업 등의 정보공시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 정보공시 적용범위, 공시사항, 기한, 불성실 공시에 대한 사후조치, 제재조치 등

▶ 예산 집행의 원칙

- 보조금은 보조사업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음
- 사업비를 사용 할 때에는 사업계획서의 사업 목적 및 사업비의 사용 계획에 맞게 사용해야 하며. 증빙자료를 갖추어야 함
- 교부 받은 예산은 사업계획서 및 이에 근거한 산출내역서에 따라 집행하고 예산 절감을 위해 노력함
- 이 사업의 예산은 기타 국고지원액 또는 자체 자금과 구분하여 계리하여야 하며. 보조금을 원금으로 한 이자 발생액은 반드시 국고에 반납해야 함

보조금 교부

- 교부신청
 - 보조금을 교부받으려는 보조사업자는 「보조금 관리에 관하 법률」 제16조에 따라 교부신청서 및 사업계획서를 중앙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함
 - 사업계획서에는 보조비목. 보조세목별 금액이 포함되어야 함
 - 제출한 사업계획상의 예산편성이 적절하지 못할 경우 발주부서(손상예방관리과)의 수정 요청이 있을 수 있으며, 수행기관은 이를 반영해야 함
 - 보조사업자는 보조금 교부신청 시 구체적인 사업 집행계획을 마련하여 제출해야 함
- 보조금 교부방법
 - 보조금은 최소 2차례 이상으로 나누어 교부되며. 1차 교부와 최종교부 사이에 교부된 보조금이 당초 목적대로 사용되지 않을 경우 잔여 보조금이 교부되지 않을 수 있음
 - 1차 교부금 : 상반기(2월경)에 총 교부금액의 70% 이내 지급
 - 2차 교부금 : 하반기(7월경)에 잔액 지급
 - ※ 교부 시기는 내부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1차 교부와 최종교부 사이에 교부된 보조금이 당초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여부를 점검하여 그 결과에 따라 잔여 보조금의 교부 여부를 결정함

- 교부신청 제출 서류
 - 교부신청서 제출 공문(사업 수행기관 발행)
 - 국고보조금 교부신청서(통장사본 통장잔액 ()워 증빙자료 사업자등록증 스캐본 첨부)
 - 보조금 부정수급 등 방지확약서
 - ※ 서류 원본은 직접방문 및 우편으로 제출하고, 전자파일은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에 등록
- 보조금 이월 조건
 - 보조금을 교부 받은 후 워칙적으로 보조금의 이월은 허용되지 않으나 중앙관서의 장이 인정한 경우에만 이월할 수 있음
- 보조금 교부결정 취소
 - 아래 사항을 위반할 경우 보조금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음

교부결정 취소 사유

- 허위 신청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의 교부를 받은 경우
-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불법시위 활동 등에 사용한 경우를 포함)
- 보조사업자가 법령의 규정. 보조금의 교부조건의 내용 또는 법령에 의한 중앙관서 및 사업발주기관의 장의 처분에 위반한 경우
- 해당 보조금 지원과 직접 관련된 사업계획서 등에 명시된 사업내용을 수행하지 못하여. 사업기관에서 구체적인 사유를 제출함에도 불구하고 사유가 충족하지 못한 경우
- 동일 또는 유사한 사업계획으로 다른 기관으로부터 중복하여 보조금을 받은 경우
- 교부받은 보조금을 활용하여 법적 근거 없이 다른 기관에 대한 출연금으로 사용할 수 없음

▶ 보조금 사용기준

- 보조금 관계 법령, 보조금 교부 결정시의 교부조건과 교부 목적에 따라 사용하여야 하며, 보조사업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이 불가함
 - 보조사업자는 보조금 교부신청 시에 제출한 보조사업 추진계획에 따라 효율적이고 투명하게 집행해야 함
- 보조사업자는 국가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e나라도움시스템)을 통하여 보조사업과 관련된 계약업무를 관리하여야 함
- 보조사업자는 아래의 경우에는 중앙관서의 장의 승인이 필요함
 - 사정의 변경으로 보조사업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사업 내 내역사업변경 포함)하고자 하는 경우
 - 보조사업을 다른 사업자에게 인계하거나 중단 또는 폐지하고자 하는 경우
 - 보조금에 의하여 취득하거나 그 효용이 증가된 중요 재산을 양도 교환 또는 대여하거나 담보로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
 - 승인 없이 재산 처분이 가능한 경우
 - 보조사업자가 보조금의 전부에 해당하는 금액을 국가에 반화한 경우
 - 보조금의 교부 목적과 해당 재산의 내용연수를 고려하여 중앙관서의 장이 정하는 기간이 지난 경우

○ 사용방법

- 당해연도 사업 기간 내 지출(e나라도움에서 연내 원인 행위 및 집행 완료)
- 보조금 입·출금 계좌에서 직접 계좌이체 또는 **보조사업비 카드(e나라도욲시스템 전용** 카드) 사용만 인정함
 - •계좌입금: 인건비성 경비, 위탁·용역 대가, 각종 제세, 각종 수당 등
 - 보조사업비 카드: 일반수용비(인쇄비, 물품구매 등), 업무추진경비, 회의경비, 각종 행사비. 여비(항공료 등) 등
- 인건비, 회의수당, 전문가 활용비 등 개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경우, 본인명의의 은행 계좌이체를 워칙으로 함

- 보조금 지출 거래 시 세금계산서는 전자세금계산서를 사용하여야 함
- 다만, 교통 및 통신시설 미비 등으로 곤란한 경우에는 예외임
- 증빙서류
 - 예산을 집행할 경우 집행을 증빙할 수 있는 해당 공문. 계획서. 보고서. 방명록 등 근거자료를 반드시 첨부해야 함
- 보조금 지원 제한
 - 불법시위를 주최 또는 주도한 단체의 경우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 허위의 신청. 보조금 타용도 사용 적발될 경우 조치사항
 - 보조사업자, 간접보조사업자 및 보조금수령자가 허위의 신청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았거나. 보조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 등에는 관련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금 교부 결정의 취소. 교부금에 대한 반환 명령. 강제징수 등 필요한 조치에 따라야 함

▶ 보조금 계정관리

- 보조사업자는「보조금법」제34조에 따라 교부받은 보조금에 대하여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고 자체 수입 및 지출과 명백히 구분하여 회계처리 해야 함
- 보조사업자는 보조사업별로 보조금 관리를 위하여 기관 명의의 수시 입출금이 가능하고 워금이 보장되며. 닦보설정이 되지 않는 보통예금 등으로 계좌를 별도로 개설하여 관리 하여야 하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계좌는 변경할 수 없음
- 2개 이상의 보조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별도의 계좌를 사용해야 함
- 통장은 신규개설 통장이외에도 기존 사업비 통장을 사용할 수 있으나, 본 사업만을 위한 전용 계좌의 통장이여야하며. 통장의 잔액이 교부신청 당시 0원임을 증빙한 경우 사용 가능함
- 보조사업 수행과정에서 수익금이 발생할 경우에도 보조사업비와 구분하여 별도의 계좌를 개설하여 관리하여야 함

보조사업비 카드 사용 원칙

- 보조사업자는 보조금 입금계좌와 연결된 은행의 보조금 결제 전용 보조사업비 카드 (신용카드 또는 체크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함을 원칙으로 하며, 복수 발급 사용이 가능함
- 국가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e나라도움)에서 인정하는 금융기관의 전용통장과 e나라도움 전용카드를 사용하여 사업비를 집행해야 함
 -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에서 인정하지 않는 지급통장 및 카드 사용 시 집행 불가
- 업무추진비 집행 시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클린카드를 사용할 수 없음. 다. 출장명령서. 휴일근무명령서 등 증빙 자료를 제출하여 클린카드 사용의 불가피성을 입증하는 경우에 가능함
 - 법정공휴일 및 토·일요일
 - 관할 근무지와 무관한 지역
 - 비정상 시간대(23시 이후 심야시간대 등) 사용
 - 업무를 위해 주류판매를 주목적으로 하는 업종에서 사용
- 보조사업비 카드 사용 제한 업종
 - 유흥업종 : 한국표준산업부류에 따라 접객요원을 두고 술을 판매하는 일반 유흥주점. 무도시설을 갖추고 술을 판매하는 무도유흥주점
 - 위생업종 : 이·미용실, 피부미용실, 사우나, 안마시술소, 발마사지, 스포츠 마사지, 네일아트. 지압원 등 대인 서비스
 - 레저업종 : 골프장, 골프연습장, 스크림골프장, 노래방, 사교축, 전화방, 비디오방, 당구장, 헬스클럽. PC방. 스키장
 - 사행업종 : 카지노, 복궈방, 오락실
 - 기타업종 : 성인용품점, 총포류 판매점
 - ※ 보조사업비 카드사용 제한 업종으로 지정되지 않은 경우에도 보조사업 목적과 무관한 업종에는 사용 금지

▶ 예산 변경

- 사업 수행기관은 필요 시 예산 변경을 요청할 수 있으며, 예산 변경은 사업 발주기관 (질병관리청)의 관련 규정에 따름
- 예산 변경 통보 및 승인 요청은 **사업종료 1개월 이전(11월 30일)까지 승인**을 받아야 유효하며, 변경 신청은 3회까지 가능함
 - ※ 승인 통보 소요기간(약 1주일 소요)까지 충분히 고려하여 요청하도록 함
- 당초 사업 계획 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사업 발주부서와 협의 후 서면으로 통보하거나 승인을 요청해야 하며, 변경 승인 사항은 질병관리청장(손상예방관리과장 위임)의 승인을 받아 변경해야 함
- 예산항목 조정 및 변경 절차
 - 예산항목 조정 시에는 사전에 사업발주부서와 협의·승인 후 집행 가능함
- 사업 발주기관(질병관리청)의 승인 여부
 - 당초 계획된 사업비에서 비목 간 30% 이상의 산출내역 변경은 관련 양식에 작성하여 요청하고 사업 발주기관(질병관리청)의 승인 후에 변경할 수 있음
 - ※ 예시: 당초 계획보다 여비를 증액시키기 위해 업무추진비 감액을 요청
 - 당초 계획된 사업비에서 비목 가 30% 미만의 산출내역 변경은 승인사항이 아니며 관련 양식을 작성하여 서면으로 통보하면 됨
- 동일 항목의 범위 내에서 세부항목 간의 예산을 조정할 수 있음
 - ※ 예시: 운영비 내 일반수용비와 공공요금간의 조정

▶ 보조사업 정산

보조사업 정산보고서 작성 및 제출

- 보조사업 실적보고서 및 정산보고서는 실적보고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제출해야 함
 - 보조사업이 완료되었을 때
 - 보조사업의 폐지를 승인받았을 때
 - 회계연도가 끝났을 때
- 보조사업자의 정산보고서 제출이 늦어질 경우 보조금 중 일부가 감액되어 교부될 수 있음
 - 3개월 이상 지연 제출하는 경우 10%이내 보조금 삭감
 - 6개월 이상 지연 제출하는 경우 20%이내 보조금 삭감
 - 12개월 이상 지연 제출하는 경우 50%이내 보조금 삭감
 - ※ 정산 결과가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필요한 시정조치를 명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정산 절차가 완료되지 않은 보조사업자에게는 보조금을 추가로 교부해서는 안 됨
 - ※ 보조금법 제27조, 보조금법 시행령 제12조
- 정산보고서는 다음 항목을 포함하며, 양식은 「보조사업 정산보고서 작성지침」 내 서식을 사용함
 - 일반현황
 - 보조사업의 개요
 - 당해연도 보조사업비
 - 보조사업비 사용실적 및 보조금 반환액
- 정산보고서에는 보조비목 및 보조세목별 사용명세서를 보조금. 지방자치단체 부담금 자기부담으로 구분하여 작성하며 일자별 집행명세서를 첨부
 - 보조사업 비목은 「보조사업 정산보고서 작성지침」 내 항목을 적용함

■ 보조사업 정산보고서 검증

- 보조금 총액이 3억원 이상인 보조사업자는 반드시 감사인[검증기관]으로부터 검증받은 정산보고서를 첨부해야 함
 - ※ 다만, 공공기관운영 관련 법령상의 공공기관 또는 사후 보조의 경우 해당 법령에 따른 결산서 또는 회계감사 보고서로 갈음할 수 있음
 - ※ 감사인: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제2조제7호 및 제9조에 따른 감사인
- 검증기관 선정
 - 보조사업자는 보조사업비 집행업무 관련자 등으로부터 독립성을 유지하면서 전문적으로 검증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검증기관을 공정하게 선정해야 함
- 검증기관의 책임
 - 검증기관의 귀책사유 정도에 따라 1년에서 3년간 검증업무의 수행이 제한될 수 있음

▶ 회계검사

- 보건복지부는 응급의료기금 국고보조사업의 집행 적정성 및 투명성 확보를 위해 전문 회계법인을 공모·지정하여 해당 보조사업자를 대상으로 회계검사를 실시함
- 보조사업자는 보건복지부가 선정한 회계법인으로부터 회계검사를 받아야 함
- 보건복지부가 선정한 회계법인은 보조사업자의 보조금 집행에 대해 관련 증빙자료 등을 검토하여 보조사업자가 「국가재정법」,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각 사업 집행지침 및 사업계획서 등에 맞게 집행하였는지 확인할 수 있음
- 보조사업자는 회계감사를 위한 회계법인의 자료요구에 성실히 응하고, 회계법인의 요청 사항에 대해 적극 협조해야 할 의무가 있음
 - ※ 교부조건사업(자부담사업)도 회계검사 대상이며, 이 경우 수수료는 전액 자부담임
- 회계검사 범위
 - 국고보조금 목적 외 사용 및 부당사용 여부
 - 계약업무 처리의 적정성 여부
 - 국고보조금 관리에 대한 적정성 여부
 - 사업계획에 반영되지 아니한 사업비 사용 여부
 - 기타(의료기 구매 및 관리의 적정성, 사업비 횡령 및 유용 여부 등)
- 회계검사 관련규정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22조(용도 외 사용금지)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27조(보조사업의 실적보고)

○ 회계검사 진행절차

- ① 보건복지부와 회계법인 간 업무협약 체결 및 업무량 조정
- ② 보조사업자는 회계검증 등에 필요한 보조금 집행관련 자료제출(23.12월~24.1월)
- ③ 자료를 제출받은 회계법인은 정해진 기준에 따라 회계검증 등 실시('24.1월)
- ④ 회계법인은 회계검증 종료 후 그 결과를 보조사업자에게 통보('24.2월)
- ⑤ 보조사업자는 정산보고 시 회계법인으로부터 통보받은 '회계검증 결과내역서'를 첨부('24.2월)
- ⑥ 아울러 회계법인은 회계검증 종료 후 수행내역 및 검토의견을 담은 '회계검증 결과보고서'를 질병관리청에 제출('24.2월)
- ※ 회계검사 진행절차는 작년 기준을 토대로 작성된 것으로, 추후 변동될 수 있음
- 회계법인 보수(위탁 수수료)
 - 수수료는 회계검사 업무 종료 후 교부받은 국고보조금 내에서 개별 '보조사업자'가 회계법인에 지출하되. 실집행액에 근거한 아래 구간별 표준수수료 적용

국고보조금 규모(실집행 기준)	수수료(부가세 포함)
5천만원 이하	600,000원

- ※ 회계법인 보수(위탁 수수료)는 약간의 변동이 있을 수 있음
- 2개 이상 사업을 수행하는 보조사업자는 실집행액을 합산하지 말고. 사업별 집행액을 위 기준에 각각 적용하여 산출
- 교부받은 국고보조금을 전부 사용하지 말고 상기 기준에 해당하는 만큼의 금액을 잔액으로 남겨 추후 고지에 따라 진행
- 보조사업자는 회계법인으로부터 최종 통보받은 결과물을 질병관리청에 제출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27조(보조사업의 실적 보고)에 따라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보조사업 실적보고서'를 제출(계산서 및 중앙관서의 장이 정하는 서류 첨부)

▶ 보조금 이월 및 집행 잔액 등 반납

- 보조사업자는 보조금을 교부 받은 후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없으며, 집햇 잔액과 보조금으로 발생한 이자를 반납해야 함
- 집행 잔액 및 이자 반납
 - 보조사업 완료, 사업폐지 승인 시, 회계연도 종료 시에는 보조사업 실적보고서 및 집행 잔액과 보조금으로 발생한 이자를 반납해야 함
 - 발생이자의 별도 산정이 곤란한 경우에는 민법상 법정이율인 5%를 적용하여 산출함
- 수익금 처리
 - 보조사업 수행에 따라 발생한 수익금은 보건복지부와 협의하여 국고 반환 또는 당해 보조사업 목적 범위에 맞도록 집행하고 정산보고서에 포함하여 심사함
- 다음의 정산잔액은 소정의 절차를 거쳐서 즉시 반납함
 - 이미 교부된 보조금과 이로 인하여 발생한 이자를 더한 금액이 확정된 교부금액을 초과한 경우 그 초과액
 - 사업비 정산액이 교부 결정한 사업계획서 예산집행 계획보다 감소한 경우 그 감소 차액
 - 집행 관련 증빙서류가 집행내역과 일치하지 않을 경우 그 차액
 - 반납되어야 하는 보조금은 ① 집행잔액 ② 불인정금액 ③ 차기이월액 ④ 발생이자. ⑤ 반환하기로 한 수익금 등을 고려한다.
- 보조사업 시행으로 발생한 부가가치세 환급금 등은 세외수입으로 계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다만, 동일 사업에 재투자할 경우 그 내역을 명확히 하여 미리 계획에 반영

보조금의 중요재산 관리

-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의 관리
 - 교부받은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은 사업이 완료된 후 보조금 정산 시 재산 목록을 제출해야 함
 - 교부받은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은 관리대장을 비치하고 목적에 맞게 관리하도록 함
- 중요재산 취득 보고 : 취득 후 15일 이내
 - 보조금을 교부받아 취득하였거나 그 효용가치가 증가한 재산
 - ※ 부동산과 그 종물,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5백만 원 이상의 물품 등
 - ※ 기획재정부의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은 50만 원 이하는 제외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보고 1개월 이내에 중요재산공개시스템 및 국고보조금관리시스템(e-나라도움)에 공시
- 중요재산 변동 보고 : 매년 6월말 / 12월말
- 중요재산의 처분 제한 : 보건복지부장관의 사전 승인이 필요함
 - 보조금 교부 목적에 위배되는 용도에 사용
 - 양도. 교환. 대여
 - 담보의 제곳
- 중요재산 부기등기(附記登記)
 - 중요재산의 소유권 보존 등기, 소유권 이전 등기 등의 행위 시에 보조금을 교부받아 취득하였거나 그 효용가치가 증가한 재산이라는 사항을 표기해야 함
 - 보조금 교부 목적에 위배되는 용도에 사용, 양도, 담보 제공할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사항을 표기해야 함
 - ※ 보조사업자가 보조금이 지원된 부동산 증명서를 발급받아 관할등기소에 제출함

> 자료보관

- 보조사업자는 보조사업 수행과 관련된 자료를 5년간 보관해야 함
- 다만, 카드사, 국세청 등으로부터 카드사용내역, 세금계산서 등을 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해 전송받은 경우. 종이영수증 워본을 별도로 출력하여 보관하지 않고 전자파일로 보관할 수 있음
- 보관대상 자료는 계산증명규칙(감사원규칙)상 '계산서, 증거서류, 첨부서류'를 의미함
- 다만, 단순·일상적인 업무를 수행하면서 생산한 기록물은 1년간 보관해야 함
 - ※계 산 서: 증명책임자가 취급한 회계사무의 집행실적을 기간별로 계수로 집계한 서류

증거서류: 계산서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첨부서류: 계산서 또는 증거사류의 내용을 설명하기 위하여 필요한 서류

정보공시

- 공시대상
 - 보조금 총액 1천만원 이상인 보조사업을 수행하는 기관
 -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에 보조사업 관련 정보를 공시
 - 사업연도와 관계없이 같은 회계연도 내에 수행하는 보조금의 합계 기준이며, 여러 부처에서 지원받은 경우 모든 부처의 보조금을 합산한 금액이 기준임

예시

동일 회계연도(1월 1일~12월 31일)에 A사업자가 2개 부처로부터 각각 5백만 원과 6백만 원을 받은 경우 공시 대상에 해당

- 정보공시 사항
 - ① 보조금 교부신청서 및 사업계획서(첨부서류 포함)
 - ② 보조사업의 수입·지출내역서
 - ③ 정산보고서
 - ④ 정산보고서에 대한 검증보고서

- ⑤ 보조사업 관련 감사 지적사항
- ⑥ 보조사업에 대한 감사보고서(총액 10억원 이상 보조사업)
- ⑦ 보조사업자의 재무제표 또는 결산서(총액 10억원 이상 보조사업)
- ⑧ 보조사업자가 당해 연도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 현황
- 정보공시 기한
 - 당해 회계연도 종료일로부터 4개월 이내 공시함(익념 4월 30일까지)
 - 다만, 재무제표 또는 결산서는 가결산서 확정 후 수정 공시해야 함 ※ [예시1] 사업연도와 회계연도가 일치하는 경우(1월 1일~12월 31일)
- 불성실 정보공시에 따른 제재조치
 - 공시 불이행 : 공시하지 않거나 공시기한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 허위 공시 : 사실과 다른 내용을 공시하여 외부기관으로부터 적발된 경우
 - 위반 사실에 대해 서면(시정명령 내용, 시정기한 등 명시)으로 시정명령
 - 시정명령 불응 시 시정명령을 한 회계연도에 교부하기로 한 보조금 삭감 가능

• 시정명령에 1회 불응 : 10% 이내 삭감

• 시정명령에 2회 불응 : 20% 이내 삭감

• 시정명령에 3회 이상 불응 : 50% 이내 삭감

※ 근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1조의2⑤, 「보조사업자 정부공시 세부기준」제6조

→ 사업비 산출기준

▶ 사업비 비목 구성

○ 본 사업의 비목은 인건비, 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로 구성되어있으며, 본 지침에 명시되어 있는 비목 외 임의로 신설된 비목은 인정되지 않음

	비 목		내 역
1	인건비		사업 참여연구원의 인건비
		(2-1) 일반수용비	시무용품 및 시업 관련 물품 구압비, 인쇄비, 간행물 구압비, 전문가 지문료, 임치료 등
2	운영비	(2-2) 공공요금	우편요금, 전화요금 등
		(2-3) 기타운영비	회계검사 위탁정산 수수료 일반 수수료 등
3	여비		국내 출장비(일비, 4비, 운임, 숙박비)
4	업무추진비		사업 추진 회의 경비(식사 및 다래비)

▶ 인건비

○ 보조 비목·보조세목별 인건비 산정 기준

보조비목	보조세목	내역
	보수 (01)	1. 정규직원에 대한 보수 - 봉급, 정근수당, 성과상여금, 정액수당, 초괴근무수당, 정액급삭비, 명절휴가비, 명예퇴직수당, 연기보상비 2. 연봉제 직원의 경우에는 연봉 월액 3. 성과급 4. 퇴직금 및 퇴직급여 충당금 5. 직급보조비
인건비 (110)	기타직 보수 (02)	1. 전문 계약직에 대한 보수(상여, 수당 포함) - 사법연수원생, 시보공무원, 청원산림보호원, 수련의, 공중보건의사, 공중방역수의사, 징병전담 의사 등 2. 청원경찰에 대한 보수 3. 각종 위원회 또는 심의회의 비정규직에 대한 보수 4. 기타 법령에 의해 지급되는 비정규직원에 대한 보수
	상용임금 (03)	1. "고등교육법" 및 "공무원교육훈련법"에 의한 강사 등에 대한 보수 2. "별정우체국법"에 의한 별정우체국직원에 대한 보수 3. 무기계약직

보조비목	보조세목	내역
	일 용 임금 (04)	1. 수개월 또는 수일동안 일용으로 고용하는 임시직에 대한 보수 - 일용직보수, 기간제 근로자보수 등
		2. 공익요원에 대한 보수
	기타 인건비 (05)	1. 전문임기제, 시법연수원, 시보공무원이 될 자, 청원경찰, 청원산림보호직, 수련의(인턴, 레지던트), 공중보건의사, 공중방역수의사, 징병전담의, 공익법무관, 경찰대학생 및 경찰긴부후보생, 소방긴부후보생, 견습직원, 위원회 상근직 등에 대한 보수 2. 강사료, 원고료, 통역료, 번역료, 지문료, 회의참석비, 단순인건비

○ 인건비 적용범위

- 사업수행 인력에 대한 급여. 퇴직금. 부담금*. 수당 등
 - * 사업에 참여하는 인력에 대한 4대보험 가입, 유지와 관련하여 사업자 측에서 부담하는 비용
- 인건비 산출 기준 및 단가(2023년)

구분	자격	역할	단가 (월 임금)
책임연구원	교수, 부교수 수준	• 사업수행 총괄 ※ 1인을 원칙으로 하되, 다수의 책임자 필요시 예외	월 3,496,704원
연구원	조교수, 전임강사 수준	• 책임연구원 보조	월 2,681,226원
연구보조원	대학 조교 수준 (전공의, 응급구조사, 보건의료정보관리사 등	• 통계처리, 번역 등	월 1,792,309원
보조원	-	• 타자, 계산, 원고정리 등	월 1,344,277원

- 본 인건비 기준단가는 1개월을 22일로 하여 용역 참여율 50%로 산정한 것이며, 용역 참여율을 달리하는 경우에는 기준단가를 증감시킬 수 있다.
 - ※ 상기단가는 2023년도 기준단가로 계약예규 「예정가격 작성기준」 제26조 제2항에 따라 소비자물가 상승률(2022년 5.1%)을 반영한 단가이며, 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한 금액임
 - 상여금은 기준단가의 연 400%를 초과할 수 없음
 - 인건비 지출방법
 - 본인명의의 통장으로 계좌이체

○ 인건비 변경

- 인건비는 참여연구원의 사직, 변경 등이 발생하여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원칙적으로 변경이 불가하며 필요 시 참여율 조정을 통하여 인건비 내에서 조율해야 함
 - 인건비 총액은 원칙적으로 변경이 불가하나, 사직 등으로 인해 인건비가 당초 계획보다 감소되는 것은 인정함
 - 당초 계획보다 인건비 총액을 증액할 수는 없음
- 회계검사 시 인건비 증빙 제출서류

	제출목록	비고 및 주의사항
1	시업 수행 인력리스트	- 사업 수행계획서 상 사업 수행 인력리스트 - 사업 수행계획서와 실제 채용 및 인사에 변경 존재 시 최종 사업 수행 인력리스트로 제출 - 직책, 직위, 소속기관/부서, 담당업무, 해당 사업 수행기간(퇴사자의 경우 재직기간)확인 - 자격증(또는 면허증), 재직증명서(또는 경력증명서), 임명장 등
2	월별 근무일보, 참여율 계산 자료	- 월별 근무일보를 통해 근무일수 확인 - 수행 인력이 2개 이상 시업에 참여 시 시업 참여현황 및 참여율 계산 지료를 제출
3	급여이체 증빙 지출결의서, 영수증	- 시업인원의 인건비 지출여부 확인 - 인건비 세부집행내역과 일치해야 함

≥ 운영비

○ 보조 비목·보조세목별 운영비 산정 기준

보조비목	보조세목	내역
	일반 수용비 (O1) 공공요금 (O2)	1. 시무용품 구입비 - 필기용구, 각종용지 등 시무용 제 잡품의 구입비
		2. 인쇄비 및 유인물 제작비 - 지료 및 보고서, 책자, 각종 양식, 전단 등 업무 수행에 따른 일체의 인쇄물 및 유인물의 제작비
		3. 안내홍보물 등 제작비 - 현수막, 긴판 등 행사 안내 및 홍보용 물품의 제작비 - 기관간판, 명패, 감사패, 상패 등의 제작비
		4. 소모성 물품 구입비 - 재물조사 대상은 제외
		5. 긴행물 등 구입비 - 신문·잡지·관보·도서·팸플릿 등 정기·비정기 긴행물 구입비
운영비 (210)		6. 임치료 - 임대차계약에 의한 토지, 건물, 시설, 장비, 물품 등의 임치료 - 장소, 건물 등의 일시 임치료 - 각종 시설 및 장비의 리스료 - 물건 보관을 위한 간단한 창고 이용료 - 버스·승용차 등의 치량 임치료 - ASP 서비스 이용에 따른 임치료
		7. 공고료 및 광고료 - TV·신문잡지 기타 간행물에 대한 공고 및 광고료
		8. 각종 회의비, 전문가 활용비
		9. 기타 업무수행 과정에서 소규모적으로 발생되는 물품의 구입 및 용역제공에 대한 대가
		1. 공공요금 - 우편요금, 전신(전보)전화요금, 모시전송기 등 회선 사용료 - 철도화물 운송요금
	기타 운영비 (16)	1. 회계검사, 위탁정산 수수료 2. 일반 수수료 3. 기타 사업수행 과정에서 수반되는 경비

○ 일반수용비

- 사업에 필요한 비정기 간행물. 회의 및 행사 지원 경비. 연구와 관련된 사무용품 구입비. 연구관련 관계기관 및 관계자와 업무협의에 필요한 경비 등
 - 인쇄비. 회의자료. 문헌복사(지대 포함)
 - 사무용품 구입비(필기용구, 각종 용지 등 사무용 제잡품 구입비)
 - 간행물 구입비 : 사업 관련 서적, 도서 등 정기·비정기 간행물 구입비(역 500,000원 이하)
 - ※ 서적은 장비성 물품이므로 구매 전 발주부서의 승인 필요(공문으로 요청)
 - 컴퓨터(하드디스크 CD록 드라이브 등 본체 구성 부품) 프린터, 프로그램 등 구입 불가
 - 외장하드, 마우스, USB, 공유기, 전화기 등 범용성 비품 구입 불가
- 장비와 부수 기자재, 사업시설 임차에 관한 경비 및 부대경비
 - ※ 장비 구매는 불가하며, 사업의 특성에 맞는 장비에 한하여 임차 가능
 - 사업의 특성과 관련하여 갖추어야 할 장비, 물품에 한함
 - 지급기준: 실소요액
 - 임차 시 임차계약서 또는 견적서 등 증빙서류 구비 필수
- 토론회, 공청회 등 회의를 위한 회의장 사용을 하지 아니하고는 계약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의 임차료
 - 지급기준: 실소요액
 - 증빙서류 : 임차계약서. 견적서. 영수증(세금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등) ※ 현금영수증은 5만원 이내만 인정하며, 기관명의 현금영수증으로 발급
- 사업과 관련하여 논문발표 정보교류 교육 등의 목적으로 참석하는 국내·외 학회의 등록비(참석비)
 - 사업책임자의 판단에 따라 사업과 직접적으로 연관된 학회의 등록비에 한하여 지급하며, 학회 등록비 지급 시 확인 가능한 적절한 증빙 필요
- 사업 수행에 필요한 전문가 초청 자문료, 세미나 개최, 평가 및 자문회의비 등

• 내부연구원은 회의수당 계상 불가

	구분	단가
지문회의	○ 수당	2시간 이내: 150,000원
		2시간 이상: 200,000원(1일 최대)
	- 서면진행	100,000원
토론회, 공청회	○ 수당	
	- 특강, 좌장, 주제발표자	최초 1시간: 200,000원
		2시간: 300,000원
	- 토론자 등 위 이외의 자	최초 1시간: 100,000원
		2시간: 150,000원
		2시간 초과: 200,000원(1일 최대)

[※] 원격지에서 참석하는데 소요되는 교통비(여비 기준 적용)는 예산 범위 내에서 별도 지급 가능

- 회계검사 시 일반수용비 증빙 제출서류

	제 출목록	비고 및 주의사항
1	지출결의서, 지출영수증 (세금계산서 등)	- 보조금 통장, 회계장부, 지출결의서, 영수증(세금계산서 등) 간에는 집행일자 및 금액 등이 상호 일치하여야 함 - 세부 집행내역과 실제 집행액이 일치되어야 함
2	시업 관련 확인 증빙서류	- 시업 관련 지출여부 확인 증빙
3	교육·회의 및 지 문수당 증명서류	- 교육·수당·강사료·학회등록의 사실 증명서류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함 1) 일시 및 장소 2) 내용 및 결과, 회의록 3) 참석자 명단 및 서명
		- 예를 들어, 결재문서, 회의록, 참가자서명부 등
4	수당 강사료 지급 증명사류	- 회의지문 수당 및 자체교육 강사료를 집행한 경우, 해당 전문가에게 지급한 증명서류를 제출해야함
	30	- 예를 들어, 전문가 서명이 들어간 지급 증명서와 계좌이체 내역
5	암차 관련 확인 증빙서류	- 임차계약서 또는 견적서
6	영수증	- 세금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기관명의)현금영수증 등

[※] 위 기준에 맞추어 수당 지급 시 원고료 별도 지급 불가

○ 공공요금

- 당해 연구내용과 관련한 설문조사 및 자료배부가 필요한 경우 전신·전화사용료, 우편료 계산
 - 전신 · 전화사용료 및 우편료: 실소요액
 - ※ 단, 전화사용료의 경우 사업책임자 명의 회선 또는 해당사업과 관련된 영수처리 가능 회선
 - 전화사용료(1인당 10.000원/월, 1개월 70.000원 이하), 우편요금(30.000원/월)
- 회계검사 시 공공요금 증빙 제출서류

제 출목록		비고 및 주의사항
1	- 전신(전보) · 전화요금 : 요금납부 증빙 등 - 우편요금 : 운송장, 운송내역 증빙 등	
2	영수증	- 세금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기관명의)현금영수증 등

○ 기타 운영비

- 위탁정산수수료
 - 사업종료 후 회계법인을 통한 위탁정산의 수수료 : 위탁정산수수료 표준액

사업비(연구용역비) 규모	정산수수료의 표준액
5천만원 이하	600,000원

- ※ 위탁정산수수료를 반드시 포함해야 하며, 정산 수수료 금액은 약간의 변동이 있을 수 있음.
 - 일반수수료 : 직접비 5%이내
 - 운영비 지출방법 및 증빙서류
 - 계좌이체 및 보조금 카드 사용으로 지출
 - '세금계산서, 신용카드 매출전표, (기관명의)현금영수증' 등의 증빙서류 첨부

제 출목록	비고 및 주의사항
지출결의서 영 수증 (세금계산서 등)	- 보조금 통장, 회계장부, 지출 결의서, 영수증 간에는 집행일자 및 금액 등이 상호 일치
2 시업관련 확인 증빙서류	- 사업관련 지출여부 확인 증빙

> 여비

○ 보조 비목·보조세목별 여비 산정 기준

보조비목	보조세목	내역
여비 (220)	국내여비 (01)	1. 국내 출장경비로서 각 기관이 정한 기준에 따른 실소요 경비 2. 인사이동에 따른 이전여비 3. 월액여비 4. 교육여비

○ 여비 규정

- 여비의 종류

구분	내용	지급상한액	
운 임	여행 목적지로 이동하기 위해 교통수단을 이용함에 있어 소요되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한 여비 (철도운임, 선박운임, 항공운임, 자동차운임)	일반실을 기준으로 실비 지급	
숙박비	여행 중 숙박에 소요되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한 여비	책임연구원 등급은 「공무원	
식 비	여행 중 식사에 소요되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한 여비	여비규정」 별표 1의 제1호, 연구원, 연구 보조원 및 보조원	
일 비	여행 중 출장지에서 소요되는 교통비, 통신비 등 각종 비용을 충당하기 위한 여비	등급은 제2호를 준용	

※ 공무원 여비 규정」개정(2023.3.2.)에 따라 근무지외 출장여비가 조정되었으니, 여비 규정을 참고하여 지급하되 사업비 범위내에서 지급 (※ 적용시점: '23.3.2.출장일부터 적용)

- 여비지급 항목

	구분	여비항목	
コルリネエレ	근무지내 국내출장	1만원, 2만원 정액	
국 내출 장	근무지외 국내출장	운임, 식비, 숙박비, 일비	

- 「공무원 여비규정」, 「공무원 보수 등의 업무 지침」으로 여비 기준 준용 ※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검색 가능
- 여비는 국내여비만 지급 가능하며, 국외여비의 경우 지급이 불가능

- 근무지내 출장 여비
 - 지급범위
 - 동일 시(특별시 및 광역시 및 특별자치시 포함) 구 및 섭(제주특별자치도 제외) 안에서의 출장이나 여행거리 왕복 12km 미만인 출장
 - 지급기준
 - 출장시간이 4시간 미만인 경우 1만원. 4시간 이상인 경우 2만원을 지급
 - 위 지급액 이외에 운임, 일비, 식비, 숙박비 등 별도의 여비는 미지급
 - 1일 이내에 4시간 이상 근무지내 출장을 2회 이상 실시한 경우라도. 출장비 합산액은 2만원을 초과할 수 없음
 - 공용차량 또는 차량을 임차하여 사용하는 경우 1만원 감액 지급
- 근무지외 출장 여비
 - 지급범위: 근무지내 출장을 제외한 국내 출장
 - 지급기준 및 대상: 월 15일 이내 계상
- 여비항목별 지급 기준
 - 운임비
 - 증빙서류: 날짜가 기재된 철도·고속(또는 시외버스)·비행기·선박의 승차권 등
 - 철도. 버스. 선박 및 항공 등의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발생한 운임을 지급 원칙으로 하며, 개인 자가용을 이용하여 발생한 운임비는 미지급
 - 제주도 등 출장 시 항공수단을 이용할 경우 예산집행 상 효율을 도모하기 위해 출장여건 상 곤란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가급적 항공운임이 저렴한 저가비용 항공사(Low-Cost Carrier)를 이용

철도
선박
항공

버스

- 실비로 지급하되. 할인이 되는 경우에는 할인된 금액을 지급
- 좌석은 **일반실을 기준으로 지급(책임·연구원·보조연구원)**
-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가 정하는 기준 및 요율의 범위 안에서 정해진 버스요금을 기준으로 실비로 지급하되, 할인이 되는 경우에는 할인된 금액을 지급

- 일비

- 일비는 출장일수에 따라 정액으로 지급
- 1일당 2만 5천원 지급(책임연구원, 연구원, 연구보조원 모두 동일)

- 식비

- 식비는 출장 일수에 따라 정액으로 지급
- 다만, 수로여행과 항공여행에는 따로 식비가 필요한 경우에만 식비를 지급

구 분	금 액	자격기준
책임연구원	25,000원	• 2·3급, 대학의 교수, 부교수, 전문대의 교수
연 구 원	25,000원	•4·5급, 대학의 조교수·전임강사, 전문대의 부·조교수
연구보조원	25,000원	• 기타

- 숙박비

- 숙박을 목적으로 사용된 경비에 한하여 지급할 수 있으며, 호텔 등의 부대 서비스 (룸서비스, 객실 내 전화사용 등) 이용비용은 지급대상에서 제외
- 숙박비는 아래 표의 기준에 따라 지급범위 내의 실비로 지급

구 분	상한액	비고
서울특별시	100,000원	-
광역시	80,000원	-
그 밖의 지역	70,000원	세종시, 제주도 포함

- 출장자가 호텔에서 숙박한 때에는 숙박비 지급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영수증을 반드시 제출
-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증거서류의 가맹점명 또는 업종 분류가 숙박업소나 여객운송업체로 기재되지 않은 경우. 유선 등으로 숙박업 또는 운송업체임을 확인한 때에는 여비 지급 가능

- 증빙서류 : 세금계산서, 신용카드 매출전표, 현금영수증
- ※ 증빙서류 인정 범위
- 부가가치세법 제32조에 의한 세금계산서
-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에 의한 신용카드 매출전표,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3에 의한 현금영수증
- 철도·고속(또는 시외)버스·비행기·선박의 승치권
- 고속도로 통행영수증 등
- 대중교통 수단의 부재로 당일 회의 시간에 도착할 수 없는 경우, 회의 전날 운임을 이용하거나 숙박이 가능
 - 당일 대중교통 현황을 캡쳐하여 대중교통 수단의 부재를 증명하는 증빙서류로 제출
- 회계검사 시 여비 제출서류

제출목록		비고 및 주의사항
1	출장 등 이행시실 증명사류	- 결재문서 또는 출장 보고서, 방명록 등
2	쇆비 즹	- 세금계산서, 신용카드 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등
3	위 괭	- 철도, 고속(또는 시외버스), 비행기, 선박의 승차권 등
4	지출결의서, 지출영수증	- 세부 집행 내역과 실제 집행액이 일치 되어야 함

> 업무추진비

○ 보조 비목·보조세목별 여비 산정 기준

보조비목	보조세목	내역
업무추진비 (240)	사업추진비 (01)	1. 사업추진에 특별히 소요되는 간담회비, 접대비, 연회비 및 기타 제경비 - 정례회의 경비, 외빈초청 접대 경비, 해외출장 지원 경비, 행사 경비 등 2. 공식적인 업무추진 소요경비

- 사업추진에 소요되는 식음료비. 연회비 및 기타 제반경비
 - 당해 사업과 관련하여 자문회의, 토론회, 공청회를 위해 외부인사 및 전문가를 초청하는데 소요되는 다과. 식사 등의 경비로 과다하게 계상되지 않도록 함
 - ※ 내부 회의(내부인력만 참석) 진행 시에도 업무추진비 사용 인정
- 업무추진비는 1인당 2만원 이내로 지급하며, 회의 참석하 총 인원 수 내에 맞춰 지급해야함
- 업무추진비 집행 시 보조사업비 카드를 사용해야 하며,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원칙적 으로 보조사업비 카드를 사용할 수 없음. 다만 출장명령서. 휴일근무명령서 등 증빙자료를 제출하여 보조사업비 카드 사용의 불가피성을 입증하는 경우에는 가능함
 - 법정공휴일 및 토·일요일
 - 관할 근무지와 무관한 지역
 - 비정상시간대(23시 이후 심야시간대 등) 사용
 - 업무를 위해 주류판매를 주목적으로 하는 업종에서 사용
 - ※ 증빙자료 작성 시에는 일시, 장소, 목적, 대상, 구체적인 업무 내용과 사유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 회계검사 시 업무추진비 제출서류

제출목록		비고 및 주의사항
1	회의(또는 행시) 증명서류	- 회의사실 증명서류에는 다음 시항이 포함되어야 함 1) 회의일시 및 장소 2) 회의내용 및 결과, 회의록 3) 회의참석자 명단 및 서명 * 예시: 결재문서, 회의록, 참가자 서명부 등
2	영수증	- 세금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기관명의)현금영수증 등
3	지출결의서, 지출영수증	- 세부 집행내역과 실제 집행액이 일치되어야 함

▶ 보조사업비 불인정 기준사례

비목	주요 사례 내용
공통사항	- 보조사업 진행과 무관한 집행을 한 경우(개인적인 목적, 해당 사업과 무관한 사용 등) - 법·지침에 따른 적격 법적 증빙 자료가 미비한 경우 - 예산 범위 및 법 지침 기준을 초과해서 집행한 경우 - 상위기관에 사업비 예산변경 승인을 받지 않고 집행한 경우 - 환급이나 공제 받는 관세,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집행한 경우 - 해당하는 사업 명의로 발급받은 증빙자료가 아닌 경우 - 중복지급, 개인 포인트 적립, 법인세비용, 환불 취소 수수료 사용 - 보조사업 기간 외 집행한 경우 - 증빙한 자료와 집행한 내역의 금액이 상이한 경우
인건비	- 참여인력의 참여울 변경승인을 받지 않고 지급한 경우 - 각 사업의 참여율 총합 100%를 초과하여 지급한 경우 - 퇴사한 인력에서 인건비를 지급한 경우 - 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참여인력에게 퇴직금을 지급한 경우
일반수용비	- 내부직원에 전문가 활용비(위원수당, 강사료 지문료 등) 지급을 한 경우 - 사용제한 업종 사용 - 건물 및 일시적으로 사용하는 사용료가 이닌 경우
여비	- 사업과 무관한 인력의 비용을 집행한 경우 - 일정에 숙박·식사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출장, 교육 등)
업무추진비	- 회의장소와 회의비 집행장소가 행정구역 상 다른 경우 - 주류 등 유흥성 경비, 사용제한 업종, 심야시간 사용

불인정 기준(보조사업 정산보고서 작성지침 제5조 보조사업비의 불인정 근거)

다음 각 호에 해당되지 경우에는 보조사업비 지출액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다만, 중앙관서의 장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1 보조사업비 계좌에서 계좌이체(지로를 포함하다) 또는 보조사업비 카드(신용카드 또는 체크카드를 구분하지 아니한다) 사용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다만, 교통, 통신시설 미비 등으로 계좌이체, 카드사용이 곤란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2. 보조시업비카드 이외의 카드를 사용한 경우, 다만, 보조시업비카드 발급받기 전 사용한 법인카드 및 개인카드 사용은 일시적으로 허용한다.
- 3. 보조금 지출거래시 전자세금계산서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 다만, 교통, 통신시설 미비 등으로 계좌이체, 카드사용이 곤란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4 해당 사업기한 종료 후 집행한 경우 다만, 해당 사업기한 내에 계약 등 지출원인행위가 이루어진 경우 정상적으로 보조사업비가 집행된 것으로 가주하며, 이 경우 재화의 입고, 용역의 제공, 계약의 이행 등은 사업기한 내에 이루어져야 한다.
- 5. 보조시업비의 지출이 해당 보조시업 또는 간접보조시업과 무관한 경우
- 6. 증빙서류가 미비하거나 위조된 경우
- 7. 보조사업비의 변경 및 이월 등 중앙관서의 장 등의 승인 사항을 준수하지 않고 집행한 경우
- 8 다른 법령이나 협약 또는 규정에서 정한 기관이나 위원회 등으로부터 시전 승인, 동의, 허락 등을 받거나 신고, 등록하여야 하는 사업비를 임의로 집행하거나 허위로 신고, 등록하여 집행한 경우
- 9. 해당 사업기한 내에 지출원인행위를 완료하지 아니한 경우(다만, 최종보고서 인쇄비, 검증수수료를 제외한다) 또는 지출원인행위가 완료되지 않고 물품이나 용역을 제공받지 않은 상태에서 보조사업비를 집행한 경우
- 10 보조사업 또는 가접보조사업 폐지의 승인을 받은 이후에 정당한 사유 없이 집행한 경우
- 11. 비상근 또는 명예직 임원 및 직원에 대하여 인건비를 집행한 경우
- 12 기타 중앙관서의 장이 정상적인 보조사업비 집행으로 간주하지 않은 경우

PART

5

자료등록 시스템

- 1. 시스템 이용절차
- 2. 자료 등록
- 3. 자료 수정
- 4. 자료 조회
- 5. 자료 다운로드
- 6. 조사진행관리
- 7. 커뮤니티

2023 응급실손상환자심층조사 지침서



→ 시스템 이용절차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

- 응급실손상환자심층조사 23개 참여병원에서는 금월 응급실에 내원한 손상환자의 자료를 수집하여 **익월 15일까지**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http://is.kdca.go.kr)에 등록하여야 함
- 매년 사업계획서, 최종보고서, 국고보조금 교부신청서 등 관련 공문, 응급실 데이터 질 관리 결과. 행정서류 제출도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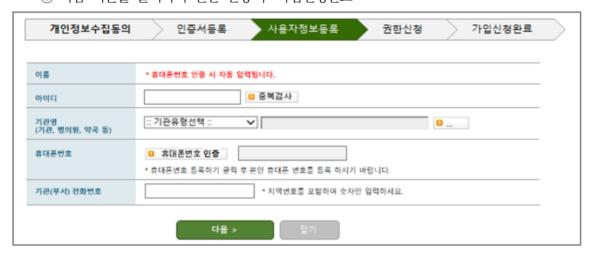


[그림 5]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 로그인 화면

▶ 사용자 가입

-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http://is.kdca.go.kr) 접속 로그인 화면에서 "사용자 가입신청" 클릭 후 아래의 절차에 따라 사용자 가입 신청 진행
 - ① 이름 : 사용자의 이름을 입력
 - ② 아이디 : 사용하고자 하는 아이디를 입력 후 중복검사 실시하고, 이미 사용 중인 아이디의 경우 다른 아이디를 입력 후 재검사

- ③ 기관명: 기관유형 선택에서 "의료기관"을 선택 후 옆의 노란색 화살표 버튼 클릭 → 기관(부서)검색 팝업창 생성 → "의료기관명"에 체크 후 소속 기관명 입력 후 검색버튼 클릭 → 해당 기관 선택 후 더블 클릭
- ④ 휴대폰번호 : "휴대폰번호 인증(클릭)" 클릭 → 휴대폰 인증을 통해 본인확인 서비스 절차 완료 후 휴대폰 번호 등록
- ⑤ 기관(부서) 전화번호 : 전화번호 입력(사무실 번호 없을 경우 개인번호 입력가능)
- ⑥ 다음 버튼을 클릭하여 권한 신청 후 가입신청완료



[그림 6] 사용자정보등록 화면

인증서 등록 및 로그인

-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http://is.kdca.go.kr) 접속 로그인 화면에서 "인증서 등록·재등록" 클릭 후 아래의 절차에 따라 인증서를 등록
 - ① "공인인증서를 등록하시겠습니까?" 팝업창의 확인 버튼 클릭
 - ② 사용자 확인 팝업창의 가입한 아이디와 휴대폰 번호 입력 후 확인 버튼 클릭
 - ③ 휴대폰 인증을 통해 본인확인서비스 절차 진행
 - ④ 등록할 인증서를 선택하고 인증서 암호를 입력 후 확인 버튼 클릭
- 인증서 등록이 완료된 이후에는 '인증서 로그인'을 클릭하여 사이트에 로그인

▶ 권한 신청

- 최초 가입 또는 로그인 시 권한 신청페이지로 이동
 - ① 권한그룹을 [손상예방관리과]로 선택하고, 조회 클릭
 - ② 응급실손상화자심층조사 User에서 데이터입력권한을 선택하여 신청



[그림 7] 권한신청 화면

- 시스템 또는 사업 담당자에게 연락하여 권한승인 요청
 - ※ 응급실손상환자심층조사 사업 담당™ 043-719-7419
- 사업 담당자의 승인처리 후 승인이 완료되면 시스템 사용 가능

2 → 자료 등록

• • •

엑셀 파일로 등록

○ 공통 및 심층자료를 동시에 엑셀 파일로 등록할 수 있음



[그림 8] 엑셀파일 신규 자료 등록 화면

- ★ 22년도 문항 개정에 따라 파일 업로드 양식 변경으로 내원일자를 기준으로 [년도] 선택 후 자료등록
- ★ 변경된 양식은 [양식다운로드] 클릭하여 다운로드 가능
 - ① 응급실손상환자심층조사 〉손상자료업로드관리 〉자료관리(파일등록) 클릭
 - ② 엑셀업로드 양식을 다운받아 데이터를 입력
 - ③ 화자의 내원일자에 해당하는 년도를 클릭하여 선택
 - ④ 배포한 파일에 자료를 구조에 맞게 정렬한 후 [찾아보기] 클릭, 해당파일 선택, [등록] 클릭(xls, xlsx의 엑셀 파일만 가능)
 - ⑤ 파일 등록 시 파일리스트에 등록한 데이터가 목록에서 조회

▶ 웹에서 직접 등록

- 자료등록시스템에서 직접 입력하는 기능으로 이상 자료인 경우 붉은색으로 표시
 - 응급실손상환자심층조사 〉 웹입력 | 조회관리 〉 내원일 기준으로 선택
 - 2022.01.01. ~ 2022.06.30. > 19년이후관리
 - 2022.07.01. ~ 2023.12.31. > 22년하반기이후관리
 - [신규등록] 클릭하여 손상 정보 입력 후 저장



[그림 9] 웹에서 직접 신규 자료 등록 화면

◆ 자료 수정

▶ 엑셀파일 재등록으로 수정

- 수정 엑셀 파일을 등록하여 자료 수정이 가능함
 - ① 응급실손상환자심층조사 〉 손상자료업로드관리 〉 자료관리(파일등록) 클릭
 - ② 새자료(업데이트) 혹은 모든 자료(업데이트)를 수정 목적에 맞게 선택
 - ③ [업로드 저장 자료]에서 '전체' 체크
 - ★ 수정할 파일의 컬럼과 업로드저장구조의 컬럼이 일치하는지 확인
 - * 전체저장구조 선택 시 업데이트저장구조에 올릴 자료 컬럼과 비교가 가능
 - ④ [찾아보기] 클릭하여 해당파일 선택 후 [등록] 클릭 * xls. xlsx의 엑셀 파일만 가능
 - ⑤ 파일 등록 후 수정이 반영되었는지 확인(웹입력|조회관리에서 조회 가능)
- 새자료(업데이트)와 모든 자료(업데이트) 차이점
 - ① 빈 값(null)의 영향 유무

			환자번호	성별		
			001	남		
			002	여		
			(이전	자료)		
			환자번호	성별		
			001	남		
			002		← 빈 값(null)	
			(수정	자료)		
						I
	환자번호	성별	I		환자번호	성별
Н						
\perp	001	남			001	남
L	002	여			002	
	(새자년	문 결과)			(모든 지	l료 결과)

- ★ 모든 자료(업데이트): 빈 값(null)을 포함하여 수정한 모든 내역이 반영
- ★ 새자료(업데이트): 수정한 내역에서 빈 값(null)은 반영되지 않고, 이전 자료의 값으로 빈 값(null)이 채워져서 수정

▶ 웹에서 직접 수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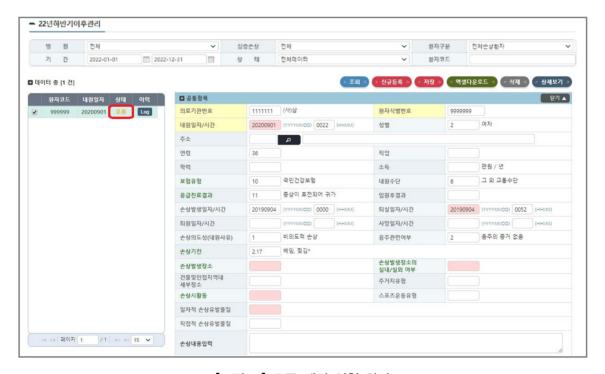
- 코드의 정상값이 아니거나 논리적 오류가 있을 시 입력 카이 붉은색으로 표시되므로 오류 값을 바로 확인할 수 있고 수정이 가능
 - ① 응급실손상화자심층조사 〉 웹입력 | 조회관리 〉 내원일 기준으로 선택
 - 2022 01 01 ~ 2022 06 30 > 19년이후관리
 - 2022 07.01 ~ 2023 12 31 〉 22년하반기이후관리
 - ② [기간]에서 원하는 기간 설정. [상태]의 오류 데이터 선택 후 조회 클릭
 - ③ 데이터의 환자코드를 클릭하여 붉은색으로 표시된 부분의 오류 값을 확인하고 수정 후 저장
 - ★ 붉은색 박스에 커서를 올려놓으면 오류의 상세 내역 확인 가능
 - ④ 화자코드 옆의 [이력] 조회로 자료 수정 이력 내역을 확인 가능
- '의료기관코드, 환자코드, 내원일자/시간'는 Key-code로 수정이 불가하므로 해당 부분 잘못 기재 시 해당 데이터 삭제 후 재등록해야 함



[그림 10] 웹에서 직접 자료 수정 화면

▶ 오류 예외신청

- 예외적인 사유로 인하여 오류로 잡힌 경우 해당 오류를 예외신청 가능
 - ① 응급실손상환자심층조사 〉 웹입력 | 조회관리 〉 내워일 기준으로 선택
 - 2022.01.01. ~ 2022.06.30. > 19년이후관리
 - 2022.07.01. ~ 2023.12.31. 〉 22년하반기이후관리
 - ② [기간]에서 원하는 기간 설정. [상태]에서 오류데이터 선택 후 조회 클릭
 - ③ 데이터 목록에서 예외신청하고자 하는 화자의 [상태]에서 오류 클릭



[그림 11] 오류 예외 신청 화면

- ④ 오류 정보 화면에서 해당 오류 항목 선택
- ⑤ [예외신청 사유]에 사유를 입력 후 예외신청 버튼 클릭
- ⑥ [상태]에서 예외신청 승인 여부 확인 가능



[그림 12] 오류 예외처리의 오류 정보 화면

4 → 자료 조회 ::::

▶ 자료관리(현황)

- 기관에서 엑셀 업로드를 진행한 데이터 처리 내용을 조회 가능
 - 응급실손상환자심층조사 〉손상자료업로드관리 〉자료관리(현황) 클릭
 - [자료구분]에서 목적에 따라 '신규, 새자료, 모든자료' 중 하나를 선택
 - [상태]에서 원하는 기간 선택 후 [조회] 클릭
 - ★ 자료구분 '신규' 데이터만 삭제 가능하며, '새자료, 모든자료' 삭제 불가



[그림 13] 자료관리(현황) 조회 화면

일 알림 설정

- 기관에서 파일 업로드 및 다운로드 요청 또는 관리자가 등록한 게시글을 SMS 메시지를 통해 실시간 확인
 - [알림 설정] 클릭 후 기관에서 필요한 알림 설정 정보 확인
 - [저장] 클릭하여 선택한 알림 설정 정보 저장



[그림 14] 알림 설정 화면

병원별현황관리

- 기관에서 입력한 환자의 등록 현황을 조회 가능
 - 응급실손상화자심층조사 〉손상통계관리 〉병원별현황관리 클릭
 - [구분]에서 목적에 따라 '발생, 오류, 완료' 중 하나를 선택
 - [기간]에서 원하는 기간 선택 후 [조회] 클릭



[그림 15] 병원별현황관리 조회 화면

주요손상현황관리

- 입력된 데이터의 조사항목별 발생률, 입원율, 사망률 조회 가능
 - 응급실손상화자심층조사 〉손상통계관리 〉주요손상관리 클릭
 - [기간]에서 원하는 기간 선택 후 [조회] 클릭



[그림 16] 주요손상현황관리 조회 화면

→ 자료 다운로드

입력자료 엑셀파일 다운로드

- 입력 자료를 엑셀파일로 다우로드 가능하며, 용량이 적은 데이터를 빠르게 다우받고자 할 때 용이함
 - ① 응급실손상환자심층조사 〉 웹입력 | 조회관리 〉내원일 기준으로 선택
 - 2022.01.01. ~ 2022.06.30. > 19년이후관리
 - 2022.07.01. ~ 2023.12.31. 〉 22년하반기이후관리
 - ② [환자구분]에서 목적에 따라 '입원환자. 입원환자 외. 사망환자' 중 하나를 선택
 - ③ [기간]에서 원하는 기간 선택
 - ④ [상태]에서 목적에 따라 '전체데이터, 완료데이터, 오류데이터' 중 하나를 선택
 - ⑤ [조회] 클릭 후 [엑셀다운로드] 클릭
 - ★ 데이터가 클수록 소요시간이 오래 걸림
 - ⑥ 요청된 파일은 전체자료관리 또는 파일다운로드 메뉴에서 데이터 조회 후 자료를 다운로드



[그림 17] 웹입력조회관리에서 파일 다운로드 화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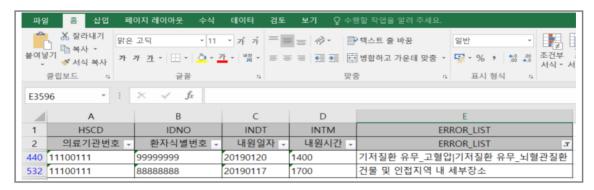
▶ 오류내역 다운로드

- 입력한 자료는 텍스트(TXT) 또는 엑셀(EXCEL) 파일로 다운로드 가능하며, 오류내역 확인이 가능함
 - ① 응급실손상화자심층조사〉사업관리 〉 전체자료관리 클릭 ★ 의료기관의 경우 응급실손상환자심층조사 〉 자료요청관리 〉 파일다운로드관리 클릭
 - ② [조사양식]에서 내원일 기준으로 선택
 - 2022.01.01. ~ 2022.06.30. > 19년이후관리
 - 2022.07.01. ~ 2023.12.31. 〉 22년하반기이후관리
 - ③ [자료기간(내원일 기준)]에서 원하는 기간 선택
 - ④ [파일] 'EXCEL' 클릭
 - ⑤ [구분] '전체' 혹은 '공통 + 해당 심층영역 + 오류' 체크 ★ 오류내역을 확인하고자 할 때는 반드시 [구분]에 반드시 '오류'가 포함되어야 함
 - ⑥ [요청사유] 작성 후 [등록요청] 클릭
 - ⑦ [조회] 클릭 후 해당리스트 목록 선택하여 [파일다유] 클릭



[그림 18] 웹입력|조회관리에서 파일 다운로드 화면

⑧ 다운로드한 엑셀파일의 가장 마지막 열 'ERROR LIST'에서 오류내역 확인 가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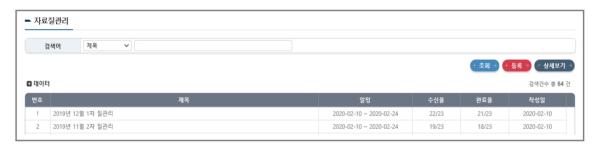


[그림 19] 엑셀파일의 오류내역

• • • → 조사진행관리

> 자료질관리

- 자료질관리는 질병관리청에서 각 병원별로 매월 질관리 결과를 업로드하고 각 병원에서는 결과를 확인하여 오류로 판정된 자료는 2주 이내에 수정하고 완료 버튼을 눌러 완료를 활성화해야함
 - ① 응급실손상화자심층조사 〉조사진행관리 〉자료질관리 클릭
 - ② 해당 제목을 선택 후 [상세보기] 클릭(자료 조회 시 수신율에 반영)



[그림 20] 자료질관리 화면

- ③ 일정을 준수하여 소속 기관명 옆의 파일을 다운받아 해당 오류를 수정
- ④ 오류 수정을 마치면 [완료여부]의 '미완료'를 클릭하여 '완료'로 활성화
 - ★ 완료 활성화 시 완료율에 반영



[그림 21] 자료질관리 완료여부 화면

기타보고관리

- 기타보고관리는 사업계획서, 보고서, 교부신청서, 정산보고서 등 기타 질병관리청에서 요청하는 보고서를 기한 내에 제출해야 함
 - (1) 응급실손상화자심층조사 〉조사진행관리 〉기타보고관리 클릭
 - ② 해당 제목을 선택 후 [상세보기] 클릭(자료조회 시 수신율에 반영)



[그림 22] 기타보고관리 화면

- ③ 요청 내용을 숙지하여. 첨부된 양식을 다운받아 자료를 작성
- ④ 제출기한을 준수하여 [찾아보기] 클릭 후 파일 선택. 등록
- ⑤ 질병관리청의 사업 담당자가 해당 자료의 이상 여부를 확인 후 취합을 하게 되면 제출률에 반영
- ⑥ '취합완료' 상태에서는 파일 등록 및 변경이 불가하므로 취합완료 후 파일을 재등록 또는 변경하고자 할 경우는 사업 담당자에게 취합완료 해제를 요청



[그림 23] 기타보고관리 취합 화면

• • • • 커뮤니티

> 공지사항

- 운영회의, 자료수집 전담코디네이터 교육 등 행사 및 행정사항 등 공지를 확인할 수 있음
 - ① 응급실손상환자심층조사 〉 커뮤니티 〉 공지사항 클릭



[그림 24] 공지사항 화면

≥ Q&A

- 자료수집 시 특이사례 및 조사문항에 대해 나왔던 질문과 답변을 확인할 수 있음
 - 응급실손상환자심층조사 〉 커뮤니티 〉 Q&A 클릭



[그림 25] Q&A 화면

PART

6

연구성과물 활용 절차

- 1. 연구성과 관리 개요
- 2. 연구성과물 활용 절차
- 3. 원시자료 요청
- 4. 연구 활용 계획
- 5. 논문게재 확정 시 절차
- 6. 연구성과물 활용 시 사사 표기
- 7. 제재조치

2023 응급실손상환자심층조사 지침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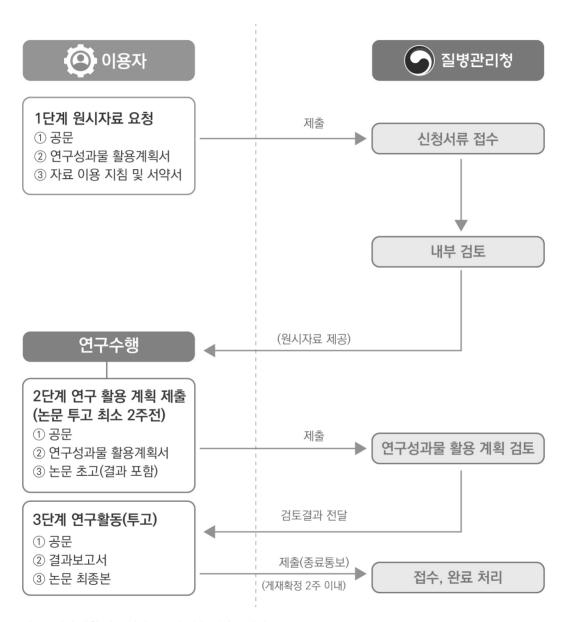
● 연구성과 관리 개요

• • •

○ 목적

- 응급실손상환자심층조사 수행을 통해 발생되는 연구 성과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대외적으로 발표 시 논란의 여지가 있거나 홍보 가치가 있는 주제를 사전에 정정하고 대응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적용 범위: 응급실손상환자심층조사 사업 수행으로 파생되는 연구성과
- 용어 정의
 - '연구성과'라 함은 사업을 통하여 창출되는 논문. 특허 등 과학 기술적 성과와 그 밖에 유 · 무형의 경제 · 사회 · 문화적 성과를 말함
 - '연구성과물 활용'이라 함은 유·무상을 불문하고 연구성과를 활용하여 재산적 가치를 실현하거나 현장에서의 편익을 증진하는 등 연구성과 실용화와 관련된 일체의 행위를 말함

• • • • 연구성과물 활용 절차



* 발주부서의 계획 검토 없이 투고된 경우 성과 불인정

[그림 26] 연구성과물 활용 절차

→ 원시자료 요청

- 원시자료를 요청하기 위해서는 **연구성과물 활용 신청서(별지 제3호 서식) 및 자료이용** 지침서 및 서약서(서식 4) 등을 작성하여 해당 발주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함
- 사업책임자는 원시자료 활용 승인 통보를 받아야 연구를 수행할 수 있음
- 제출서류

제출서류	비고
원시자료 요청 공문	
연구성과물 활용 신청서(별지 제3호 서식)	주요내용 한글로 작성
응급실손상환자심층조사 자료 이용 지침서 및 서약서(서식 4)	사업책임자 서명 후 스캔하여 제출

- ※ 적용범위: 논문게재, 학술대회 발표, 간행물, 대외홍보 및 발표 자료 등
- ※ 해당 양식은 질병관리통합관리시스템의 자료실에서 다운로드 가능함 (질병보건 통합관리시스템 〉 응급실손상환자심층조사 〉 커뮤니티 〉 자료실)

→ 연구 활용 계획

- 사업책임자는 학술대회 발표. 논문 투고 등 활용 예정 시점 최소 14일 이전에 연구성과물 활용 신청서(별지 제3호 서식)를 작성하여 해당 발주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함
- 발주부서의 수정 요청이 있는 경우 이를 반영해야 하며(조건부 승인), 승인 통보 이후 연구 활용(투고)이 가능함
- 연구 활용 계획 제출 없이 학술대회 발표. 논문 투고 등이 된 경우. 최종명가의 연구성과 실적으로 인정받을 수 없음
- 제출서류

제출서류	비고
연구성과물 활용 승인요청 공문	
연구성과물 활용 신청서(별지 제3호 서식)	주요내용 한글로 작성
학술대회 발표자료 또는 논문 등 1부	

※ 해당 양식은 질병관리통합관리시스템의 자료실에서 다운로드 가능함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 〉 응급실손상환자심층조사 〉 커뮤니티 〉 자료실)

• 논문게재 확정 시 절차

- 사업책임자는 학술대회 발표. 논문 게재 등이 확정된 경우 확정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연구성과물 활용 결과보고서(별지 제6호 서식)를 작성하여 해당 발주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함
- 기한 내 결과보고서 미제출 시 최종평가의 연구성과 실적으로 인정받을 수 없음
- 제출서류

제출서류	비고
연구성과물 활용 결과 보고 공문	
연구성과물 활용 결과보고서(별지 제6호 서식)	주요내용 한글로 작성
학술대회 발표자료 또는 논문 최종본 등 1부	

※ 해당 양식은 질병관리통합관리시스템의 자료실에서 다운로드 가능함 (질병보건 통합관리시스템 〉 응급실손상환자심층조사 〉 커뮤니티 〉 자료실)

• 연구성과물 활용 시 사사 표기

- 연구성과물 활용 승인을 받은 사업책임자는 국·내외 학술지, 학술대회 발표 및 대내·외 홍보 등에 연구성과물을 활용할 때에는 질병관리청 사업의 성과물인(사업비 지원 사실 포함)을 반드시 명시하여야 함
- 연구성과물 활용할 때의 사사 표기방법은 다음과 같음

※ 사사(Acknowledgement) 표기 방법

- 본 연구는 질병관리청 사업비를 지원받아 수행되었습니다.
- This work was supported by the Korea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Agency (KDCA).

• 제재조치

• • •

○ 연구성과물 활용 절차를 준수하지 않고 사업성과를 누설하거나 유출한 경우 최종평가에 반영

PART

서식 및 양식

- 1. 예산변경 요청 및 사유서
- 2. 참여연구원 변경 요청 및 사유서
- 3. 사업 책임자 변경 요청 및 사유서
- 4. 연구성과물 활용 신청서
- 5. 연구성과물 활용 결과보고서
- 6. 응급실손상환자심층조사 자료 이용 지침 및 서약서
- 7. 응급실손상환자심층조사 조사표

2023 응급실손상환자심층조사 지침서



→ [서식 1] 예산 변경 요청 및 사유서

예산 변경 사유서

사	업	명	2023년도 응급실손상환자심층조사			
사 입	선수 행	기 관	사 업 책 임 자			
사	업 기	간	사 업 비			

1. 예산 변경 내역 (단위: 원)

비목	변경 전	변경 후	증감
1. 인건비			
1-1. 책임연구원			
1-2. 연구원			
1-3. 연구보조원			
2. 운영비			
2-1. 일반수용비			
2-2. 공공요금			
2-3. 기타운영비			
3. 여비			
4. 업무추진비			
계			

2.	변경	사유
/ .	712	八五

※ 예산 변경 요청 시 각 기관의 예산 변경 요청 공문 함께 첨부

상기 사업의 예산 변경을 요청하오니,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사업책임자: (인)

2 → [서식 2] 참여연구원 변경 요청 및 사유서

• • •

참여연구원 변경 사유서

사	ę	<u> </u>	명	2023년도 응급실손상환자심층조사				
사입	보 수	행 기	관		사입	법 책 임	김 자	
사	업	기	간	2023. 1. 1.~2023. 12. 31.	사	업	비	

1. 변경 요청사항

1) 변경 전

구분	성명	담당업무	해당사업 참여기간	인건비 수령여부	참여율 (%)
책임연구원					
연구원					
연구보조원					
보조원					

2) 변경 후

구분	성명	담당업무	해당사업 참여기간	인건비 수령여부	참여율 (%)
책임연구원					
연구원					
연구보조원					
보조원					

2. 변경 사유

※ 인건비 수령 여부 란에 수령인은 ○ 표기힐

※ 참여연구원 변경 요청 시 각 기관의 참여연구원 변경 공문 함께 첨부

상기 사업의 사업책임자 변경을 요청하오니,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사업책임자 : (인)

3 → [서식 3] 사업책임자 변경 요청 및 사유서

• • •

사업책임자 변경 사유서

사	업	명	2023년도 응급실손상환자심층조사				
사업	수 행	기관		사 입	법 책 임	김 자	
사	업 기	간	2023. 1. 1.~2023. 12. 31.	사	업	비	

1. 변경 요청사항

1) 변경 전

구분	성명	담당업무	해당사업 참여기간	인건비 수령여부	참여율 (%)

2) 변경 후

구분	성명	담당업무	해당사업 참여기간	인건비 수령여부	참여율 (%)

2. 변경 사유

- ※ 인건비 수령 여부 란에 수령인은 표기할 것
- ※ 참여연구원 변경요청 시 각 기관의 참여연구원 변경 공문 함께 첨부

상기 사업의 참여연구원 변경을 요청하오니,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사업책임자 : (인)

→ [별지 제3호 서식] 연구성과물 활용 신청서

0		0	
0	0		

		Ģ	¹ 구성과	물 활용	신청서		
				과제정보			
과제명				응급실손성	<u>ই</u> 자심층조사		
발주부서명	손	상예방관	·리과	구분	□ 학	술 🗆 정	J책 □ 기타
사업책임자	성명		소	:속		직급	
			성괴	물 활용정	^技		
성과물유형	논문(□S(CI, □비;	SCI) 🗆	학술대호	□ 기타		
활용용도					자료, 저술 등) 기 료활용신청 기재		
발표제목							
저자명 (발표자)	※ 저자, 발표자 또는 등록자 정보 기술						
활용예정일	※ 논문 투고일, 학술대회 발표일						
주요내용	※ 연구배경, 연구대상 및 방법, 연구결과, 결론 (별지 첨부 가능)						
기대효과/ 활용방안	· · · · · · · · · · · · · · · · · · ·						
위외	위와 같이 연구성괴물 활용을 위하여 신청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사업책임	자 :		(인)
※ 정책적 파급효과가 크고 현안 이슈에 해당되거나 대외 홍보(언론보도 등)가 필요한 경우에는 반드시 발주부서와 사전협의 후 실시 ※ 논문원고 첨부(2단계 연구성과물 활용 계획에 반드시 포함)							
※ 논문게재 혹	확정 시, 연 -	구성과물	활용 결과	보고서 및	논문 최종본 을	발주부서	에 제출

5 → [별지 제6호 서식] 연구성과물 활용 결과보고서

연구성과물 활용 결과보고서							
	과제정보						
과제명	응급실손상환자심층조사						
발주부서명	손상예방관리과 구분 □ 학술 □ 정책 □ 기타						
사업책임자	성명 소속 직급						
	성과물 활용정보						
성과물유형	논문(□SCI, □비SCI) □ 학술대회 □ 기타						
활용용도	※ 학술지명, 학술대회명 및 기타 활용처(보도자료, 저술 등) 기재						
발표제목							
저자명 (발표자)	※ 저자, 발표자 또는 등록자 정보 기술						
활용일	※ 논문 게재일, 학술대회 발표일						
주요내용	○ 연구배경 ○ 연구대상 및 방법 ○ 연구결과 ○ 결론 및 기대효과 ※ 별지 첨부 가능 ※ 한글로 작성						
기대효과/ 활용방안							
	위와 같이 성과물 활용 결과보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사업책임자: (인)						
※ 학술대회 발표자료 또는 논문게재(예정)본 1부 첨부							

. . . → [서식 4]응급실손상환자심층조사 자료 0용 지침 및 서약서

「응급실손상환자심층조사」자료 이용 지침 및 서약서

- ※ 자료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이용 지침을 충분히 숙지한 뒤 다음 사항에 대해 모두 동의함을 서약하여야 합니다.
- 1. 「응급실손상환자심층조사」자료는 질병관리청 '연구성과물 활용 절차'에 따라 반드시 질병관리청의 승인통보 이후에 이용할 수 있다.
- 2. 자료 이용자는 응급실손상환자심층조사 지침서를 충분히 숙지하여 분석함으로써 자료의 생성 목적과 다르게 해석하거나 분석결과에 문제가 없도록 한다.
- 3. 논문작성 및 연구결과 발표 등, 제공받은 자료의 산출물이 발생하는 경우 그 결과를 발표일로부터 14일 이내 질병관리청에 보고하여야 하며, 해당 논문 등에 출처 및 사사를 표기한다.

○ 자료 표기

- 국문표기: 응급실손상환자심층조사, 질병관리청
- 영문표기: Emergency Department-based Injury In-depth Surveillance, Korea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Agency
- 주요어(Keyword): 응급실손상환자심층조사(국문), Emergency Department-based Injury In-depth Surveillance(영문)
- 사사(Acknowledgement) 표기
- 본 연구는 질병관리청 사업비를 지원받아 수행되었습니다.
- This work was supported by the Korea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Agency(KDCA).
- 4. 「응급실손상환자심층조사」 자료는 해당 사업을 수행하는 23개 기관의 참여 연구원외에는 자료를 신청 및 이용할 수 없으며, 제공받은 자료에 대하여 제3자가 열람하게 하거나 복사 등을 할 수 없다.
- 5. 자료는 신청한 목적으로만 이용 가능하며, 이용이 완료되었을 때에는 자료 파일을 즉시 폐기해야하며, 개인적으로 자료를 따로 보관할 수 없다.
- 6. 자료를 활용한 모든 산출물의 결과 등으로 인해 파생하는 문제에 대한 만형사상의 책임은 전적으로 연구자에게

본인은 상기 기술된 1~6항을 주의 깊게 읽어보았으며 모든 사항에 대해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일 사업책임자 성명 : (o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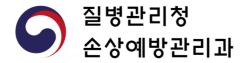
질병관리청 손상예방관리과

7 → [서식 5] 응급실손상환자심층조사 조사표

• • •

응급실손상환자심층조사 조사표 [2023.1.]

조사자	
조사일	
일련번호	



Ι	● 공통항목	 • •

1. 의료기관번호	2. 환자식별번호	3. 내원일자	4. 내원시간	5. 성별	6. 연령			
		YYYYMMDD	HHMM	□ C1 남자 □ C2 여자	만세			
	7. 직업							
□ C2 전문가 □ C3 기술공 및 □ C4 사무종사지 □ C5 서비스 종시 □ C6 판매종사지	자 및 어업 숙련 종시		□ C9 장치, 기계조 □ C10 단순노무 □ C11 군인 □ C12 학생(재수 □ C13 주부 □ C14 무직 □ C98 해당없음 □ C99 미상	종사자 생)				
8. 학력 9. 소득								
		0. 11			J. <u></u>			
□ C2 중학교 졸업	업(고등학교 중퇴 포 졸업(전문대 또는 대	함) ☐ C6 할 중퇴 ☐ C7	학교에 다닌 적 없 포함)		만원			
10 보험유형 11.								
□ C10 국민건강보 □ C20 자동차보험 □ C30 산재보험 □ C51 의료급여	☐ C60 ☐ C98	기타	□ C1 119구급차 □ C2 병원구급차 □ C3 기타구급차 □ C4 경찰차 □ C5 항공이송	□ C6 □ C7 5 □ C98 □ C99	기타			

12. 응급진료	
C1 귀가 □ C11 증상이 호전되어 귀가 □ C12 말기질환으로 귀가(가정간호 등) □ C13 가망없는 퇴원 □ C14 자의퇴원 □ C15 외래 방문 후 귀가	C3 입원 □ C31 일반병실로 입원 □ C32 중환자실로 입원 □ C33 수술(시술)실로 간 후 병실로 입원 □ C34 수술(시술)실로 간 후 중환자실로 입원 □ C38 기타 다른 사유로 입원
□ C18 기타 다른 상태로 귀가(경찰연행 포함) C2 전원 □ C21 병실부족 전원 □ C22 중환자실 부족 전원 □ C23 당장 응급수술・처치 불가 전원 □ C24 전문 응급의료를 요하여 상급병원 전원 □ C25 경증으로 1, 2차 의료기관 전원 □ C26 장기시설로 전원(장기요양의료기관) □ C27 환자사정으로 전원(환자 또는 보호자 요청에 의한 전원) □ C28 기타 다른 사유로 전원	C4 사망 □ C41 내원 시 이미 사망한 상태(D.O.A) □ C42 응급실에서 DNR로 사망 □ C43 응급실에서 CPR후 사망 □ C48 기타 다른 사유로 사망 □ C98 기타 □ C99 미상

13. 퇴실일자	14. 퇴실시간		15. 입원 후 결과	16. 퇴원일자	17. 퇴원시간
YYYYMMDD	ННММ	□ C1 정상퇴원 □ C2 자의퇴원 □ C3 전원 □ C4 사망	□ C5 탈원 □ C98 기타 □ C99 미상	YYYYMMDD	ННММ

18. 손상의도성(내원사유)	19. 음주관련여부
□ C1 비의도적 손상 □ C2 자해·자살 □ C3 폭력·타살 □ C98 기타 □ C99 미상	□ C1 정보없음□ C2 음주의 증거 없음□ C3 본인 음주□ C4 관련자 음주□ C5 모두 음주

20. 손상기전		
C11 운수사고(교통사고, 운송수단 관련 손상, 의도성 포함)	□ C13.8 기타 둔탁한 힘에 의한 손상(포함: 마찰, 문지러짐	
☐ C11.10 보행자 ☐ C11.16 보행자_부딪힘 [*]	등) C13.9 미상의 둔탁한 힘에 의한 손상	
□ C11.17 보행자_내동댕이쳐짐 [*] □ C11.20 자전거	C2 관통상(찌르거나 뚫는 힘에 의한 손상) □ C2.1 긁힘, 베임, 찢김	
□ C11.45 오토바이, 스쿠터 □ C11.61 차량-탑승자(10인승 이내) □ C11.67 차량-탐승자(11-19인승)	□ C2.10 긁힘* □ C2.17 베임, 찢김*	
□ C11.70 차량-탑승자(20인승이상, 버스, 트럭, 대형차량)	□ C2.20 관통, 자상, 찔림 □ C2.22 화기(화약을 이용하는 총)에 맞음	
□ C11.82 농업용 특수차량(트랙터, 콤바인 등)□ C11.84 산업용 · 건설용 특수차량, 농업용 외 특수차량 (불도저 등)	□ C2.23 공기총·BB총에 맞음 □ C2.24 다른 무기에 맞음	
□ C11.88 기타 육상 운송수단(마차, 타는 동물, ATV, 손수레, 마트의 카트, 인력거 등)	□ C2.41 사람에게 물림 □ C2.42 개에게 물림	
□ C11.89 미상의 육상 운송수단 □ C11.90 선로 차량(지하철, 전철, 모노레일)	□ C2.43 뱀에게 물림 □ C2.45 다른 동물에게 물림	
☐ C11.91 수상 운송수단 ☐ C11.92 항공 운송수단	□ C2.47 벌에게 쏘임 □ C2.48 다른 곤충이나 무척추동물에게 물림, 쏘임(모기,	
□ C11.98 기타 탈것 : 케이블카, 스키 리프트, 곤돌라 □ C11.99 미상의 탈 것	거미, 전갈 등) □ C2.49 개미에 물림, 쏘임 □ C2.8 기타 긁힘, 베임, 찢김, 잘림(절단), 찔림, 관통,	
C12 추락 및 미끄러짐 □ C12.1 동일면상에서의 걸려 넘어짐	물림, 쏘임 □ C2.9 미상 긁힘, 베임, 찢김, 잘림(절단), 찔림, 관통,	
□ C12.1 등일단당에서의 일단 남아짐 □ C12.2 동일면상에서의 미끄러져 넘어짐 □ C12.3 동일면상에서의 기타 넘어짐	물림, 쏘임 C3 기계	
□ C12.4 1m미만 높이에서 떨어지거나 뛰어내리거나 떠밀림 □ C12.5 1m-4m미만 높이에서 떨어지거나 뛰어내리거나 떠밀림	□ C3.1 폭발에 의한 타격	
□ C12.6 4m이상 높이에서 떨어지거나 뛰어내리거나 떠밀림 	□ C3.8 기타 기계적인 힘에의 접촉 □ C3.9 미상 기계적인 힘에의 접촉	
□ C12.7 미상의 높이에서 떨어지거나 뛰어내리거나 떠밀림 □ C12.01 계단에서 미끄러짐	C4 온도손상	
□ C12.02 계단에서 넘어짐 □ C12.03 계단에서 뛰어내림 □ C12.04 계단에서 떠밀림 C13 문상(출돌 또는 부딪힘에 의한 손상)	□ C4.11 뜨거운 액체와의 접촉 □ C4.12 뜨거운 증기, 가스와의 접촉 □ C4.13 뜨거운 물체(고체)와의 접촉	
□ C12.04 계단에서 떠밀림 C13 둔상(출돌 또는 부딪힘에 의한 손상)	□ C4.13 = 기군 출제(교제)되고 합복 □ C4.14 불이나 화염에의 노출 □ C4.15 자연열에의 노출, 전신(열사병 포함)	
☐ C13.22 고정된 물체와 접촉	□ C4.16 인공열에의 노출, 전신 □ C4.17 타고 있는 물체·물질로부터의 연기 흡입 포함	
□ C13.23 던져진(떨어지는) 물체와 접촉 □ C13.25 동물과 접촉	□ C4.18 기타 열, 고온에의 노출 □ C4.19 미상 열, 고온에의 노출	
□ C13.28 기타 물체 또는 동물과 접촉 □ C13.29 미상 물체 또는 동물과 접촉	□ C4.21 자연 한랭노출	
□ C13.3 사람과 접촉(성폭력, 맞음, 차임, 비틀림) □ C13.4 신체 눌림(꼬집힘, 끼임, 깔림 등), 압궤	□ C7 신체 과다사용(관절· 전신의 무리한 사용) C8 날씨, 자연재해 등 자연의 힘에 노출	
(Crushing: 찧음, 압착) □ C4.22 인공 한랭노출 □ C4.28 기타 저온(한랭, 과냉) 손상	□ C8.1 강수에 노출(비· 폭풍· 폭우 등) □ C8.2 바람에 노출(태풍)	
□ C4.29 미상 저온(한랭, 과냉) 손상 □ C4.8 기타 명시된 온도손상	□ C8.5 지진 □ C8.8 기타 명시된 날씨, 자연재해 등 자연의 힘에	
□ C4.9 미상 온도손상	노출(낙뢰) □ C8.9 미상의 날씨, 자연재해 등 자연의 힘에 노출	

20. 손상기전	
C5 호흡위협 : 익수, 질식, 목맴 등 C9 □ C5.1 익수 □ □ C5.21 목맴 □ □ C5.22 목졸림 □ □ C5.23 기도나 흉부 외부압박 □ □ C5.24 흡입된 물체나 물질에 의한 기도폐쇄 □ □ C5.25 입이나 코를 덮는 물체에 의한 기도폐쇄 □ □ C5.3 산소결핍 장소에 갇힘 □ □ C5.8 기타 호흡위협 □ □ C5.9 미상의 호흡위협 □ C6 화학물질 또는 다른 물질과의 접촉 □ □ C6.11 고체에 의한 중독 □ □ C6.12 액체에 의한 중독 □ □ C6.19 미상 물질에 의한 중독 □ □ C6.21 고체에 의한 부식 □ □ C6.22 액체에 의한 부식 □ □ C6.23 기체에 의한 부식 □	98 기타 손상기전] C98.11 이물질 접촉_눈] C98.12 이물질 접촉_코] C98.13 이물질 접촉_입] C98.14 이물질 접촉_리] C98.15 다른 자연 개구부의 이물질] C98.18 기타 이물질 접촉] C98.19 미상 이물질 접촉] C98.21 전기접촉(전류 등)] C98.21 전기접촉(전류 등)] C98.22 용접광에의 노출] C98.24 햇빛노출] C98.27 기타 방사선 노출] C98.31 소리 노출] C98.31 소리 노출] C98.32 진동 노출] C98.4 기압 노출] C98.5 저중력상태 노출] C98.5 저중력상태 노출] C98.6 유기, 방치, 필수요건의 결핍(식량, 수분, 생필품 결핌 등)] C98.8 기타 손상기전

21. 손상발생일자	22. 손상발생시간
YYYYMMDD	ННММ

23. 손상발생장소	
□ C1 집□ C2 집단거주시설□ C3 의료시설	C7 도로 외 교통지역 □ C7.1 주차구역· 주차장 □ C7.3 대중교통지역· 시설(지하철역, 기차역, 버스·
C4 학교· 교육시설 □ C4.1 학교 □ C4.2 어린이집/유치원 □ C4.9 그 외	공항터미널)* □ C7.31 교통지역 시설 승강구* □ C7.32 에스컬레이터, 무빙워크, 엘리베이터* □ C7.38 기타 대중교통지역 시설* □ C7.8 기타 명시된 도로 외 교통지역
C5 운동시설 □ C5.1 운동장(실외: 테니스코트, 야구장, 농구코트, 트랙 등) □ C5.2 체육관(실내: 휘트니스 센터, 테니스코트, 스쿼시코트 등) □ C5.21 사위장*	□ C7.81 육교* □ C7.82 지하도* □ C7.88 기타 명시된 교통지역(버스정거장, 선로)* □ C7.9 미상의 도로 외 교통지역
□ C5.22 탈의실 [*] □ C5.28 체육관 내 기타 장소 [*]	□ C8 공장 산압 건설시설
□ C5.3 수영장(포함: 공공 수영장)	□ C9 농장 기타 일차 산업장
□ C5.31 샤워장 [*] □ C5.32 탈의실 [*] □ C5.38 수영장 내 기타 장소 [*] □ C5.6 스케이트링크 □ C5.7 스키장, 스노우보드장	C10 오락 문화 공공시설 □ C10.1 동물원, 테마파크, 캠핑장 등의 유원시설 □ C10.2 콘서트장 □ C10.9 그 외
□ C5.8 기타 운동시설	□ C11 상업시설
□ C5.9 미상 운동시설 CC 도쿄	□ C12 야외, 바다, 강
C6 도로 □ C6.1 차도(자동차 등이 다니는 길), 횡단보도	□ C98 기타(포함: 비행기 안)
 □ C6.2 인도 또는 보도(차도 옆에 사람이 지나다닐 수 있는 길) □ C6.3 자전거도로 □ C6.4 횡단보도 □ C6.8 기타 명시된 도로 □ C6.9 미상의 도로 	□ C99 미상
□ C6.4 횡단보도 □ C6.8 기타 명시된 도로	

24. 손상발생장소의 실내·실외 여부	25. 건물 및 인전	<u> </u>
□ C1 실내 □ C2 실외 □ C9 미상	□ C1 화장실 및 욕실 □ C2 부엌, 주방 □ C3 거실 □ C4 방· 침실 □ C5 사무실 □ C6 교실 □ C7 놀이방(보육시설인 경우에만 선택) □ C8 식당(구내, 교내) □ C9 베란다, 발코니 □ C10 계단 □ C11 엘리베이터 □ C12 에스컬레이터 □ C13 현관(작은) □ C14 로비	□ C15 복도 □ C16 정원, 마당 □ C17 차고 □ C18 진입로(driveway: 도로에서 집, 차고까지의 진입로) □ C19 수영장 □ C20 테니트 코드 □ C21 다른 스포츠 시설 □ C22 놀이터, 운동장 □ C23 시설도로 □ C24 시설 주차공간 □ C25 지붕, 옥상 □ C26 기타 옥외 공간 □ C39 미상
26. 주거지 유형	27. 손	상시 활동
□ C1 한옥 □ C2 양옥 □ C3 아파트 □ C4 다세대주택 □ C5 주상복합(오피스텔 포함) □ C98 기타 □ C99 미상	□ C1 업무 □ C2 무보수 업무 □ C3 교육 □ C3.1 체육수업, 학교 스포츠 □ C3.2 기타 교육 □ C3.3 미상 교육 □ C3.4 등·하교 중(학원가던 중 포함) □ C3.5 체험학습(소풍, 수학여행, 견학 등	

	28. 스포츠 운동유형
C17 바퀴달린 바동력 스포츠 □ C17.1 사이클링-BNX(사이블 코터크스 경주) □ C17.2 사이클링-산 □ C17.3 사이클링-킬 □ C17.4 사이클링-트랙 · 자전거 · 경주장 □ C17.7 인라인 스케이트 · 롤러브레이드 □ C17.8 롤러스케이트 □ C17.10 스케이트보드 □ C17.13 킥보드 □ C17.99 미상	C19 에어로(비동력) 스포츠(Aero sports) ☐ C19.2 글라이더 · 행글라이더 ☐ C19.4 낙하산 강하/스카이 다이빙 ☐ C19.5 패러글라이딩 · 패러세일링 ☐ C19.8 번지점프 ☐ C19.98 기타 ☐ C19.99 미상 ☐ C98 기타 명시된 스포츠 · 운동유형 ☐ C99 미상의 스포츠 · 운동유형
C18 여러 종류를 결합한 스포츠 □ C18.1 바이애슬론 · 트리애슬론 □ C18.3 5종 · 10종 경기 □ C18.98 기타 □ C18.99 미상	

29-30. 일차적, 직접적 손상유발물질		
C1 육상 운송수단	□ C1.99 미상의 육송 운송수단	
C1.01 사람의 힘으로 가는 탈 것 □ C1.01.01 사람이 밀거나 끄는 교통수단(짐수레, 리어카, 쇼핑카트 등) □ C1.01.05 자전거(어린이용 장난감 자전거, 동력 자전거 제외) □ C1.01.98 기타 명시된 사람의 힘으로 가는 교통수단 □ C1.01.99 미상의 사람이 힘으로 가는 교통수단	C2 이동식 기계나 특수목적 차량 C2.01 주로 농사에 이용되는 이동식 기계나 특수목적 차량 □ C2.01.01 타는 잔디깎이 □ C2.01.05 트랙터 □ C2.01.20 기타 견인 또는 동력이 설비된 트랙터 □ C2.01.98 기타 명시된 주로 농사에 이용되는 이동식	
C1.02 동물의 힘으로 가는 탈 것 ☐ C1.02.01 타는 동물 ☐ C1.02.05 동물이 끄는 탈 것	기계나 특수목적 차량 □ C2.01.99 미상 주로 농사에 이용되는 이동식 기계나 특수목적 차량	
□ C1.02.98 기타 명시된 동물의 힘으로 가는 교통수단 □ C1.02.99 미상의 동물의 힘으로 가는 교통수단	□ C2.02 주로 산업·건설용으로 사용되는 이동식 기계나 특수목적 차량	
C1.03 3륜 이하의 자체동력 탈 것	□ C2.98 기타 명시된 이동식 기계나 특수목적 차량	
□ C1.03.01 모터사이클	□ C2.99 미상의 이동식 기계나 특수목적 차량	
□ C1.03.05 모페드(모터달린 자전거), 스쿠터(소형 오토바이), 베스파(소형 스쿠터)	□ C3 수상 C송수 단	
□ C1.03.10 3륜 동력 탈것 또는 스쿠터 □ C1.03.98 기타 명시된 2.3륜 동력 탈 것	□ C4 항공 C송수 단	
□ C1.03.99 기다 당시된 2,3륜 등年 할 것 □ C1.03.99 미상의 2,3륜 동력 탈 것	C5 가구	
C1.04 4륜 이상의 자체동력 탈 것 □ C1.04.01 차량(10인승 이내) □ C1.04.10 차량(11-19인승, 픽업트럭, 미니버스, 마을버스) □ C1.04.20 차량(20인승 이상, 트럭, 대형차량) C1.06 레일을 이용한 탈 것 □ C1.06.01 전차, 트램, 자동차 트롤리, 지하철 □ C1.06.05 기차, 열차 □ C1.06.98 기타 명시된 레일을 이용한 탈 것 □ C1.06.99 미상의 레일을 이용한 탈 것	□ C5.05.15 베그 무선 □ C5.01.25 베개, 쿠션 □ C5.05.30 침대의 가로널(bedrail) □ C5.05.98 기타 명시된 침대, 침구 또는 침구류(시트, 이불, 담요 등) □ C5.05.99 미상의 침대, 침구 또는 침구류	
C1.07 탈 것의 부속물 □ C1.07.01 차량의 문 □ C1.07.05 차량의 안전벨트, 에어백 □ C1.07.10 차량의 타이어 또는 배터리 □ C1.07.15 차량의 창문 또는 전면유리 □ C1.07.20 차량의 내부(대시보드, 핸들, 좌석) □ C1.07.25 차량의 엔진 □ C1.07.98 기타 명시된 탈 것의 부속물(예: 자전거 체인) □ C1.07.99 미상의 탈것의 부속물 C1.98 기타 명시된 육송 운송수단 □ C1.98.01 케이블카, 스키리프트, 스키곤돌라 □ C1.98.10 어린이용 소형 원동기 차량 □ C1.98.15 모터 홈(주거기능이 있는 자동차) □ C1.98.98 기타 명시된 육상 운송수단(장애인용 스쿠터 등)	C5.02 의자, 소파 □ C5.02.01 소파, 카우치(couch, 몸을 비스듬히 기댈 수 있는 의자) □ C5.02.05 딱딱한 의자, 등받이가 있는 의자, 벤치 □ C5.02.10 흔들 의자 □ C5.02.15 접는 의자(해변용, 낚시용) □ C5.02.20 회전 의자, 사무용 의자 □ C5.02.25 스툴(등받이 없는 의자, 걸상) □ C5.02.30 변기겸용 의자(환자용 바퀴 달린 의자형 변기) □ C5.02.98 기타 명시된 의자, 소파 □ C5.02.99 미상의 의자, 소파	

29-30. 일차적, 경	직접적 손상유발물질
C5.03 책상, 탁자, 스탠드, 책장, 선반, 파티션	C6 유아·아동용 제품
C5.03 색장, 복자, 스덴노, 색장, 신만, 파타선	C6.01 영아·아동용품 □ C6.01.01 유모차 □ C6.01.05 보행기 □ C6.01.10 유아용 이동식 그네(가정용) □ C6.01.15 유아의 식사용 높은 의자, 부스터시트(식탁, 차에서 의자 위에 놓는 어린이용 보조의자) □ C6.01.20 유아 또는 아동용 자동차 안전의자(카시트) □ C6.01.25 유아용 변기의자, 배변 훈련용 변기 □ C6.01.30 유아용 침대 □ C6.01.45 놀이울(유아가 안전하게 놀 수 있도록 작은 구역에 빙 둘러 치는) □ C6.01.50 아기용 안전문 또는 벽 □ C6.01.55 유아 캐리어 □ C6.01.65 유아 욕조 □ C6.01.70 기저귀 교환대, 기저귀 갈이 테이블 □ C6.01.75 노리개 젖꼭지 □ C6.01.80 아기 젖병 또는 젖병 젖꼭지
□ C5.04.30 작은 장식품, 조각품, 꽃병, 단지 □ C5.04.35 크리스마스 트리 □ C5.04.40 명절・기념일 장식품(꼬마전구, 크리스마스 트리 장식품 등) □ C5.04.98 기타 명시된 가구장식품, 장식용품 □ C5.04.99 미상 가구장식품, 장식용품 □ C5.98 기타 명시된 가구장식품, 장식용품 □ C5.99 미상 가구장식품, 장식용품	C6.02 장난감 □ C6.02.01 아동용 세발자전거 또는 타는 장난감 □ C6.02.10 장난감 자동차 등 탈 것 장난감 □ C6.02.10 장난감 총 또는 관련 부속품 □ C6.02.18 기타 장난감 무기 또는 발사용 장난감(활, 장난감 칼 등) □ C6.02.20 장난감-미술, 공작, 조립품 세트 □ C6.02.25 보드게임 또는 부속·조가(바둑, 체스, 장기 등) □ C6.02.30 장난감 스포츠 용품(줄넘기 등) □ C6.02.45 스포츠용이 아닌 공(공기주입식 비치볼 등) □ C6.02.50 날아다니는 장난감 □ C6.02.55 인형, 인형의 악세서리 또는 부분 □ C6.02.60 풍선(장난감) □ C6.02.65 기타 공기주입식 장난감 □ C6.02.70 구슬, 공깃돌, 장난감 비즈 □ C6.02.80 장난감 정리·보관함, 장난감 상자 또는 궤 □ C6.02.98 기타 명시된 장난감 □ C6.02.99 미상의 장난감

29-30. 일차적, 직접적 손상유발물질_계속		
□ C6.03.05 줄을 타고 활み는 놀이기귀(플라잉 폭스, 트랙	□ C7.02.98 기타 명시된 청소·세탁용품 □ C7.02.99 미상의 청소·세탁용품	
글라이더) □ C6.03.10 정글짐, 구름사다리, 철봉 □ C6.03.18 기타 오르는 운동장 기구 □ C6.03.20 미끄럼틀 □ C6.03.25 그네, 스윙세트(그네와 미끄럼틀 등으로 이뤄진 아이들 놀이 기구) □ C6.03.30 시소 □ C6.03.45 동력의 놀이용 탈 것 □ C6.03.98 기타 명시된 놀이터 설치물	C7.03 조명기기 □ C7.03.01 (단독으로 서있는)가스, 석유, 등유 램프 □ C7.03.02 전기 조명(램프) □ C7.03.05 기타 명시된 램프 또는 램프 부품 □ C7.03.10 배터리 손전등 □ C7.03.15 초, 양초 □ C7.03.98 기타 명시된 조명기기 □ C7.03.99 미상의 조명기기	
□ C6 Q8 기타 며시되 으아·아도요 제푸	C7.04 냉난방기 □ C7.04.01 선풍기	
□ C6.99 미상 유아·아동용 제품	□ C7.04.05 전기·가스 라디에이터(방열기), 난반기(히터) □ C7.04.10 등유 히터 □ C7.04.98 기타 명시된 냉난방기	
C7 가정용품	□ C7.04.99 미상의 냉난방기	
□ C7.01.01 전기 주전자 □ C7.01.05 전기 프라이팬 또는 튀김기 □ C7.01.10 전기 제빵기 □ C7.01.15 블렌더, 쥬서, 믹서 등 조리용 가전기구 (식재료를 자르고 섞을 때 쓰는 기구)	C7.05 재봉용품 □ C7.05.01 재봉기계(전기, 수동) □ C7.05.05 가위 □ C7.05.10 핀, 바늘 □ C7.05.98 기타 명시된 재봉용품 □ C7.05.99 미상의 재봉용품	
□ C7.01.20 전동 칼 □ C7.01.25 전기 토스터, 토스터 오븐 □ C7.01.26 전자레인지 오븐 □ C7.01.30 기타 전기 조리기나 음식 조리 장치 □ C7.01.45 스토브, 오븐, 레인지(전기, 가스, 석탁, 장작을 사용하는 것) □ C7.01.60 숯 화덕(coal pot) □ C7.01.65 바비큐, 웨버 그릴, 야외용 조리·석쇠 기구,	C7.06 오락·여가용품 □ C7.06.01 텔레비전 □ C7.06.05 비디오 녹화기, 디코더 플레이어 □ C7.06.10 비디오, 카메라, 카메라, 디지털 카메라 또는 부속품 □ C7.06.15 스테레오장비, 스피커 등 음향장비, 이어폰 □ C7.06.98 기타 명시된 오락·여가용품 □ C7.06.99 미상의 오락·여가용품	
야외용 화덕	□ C7.98 기타 명시된 가정용품	
□ C7.01.70 식기세척기 □ C7.01.75 냉장고, 냉동고 □ C7.01.80 전기 압력솥, 전기솔	□ C7.99 미상의 가정용품	
□ C7.01.98 기타 명시된 요리·주방 가전제품	C8 그릇·용기(※전기용품 제외) C8.01 요리·조리 기구	
C7.02 청소·세탁용품 □ C7.02.01 세탁기(전기, 가스, 수동) □ C7.02.05 기타 명시된 의복 세탁기기 □ C7.02.10 의복 건조기 □ C7.02.15 다리미 □ C7.02.16 빨래줄, 빨래건조대, 빨래걸이(옷걸이) □ C7.02.20 청소도구(무동력): 빗자루, 먼지털이, 대걸레 등	□ C8.01.01 전기를 사용하지 않는 주전자 □ C8.01.05 칼, 커터칼, 주머니칼 □ C8.01.10 솥, 냄비, (프라이)팬 □ C8.01.15 압력용기(압력솥, 압력냄비) □ C8.01.20 숟가락, 젓가락, 포크, 음식 준비도구 □ C8.01.98 기타 명시된 요리·조리 기구 □ C8.01.99 미상의 요리·조리 기구 C9.03 몸단장 용품	
□ C7.02.30 기타 동력 청소 도구	□ C9.03.01 헤어드라이어, 롤러(구르프), 고데기 □ C9.03.05 빗, 브러시	

	□ C9.03.10 면도기, 면도날
□ C8.02.05 유리 또는 도기로 만든 접시·그릇 □ □ C8.02.10 유리로 만든 병, 단지, 항아리 □ □ C8.02.15 플라스틱, 나무 또는 흙으로 만든 용기 □ □ C8.02.98 기타 명시된 그릇·주방용기 □	□ C9.03.15 전기면도기 □ C9.03.20 진동칫솔 □ C9.03.28 칫솔 □ C9.03.98 기타 명시된 몸단장 용품 □ C9.03.99 미상의 몸단장 용품
C8.03 청소용 용기 □ □ C8.03.05 양동이, 틀통, 대야 □ □ C8.03.98 기타 명시된 청소용 용기 □ □ C8.03.99 미상의 청소용 용기 □ C8.04 음식 저장 관련 용기 □ □ C8.04.01 깡통 또는 통조림통(참치캔) □ □ C8.04.05 음식 또는 음료를 담고 있는 상자 또는 큰 판자(플라스트) □ 상자 □ □ C8.04.98 기타 명시된 음식 저장용기 또는 관련 기구 또는 그릇 □ □ C8.04.99 미상의 음식 저장용기 또는 관련 기구 또는 그릇 □	□ C9.04.01 콘택트렌즈 클리너 □ C9.04.05 구강용품 □ C9.04.10 면봉 □ C9.04.15 비누, 액체비누, 바디위시, 샴푸, 폼클렌징 □ C9.04.20 데오도란트, 개인탈취제 □ C9.04.25 향수, 콜론 □ C9.04.35 머리염색제 □ C9.04.40 제모제 □ C9.04.43 기타 헤어케어 상품 □ C9.04.45 매니큐어, 매니큐어 제거제 □ C9.04.50 바디용, 얼굴용 크림・로션
C9.01 의류・신발 또는 관련 용품 □ C9.01.01 벨트, 카터 벨트, 멜빵, 어깨띠, 보호대(손목, 발목, □ 허리 등) □ C9.01.05 단추 □ C9.01.10 기타 명시된 의료 잠금장치(지퍼, 찍찍이 등) □ C9.01.15 신발, 샌들, 슬리퍼, 부츠 □ C9.01.20 신발끈, 신발 잠금장치(버클 등) □ C9.01.25 셔츠, 블라우스, 타셔츠, 바지, 자켓, 코트, 외투, 차마□ □ C9.01.30 잠옷, 속옷, 란제리 □ C9.01.98 기타 명시된 의류・신발 또는 관련 용품 □ C9.01.99 미상의 의류・신발 또는 관련 용품 □ C9.02 개인장신구・의류소품 □ C9.02.98 기타 명시된 개인장신구・의류소품 □ C9.02.98 기타 명시된 개인장신구・의류소품	□ C9.04.99 비용의 제근용함 모든 편단 용함 □ C9.05.01 전화, 휴대전화 □ C9.05.05 개인용 컴퓨터 또는 관련 장비 □ C9.05.10 팩스 또는 기타 관련 장비 □ C9.05.11 수정용액 □ C9.05.15 펜, 연필 □ C9.05.20 기타 문구류

29-30. 일차적, 직접	적 손상유발물질_계속
□ C9.08.10 금연 모소 용품 □ C9.08.98 기타 명시된 담배 또는 관련 용품 □ C9.08.99 미상의 담배 또는 관련 용품 C9.09 수납용품 □ C9.09.00 트렁크 □ C9.09.98 기타 명시된 수납용품(가방, 손가방, 백, 배낭) C9.98 기타 명시된 개인용품 □ C9.98.01 분무기, 가습기 □ C9.98.05 아로마오일 버너 □ C9.98.10 콘돔 또는 기타 피임용 기구 □ C9.98.15 기타 성(sex) 관련용품 □ C9.98.20 알람시계, 시계 □ C9.98.30 동전	□ C10.04.01 롤러스케이트, 롤러스키, 인라인스케이트, 롤러브레이드 □ C10.04.05 스케이트보드 □ C10.04.10 킥보드 □ C10.04.15 수상스키, 웨이크보드 □ C10.04.20 스노우스키 □ C10.04.25 스노우보드 □ C10.04.30 아이스스케이트 □ C10.04.35 어린이용썰매, 썰매, 눈썰매, 스노우튜브 □ C10.04.98 기타 명시된 주로 스포츠용으로 사용되는
□ C9.99 미상 개인용품	아동장비 □ C10.04.99 미상의 주로 스포츠용으로 사용되는 아동장비
	C10.05 수중 스포츠 장비 □ C10.05.01 이쿠아령(Aqualung, 수중 호흡장치, 스쿠버 도구, 압축공기실린더 □ C10.05.05 (부력조절용)다이빙벨트, 웨이트벨트 □ C10.05.10 잠수복 □ C10.05.15 고글・마스크, 오리발, 스노클(잠수시 호흡용 튜브) □ C10.05.98 기타 명시된 수중 스포츠 장비 □ C10.05.99 미상의 수중 스포츠 장비 □ C10.98 기타 명시된 스포츠・레크레이션 장비 □ C10.98.01 스포츠용 개인보호 장비 □ C10.99 미상의 스포츠・레크레이션 장비

29-30. 일차적, 직접적 손상유발물질_계속	
C11 산업·작업용품	□ C11.03.98 기타 명시된 손으로 사용하는 무동력 공구
C11.01 기계·고정장비 □ C11.01.01 자르고 저미는 기계·고정장비 □ C11.01.05 분쇄·압착 기계·고정장비 □ C11.01.10 가열·조리용 기계·고정장비 □ C11.01.15 냉장, 냉동, 냉각 기계·고정장비 □ C11.01.20 기중기 □ C11.01.25 호이스트	□ C11.03.99 미상의 손으로 사용하는 무동력 공구 C11.04 압력을 이용하는 장비 □ C11.04.01 가스통 □ C11.04.05 압력 호스, 파이프 □ C11.04.98 기타 명시된 압력을 이용하는 장비 □ C11.04.99 미상의 압력을 이용하는 장비
□ C11.01.30 크레인기계 □ C11.01.35 높이 있는 작업발판(elevated work platform) □ C11.01.40 컨베이어 □ C11.01.45 공급시설-가스, 상·하수도, 스팀, 온수, 전기 □ C11.01.50 전단 고정시설(shearing plant) □ C11.01.55 낙농 고정시설 □ C11.01.65 쓰레기 압축기	C11.05 기타 무동력 장비 □ C11.05.01 사다리, 이동계단 □ C11.05.05 비계발판 □ C11.05.10 헬맷 □ C11.05.15 귀마개 □ C11.05.20 용접마스크 □ C11.05.28 기타 개인보호장구 □ C11.05.30 소화기 □ C11.05.98 기타 명시된 무동력 장비 □ C11.05.99 미상의 무동력 장비
□ C11.01.70 탈곡기 □ C11.01.71 작두, 사료재단기(곡식 절단기) □ C11.01.98 기타 명시된 기계·고정장비 □ C11.01.99 미상의 기계·고정장비	□ C11.98 기타 명시된 산업·작업용품 □ C11.99 미상의 산업·작업용품 C12 무기
C11.02 손으로 사용하는 동력공구 □ C11.02.01 드릴 □ C11.02.05 전기톱, 체인톱, 동력 사슬톱 □ C11.02.10 기타 동력 톱 □ C11.02.15 용접기, 용접용 장비 □ C11.02.20 네일건(못총) □ C11.02.25 그라인더(가는, 빻는 기구), 완충기, 광택기, 사포 □ C11.02.30 정원용 동력장비 □ C11.02.35 동력 잔디깎이 □ C11.02.40 산업용 진공청소기 □ C11.02.99 미상의 손으로 사용하는 동력공구 □ C11.02.99 미상의 손으로 사용하는 동력공구	는데 쓰는 무겁고 큰, 단점과거 선원이나 해적들이 쓰던 칼날이 약간 휜) □ C12.01.98 기타 명시된 날카로운 무기 □ C12.01.99 미상의 날카로운 무기 C12.02 총기 및 관련용품
C11.03 손으로 사용하는 무동력 공구 □ C11.03.01 미는 잔디깎이(무동력) □ C11.03.05 망치, 해머 □ C11.03.10 찍고 자르는 도구(도끼, 손도끼) □ C11.03.15 자르는 도구(끌, 작은 톱 등) □ C11.03.20 채굴 또는 경운(논밭을 가는), 도구(삽, 곡괭이, 정원용 쇠스랑, 갈퀴) □ C11.03.25 들어 올리는 도구	□ C12.02.01 총알, 아주 작은 총알 □ C12.02.05 권총, 피스톨 □ C12.02.10 라이플총 □ C12.02.15 샷건, 산탄총 □ C12.02.20 공기총(스프링으로 작도오디는 총, BB총) □ C12.02.98 기타 명시된 총기 및 관련용품 □ C12.02.99 미상의 총기 및 관련용품 C12.98 기타 명시된 무기 □ C12.98.01 곤봉, 회초리 □ C12.98.05 전기충격기, 전기막대기 □ C12.98.10 고추・후추 스프레이, 메이스(호신용 스프레이에 쓰이는 자극성 물질)

29-30. 일차적, 직접	적 손상유발물질_계속
	□ C13.06.20 개구리, 두꺼비
	□ C13.06.25 악어 □ C13.06.98 기타 명시된 파충류·양서류 □ C13.06.99 미상의 파충류·양서류
C13 사람·동·식물	
C13.01 식물 □ C13.01.03 나무, 식물, 나무뿌리 □ C13.01.05 잎, 꽃 □ C13.01.13 버섯, 독버섯, 균류 □ C13.01.25 씨앗	C13.07 사람 □ C13.07.01 사람, 본인 □ C13.07.10 군중 □ C13.07.98 기타 명시된 사람 □ C13.07.99 미상의 사람 □ C13.98 기타 명시된 사람·동·식물
□ C13.01.30 과일 □ C13.01.34 식물의 가시	
□ C13.01.35 나뭇가지, 막대기	□ C13.99 미상의 사람·동·식물
□ C13.01.50 독성 식물 □ C13.01.98 기타 명시된 식물 □ C13.01.99 미산인 신문	C14 건물 및 부속물
	C14.01 건물 내 구조물(화장실, 욕실, 샤워 등)
□ C13.02 새(조류)	□ C14.01.01 수세식 변기 □ C14.01.05 재래식 변기
□ C13.03 연당·구식주당을 □ C13.03.01 별 □ C13.03.05 말벌, 호박벌 □ C13.03.15 개미 □ C13.03.16 부으부개미	□ C14.01.10 욕조 □ C14.01.15 샤워기 □ C14.01.20 붙박이 카운터, 카운터 선반, 부엌 선반, 주방조리대, 부엌 작업대 □ C14.01.98 기타 명시된 건물 내 구조물 □ C14.01.99 미상의 건물 내 구조물
□ C13.03.25 거리 □ C13.03.25 전갈 □ C13.03.30 진드기 □ C13.03.35 지네, 노래기 □ C13.03.98 기타 명시된 곤충·무척추동물 □ C13.03.99 미상의 곤충·무척추동물	C14.02 문·창문 또는 관련된 부품·부분 □ C14.02.01 문, 문지방, 문턱, 문 손잡이 □ C14.02.05 유리문, 자동유리문 □ C14.02.10 보안문, 천으로 가려 놓은 문 □ C14.02.15 창문용 방법막대
C13.04 육상 포유류 □ C13.04.01 개 □ C13.04.05 고양이	□ C14.02.20 창문 □ C14.02.25 창문 외부 덧창 □ C14.02.98 기타 명시된 문·창문 또는 관련된 부품·부분
C13.05 해양동물	□ C14.02.99 미상의 문·창문 또는 관련된 부품·부분
□ C13.05.01 상어 □ C13.05.05 기타 물고기 □ C13.05.10 바다뱀 □ C13.05.15 해양 포유동물 □ C13.05.20 해파리 □ C13.05.25 산호 □ C13.05.98 기타 명시된 해양동물 □ C13.05.99 미상의 해양동물	C14.03 바닥 또는 관련된 부품·부분 □ C14.03.01 카펫 깔린 바닥, 장판 바닥 □ C14.03.05 타일바닥, 벽돌바닥, 콘크리트 바닥 □ C14.03.10 나무 바닥 □ C14.03.15 진흙바닥, 찰흙바다, 동물의 변으로 만든 바닥 □ C14.03.98 기타 명시된 바닥 또는 관련된 부품·부분 □ C14.03.99 미상의 바닥 또는 관련된 부품·부분
C13.06 파충류 양서류 □ C13.06.01 무독성 뱀 □ C13.06.05 독성 뱀 □ C13.06.10 독성인지 무독성인지 명시되지 않은 뱀 □ C13.06.15 도마뱀 □ C13.06.16 붉은불개미	

29-30. 일차적, 직접적 손상유발물질_계속	
C14.04 벽 또는 관련된 부품·부분	□ C15.99 미상의 지면형태
│	C16 물질
□ C14.04.15 디수닉 □ C14.04.20 진흙벽, 찰흙벽, 동물의 변으로 만든 벽 □ C14.04.98 기타 명시된 벽 또는 관련된 부품·부분 □ C14.04.99 미상의 벽 또는 관련된 부품·부분	C16.01 자연물질 □ C16.01.01 눈, 얼음 □ C16.01.05 잔디, 풀, 목추 □ C16.01.08 바위, 돌
C14.98 기타 명시된 건물 및 부속물(수영시설, 펜스, 엘리베이터, 계단 등)	□ C16.01.10 목재, 판자, 널, 나무조각 □ C16.01.15 자갈, 모래, 흙
□ C14.98.03 수영장, 스파 □ C14.98.05 담장, 울타리, 대문 □ C14.98.10 에스컬레이터, 무빙워크, 움직이는 경사로 □ C14.98.15 리프트, 엘리베이터, 엘리베이터 문	□ C16.01.19 건초, 짚 □ C16.01.20 대량의 곡식낟알 □ C16.01.98 기타 명시된 자연물질 □ C16.01.99 미상의 자연물질
□ C14.98.16 계단 □ C14.98.20 난간, 철책 □ C14.98.50 배전선 □ C14.98.55 가스, 스팀, 온수용 파이프 □ C14.98.60 고정형 전기설비 □ C14.98.61 도관이 된 환풍, 난방, 냉방 장치 및 관련부품	C16.02 제조·산업물질 □ C16.02.01 인공잔디, 인공풀 □ C16.02.05 아스팔트, 역청(도로 포장 등에 쓰이는 찐득찐득한 시커먼 물질) □ C16.02.08 벽돌, 콘크리트, 콘크리트 블록 □ C16.02.10 열로 녹은 금속
□ C14.98.98 기타 명시된 건물 및 부속물 □ C14.99 미상의 건물 및 부속물	□ C16.02.18 금속 판, 금속 일부, 금속 조각, 금속가루 □ C16.02.28 도기, 도자기-판, 일부, 조각
C15 표면형태(구조)	□ C16.02.30 열에 녹은 유리 □ C16.02.38 유리-판, 일부, 조각
C15.01 시표면 □ C15.01.01 절벽 □ C15.01.05 경사지, 경사로	□ C16.02.40 결빙된 액체 또는 기체(0℃ 미만) □ C16.02.58 플라스틱, 스티로품 □ C16.02.68 종이, 마분지, 보드지 □ C16.02.98 기타 명시된 제조·산업 물질 □ C16.02.99 미상의 제조·산업 물질
□ C15.01.98 기타 명시된 지표면	□ C16.98 기타 명시된 물질
□ C15.01.99 미상의 지표면	□ C16.99 미상의 물질
C15.02 물 □ C15.02.01 사람이 만든 우물	C17 불·화염·연기
□ C15.02.05 저수지 □ C15.02.15 물웅덩이 □ C15.02.20 댐, 호수 □ C15.02.25 강, 개울 □ C15.02.30 습지, 소택지, 늪 □ C15.02.35 바닷가, 해안	C17.01 불·화염 □ C17.01.01 타고 있는 기름 □ C17.01.05 기타 타고 있는 액체 □ C17.01.10 기타 타고 있는 기체 □ C17.01.15 건물·구조물에서 제어된 불·화염(예: 벽난로의 불)
□ C15.02.40 바다 □ C15.02.98 기타 명시된 물 □ C15.02.99 미상의 물	□ C17.01.20 건물·구조물이 아닌 곳에서의 제어된 불·화염(예: 캠프파이어) □ C17.01.25 건물·구조물에서의 제어되지 않은
C15.98 기타 명시된 지면형태 □ C15.98.08 기타 경사진 지면(언덕길) □ C15.98.18 기타 동일한 지면(바닥)	불·화염(예: 가구의 화재) □ C17.01.30 건물·구조물이 아닌 곳에서의 제어되지 않은 불·화염(예: 산불)
□ C15.98.28 기타 울퉁불퉁한 지면(과속방지턱 등) □ C15.98.98 기타 명시된 지면형태	□ C17.01.98 기타 명시된 불·화염 □ C17.01.99 미상의 불·화염

29-30. 일차적, 직접	1적 손상유발물질_계속
□ C17.02 연기	□ C20.17 마약 길항제□ C20.18 눈 · 귀 · 코 · 인후약
□ C17.98 기타 명시된 불·화염·연기	□ C20.18 군·귀·교·인우약 □ C20.19 국소적 약물
□ C17.99 미상의 불·화염·연기	□ C20.20 비타민·식이보충제 □ C20.21 전해질·미네랄
C18 뜨거운 물체·물질	□ C20.21 전에걸·미네걸 □ C20.22 백신, 톡소이드
C18.01 뜨거운 액체 □ C18.01.01 뜨거운 수돗물	□ C20.23 호르몬제, 호르몬 길항제, 피임약 □ C20.24 불법 제조된 약물
□ C18.01.01 뜨거운 주돗물 □ C18.01.05 끓는 물(수돗물 이외의 물) □ C18.01.98 기타 명시된 뜨거운 액체	□ C20.98 기타 명시된(인체용) 약품(한약재료, 한약, 환약 등)□ C20.99 미상의(인체용) 약품
□ C18.01.99 미상의 뜨거운 액체	C21 기타 비약물성 화학물질
C18.02 뜨거운 공기 또는 기체 □ C18.02.01 스팀, 뜨거운 수증기 □ C18.02.98 기타 명시된 뜨거운 공기 또는 기체	C21.01 아교·접착제 □ C21.01.01 접착제 □ C21.01.05 에폭시 수지(강력 접착제의 일종)
☐ C18.02.99 미상의 뜨거운 공기 또는 기체	□ C21.01.10 시아노아크릴레이트(의료용 등의 강력 순간 접착제)
□ C18.98 기타 명시된 뜨거운 물체·물질	□ C21.01.98 기타 명시된 아교·접착제 □ C21.01.99 미상의 아교·접착제
□ C18.99 미상의 뜨거운 물체·물질	C21.02 연료·용제
C19 음식·음료	□ C21.02.01 LPG가스, 천연가스, 메탄가스, 프로판가스,
□ C19.01.25 차가운 음료-비주류 □ C19.01.30 음료-주류	부탄가스
□ C19.98 기타 명시된 음식·음료	□ C21.02.98 기타 명시된 연료·용제 □ C21.02.99 미상의 연료·용제
□ C19.99 미상의 음식·음료 C20 약품 □ C20.01 진통해열제·항류마티스제 □ C20.02 항생제·항균제 □ C20.03 감기약 □ C20.04 천식약 □ C20.05 항히스타민제	C21.03 페인트, 코팅제, 제거제 □ C21.03.01 페인트, 니스, 도뇨, 착색제 □ C21.03.05 시너, 페인트 제거제 □ C21.03.10 녹 제거제 □ C21.03.98 기타 명시된 페인트, 코팅제, 제거제 □ C21.03.99 미상의 페인트, 코팅제, 제거제
□ C20.06 항우울제 □ C20.07 진정제, 항정신병 약제, 수면제 □ C20.08 항경련제 □ C20.09 심혈관계 약물 □ C20.10 이뇨제 □ C20.11 항응고제 □ C20.12 소화제 · 위장약 □ C20.13 진단용 약물 □ C20.14 항암제 □ C20.15 마취약 □ C20.16 근이완제	C21.04 애완동물(가축)용품, 살충제, 제초제 □ C21.04.01 애완동물(가축) 용품 □ C21.04.05 쥐약, 살서제 □ C21.04.06 방충제 □ C21.04.10 기타 유기인산화합물 □ C21.04.15 합성제 피레스로이드 □ C21.04.18 기타 살충제 □ C21.04.25 진균제 □ C21.04.30 잡초 제거제, 제초제 □ C21.04.98 기타 명시된 살충제, 제초제 □ C21.04.99 미상의 살충제, 제초제

29-30. 일차적, 직접적 손상유발물질_계속	
C21.05 세척제 □ C21.05.01 식기용 세제, 린스 □ C21.05.05 세탁용 세제 또는 첨가제, 섬유유연제,	□ C40.12 물리치료 장치 □ C40.98 기타 명시된 의료·수술 장치 □ C40.99 미상의 의료·수술 장치
얼룩제거제 □ C21.05.10 드라이클리닝 제제 □ C21.05.15 표백제, 흡수제 □ C21.05.20 염소 □ C21.05.25 고형세탁비누, 고형빨래비누, 가성소다 □ C21.05.30 소독제(페놀, 송유, 차아염소산염) □ C21.05.35 배수관 세척제	C98 기타 명시된 물체·물질 C98.01 법 집행 장비 □ C98.01.01 수갑 □ C98.01.98 기타 명시된 법 집행 장비 □ C98.01.99 미상의 법 집행 장비
□ C21.05.98 기타 명시된 세척제 □ C21.05.99 미상의 세척제	C98.02 공공사용물품 □ C98.02.01 소화전 □ C98.02.05 전신주
□ C21.06 기타 화학 공업 공정, 공업 제조 중 사용하는 반응제	□ C98.02.10 고압(공중) 송전선 □ C98.02.98 기타 명시된 공공사용물품
C21.98 기타 명시된 비약물성 화학물질 □ C21.98.01 자동차 배기가스 □ C21.98.03 기타 출처의 일산화탄소 □ C21.98.05 기타 탄산가TM □ C21.98.15 수은 □ C21.98.20 납	□ C98.02.99 미상의 공공사용물품 C98.03 캠핑장비 □ C98.03.01 텐트 □ C98.03.98 기타 명시된 캠핑 장비 □ C98.03.99 미상의 캠핑 장비
□ C21.98.28 기타 중금속 □ C21.98.30 비료, 식물 호르몬 □ C21.98.40 직물 염료 □ C21.98.50 가죽 염료 □ C21.98.60 식품 염료 □ C21.98.70 사진용 제품 □ C21.98.80 기타 전통 약품, 민간요법 약품 □ C21.98.98 기타 명시된 비약물성 화학 물질	C98.04 조임·묶음·고정 장비 □ C98.04.01 밧줄, 끈, 노끈 □ C98.04.05 가시 철사 □ C98.04.08 기타 철사 □ C98.04.10 사슬 □ C98.04.98 기타 명시된 조임·묶음·고정 장비, 고무줄 □ C98.04.99 미상의 조임·묶음·고정 장비, 고무줄
□ C21.98.99 미상의 비약물성 화학 물질 C40 의료·수술 장치	C98.05 기타 폭발성·가연성 물질·물체 □ C98.05.01 불꽃
C40.01 병원 또는 개인용 장치 □ C40.01.01 피하 주사바늘 · 주사기 □ C40.01.05 수은 체온계 □ C40.01.08 기타 유형의 체온계 □ C40.01.10 환자를 들어올리기 위한 장치, 호이스트 □ C40.01.98 기타 명시된 병원 또는 개인용 장치 □ C40.01.99 미상의 병원 또는 개인용 장치	□ C98.05.02 폭발물(다이너마이트, 뇌관, 수제폭탄, 방화장치) □ C98.05.98 기타 명시된 폭발성·가연성 물질·물체 □ C98.05.99 미상의 폭발성·가연성 물질·물체 □ C98.98 기타 명시된 물질·물체 □ C98.98.01 고압 제트기 □ C98.98.05 레이저 빛과 장비, 강한 용접 빛, 햇빛
□ C40.02 일반 또는 성형수술 장치 □ C40.03 마취 장치 □ C40.04 심혈관 장치 □ C40.05 이비인후 장치 □ C40.06 위장관 장치 □ C40.07 신경학적 장치 □ C40.08 산과 또는 부인과 장치 □ C40.09 안과 장치 □ C40.10 정형외과 장치 □ C40.11 방사선 장치	□ C98.98.10 레이저 포인터 □ C98.98.28 기타 날카로운 물체 □ C98.98.38 기타 둔탁한 물체 □ C98.98.48 기타 모터, 엔진 □ C98.98.50 건전지 □ C98.98.55 원형전지 □ C98.98.58 기타 건전지 □ C98.98.60 동물 우리 □ C98.98.70 위 내용물

00 00 01-12 2122 4 104522 214
29-30. 일차적, 직접적 손상유발물질_계속
□ C98.98.75 대변, 배설물(사람·동물)
□ C98.98.78 혈액, 시체·시신, 뼈(사람·동물)
□ C98.98.80 비닐봉지, 플라스틱 백
□ C98.98.85 쓰레기
□ C98.98.88 기타 환경오염물, 오염원
□ C98.98.98 기타 명시된 물질·물체
C99 미상의 물질·물체

31. 다발성 손상진단명 1-10	
다발성 손상진단명 1	다발성 손상진단명 6
다발성 손상진단명 2	다발성 손상진단명 7
다발성 손상진단명 3	다발성 손상진단명 8
다발성 손상진단명 4	다발성 손상진단명 9
다발성 손상진단명 5	다발성 손상진단명 10

32. 손상내용입력

33. 운수사고 당시 환자의 역할	34. 운수사고 상대편
	□ C1 보행자 □ C2 자전거 □ C3 오토바이 □ C6 사륜 이상의 소형 탈 것(승용차, 20인승 미만, 미니버스, 픽업트럭 등) □ C7 대형 탈 것 □ C8 선로 차량(지하철, 전철, 모노레일) □ C9 농업용 · 산업용 · 건설용 특수차량(트랙터, 콤바인, 불도저 등) □ C13 고정된 물체(주차된 차량, 벤치, 나무, 가드레일, 건물, 교각, 눈사태, 토사) □ C14 동물 C15 상대편이 없는경우 □ C15.1 충돌없이 운송수단의 갑작스러운 움직임에 의한 손상 □ C15.2 충돌없이 차량의 전복 · 전도 □ C15.3 기타 상대편이 없는 경우 □ C98 기타 운송수단

35. 운수사고 발생장소(도로종류)	36. 보호장비					
□ C1 고속도로	안전벨트	□ CO 아니오	□ C1 예	□ C9 미상		
□ C2 자동차 전용도로 C3 일반도로	안전의자	□ CO 아니오	□ C1 예	□ C9 미상		
□ C3.1 일반국도□ C3.2 지방도로	헬맷착용	□ CO 아니오	□ C1 예	□ C9 미상		
□ C3.3 특별·광역시도 □ C3.4 시·군도	관절보호	□ CO 아니오	□ C1 예	□ C9 미상		
□ C4 횡단보도 □ C6 골목길	에어백 장착	□ CO 아니오	□ C1 예	□ C9 미상		
□ C7 농로 □ C8 기타	에어백 작동	□ CO 아니오	□ C1 예	□ C9 미상		
□ C9 미상	기타	□ CO 아니오	□ C1 예	□ C9 미상		

37. 중독	두 <u>물질</u> 코드
C1 치료약물 C1.1 진통제·항류마티스제 □ C1.1.1 아세트아미노펜 □ C1.1.2 마약성 진통제 □ C1.1.3 그 외 진통제 C1.2 진정제·항정신병약제·수면제	 □ C1.21 전해질· 미네랄 약물 □ C1.22 백신, 톡소이드 □ C1.23 호르몬제, 호르몬 길항제, 피임약 □ C1.24 천식약 □ C1.25 항히스타민제 □ C1.98 기타 치료약물 □ C1.99 미상 치료약물
□ C1.2.1 벤조디아제핀계 □ C1.2.2 독시라민 □ C1.2.3 졸피뎀	C2 농약
□ C1.2.3 출피함 □ C1.2.4 항정신병약 □ C1.2.5 기타 진정제·항정신병약제·수면제	C2.1 제초제 □ C2.1.1 파라쿼트 □ C2.1.2 글라이포세이트
C1.3 항우울제 □ C1.3.1 TCA 항우울제 □ C1.3.2 그 외 항우울제	□ C2.1.3 기타 제초제 C2.2 실충제 □ C2.2.1 유기인계
□ C1.4 심혈관계약□ C1.5 구강혈당제□ C1.6 항경련제	□ C2.2.2 피레스로이드 □ C2.2.3 카바메이트 □ C2.2.4 기타 살충제
□ C1.7 감기·기침약□ C1.8 항생제·항균제	□ C2.3 살서제
□ C1.9 각성제·습관성의약품 □ C1.10 이뇨제 □ C1.11 항응고제	□ C2.4 기타 농약□ C2.5 미상 농약
□ C1.12 소화제·위장약 □ C1.13 진단용 약물 □ C1.14 항암제 □ C1.15 마취약	C3 가스 □ C3.1 일산화탄소 □ C3.2 기타 가스 □ C3.3 미상 가스
 □ C1.16 근이완제 □ C1.17 마약길항제 □ C1.18 눈·귀·코·인후약 □ C1.19 국소적 약물 □ C1.20 비타민·식이보충제 	C4 인공독성물질

	37. 중 목	물질코드		
C4.1 부식성물질 □ C4.1.1 빙초산 □ C4.1.2 기타 산성 물질 □ C4.1.3 락스 □ C4.1.4 기타 알칼리성물질 □ C4.1.5 불산(불화수소산, □ C4.1.6 기타 부식성물질	☐ C4.6 ☐ C5 지☐ C98 7	중금속 탄화수소 기타 인공독성물질 기상 인공독성물질		
38. 중독	물질명칭		39. 중독물 질	실(주성분)
				52,
40 자해	/자살위험요인 1-2		41 자삭시도 과	거력(자살시도 횟수 포함)
C1 가족, 친구와의 갈등 □ C1.1 배우자 □ C1.2 부모 □ C1.3 자녀 □ C1.4 기타 가족 □ C1.5 친구 □ C1.6 연인 C2 가족 또는 친구의 죽음 □ C2.1 배우자 □ C2.2 자식 □ C2.3 부모	C4 정신과적 문제 □ C4.1 약물중독 □ C4.2 우울증 □ C4.3 기타 정신과적 □ C4.4 미상 정신과적 □ C4.5 적응장애 C5 학대	문제 는 폭력 문제 바의 갈등 제 의 갈등	□ CO 없음 □ C1 1회 □ C2 2회 이상 □ C9 미상	

42. 주증상 1-3					
주증상 1	주증상 2	주증상 3			

43. 수축기혈압	44. 이완기혈압	45. 분당맥박수	46. 분당호흡수	47. 체온

48. AVPU	49. GC	CS .
☐ A(alert): 의식 명료 ☐ V(voice): 소리에 반응 ☐ P(pain): 통증자극에 반응 ☐ U(unresponsive): 무반응	Eye response(눈뜨기) □ C0 Unavailable 측정불가 □ C1 No eyes opening 눈뜨지 못함 □ C2 Eyes opening to pain 자극에 눈뜸 □ C3 Eyes opening to speech 말하면 눈뜸 □ C4 Eyes opening spontaneously 지발적으로 눈뜬 상태 Verbal response(언어반응) □ C0 Unavailable 측정불가 □ C1 No verbal response 반응 없음 □ C2 Incomprehensible sounds 이해 안 되는 소리만 함 □ C3 Inappropriate words 동문서답 □ C4 Confused 대화가능하나 지속적인 대화 안됨 □ C5 Orientated 적절하게 대답	비정상적인 신전 C3 Abnormal flexion to pain 비정상적인 굴곡 C4 Withdraws from pain 통증자극에 움츠림 C5 Localized pain 통증에 국소적 반응 C6 Obeys commands 지시에 따름

50. 수술유무	51. 수술내역 1-10					
□ CO 아니오 □ C1 예	수술내역 1		수술내역 6			
	수술내역 2		수술내역 7			
	수술내역 3		수술내역 8			
	수술내역 4		수술내역 9			
	수술내역 5		수술내역 10			

52. EMR-ISS	53. RTS	54. ISS

55. 병원전 처치					
기도유지		경추고정	□ CO 아니오 □ C1 예 □ C2 미상		
도수조작	□ CO 아니오 □ C1 예 □ C2 미상	척추고정	□ CO 아니오 □ C1 예 □ C2 미상		
기도유지기	□ CO 아니오 □ C1 예 □ C2 미상	사지고정	□ CO 아니오 □ C1 예 □ C2 미상		
후두마스크	□ CO 아니오 □ C1 예 □ C2 미상	출혈압박	□ CO 아니오 □ C1 예 □ C2 미상		
기도삽관	□ CO 아니오 □ C1 예 □ C2 미상	통증조절	□ CO 아니오 □ C1 예 □ C2 미상		
흡인기	□ CO 아니오 □ C1 예 □ C2 미상	약물투여	□ CO 아니오 □ C1 예 □ C2 미상		
호흡유지		심폐소생술	□ CO 아니오 □ C1 예 □ C2 미상		
구조호흡	□ CO 아니오 □ C1 예 □ C2 미상	모니터링			
산소투여	□ CO 아니오 □ C1 예 □ C2 미상	심전도	□ CO 아니오 □ C1 예 □ C2 미상		
백밸브 마스크	□ CO 아니오 □ C1 예 □ C2 미상	산소포화도	□ CO 아니오 □ C1 예 □ C2 미상		
순환유지		생체징후 모니터링	□ CO 아니오 □ C1 예 □ C2 미상		
정맥로 확보	□ CO 아니오 □ C1 예 □ C2 미상	의식확인	□ CO 아니오 □ C1 예 □ C2 미상		
쇽방지 하의	□ CO 아니오 □ C1 예 □ C2 미상	지도의사교신	□ CO 아니오 □ C1 예 □ C2 미상		
흉부압박	□ CO 아니오 □ C1 예 □ C2 미상	기타	□ CO 아니오 □ C1 예 <u></u> □ C2 미상		
제세동	□ CO 아니오 □ C1 예 □ C2 미상	미상	□ CO 아니오 □ C1 예 □ C2 미상		
	EG 1101	·원인 1-10			
사망원인 1	50. 시경	사망원인 6			
사망원인 2		사망원인 7			
사망원인 3		사망원인 8			
사망원인 4		사망원인 9			
사망원인 5		사망원인 10			
시강권인 0		시당권인 10			

57. 사망일자	58. 사망시간
YYYYMMDD	HHMM

1. 운수사고

1. 운수사고 발생시 사고기전	2. 운수사고 관련 약물복용 유무
□ C1 정면충돌	
C2 측면충돌 □ C2.1 좌측면 충돌 □ C2.2 우측면 충돌 □ C2.3 미상	
□ C3 후면추돌	□ C1 모름
C4 전복·전도 □ C4.1 좌측 전도(180도 미만) □ C4.2 우측 전도(180도 미만) □ C4.3 미상(180도 미만) □ C4.4 전복(180도 이상)	□ C2 어떤 약물 복용에 대한 증거 또는 의심이 없음 □ C3 환자 진술로 어떤 약물 복용에 대한 증거 또는 의심이 있음 □ C4 사고 관련 증거에 의해 어떤 약물 복용에 대한 증거 또는 의심이 있음 □ C5 사고 관련자 진술로 어떤 약물 복용에 대한 증거 또는 의심이 있음
□ C5 복합충돌	
□ C98 기타	
□ C99 미상	

	3. 기저				무			
기저 질환 유무	□ C0 기저질환 □ C9 미상	있음 🗆	C1 기저질환 없음		□ C0	아니오	C1 예	□ C9 미상
고혈압	□ CO 아니오	☐ C1.1 ☐ C1.2	□ C9 미상 약물치료함 ? 약물치료안함) 약물치료여부모름	암			□ C1.2	약물치료함 약물치료안함 약물치료여부모름
당뇨	□ CO 아니오	C1 예 □ C1.1 □ C1.2	□ C9 미상 야무치급하	치매			☐ C1.1 ☐ C1.2	□ C9 미상 약물치료함 약물치료안함 약물치료여부모름
결핵	□ CO 아니오	C1 예 □ C1.1 □ C1.2	□ C9 미상 약물치료함 약물치료안함 약물치료약무모름	간질		아니오	C1 예 □ C1.1 □ C1.2	□ C9 미상 약물치료함 약물치료안함 약물치료여부모름
간질환	□ CO 아니오	C1 예 □ C1.1 □ C1.2	□ C9 미상 약물치료함 약물치료안함 약물치료야부모름	혈액 응고 장애	□ C0	아니오	C1 예 □ C1.1 □ C1.2	□ C9 미상 약물치료함 약물치료안함 약물치료여부모름
뇌혈관 질환	□ CO 아니오	C1 예 □ C1.1 □ C1.2	□ C9 미상 약물치료함	파킨 슨병	□ C0	아니오	C1 예 □ C1.1 □ C1.2	□ C9 미상 약물치료함 약물치료안함 약물치료안부모름
심장 질환	□ CO 아니오	C1 예 □ C1.1 □ C1.2	□ C9 미상 약물치료함 약물치료안함 약물치료여부모름					
	4 04 11	7 = 1101.0	1171		- 0			
	4. 운수사_	고 후 내원소요	시간		5. 문	·사고 완시	1의 내원 후 첫	선 번째 수술일자
		분		YYYYMMDD				
	0.04117 71710					70411		-1 1171
	6. 운수사고 환자의	내원 후 젓 [건째 수술시간 -			/.운수사.	고 후 수술까?	시 시간
HHMM					분			
8. 퇴원 시 GOS					9. 운수시	고 발생 시 기	상상태	
□ C1 사망(dead) □ C2 식물인간(vegetative state) □ C3 심한 장애(severe disability) □ C4 중등도 장애(moderate disability) □ C5 회복(good recovery)			☐ C4 ☐ C5 ☐ C9	2 흐림 3 비				

10. 운수사고 환자의 키	11. 운수사고 환자의 몸무게	12. 운수사고 환자의 체질량 지수	13. 운수사고 환자의 중환자실 재원기간

14. 운수사고 발생 시 ³	환자의 운송수 단	15. 운수사고		수사고 환자의
C1 자전거 □ C1.1 무동력 □ C1.2 동력(전기 등)	C7 기타 개인 운송수단 □ C7.3 전동외륜보드 □ C7.4 전동이륜보드	환자의 AIS	전면에어백	날비(에어백) □ CO 아니오 □ C1 예 □ C9 미상
	□ C7.5 전동이륜평행차□ C7.6 전동킥보드□ C7.7 전동스케이트보드		측면에어백	□ CO 아니오 □ C1 예 □ C9 미상
□ C2.2 125cc 미만 □ C2.3 125cc 이상 □ C2.9 미상	☐ C7.8 기타 ☐ C7.9 미상 C8 농업용 특수차량		커튼에어백	□ CO 아니오 □ C1 예 □ C9 미상
C3 승용자동차 □ C3.1 경차	□ C8.1 경운기 □ C8.2 트랙터 □ C8.8 기타		무릎에어백	□ CO 아니오 □ C1 예 □ C9 미상
□ C3.2 세단 □ C3.3 SUV □ C3.4 기타 승용차(10인승 이하) □ C3.9 미상	□ C8.9 미상		기타	□ CO 아니오 □ C1 예 <u> </u> □ C9 미상
☐ C4 승합자동차(11인승~15인승 이하)				
C5 버스 □ C5.1 16~35인승 □ C5.2 36인승 이상 □ C5.9 미상	□ 기타 육상운송수단□ 미상 육상운송수단□ 수상 운송수단□ 항공 운송수단			
C6 화물자동차(최대적재량 기준) □ C6.1 경형(1톤 이하) □ C6.2 중형(5톤 이하) □ C6.3 대형(5톤 이상) □ C6.9 미상	□ 기타 운송수단 □ 미상			

2. 머리·척추 손상

1. 머리·척추 손상 유무	2. 외상성 머리 손 상	3. 외상성 척추 손상		4. 응급실 결과사유	
□ C0 없음	□ CO 없음	□ CO 없음		□ C1 예 □ C0 아니	
□ C1 있음	□ C1 있음 □ C2 미상	□ C1 있음 □ C2 미상	그 이외	□ C1 예 □ C0 아니	니오

5. 중재 종 류					
		эνιοπ			
□ 두경부혈관조영술	□ 타병원 시행		□ 타병원 시행		
	☐ active bleeding	☐ Surgical airway	응급실 내원 후 처음 시행시각		
	응급실 내원 후 처음 시행시각		(년_월_일_시_분)		
	(년_월_일_시_분)		□ 타병원 시행		
	□ 타병원 시행	□ 만니톨 정맥주사	응급실 내원 후 처음 시행시각		
□ 두경부색전술	응급실 내원 후 처음 시행시각		(년_월_일_시_분)		
	(년_월_일_시_분)		□ 타병원 시행		
	□ 타병원 시행	□ 스테로이드 정맥주사	응급실 내원 후 처음 시행시각		
□ 승압제	응급실 내원 후 처음 시행시각		(년_월_일_시_분)		
	(년_월_일_시_분)		□ 타병원 시행		
□ 혈압강하제	□ 타병원 시행	□ 두개내압 모니터링	초기 ICPmmHg		
	응급실 내원 후 처음 시행시각		응급실 내원 후 처음 시행시각		
	(년_월_일_시_분)		(년_월_일_시_분)		
	□ 타병원 시행	□ 목표체온유지치료	□ 타병원 시행		
□ 심폐소생술	응급실 내원 후 처음 시행시각		응급실 내원 후 처음 시행시각		
	(년_월_일_시_분)		(년_월_일_시_분)		
	□ 타병원 시행		□ 타병원 시행		
□ 수혈 적혈구	응급실 내원 후 처음 시행시각	□ 뇌척수액체외배관	응급실 내원 후 처음 시행시각		
	(년_월_일_시_분)		(<u>년</u> 월 <u>일</u> 시 <u>분</u>)		
	□ 타병원 시행		□ 타병원 시행		
□ 수혈 혈소판	응급실 내원 후 처음 시행시각	□ 항간질약 예방적 투여	응급실 내원 후 처음 시행시각		
	(년_월_일_시_분)		(년_월_일_시_분)		
	□ 타병원 시행		□ 타병원 시행		
□ 수혈 혈장	응급실 내원 후 처음 시행시각	□ 고용량 바르비투르 사용	응급실 내원 후 처음 시행시각		
	(년_월_일_시_분)		(년_월_일_시_분)		
	□ 타병원 시행		□ 타병원 시행		
□ 기도삽관	응급실 내원 후 처음 시행시각	□ 천두술	응급실 내원 후 처음 시행시각		
	(년_월_일_시_분)		(년_월_일_시_분)		

5. 중재종류_계속						
	□ 타병원 시행		□ 타병원 시행			
□ 개두술	응급실 내원 후 처음 시행시각	□ 척추고정술	응급실 내원 후 처음 시행시각			
	(년_월일시분)		(년_월_일_시_분)			
	□ 타병원 시행		□ 타병원 시행			
□ 머리뼈절제술	응급실 내원 후 처음 시행시각	□ 외부고정술	응급실 내원 후 처음 시행시각			
	(년_월_일_시_분)		(년_월_일_시_분)			
	□ 타병원 시행		□ 타병원 시행			
□ 척축감압술	응급실 내원 후 처음 시행시각	□ 척추성형술	응급실 내원 후 처음 시행시각			
	(년_월_일_시_분)		(년_월_일_시_분)			
6. 손상환자의 AIS						

3. 자해/자살

1. 자해/자살여부	2. 자해/자살시도방법						
	☐ C1 중독	C6 분신	C8 총기				
	□ C2 추락	□ C6.1 휘발유 □ C6.2 신나	□ C8.1 공기총 □ C8.2 엽총				
	□ C3 익수	□ C6.3 가스	□ C8.3 권총				
□ C1 자살 □ C2 자해	□ C4 자상	C7 운수	□ C98 기타				
	C5 목맴 □ C5.1 완전목맴 □ C5.2 불완전목맴	□ C7.1 운전 □ C7.2 보행	□ C99 미상				

3. 과거의 자해/자살시도방법							
자해/자살시도 1회		□ C2 추락 □ C7 운수	□ C3 익수 □ C8 총	□ C4 자상 □ C98 기타	□ C5 목맴 □ C99 미상		
자해/자살시도 2회		□ C2 추락 □ C7 운수	□ C3 익수 □ C8 총	□ C4 자상 □ C98 기타	□ C5 목맴 □ C99 미상		

4. 과거 자해/자살 시도자의 정신과 면담 여부	5. 자해/자살 환자의 자의퇴원사유
C1 정신과적 면담 □ C1.1 정신과적 면담 시행 □ C1.2 정신과적 면담 시행하지 않음 □ C1.3 정신과적 면담 거부 □ C1.4 타병원 혹은 기존 추적 관찰하던 병원 정신과 면담 연계	□ C1 경제적 문제 □ C2 정신과 진료 거부 □ C3 폐쇄병동 입원 거부 □ C4 타병원 혹은 기존 추적관찰 하던 병원진료를 위하여 □ C98 기타 □ C99 미상

4. 중독

1. 중독물 질의 양	2. 중독의 이유	3. 중독물 질의 출처
	C1 의도적 중독 □ C11 자살 목적 □ C12 오용(의도적 잘못 사용) □ C13 과용(약물 중독) □ C14 살해, 상해를 목적으로 □ C18 기타 의도적 중독 □ C19 의도적 중독이지만 이유를 모르는 경우	C1 약품 □ C11 본인 약 □ C12 가족 약 □ C13 주위인 약 □ C14 약국 구입(전문의약품) □ C15 약국 구입(일반의약품) □ C18 기타
	C2 비의도적 중독 □ C21 일반적 사고 □ C22 치료목적으로 사용 중 오류에 의해 □ C23 오용(잘못 알고 사용) □ C24 환경 중독 □ C25 작업장 중독 □ C28 기타 사고에 의한 중독 □ C29 사고에 의한 중독이지만 이유를 모르는 경우	C19 모름 C2 약품 외 □ C21 집 □ C22 직장 □ C23 이웃 □ C24 직접 구입 □ C25 야외 □ C98 기타
	C3 부작용 □ C31 약물 부작용 □ C32 음식 부작용	□ C99 모름
	□ C98 기타	
	□ C99 미상	

5. 낙상 및 추락

1. 바닥의 상태	2. 바닥의 종류
□ C1 없음 □ C2 물 □ C3 눈 □ C4 얼음 □ C5 바닥이 다른 물질로 덮여 있음 □ C6 바닥 자체가 미끄러움 □ C98 기타 □ C99 미상	□ C1 콘크리트 바닥 □ C2 흙바닥 □ C98 기타 □ C99 미상

	3. 기저질환 유무						
기저 질환 유무	□ CO 기저질환 □ C9 미상	있음 □ C1 기저질환 없음		□ CO 아니오	C1 예		
고혈압	□ CO 아니오	C1 예 □ C9 미상 □ C1.1 약물치료함 □ C1.2 약물치료안함 □ C1.9 약물치료여부모름	암		□ C1.1 약물치료함□ C1.2 약물치료안함□ C1.9 약물치료여부모름		
당뇨	□ CO 아니오	C1 예 ☐ C9 미상 ☐ C1.1 약물치료함 ☐ C1.2 약물치료안함 ☐ C1.9 약물치료여부모름	치매	□ CO 아니오	C1 예 □ C9 미상 □ C1.1 약물치료함 □ C1.2 약물치료안함 □ C1.9 약물치료여부모름		
결핵	□ CO 아니오	C1 예 □ C9 미상 □ C1.1 약물치료함 □ C1.2 약물치료안함 □ C1.9 약물치료여부모름	간질	□ CO 아니오	C1 예 □ C9 미상 □ C1.1 약물치료함 □ C1.2 약물치료안함 □ C1.9 약물치료여부모름		
간질환	□ CO 아니오	C1 예 ☐ C9 미상 ☐ C1.1 약물치료함 ☐ C1.2 약물치료안함 ☐ C1.9 약물치료야부모름	혈액 응고 장애	□ CO 아니오	C1 예 □ C9 미상 □ C1.1 약물치료함 □ C1.2 약물치료안함 □ C1.9 약물치료여부모름		
뇌혈관 질환	□ CO 아니오	C1 예 ☐ C9 미상 ☐ C1.1 약물치료함 ☐ C1.2 약물치료안함 ☐ C1.9 약물치료여부모름	파킨슨 병	□ CO 아니오	C1 예 □ C9 미상 □ C1.1 약물치료함 □ C1.2 약물치료안함 □ C1.9 약물치료여부모름		
심장 질환	□ CO 아니오	C1 예 □ C9 미상 □ C1.1 약물치료함 □ C1.2 약물치료안함 □ C1.9 약물치료여부모름					
	4. 환경적 요인_경사/틱/조명·밝기						
	턱		□ C99				
	경사		□ C99				
	조명/밝기	□ C1 없음 □ C2 있음	□ C99	비상			

6. 취학전 어린이 손상

1. 취학전 어린이 여부	2. 보호자 목격 유무	3. 손상부위						
	□ C1 목격	해당없음	□ CO 아니오 □ C1 0	l 엉덩이	□ 00 아니오 □ 01 예			
		얼굴	□ CO 아니오 □ C1 0	l 상지	□ CO 아니오 □ C1 예			
		목	□ CO 아니오 □ C1 0	하지	□ CO 아니오 □ C1 예			
	□ C2 미목격 □ C3 미상	가슴	□ CO 아니오 □ C1 0	머리	□ CO 아니오 □ C1 예			
		등	□ CO 아니오 □ C1 0	l 생식기	□ CO 아니오 □ C1 예			
		배	□ CO 아니오 □ C1 ©	l				

4. 화상 냉각치료 여부	5. 퇴원 후 계획	6. 열상의 봉합 유무
□ C1 시행 □ C2 미시행 □ C3 미상	□ C1 외래 진료 필요□ C2 외래 진료 필요 없음□ C3 입원 필요□ C98 기타□ C99 미상	□ 예 □ C1 봉합 필요 □ C2 봉합 불필요 □ C99 미상

7. 운수시고 발생 시 카시트 유형	8. 운수사고 발생 시 탑승위치	9. 추락 및 낙상	10. 이물질 제거
□ C1 앞보기용□ C2 뒤보기용□ C3 부스터시트□ C9 미상	C1 자동차 앞좌석 □ C1.1 운전석 □ C1.2 조수석 C2 자동차 뒷좌석 □ C2.1 운전석 뒤 □ C2.2 중간 □ C2.3 조수석 뒤 □ C2.4 3행 이상 □ C9 미상	C1 높이의 구체화 □ C1 50~100Cm 미만(무릎높이) □ C2 100~150Cm 미만(배꼽높이) □ C3 150Cm 이상(어깨높이) C2 몸무게kg C3 바닥의 경도 □ C3.1 매트바닥 □ C3.2 흙 또는 모래바닥 □ C3.4 시멘트 바닥 □ C3.5 기타	 □ C1 내시경적 제거 □ C2 수술적 제거 □ C3 간단한 처치 후 제거 □ C4 해당없음

2023 응급실손상환자심층조사 지침서

발 행: 2023. 4.

발 행 인: 지영미(질병관리청장)

발 행 처: 질병관리청 건강위해대응관 손상예방관리과

홈페이지(질병관리청) http://www.kdca.go.kr/

(손상정보포털) https://www.kdca.go.kr/injury/

주 소 (28159)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질병관리청 건강위해대응관 손상예방관리과

전 화 번 호 (043) 719-7419

팩 스 (043) 219-2949

[□] 이 책은 질병관리청에 소유권이 있습니다. 질병관리청의 승인 없이 상업적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판매할 수 없습니다.